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Welfare Policies in Multicultural Era:
for multicultural families

김유경 · 조애저 · 최현미 · 이주연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08-14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김 유 경 외
발행인	김 용 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격	1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499-5 93330

머 리 말

세계화, 국제화, 인터넷발달로 인한 정보공유 확산, 혼인수급의 불균형, 이혼 및 재혼증가 등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10년간 2.6배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2000년에 비하여 3.1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에 11.1%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다문화시대의 확대와 함께 혼인수급의 불균형, 국내외 이주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관련 연구는 일부 가족분석 등에 편중되어 가족부양 및 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 최근 급증하는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개인단위로 제공되어 가족단위의 서비스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여건 하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특성,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부양, 가족기능 및 복지욕구 뿐만 아니라 해체가족의 특성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 가족단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

제 가족원이 원만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약(김유경·이주연)

제1장 서론(김유경)

제2장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김유경·이주연)

제3장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김유경·이주연)

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최현미)

제5장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김유경·조애저)

제6장 다문화가족유형별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김유경·이주연)

제7장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욕구(김유경)

제8장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이주연)

제9장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제10장 결론(김유경)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검토를 해주신 이삼식 연구위원 및 김성희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목 차

Abstract	27
요약	29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0
제3절 연구의 한계점	51
제2장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2
제1절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52
제2절 다문화가족의 범위정립	56
제3절 다문화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57
제3장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68
제1절 국내의 출현배경 및 원인	68
제2절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전망	72
제4장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77
제1절 국내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79
제2절 국외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119
제3절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시사점	149
제5장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153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실태	153

제2절 해체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실태	334
제3절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의 시사점	395
제6장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399
제1절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399
제2절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444
제3절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의 시사점	461
제7장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욕구	463
제1절 다문화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	463
제2절 해체 다문화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	503
제3절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욕구의 시사점	516
제8장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518
제1절 응답자 특성	518
제2절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정책적 패러다임	519
제3절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524
제4절 전문가조사결과의 시사점	530
제9장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	531
제1절 다문화가족의 정책 방향	531
제2절 단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536
제3절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557
제10장 결론	571
참고문헌	574
부 록	589

표 목 차

〈표 1- 1〉	결혼이민자 조사내용	44
〈표 1- 2〉	한국인배우자 조사내용	47
〈표 3-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72
〈표 3- 2〉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74
〈표 3- 3〉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분포	74
〈표 4- 1〉	다문화가족 관련 제도 현황	80
〈표 4- 2〉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82
〈표 4-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특혜	95
〈표 4- 4〉	과정별 단계	97
〈표 4- 5〉	다문화사회 이해일반교육 과목(안)	97
〈표 4- 7〉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변화	99
〈표 4- 8〉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101
〈표 4- 9〉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정책의 분류	102
〈표 4- 10〉	2008년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103
〈표 4- 11〉	행정자치부령 제406호	106
〈표 4- 12〉	5단계 세부내용	107
〈표 4- 13〉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111
〈표 4- 14〉	문화관광부령 제175호 제6조제2항	112
〈표 4- 15〉	다문화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현황	118
〈표 5- 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특성	154
〈표 5- 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평균 연령 비교	155
〈표 5- 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교육수준별 비교	156

〈표 5- 4〉	결혼이민자의 혼전 입국목적	157
〈표 5- 5〉	결혼이민자의 현재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여부 ..	158
〈표 5- 6〉	거주지 및 본국 국적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	159
〈표 5- 7〉	본국 국적별 한국 방문횟수	160
〈표 5- 8〉	한국 방문횟수별 한국국적 취득여부 및 입국 목적	160
〈표 5- 9〉	한국 첫 입국년도	162
〈표 5- 10〉	한국 총 거주기간	163
〈표 5- 11〉	결혼이민자의 현 거주지별 본국에서의 최장거주지	164
〈표 5- 12〉	결혼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제공자	165
〈표 5- 1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배우자 소개받은 경로 비교	169
〈표 5- 14〉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배우자 소개받은 경로 비교	170
〈표 5- 15〉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배우자의 소개료 지불 여부 ..	172
〈표 5- 1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 비교 ..	173
〈표 5- 1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	174
〈표 5- 18〉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소개 경로별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 ..	176
〈표 5- 1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횟수 비교	178
〈표 5- 20〉	결혼이민자의 현 배우자와의 결혼이유	179
〈표 5- 21〉	한국인배우자의 현 배우자와의 결혼이유	180
〈표 5- 2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	181
〈표 5- 2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사결정권 비교	182
〈표 5- 2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갈등 정도 비교	183
〈표 5- 2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부부갈등 정도 비교	185
〈표 5- 26〉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부부갈등 정도 비교	186
〈표 5- 2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말 실력정도	188
〈표 5- 2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비교 ..	189

〈표 5- 2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본국인과의 교제에 대한 배우자 태도 비교	190
〈표 5- 3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후 적응까지 소요기간 비교 ·	191
〈표 5- 3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결혼 후 적응하기까지 소요기간	192
〈표 5- 3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 비교 ·	193
〈표 5- 3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	194
〈표 5- 34〉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	196
〈표 5- 3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부부싸움의 빈도 분포	198
〈표 5- 36〉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부부싸움의 빈도 분포	199
〈표 5- 3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 비교	201
〈표 5- 3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폭력 유형별 경험률 비교	202
〈표 5- 39〉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폭력유형별 폭력 발생률	203
〈표 5- 40〉	한국인배우자의 특성 및 폭력유형별 폭력 발생률	204
〈표 5- 4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폭력 경험시 대응형태 비교	205
〈표 5- 4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주여성상담소 방문 및 상담전화 이용 여부 비교	205
〈표 5- 4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상담소 방문상담 및 상담전화 이용의 도움정도 비교	206
〈표 5- 44〉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	207
〈표 5- 45〉	결혼이민자 국적별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	208
〈표 5- 46〉	한국 오기 전 비취업 시 상태	209
〈표 5- 47〉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별 현 취업여부	209
〈표 5- 48〉	한국 오기 전 취업 직종	210
〈표 5- 4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의 특성	212
〈표 5- 5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현 직종 분포	212
〈표 5- 5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현 직종 분포	213

〈표 5- 5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214
〈표 5- 53〉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의 특성별 종사상 지위 ..	215
〈표 5- 54〉	결혼이민자 부부의 맞벌이 여부	217
〈표 5- 55〉	결혼이민자 특성별 현 직장의 취업경로	219
〈표 5- 56〉	결혼이민자의 현 직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	219
〈표 5- 57〉	결혼이민자 현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	220
〈표 5- 58〉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현 직종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21
〈표 5- 59〉	결혼이민자의 현 직종별 월 평균 임금 분포	222
〈표 5- 60〉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월 평균 임금 분포	223
〈표 5- 6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 ..	223
〈표 5- 62〉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비슷한 모국 출신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	225
〈표 5- 63〉	한국인배우자의 일한 경력이 비슷한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비교 ..	226
〈표 5- 6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 ..	226
〈표 5- 65〉	결혼이민자 특성별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	227
〈표 5- 66〉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	228
〈표 5- 67〉	결혼이민자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	228
〈표 5- 68〉	결혼이민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 결혼이민자 응답	229
〈표 5- 69〉	결혼이민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 한국인배우자 응답	230
〈표 5- 7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231
〈표 5- 71〉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232
〈표 5- 7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비교	233

〈표 5- 73〉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234
〈표 5- 74〉	결혼이민자가 직장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	236
〈표 5- 7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경우 전직 의향 ..	237
〈표 5- 76〉	결혼이민자의 전직 희망 이유	237
〈표 5- 77〉	결혼이민자의 전직의향이 있을 경우 희망 직종	238
〈표 5- 78〉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중 현 비취업자의 향후 취업의향 ..	239
〈표 5- 79〉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현 비취업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	239
〈표 5- 79〉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현 비취업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	240
〈표 5- 80〉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희망 직종	241
〈표 5- 8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243
〈표 5- 82〉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취업의향이 있으나 현재 비취업인 이유	245
〈표 5- 83〉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계책임자	246
〈표 5- 84〉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활수준	247
〈표 5- 85〉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택유형	248
〈표 5- 86〉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택소유 형태	249
〈표 5- 87〉	지역 및 가구규모별 가구소득 분포	250
〈표 5- 88〉	지역 및 가구규모별 가구소비 분포	251
〈표 5- 89〉	가구특성별 가구부채 규모	252
〈표 5- 90〉	가구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254
〈표 5- 9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256

〈표 5- 92〉	한국인배우자가 인식하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	257
〈표 5- 9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질병 유무 비교	259
〈표 5- 9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질병명 비교	260
〈표 5- 9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상병기간 비교	260
〈표 5- 9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의 방해정도 비교	261
〈표 5- 9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의료기관이용 여부	262
〈표 5- 98〉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의료기관이용 여부	263
〈표 5- 99〉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지속적인 치료여부	265
〈표 5-100〉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지속적인 치료여부	266
〈표 5-10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병원에 못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 비교	266
〈표 5-10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지난 1년간 병원에 못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	267
〈표 5-10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 비교	268
〈표 5-10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플 때 자주 이용하는 기관 비교 ..	268
〈표 5-10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	269
〈표 5-10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 ..	270
〈표 5-10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의료비부담 형태	272
〈표 5-10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유형 비교	272
〈표 5-10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유 비교	273
〈표 5-11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비교 ..	273
〈표 5-11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274
〈표 5-1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비교 ...	275

〈표 5-11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비교	275
〈표 5-11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검진 받지 않은 이유 비교 ..	276
〈표 5-115〉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	277
〈표 5-116〉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 ..	278
〈표 5-11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인배우자와의 자녀수	279
〈표 5-118〉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	280
〈표 5-119〉	지역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기관이용실태	280
〈표 5-120〉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81
〈표 5-121〉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	282
〈표 5-122〉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 ..	283
〈표 5-12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월 평균 양육비용	284
〈표 5-12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비교 ..	285
〈표 5-12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286
〈표 5-126〉	다문화가족 아동의 집단 따돌림 여부 및 이유	288
〈표 5-127〉	결혼이민자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	289
〈표 5-128〉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적응 못하는 부분	290
〈표 5-12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만족도 분포 및 평균 비교 ..	291
〈표 5-130〉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생존여부	292
〈표 5-13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비교	292
〈표 5-132〉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부양상 어려움 유무	293
〈표 5-133〉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상 어려움	295

〈표 5-13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도움제공 비율과 도움 수혜 비율 비교	297
〈표 5-13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도움 제공자 및 도움 받은 수혜자 비율 비교	298
〈표 5-13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본국 가족과 배우자 가족의 만남 및 연락 빈도 비교	300
〈표 5-137〉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여부	301
〈표 5-138〉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여부	303
〈표 5-139〉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	303
〈표 5-140〉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결혼이민자의 생활비 송금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305
〈표 5-141〉	다문화가족의 돌봄가족 유무 및 관계	306
〈표 5-142〉	다문화가족의 돌봄대상자의 특성	307
〈표 5-143〉	결혼이민자와 주 돌봄자의 관계	308
〈표 5-144〉	돌봄자의 직장 및 취업활동 변화 여부 및 변화부분	309
〈표 5-145〉	돌봄대상자의 평균 1주일간 돌보는 총시간	310
〈표 5-146〉	돌봄대상자의 특성별 이용 시설 유무 및 시설 유형	311
〈표 5-14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돌봄대상자의 이용 시설 유무	312
〈표 5-148〉	돌봄대상자의 시설이용실태	313
〈표 5-149〉	특성별 돌봄 관련 평균 비용 및 부담정도	314
〈표 5-150〉	지역별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의 가족	315
〈표 5-15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비교	316

〈표 5-152〉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여부	318
〈표 5-153〉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유형별 경험률	319
〈표 5-154〉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 빈도	320
〈표 5-155〉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에게 폭력을 가장 많이 한 사람	321
〈표 5-156〉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가족으로부터 폭력이유	322
〈표 5-15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대응 비교	322
〈표 5-15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폭력상담을 위한 이주여성 상담소 방문 및 상담전화 이용 여부 비교	323
〈표 5-159〉	이주여성 상담소 및 상담전화 이용 상의 도움여부	324
〈표 5-16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사회심리적 상태 비교	325
〈표 5-16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정도 비교 ..	326
〈표 5-16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연락빈도 비교	329
〈표 5-16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연락빈도	329
〈표 5-16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모임에 참여빈도 비교 ..	331
〈표 5-16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도움이 되는 모임·단체 비교 ..	332
〈표 5-16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사건발생유형별 가장 중요한 도움요청자 비교	333
〈표 5-167〉	결혼해체 이민자의 특성	335
〈표 5-168〉	결혼해체 이민자의 혼전 입국목적	336
〈표 5-169〉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결혼 목적의 입국비율	337

〈표 5-170〉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337
〈표 5-171〉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방문횟수별 한국국적 취득여부 ...	338
〈표 5-172〉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첫 입국년도	339
〈표 5-173〉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총 거주기간	339
〈표 5-174〉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의 소개받은 경로	341
〈표 5-175〉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의 소개료 지불 비교	341
〈표 5-176〉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	342
〈표 5-177〉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의 허위 정보 부분	343
〈표 5-178〉	결혼해체 이민자의 결혼회수	343
〈표 5-179〉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	344
〈표 5-180〉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비취업시 상태	344
〈표 5-181〉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별 현 취업여부 ..	345
〈표 5-182〉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취업 직종	346
〈표 5-183〉	결혼해체 이민자의 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분포	347
〈표 5-184〉	결혼해체 이민자의 현 직장의 취업경로	347
〈표 5-185〉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평균 근무기간	348
〈표 5-186〉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48
〈표 5-187〉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평균 임금분포 및 만족도 ..	349
〈표 5-188〉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월 평균 임금의 모국 친구와의 비교	350
〈표 5-189〉	결혼해체 이민자의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351
〈표 5-190〉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351
〈표 5-191〉	결혼해체 이민자 중 현 비취업자의 향후 취업의향	352
〈표 5-192〉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직의향이 있을 경우 향후 희망 직종	352

〈표 5-193〉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353
〈표 5-194〉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의향이 있으나 현재 비취업인 이유 ..	354
〈표 5-195〉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계책임자 및 생활수준 ..	355
〈표 5-196〉	해체 다문화가족의 주택유형	356
〈표 5-197〉	해체 다문화가족의 주택소유 형태	357
〈표 5-198〉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 및 가구소비 분포	357
〈표 5-199〉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구부채 분포	358
〈표 5-200〉	해체 다문화가족의 부채의 주된 원인	358
〈표 5-201〉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359
〈표 5-202〉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상태	360
〈표 5-203〉	결혼해체 이민자의 질병 유무	361
〈표 5-204〉	결혼해체 이민자의 상병기간	361
〈표 5-205〉	결혼해체 이민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의 방해정도 ..	362
〈표 5-206〉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여부	362
〈표 5-207〉	결혼해체 이민자의 지속적인 치료여부	363
〈표 5-208〉	결혼해체 이민자의 지난 1년간 병원에 못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	363
〈표 5-209〉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1순위) ..	364
〈표 5-210〉	결혼해체 이민자의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기관	365
〈표 5-211〉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1순위) ..	366
〈표 5-212〉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비부담 형태	367
〈표 5-213〉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유형	368
〈표 5-214〉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유 ..	368
〈표 5-215〉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비교	369
〈표 5-216〉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369

〈표 5-217〉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	370
〈표 5-218〉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 ..	371
〈표 5-219〉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수	372
〈표 5-220〉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	372
〈표 5-221〉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	373
〈표 5-222〉	해체 다문화가족의 방과 후 아동을 돌보지 않는 이유	373
〈표 5-223〉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374
〈표 5-224〉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집단 따돌림 여부 및 이유	375
〈표 5-225〉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적응정도 ..	376
〈표 5-226〉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만족비율 및 평균	376
〈표 5-227〉	결혼해체 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생존여부	377
〈표 5-228〉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378
〈표 5-229〉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부양상의 어려움	379
〈표 5-230〉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 중 도움제공 비율과 도움수혜 비율	379
〈표 5-231〉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도움 제공자 및 도움 받은 수혜자 비율	380
〈표 5-232〉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배우자 가족의 만남 및 연락 빈도	381
〈표 5-233〉	결혼해체 이민자의 특성별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여부 ..	382
〈표 5-234〉	지역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 ..	383
〈표 5-235〉	결혼해체 이민자의 돌봄가족 유무	383
〈표 5-236〉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의 가족	384
〈표 5-237〉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385

〈표 5-238〉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률	386
〈표 5-239〉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 빈도 ...	386
〈표 5-240〉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이유 ..	387
〈표 5-241〉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대응 ..	387
〈표 5-242〉	결혼해체 이민자의 사회심리적 상태	388
〈표 5-243〉	결혼해체 이민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정도	389
〈표 5-244〉	결혼해체 이민자의 평균 친구·이웃·동료·기타 수	391
〈표 5-245〉	결혼해체 이민자의 친구·이웃·동료·기타와의 연락빈도 비교 ..	391
〈표 5-246〉	결혼해체 이민자의 지난 1년간 모임에 참여빈도 비교 ..	393
〈표 5-247〉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장 도움이 되는 모임·단체	394
〈표 5-248〉	결혼해체 이민자의 사건발생유형별 가장 중요한 도움요청자 ..	395
〈표 6- 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견해	401
〈표 6- 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배우자선택의 기준	403
〈표 6- 3〉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 결혼에 대한 입장	405
〈표 6- 4〉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이혼에 대한 의견	407
〈표 6- 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비교 ..	408
〈표 6- 6〉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409
〈표 6- 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가치관 비교	412
〈표 6- 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가치관 비교 ..	414
〈표 6- 9〉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	416
〈표 6- 10〉	다문화가족과 일반한국인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비교	417
〈표 6- 11〉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의견	419
〈표 6- 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상자녀수 비교	419
〈표 6- 1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420

〈표 6- 1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남아선호이유 비교	423
〈표 6- 1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가치관 비교	424
〈표 6- 1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기혼여성의 자식양육한계에 대한 의견 비교 ..	425
〈표 6- 1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자녀차별대우 경험 비교	428
〈표 6- 1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국가 및 민족 정체성 비교 ·	429
〈표 6- 19〉	한국인배우자의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심각성에 대한 의견	431
〈표 6- 20〉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이민자 인권상황 개선정도에 대한 의견 ·	431
〈표 6- 21〉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이민자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	432
〈표 6- 2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	435
〈표 6- 23〉	한국인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	437
〈표 6- 24〉	지역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439
〈표 6- 25〉	본국 국적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441
〈표 6- 26〉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443
〈표 6- 27〉	결혼해체 이민자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444
〈표 6- 28〉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	445
〈표 6- 29〉	결혼해체 이민자의 결혼에 대한 입장	445
〈표 6- 30〉	결혼해체 이민자의 이혼에 대한 의견	446
〈표 6- 31〉	결혼해체 이민자의 이혼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446
〈표 6- 32〉	결혼해체 이민자의 재혼에 대한 의견	447
〈표 6- 33〉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가치관	449
〈표 6- 34〉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가치관	450

〈표 6- 35〉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451
〈표 6- 36〉	결혼해체 이민자의 반드시 자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452
〈표 6- 37〉	결혼해체 이민자의 이상자녀 수	452
〈표 6- 38〉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의 성별 선호도	453
〈표 6- 39〉	결혼해체 이민자의 남자아이 선호에 대한 이유	453
〈표 6- 40〉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가치관	454
〈표 6- 41〉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식양육 한계에 대한 의견	455
〈표 6- 42〉	결혼해체 이민자가 본 한국인의 외국인 배려수준	455
〈표 6- 43〉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인의 외국인차별 경험	456
〈표 6- 44〉	결혼해체 이민자의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자녀차별대우 경험	457
〈표 6- 45〉	결혼해체 이민자의 특별우대 경험 비교	457
〈표 6- 46〉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가 및 민족 정체성	458
〈표 6- 47〉	결혼해체 이민자의 친구가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취할 태도	458
〈표 6- 48〉	결혼해체 이민자가 생각하는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460
〈표 7- 1〉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464
〈표 7- 2〉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도움 받은 비율	467
〈표 7- 3〉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468
〈표 7- 4〉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469
〈표 7- 5〉	지역별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도움 받은 비율	471
〈표 7- 6〉	결혼기간별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472
〈표 7- 7〉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	473
〈표 7- 8〉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	474
〈표 7- 9〉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신청 및 혜택여부	475
〈표 7- 10〉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도움정도	475
〈표 7- 11〉	다문화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 및 도움정도	476

〈표 7- 1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복지서비스의 이용 의향	478
〈표 7- 13〉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복지서비스의 이용 의향	480
〈표 7- 14〉	결혼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순위	481
〈표 7- 1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서비스	482
〈표 7- 16〉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순위	483
〈표 7- 17〉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서비스	485
〈표 7- 18〉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	487
〈표 7- 19〉	한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	488
〈표 7- 20〉	결혼이민자의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순위	489
〈표 7- 2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490
〈표 7- 22〉	한국인배우자의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순위	491
〈표 7- 23〉	결혼이민자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순위	492
〈표 7- 24〉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493
〈표 7- 25〉	한국인배우자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순위	494
〈표 7- 26〉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	496
〈표 7- 2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 ..	498
〈표 7- 2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499
〈표 7- 29〉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	500
〈표 7- 3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정폭력피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정책 ..	502
〈표 7- 31〉	결혼해체 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	504
〈표 7- 32〉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신청 및 혜택여부	505

〈표 7- 33〉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도움정도	506
〈표 7- 34〉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순위	507
〈표 7- 35〉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	509
〈표 7- 36〉 결혼해체 이민자의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순위	511
〈표 7- 37〉 결혼해체 이민자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순위	512
〈표 7- 38〉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	513
〈표 7- 39〉 결혼해체 이민자의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	514
〈표 7- 40〉 결혼해체 이민자의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	515
〈표 7- 41〉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정책 ..	516
〈표 8- 1〉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519
〈표 8- 2〉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520
〈표 8- 3〉 전문가유형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의견(중복응답)	522
〈표 8- 4〉 전문가유형별 다문화가족의 당면 문제 중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525
〈표 8- 5〉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의 효과적 시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	526
〈표 8- 6〉 전문가유형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528
〈표 8- 7〉 전문가 건의사항	529
〈표 9- 1〉 단기 및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533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분석틀	50
[그림 4- 1]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106
[그림 4- 2] 여성정책 추진체계	109
[그림 4- 3] 부처별 다문화관련 소관업무	113
[그림 4- 4] 다문화관리체계의 현황	114
[그림 5- 1]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혼전 입국 목적	157
[그림 5- 2] 결혼이민자의 한국 첫 입국년도	161
[그림 5- 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소개받은 경로 비교 ..	167
[그림 5- 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의 소개료 지불 비교 ..	171
[그림 5- 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허위 정보 부분 비교	177
[그림 5- 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국가의 언어 실력 정도 비교	187
[그림 5- 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전·후 가장 차이 나는 부분 비교 ..	191
[그림 5- 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싸움의 빈도 비교	197
[그림 5- 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현 취업여부	211
[그림 5-10] 결혼이민자의 현 직장 취업경로	218
[그림 5-11] 결혼이민자 모국출신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	224
[그림 5-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비교 ..	231
[그림 5-13]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233
[그림 5-1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비교	242
[그림 5-15] 결혼이민자가 인식하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255
[그림 5-1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상태 비교	259

[그림 5-1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기관 이용여부 비교	261
[그림 5-1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속적인 치료여부 비교	264
[그림 5-1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비부담 형태 비교	271
[그림 5-20]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상 어려움 비교	294
[그림 5-21]	결혼이민자의 도움제공 비율과 도움수혜 비율	296
[그림 5-22]	결혼이민자의 생활비 송금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304
[그림 5-23]	결혼이민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의 가족	315
[그림 5-24]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률	318
[그림 5-2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평균 친구·이웃·동료· 기타 수 비교	328
[그림 5-26]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제공자	340
[그림 6- 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견해 비교	400
[그림 6- 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선택의 기준 비교	402
[그림 6- 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입장 비교	404
[그림 6- 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혼에 대한 의견 비교	406
[그림 6- 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재혼에 대한 의견 비교	410
[그림 6- 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비교	415
[그림 6- 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418
[그림 6- 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의 성별 선호도 비교	422
[그림 6- 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식양육한계에 대한 의견 비교	425
[그림 6-1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한국인의 외국인 배려수준에 대한 의견 비교	426
[그림 6-1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한국인의 외국인차별 경험 비교	427

[그림 6-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특별우대 경험 비교	428
[그림 6-1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친구가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취할 태도 비교	430
[그림 6-14]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	436
[그림 6-15] 지역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	438
[그림 7- 1]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465
[그림 7- 2]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469
[그림 7- 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비교 ..	484
[그림 7- 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 비교 ..	495
[그림 7- 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 비교	497
[그림 7- 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정책	501
[그림 8- 1]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중복응답)	521
[그림 8-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523
[그림 8- 3] 다문화가족의 당면문제 중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524

Abstract

Welfare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a Multicultural Era

Despite rapid increases i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re is relatively little research into multicultural families in social welfare literature. Many of them are in the face of various difficulties, including ethnic prejudice, social isolation and language barriers, yet current social welfare policies do not address their needs. This study examines the living conditions, family functions and structure of multicultural families, placing particular emphasis on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headed by single mothers. Of the survey sample of 1,600 multicultural families selected through snowballing sampling, 1,196 female immigrants and 1,037 Korean spouses responded. The survey brings to light many aspect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their structure and inter-familial relations, their financial backgrounds, employment status, health, childcare and social network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urvey, this study proposes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helping multicultural families cope with and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barriers they are faced with in their lives.

요약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에 11.1%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함.
-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적 부적응, 사회적 편견, 법적·제도적 차별, 가족해체 등의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사회제도권에서 배제되어 가족안정성 및 사회통합을 저해함.
- 다문화가족부양, 가족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복지실태 및 욕구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며, 최근 급증하는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발생원인, 생활 및 자녀양육실태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연구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출현 배경을 분석하고 변화를 전망하며, 일반가족과 해체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가족 단위의 복지정책방안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을 도출함.

□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범위정립, 선행연구, 출현배경 및 전망,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등을 검토함.

-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1,196명, 한국인배우자 1,037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조사함.
 - 사례조사는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조사함.
- 전문가조사는 시·도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학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 패러다임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 등을 조사함.

□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 다문화 개념은 국가 또는 사회에서 문화를 규정하는 방법, 다문화의 주체, 다문화와 정치적 지향성과의 관련여부에 따라서 다름.
 - 다문화주의는 국가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데올로기인 반면, 동화주의는 지배적 집단의 문화를 수용하고 동화되는 것을 말함.
 - 한국의 다문화는 대상에서 제한적이며 온건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주류를 이룸.
-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하여 결혼이민자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형태는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함.
- 다문화관련 선행연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다문화가족관련 선행연구는 이주민의 현황 및 발생요인, 국제결혼과정 및 갈등, 국제이주노동 간의 연관성, 국제결혼중개업, 가정폭력, 결혼이민자가족의 특성 및 욕구, 서비스의 효율화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됨.

□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 국내외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은 전쟁·식민지화, 국가 간 고용시장 및 생활환경 격차, 유입국의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가족의 결합욕구 등임.
-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 세계화, 정보산업발달,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규모는 2020년 30만7천명, 2030년 46만 7천명으로 전망됨.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체류 및 국적 관련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대책, 생활안정대책 및 사회통합대책, 사회참여촉진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등이 수행되고 있음.
 -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효과성이 떨어짐.
- 국외의 다문화가족을 법·제도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일본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며, 독일은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없음.
 - 호주는 이민자 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해 인도주의 정책을 펴고 담

당자가 배정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함.

- 영국은 전문적 외국인을 ‘영주 목적 이민’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은 기피하는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프랑스는 이민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음.

□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 결혼이민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0.9%로 농·어촌보다 높았으며 98.2%가 여성으로 구성되었고 평균연령은 30.74세로 한국인 배우자와 평균 10.64세의 연령 차이를 보임.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78.1%이었고, 가구주와의 관계는 98.5%가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이었고 가족유형은 핵가족으로 구성된 비율이 59.0%임.
- 배우자의 소개 경로가 결혼중개업자인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31.0%, 결혼해체 이민자는 48.7%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17.7%포인트 많았음.
 - 최근 국제결혼의 양상은 종교단체 및 결혼중개업체의 소개에서 가족 및 친구의 소개로 형태가 차츰 변화하는 추세로 나타남.
 -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인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음.
- 부부간의 의사결정은 자녀양육·교육문제, 부부취업·이직,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등은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생활 또는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인배우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음.
 -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경제문제가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문제,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가사 및

육아부담 순으로 높았음.

-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해서 적응하는 데까지 가장 힘든 시기는 1년 미만으로 나타났음.
 -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다가,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감, 자녀문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경제문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 이었고, 그중 신체적 폭력이 30.6%로 가장 높았음.
 - 부부폭력의 대응방식은 결혼이민자는 ‘그냥 참고 산다’는 비율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비율은 7.2%로 미미하였음.
-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19.4%, 결혼해체 이민자는 25.7%로 상당히 낮았고,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는 44.1%이었음.
 -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비 충당과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이었음.
 -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등이 지적됨.
-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결혼이민자는 9.8%, 결혼해체 이민자는 20.0%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2배 이상 높았음.
 - 가구부채는 결혼이민자는 1,000만원 이상이 72.6%, 결혼해체 이민자는 63.6%로 결혼이민자가 9.0%포인트 높았음.
 - 주택소유 형태는 결혼이민자는 자가가 54.2%, 결혼해체 이민자는 자가가 69.4%로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가비율이 15.2%포인트 높았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돌보는 사람 없이 방임되는 비율은 영유아는 6.5%, 아동은 8.5%로 나타났음.

-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양육비·교육비 지출이 17.1%이었음.
- 월 평균양육비용은 322천원이었고, 도시지역은 330천원, 농·어촌은 310천원으로 도시지역이 높았음.
-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18.8%, 결혼해체 이민자는 28.1%이었고,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22.1%, 결혼해체 이민자는 56.3%로 결혼이민자보다 2.5배 높았음.
- 부모님과 동거시 부양상의 어려움으로는 언어소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23.0%, 결혼해체 이민자는 20.6%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결혼이민자의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55.3%이었고, 치료중단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5.1%로 가장 높았음.

□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종’ 및 ‘아내의 가사노동부담’ 등의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15~20% 포인트가 높아서 한국인배우자가 가부장적인 성향을 보였음.
-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및 모국풍습 등을 인정하고자(받고자) 하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53.4~54.4%, 한국인배우자는 40.8~42.1%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사이의 가족문화가치관은 차이를 보였음.
-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0~50% 수준이었으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우대를 경험한 비율은 63.9%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됨.
-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64.56점이었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62.96점으로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다소 낮았음.

- 영역별로는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모두 경제적 기능, 경제적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등의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으며, 이외에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정서적부양기능도 수행도도 낮았음.

□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욕구

- 결혼이민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은 22.8~84.4%로 낮은 편이었으며, 의료보호의 수혜율도 44.2% 수준에 불과함.
-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은 20.5~81.0% 범위이었고, 결혼해체 이민자는 9.4~81.8% 범위로 전반적으로 낮았음.
 - 결혼해체 이민자는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서비스의 이용실태가 저조하였고 동 서비스가 도움이 된 비율도 25.0%로 상당히 낮았음.
-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4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 외에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에 대한 비율이 높았음.
 - 결혼기간이 4년 이상 된 경우는 이외에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였음.

□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전문가는 여성이 70.8%, 남성이 29.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48.9%로 가장 많았음.
 - 전문가유형은 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60.4%로 가장 많았고, 공무

원과 학자는 각각 19.8%, 18.8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다문화관련 업무 또는 연구기간은 2년 미만이 55.5%이었고, 2~5년 미만이 31.3%, 5년 이상은 16.7%이었음.
- 전문가는 현재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으로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외국인, 자녀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많았음.
-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중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순으로 높았음.
-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선점으로 체류자격·시민권관련,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타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대체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또한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단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음.

□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

-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의 기본원칙은 첫 번째는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세 번째는 다문화 아동의 임신·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네 번째로는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다섯 번째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섯 번째는 인프라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단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사회적응력 제고 방안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 방안
 -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전·사후적 지원방안
 -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강화 방안
-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 대상의 인프라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방안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물질·인적 교류 활성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저출산·고령화를 맞아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 그리고 여성의 고학력 및 경제활동의 증대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독신미혼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혼화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사회적 배경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가치관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10년간 2.6배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2000년에 비하여 3.1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에 11.1%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적 차이, 사회문화의 부적응, 사회적 편견, 법적·제도적 차별,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의 다양하고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일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의 사회제도권에서 배제되어 가족안정성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낙인, 법적·제도적인 차별 등으로 사회생활, 부부생활, 경제생활 및 자녀양육, 취업 측면에서 일반가족보다 몇 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자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은 가족단위의 사전적·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추세임에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개인단위로 제공되어 가족단위의 서비스 지원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관련 연구 또한 다문화가족의 특성, 정책 분석, 사회적응 등과 관련된 가족분석 등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서 가족부양, 가족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복지실태 및 욕구 등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발생원인, 생활 및 자녀양육실태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특성,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부양, 가족기능, 건강·보건의료 및 복지욕구 뿐만 아니라 해체가족의 특성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 가족단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출현 배경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다문화가족을 전망하고 다문화가족 유형별로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단위의 복지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출현 배경을 분석하고 변화를 전망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생활실태, 가족관계와 가족부양, 가족기능

등을 가족유형별로 접근하여 일반가족과 해체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일반가족과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가족 단위의 복지정책방안을 구축한다.

넷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다문화가족의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체 10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8개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2장, 제3장, 제4장은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그리고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복지욕구 등이 논의된다. 그리고 제8장은 전문가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복지정책 등이 논의 된다. 제9장에서는 국내외 법·제도 검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 전문가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가.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2장은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립하며,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나.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제 3장은 다문화가족의 국내외 출현배경 및 원인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진단하며 향후 증감을 전망하였다.

다.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제 4장은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를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체류및국적관련법,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검토하였고 이외에 다문화가족 지원기관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 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국외는 대만, 일본, 독일, 호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법과 제도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

제 5장은 다문화가족(일반가족, 해체가족)의 응답자 특성,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취업 및 경제생활,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 가족부양 및 자녀출산·양육,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상태·지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용자료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과 우리나라 가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복지정책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마. 다문화가족유형별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제 6장은 다문화가족(일반가족, 해체가족)의 혼인가치관,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사회적가치관 및 인식 등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일반가족, 해

체가족)의 7가지 가족기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용자료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과 우리나라 가족을 비교분석하였다.

바.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욕구

제 7장은 다문화가족(일반가족, 해체가족)의 복지실태 및 만족도, 복지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 및 복지욕구 분석결과를 복지정책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사.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 8장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 복지정책(필요도, 효과성, 개선, 패러다임), 기타(필요한 정책, 건의사항 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복지정책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아.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

제 9장은 국내외 법·제도의 시사점, 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전문가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복지욕구, 정책효과 등을 반영하여 복지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동 방안은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구분하여 단기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사회적응력 제고, 경제적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심리·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등을 포함하였고,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전·사후적 지원방안,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중·장기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다문화가족 대상의 인프라 개선,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문헌고찰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범위정립, 선행연구, 출현배경 및 전망,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기존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국내외 다문화가족의 법·제도 검토,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 등이다. 문헌연구의 대상에는 각종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 하였다.

나. 실태 및 사례조사

다문화가족조사는 실태조사와 사례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8년 8월 18일~9월 6일 기간 중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표집방식은 법무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및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인도 출신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이었고,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1,196명, 한국인배우자 1,037명이 조사완료 되었다. 조사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방문지도사와 전문조사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73개소)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7개소)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자기기재식으로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1, 표 1-2 참조).

사례조사의 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경우이다. 사례조사대상자는 조사완료된 결혼이민자 1,196명과 기타 결혼이민자 중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한 45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방문교육지도사 및 전문조사

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는 2008년 8월 18일~9월 6일 기간 중에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해체가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결혼과 이주과정, 결혼생활, 가족해체의 원인 및 과정, 경제활동, 건강 및 보건의료이용, 인간관계 및 일상생활,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표 1-1〉 결혼이민자 조사내용

부문	내용	
가구원 사항 (9개문항)	① 가구원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④ 연령(생년월일) ⑤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⑥ 취업여부 ⑦ 혼인상태 ⑧ 장애유무 ⑨ 조사대상 구분	
응답자 특성 (2개항목)	A. 국적 및 입국사항 (8개문항)	① 국적유형 ② 국적취득여부(취득계획) ③ 한국방문횟수 ④ 한국첫입국시기 ⑤ 거주기간 ⑥ 체류자격 ⑦ 한국회방거주기간(이유) ⑧ 정보수집
	B. 본국생활 (3개문항)	① 본국거주지역 ② 생계유지책임자 ③ 가족생활수준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3개항목)	A. 결혼과정 (4개문항)	① 배우자 만남동기(돈지불여부, 소개시 사실일치여부, 차이점) ② 결혼시기 ③ 결혼횟수(배우자 결혼횟수) ④ 결혼이유
	B. 전 배우자 특성 (6개문항)	① 전배우자와의 혼인상태 ② 전배우자 성별 ③ 전배우자 생년월일 ④ 전배우자 최종학력 ⑤ 전배우자 당시 취업상태(배우자의 직종, 종사상의 지위) ⑥ 장애여부
	C. 결혼생활 (14개문항)	① 부부관계(의사소통, 친밀감, 이해정도, 성생활, 가사노동분담, 생활습관, 소비생활, 여가, 만족도) ② 결정권(생활비관리, 재산관리, 주택관련, 자녀양육, 취업, 부모지원) ③ 갈등경험(경제, 자녀, 가사, 부부관계, 부모-형제, 배우자 부모-형제) ④ 한국말실력 정도 ⑤ 주로쓰는 언어 ⑥ 본국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생각 ⑦ 결혼전과 후의 차이점 ⑧ 결혼 후 적응정도 ⑨ 결혼생활의 어려움

〈표 1-1〉 계속

부문	내용	
		⑩ 부부싸움 빈도 ⑪ 부부싸움의 원인 ⑫ 부부싸움의 유형(모욕적인말, 위협, 물건던짐, 밀어붙임, 때림, 외출금지, 신분증 압수, 생활비미지원, 송금거부, 무관심, 성행위 강요) ⑬ 부부폭력 대응방법 ⑭ 상담소, 상담전화 이용유무(도움정도)
취업 및 경제생활 (2개항목)	A. 취업 (19개문항)	① 본국에서의 취업여부(본국에서의 직업, 비취업시 분류) ② 현재취업여부(취업직종) ③ 취업상 중사상 지위 ④ 취직경로 ⑤ 근무기간 ⑥ 취업횟수(옮긴 이유) ⑦ 해고 후 재취업된 기간(생계책임자, 비취업시 가정의 어려움) ⑧ 직장 취직 이유 ⑨ 초과근무일 ⑩ 대가지불유무 ⑪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⑫ 평균임금(임금비교, 만족도) ⑬ 취업에 대한 배우자 의견 ⑭ 취업이유 ⑮ 직장생활시 어려움 (16)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17) 향후취업여부 (18) 비취업시 취업여부(희망직종, 필요한도움, 비취업이유) (19) 직장이직의사(이유, 희망직업)
	B. 경제생활 (6개문항)	① 주택형태 ② 주택소유 ③ 가구소득 ④ 가구소비 ⑤ 부채정도(부채원인) ⑥ 경제적 어려움
건강 및 보건의료이용 (1개항목)	A. 건강 및 보건의료이용 (8개문항)	① 건강상태 ② 질병유무(질병명, 일상생활방해정도, 기간, 치료여부, 의료기관 이용유무, 의료비부담) ③ 의료급여형태(미가입이유) ④ 치료포기유무(치료포기이유) 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유무(체납이유) ⑥ 이용하는 의료기관 ⑦ 치료시 힘든점 ⑧ 건강검진 실시유무(미설시시 이유)
가족부양 및 자녀출산·양육 (3개항목)	A. 가족부양 (7개문항)	① 부모생존여부 ② 배우자 부모생존여부(동거여부) ③ 노인부양시 어려움 ④ 협력자(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⑤ 만남빈도 ⑥ 연락횟수 ⑦ 생활비 송금여부(송금액, 배우자의견)
	B. 돌봄실태 (9개문항)	① 돌봄 가족원 유무 ② 자신과의 관계 ③ 돌봄 가족원의 나이 ④ 도움정도 ⑤ 돌봄기간 ⑥ 돌봄대상(시간, 취업활동변화) ⑦ 이용시설(이용횟수 및 시간) ⑧ 돌봄비용 ⑨ 비용부담정도
	C. 자녀출산·양육 (11개문항)	① 배우자와의 자녀수 ② 배우자의 자녀수(동거여부) ③ 임신·출산시 어려움 ④ 임신·출산시 필요한 도움 ⑤ 자녀만족도(친밀감, 의사소통, 이해, 자녀기대충족, 여가, 만족도) ⑥ 자녀양육시 어려움 ⑦ 미취학자녀 돌봄주체(시설이용시간, 보육시설이용여부 및 이유) ⑧ 취학자녀 방과 후 돌봄주체(이유) ⑨ 자녀양육비 ⑩ 자녀의 교육기관 적응력(부적응시 이유) ⑪ 집단 따돌림 유무(따돌림 이유)

〈표 1-1〉 계속

부문	내용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지지 (3개항목)	A. 가족관계 (5개문항)	① 가족과의 관계 ②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유) ③ 가족원 폭력형태(빈도수, 가해자, 가해이유) ④ 가족원폭력 대응 방법 ⑤ 상담소, 상담전화 이용유무(도움정도)
	B. 사회심리적 상태 (2개문항)	① 자기발전(가치, 자질, 능력, 만족도) ② 스트레스 경험(경제적, 자녀, 배우자, 부모, 가족, 직장, 부담감)
	C. 사회적지지 (5개문항)	① 친구 및 동료 유무(친구, 이웃, 직장동료, 동호회, 모임 등) ② 만남빈도수 ③ 모임빈도수(가족 및 친척, 배우자 가족 및 친척, 학부모, 본국인 친구, 배우자 친구) ④ 도움이 되는 모임 ⑤ 협력관계(병간호,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의 불화, 직장생활어려움)
가족기능 (1개항목)	A. 가족기능 (7개문항)	① 경제적 기능(노동력, 균형적 소비) ② 경제적 부양기능(의·식·주) ③ 정서적 부양기능(가족원의 문제, 협력정도) ④ 신체적 부양기능(신체적보호, 의료보장, 돌봄) ⑤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교육제공, 사회교육) ⑥ 여가휴식기능(외식, 운동, 재충전) ⑦ 사회보장기능(이웃, 친·인척)
가치관 및 인식 (4개항목)	A. 혼인가치관 및 인식 (5개문항)	① 결혼의 필요성 ② 배우자 선택시 고려점 ③ 결혼에 대한 의견 ④ 이혼에 대한 의견(이혼반대시 이유) ⑤ 재혼에 대한 의견
	B. 가족 가치관 (3개문항)	① 가부장적 태도(아버지의 권위, 순종성, 가사노동분담, 자녀양육의 책임, 부모지원) ② 문화가치관(모국어교육, 명절이나 풍습, 요리, 부모 및 가족) ③ 가족생활시 우선성
	C. 자녀 가치관 및 인식(5개문항)	① 자녀가치관 ② 희망자녀수 ③ 남아선호사상(이유) ④ 자녀-부모간의 관계(진로, 결혼 등) ⑤ 자녀양육의 책임범위
	D. 사회적 가치관 및 인식 (6개문항)	① 국제결혼 가치관 ② 한국인의 외국인배려수준 ③ 한국인의 외국인차별정도 ④ 자녀의 교육기관 및 친구의 차별유무 ⑤ 외국인 우대경험유무 ⑥ 국민성(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복지욕구 (2개항목)	A. 복지실태 및 만족도 (5개문항)	① 결혼생활시 어려움 ②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 및 이용의향(한국어교육, 요리, 문화, 가족상담 및 교육, 자녀상담, 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의료상담, 정보화교육, 취업관련, 생활정보, 통역서비스) ③ 정부제공 서비스 및 제도(빈곤층지원, 보육료지원, 위기여성지원, 임신·출산지원, 생활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혜택(신청 및 혜택 여부, 도움정도) ⑤ 4대보험(가입여부, 도움정도)
	B. 복지욕구 (8개문항)	① 필요서비스 ② 필요 교육·훈련서비스 ③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④ 서비스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 ⑤ 자녀양육시 필요한 지원 ⑥ 돌봄의 필요 지원 ⑦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⑧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필요정책

〈표 1-2〉 한국인배우자 조사내용

부문	내용	
가구원 사항 (9개항목)	① 가구원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④ 연령(생년월일) ⑤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⑥ 취업여부 ⑦ 혼인상태 ⑧ 장애유무 ⑨ 조사대상 구분	
응답자 특성 (1개항목)	A. 국적 및 입국사항 (3개문항)	① 배우자국적유형 ② 배우자 국적취득여부(취득계획) ③ 배우자 체류자격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2개항목)	A. 결혼과정 (4개문항)	① 배우자 만남동기(돈지불여부, 소개시 사실일치여부, 차이점) ② 결혼시기 ③ 결혼횟수(배우자 결혼횟수) ④ 결혼이유
	B. 결혼생활 (16개문항)	① 부부관계(의사소통, 친밀감, 이해정도, 성생활, 가사노동분담, 생활 습관, 소비생활, 여가, 만족도) ② 결정권(생활비관리, 재산관리, 주택관련, 자녀양육, 취업, 부모지원) ③ 갈등경험(경제, 자녀, 가사, 부부관계, 부모·형제, 배우자 부모·형제) ④ 주로쓰는 언어 ⑤ 배우자 나라의 언어실력 ⑥ 배우자의 한국말실력 ⑦ 본국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생각 ⑧ 결혼전과 후의 차이점 ⑨ 결혼 후 적응정도 ⑩ 결혼생활의 어려움 ⑪ 부부싸움 빈도 ⑫ 부부싸움의 원인 ⑬ 부부싸움 유형(모욕적인말, 위협, 물건던짐, 밀어붙임, 때림, 외출금지, 신분증압수, 생활비미지원, 송금거부, 무관심, 성행위 강요) ⑭ 부부폭력 대응방법 ⑮ 부부간 불화 상담자 ⑯ 상담소, 상담전화 이용유무(도움정도)
취업 및 경제생활 (2개항목)	A. 취업 (10개문항)	① 생계책임자 ② 배우자취업여부(배우자취업에 대한 의견) ③ 취업여부(직종) ④ 취업상 종사상 지위 ⑤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⑥ 평균임금(임금비교, 만족도) ⑦ 취업이유 ⑧ 직장생활시 어려움 ⑨ 향후 취업여부 ⑩ 비취업시 취업여부(희망직종, 필요한도움, 비취업이유)
	B. 경제생활 (6개문항)	① 주택형태 ② 주택소유 ③ 가구소득 ④ 가구소비 ⑤ 부채정도(부채원인) ⑥ 경제적 어려움
건강 및 보건의료이용 (1개항목)	A. 건강 및 보건의료이용 (8개문항)	① 건강상태 ② 질병유무(질병명, 일상생활방해정도, 기간, 치료여부, 의료기관 이용유무, 의료비부담) ③ 의료급여형태(미가입이유) ④ 치료포기유무(치료포기이유) 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유무(체납이유) ⑥ 이용하는 의료기관 ⑦ 치료시 힘든점 ⑧ 건강검진 실시유무(미실시시 이유)

〈표 1-2〉 계속

부문	내용	
가족부양 및 자녀출산·양육 (3개항목)	A. 가족부양 (7개문항)	① 부모생존여부 ② 배우자 부모생존여부(동거여부) ③ 노인부양시 어려움 ④ 협력자(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⑤ 만남빈도 ⑥ 연락횟수 ⑦ 생활비 송금여부(송금액, 배우자의견)
	B. 돌봄실태 (9개문항)	① 돌봄 가족원 유무 ② 자신과의 관계 ③ 돌봄 가족원의 나이 ④ 도움정도 ⑤ 돌봄기간 ⑥ 돌봄대상(시간, 취업활동변화) ⑦ 이용시설(이용횟수 및 시간) ⑧ 돌봄비용 ⑨ 비용부담정도
	C. 자녀출산·양육 (11개문항)	① 배우자와의 자녀수 ② 배우자의 자녀수(동거여부) ③ 임신·출산시 어려움 ④ 임신·출산시 필요한 도움 ⑤ 자녀만족도(친밀감, 의사소통, 이해, 자녀기대충족, 여가, 만족도) ⑥ 자녀양육시 어려움 ⑦ 미취학자녀 돌봄주체(시설이용시간, 보육시설이용여부 및 이유) ⑧ 취학자녀 방과 후 돌봄주체(이유) ⑨ 자녀양육비 ⑩ 자녀의 교육기관 적응력(부적응시 이유) ⑪ 집단 따돌림 유무(따돌림 이유)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지지 (2개항목)	A. 가족관계 (6개문항)	① 가족과의 관계 ②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유) ③ 가족원 폭력형태(빈도수, 가해자, 가해이유) ④ 가족원폭력 대응 방법 ⑤ 가족불화 상담자 ⑥ 상담소, 상담전화 이용유무(도움정도)
	B. 사회심리적 상태(2개문항)	① 자기발전(가치, 자질, 능력, 만족도) ② 스트레스 경험(경제적, 자녀, 배우자, 부모, 가족, 직장, 부담감)
가족기능 (1개항목)	A. 가족기능 (7개문항)	① 경제적 기능(노동력, 균형적 소비) ② 경제적 부양기능(의·식·주) ③ 정서적 부양기능(가족원의 문제, 협력정도) ④ 신체적 부양기능(신체적보호, 의료보장, 돌봄) ⑤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교육제공, 사회교육) ⑥ 여가휴식기능(외식, 운동, 재충전) ⑦ 사회보장기능(이웃, 친·인척)
가치관 및 인식 (4개항목)	A. 혼인가치관 및 인식 (5개문항)	① 결혼의 필요성 ② 배우자 선택시 고려점 ③ 결혼에 대한 의견 ④ 이혼에 대한 의견(이혼반대시 이유) ⑤ 재혼에 대한 의견
	B. 가족 가치관 (3개문항)	① 가부장적 태도(아버지의 권위, 순종성, 가사노동분담, 자녀양육의 책임, 부모지원) ② 문화가치관(모국어교육, 명절이나 풍습, 요리, 부모 및 가족) ③ 가족생활시 우선성
	C. 자녀 가치관 및 인식(5개문항)	① 자녀가치관 ② 희망자녀수 ③ 남아선호사상(이유) ④ 자녀·부모간의 관계(진로, 결혼 등) ⑤ 자녀양육의 책임범위
	D. 사회적 가치관 및 인식 (6개문항)	① 국제결혼 가치관 ② 한국인의 외국인배려수준 ③ 한국인의 외국인차별정도 ④ 자녀의 교육기관 및 친구의 차별유무 ⑤ 한국인의 외국인우대정도 ⑥ 배우자의 국민성(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표 1-2〉 계속

부문	내용	
복지욕구 (2개항목)	A. 복지실태 및 만족도 (2개문항)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혜택(신청 및 혜택 여부, 도움정도) ② 4대보험(가입여부, 도움정도)
	B. 복지욕구 (8개문항)	① 필요서비스 ② 필요 교육·훈련서비스 ③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④ 서비스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 ⑤ 자녀양육시 필요한 지원 ⑥ 돌봄의 필요 지원 ⑦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⑧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필요정책

다. 전문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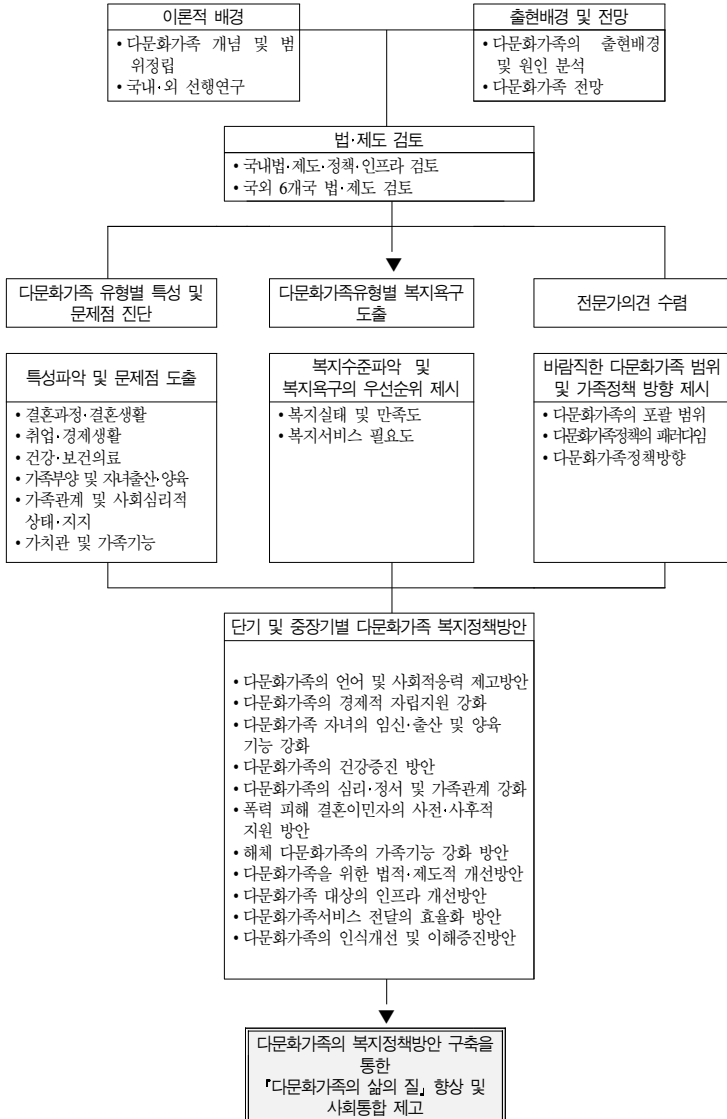
시·도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학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시기간은 2008년 10월 17일~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 96명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내용은 응답자특성,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필요도, 효과성, 개선, 패러다임, 기타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라. 워크숍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토자를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 워크숍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내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기초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1] 같이 요약된다.

[그림 1-1] 연구분석틀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족단위의 복지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제시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한정됨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대상인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분포가 우리나라 전체 결혼이민자의 국적분포와 차이가 나는 것은 표집 및 조사방법상 다문화가족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관계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이민자를 대표하지 못하며 성, 국적 및 지역 등에서 바이어스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동 조사방식 때문에 다문화가족 대상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체 다문화가족의 이용 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표집 및 조사방식에서 나타나는 본 연구결과의 바이어스를 보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결과와 비교분석 하였고,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용한 연구자료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일반가족의 복지수준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사례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유의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례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제 2 장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1. 다문화 개념

다문화의 기술적인 정의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개념 정의는 한 국가나 사회에서 문화를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문화의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다문화와 정치적 지향성과의 관련여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를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문화는 개인 대 개인의 혹은 집단 대 집단의 생활양식 상의 차이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를 소수 공동체 고유의 관습 등 특수한 생활양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다문화는 사회 내의 다수집단과 특정 소수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게 되어 다문화의 구조는 주도적 문화와 소수 집단 문화 간의 대립양상을 띠게 된다.

다문화의 주체를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정의하는 경우 다문화는 사회 내의 다양한 이질성을 모두 포괄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일부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 다문화는 집단 간 문화적 차이와 대립양상에 초점을 두게 되며, 그 중에서도 특정 소수집단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다문화는 해당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국한되어 협의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때로 다문화는 정치적 지향성을 띠게 되기도 하는데, 특히 한 국가 혹은 사회 내의 이질성 및 문화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목적으로 한 논의에

서 다문화는 다분히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혹은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치부되며, 국가 혹은 사회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장치 등과 결부되어 흔히 정치적인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

다문화와 연관된 용어로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국가(혹은 다문화사회) 등이 있다. 가끔 다문화는 다문화주의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사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한 국가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양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주의와 그에 상반되는 개념인 동화주의이다.

동화주의는 근대시대의 산물로서 과거 민족국가의 통치이념이었다. 동화주의의 목적은 한 국가의 구성 집단 중 다수를 이루는 민족 혹은 지배적 위치에 있던 민족의 생활양식을 문화적 기준점으로 삼고, 그 외 소수 민족이나 이질적인 집단은 고유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지배적 집단의 문화를 수용하고 동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소수집단의 문화는 무시되거나 배척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되며, 국가는 다문화 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문화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본다.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국가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 시초는 1960년대 서구의 시민권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지배계층이 아닌 소외된 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오경석, 2007). 이를 기점으로 하여 다문화주의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주의 증가로 더욱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 다문화주의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 및 정치적 요구 등에 따라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흔히 광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국가 구성원들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시민적 권리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협의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정 요구를 해

소하기 위한 정치적이며 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및 제도적 장치들 간의 연관성에 따라 ‘온건 다문화주의’와 ‘강경 다문화주의’로 구분할 수도 있다(마르티넬로, 2002). 온건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내의 생활양식 등의 ‘온건한(soft)’ 부분에서 타 문화의 양식을 추구하고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온건 다문화주의는 개인적이거나 문화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뿐 정치적이거나 제도적인 범주로 확대되지 않는다.

반면에 강경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및 정체성에 대하여 사회적·제도적·정치적으로 인정하며 그러한 사회 변화의 중심에 다양성을 가진 사람 및(혹은) 집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경 다문화주의는 사회제도적·정치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주체의 불평등 및 차별 등이 시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 220여개 국가 중 단일민족국가로 꼽혀 온 한국은 다문화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이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다양성의 주체들은 한국의 주류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이십여년 간 증폭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동화주의로부터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책적·제도적으로도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려는 뜻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7년 국가 간 경쟁력 보고서에는 한국인의 문화적 폐쇄성이 세계 49개국 중 44위로 제시된 바 있으며 2007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매일신문 2008. 2. 19; mbn TV 2007. 8. 20). 다문화

의 주체를 결혼이민자 가정에 국한하며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정을 정책의 중심 범주에 두고 있는 점은 다문화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정, 외국인 부부가정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 등 서구에서 다문화주의의 핵심주체로 포함시키고 있는 집단들이 정책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는 그 대상에서 다분히 제한적이며, 온전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개념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으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 병사와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외에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이산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새터민을 다문화의 주체로서 포함시키기도 하며(황정미, 2007), 외국인 가정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정 등을 다문화 가정으로 보기도 한다(오경석, 2007; 김희정 2007).

그러나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법률적 정의는 결혼이민자(혹은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 도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유용한 ‘다문화가족’이라는 법률적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제2절 다문화가족의 범위정립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범주화되어 왔으며 각 부처 및 민간조직에서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범주화되어온 측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문화가정의 용어 출현은 건강가정시민연대(2004)가 국제결혼가정, 혼혈인 가정 등 차별성을 지닌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다. 박종보(2006)는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한정하여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고 있다. 하나는 ‘미군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족’, 둘째는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족’, 셋째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가 결혼한 가족’, 넷째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결혼한 가족’ 등으로 시대적으로 국제결혼가족을 대별하고 있다. 김갑성(2006)은 다문화가정을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즉,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정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유입되어 외국인 이주노동자간에 결혼하여 형성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정 등을 범주화하고 있다(여성신문, 2006년 8월 25일자). 설동훈(2006b) 또한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지칭하고 있다.

정책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대상으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교육청에 소속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을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으로 의미를 개념화하고,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민가정을 포괄하여서 설동훈(2006b)에 비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결혼가정에는 한국인남성과 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한국인여성과 이주남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이주민가정에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또한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 즉,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을 통칭한다. 평택대학교에 소속된 다문화가족센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서 범주를 넓게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된 다문화가족의 범주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동 법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의 범주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결혼이민자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형태는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제3절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1.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오경

석(2007)은 다문화주의를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광의적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리플릿, 2006; 오경석 2007 재인용)으로 상당히 포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개념 규정이 될 수 있다. 보다 협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김리카, 1995; 오경석 2007 재인용)으로 보아 제도적인 접근을 하였다.

김리카는 다문화주의를 다양성을 가진 국가의 운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인종적 이질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다(김리카, 1995; 김이선 2007 재인용). 또한 국가 내의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동화주의적 혹은 배척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역사적으로 행해진 불평등 및 차별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그는 다문화국가의 성공은 다문화 시민의 다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문화와 차이를 인정하려는 국민들 사이의 관용과 그를 통한 공존이라고 지적하였다.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는 다문화주의를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그 방식이 정치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온건 다문화주의’, ‘강경 다문화주의’ 및 ‘시장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였다. 온건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내의 생활양식 등의 ‘온건한(soft)’ 부분에서 타 문화의 양식을 추구하고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온건 다문화주의는 개인적이거나 문화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뿐 정치적이거나 제도적인 범주로 확대되지

않는다. 반면에 강경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및 정체성에 대하여 사회적·제도적·정치적으로 인정하며 그러한 사회 변화의 중심에 다양성을 가진 사람 및(혹은) 집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경 다문화주의는 사회제도적·정치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주체의 불평등 및 차별 등이 시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장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생활 방식이 시장경제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지칭하며 다문화를 수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희정(2007)은 다문화주의를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국가의 정책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다문화주의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서 이를 실질적 다문화정책과 공식적 다문화정책 등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공식적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다문화정책을 의미하는 반면에 실질적 측면에서의 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수동적 인정을 의미한다(Joppke, 2001; 김희정 2007 재인용). 그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가 혈통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와 혼혈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책을 펼치면서 화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으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그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황정미 외(2007)는 한국사회가 최근 국제적 이주의 증가로 인하여 단일 민족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탈-국가적 이주’의 증가로 인한 국가와 사회의 민족주의적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이며, 기존의 민족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포용되기 어려웠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패러다임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한국은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단일민족국가로서의 경험과 민족국가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지

정확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따른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 등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의 개념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연구로 Joppke(2004)는 최근 자유주의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적 정책의 실패와 자유주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주의로부터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의 다문화정책을 고찰하고 있다. Wieviorka(1998)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소개하고 호주 및 미국의 다문화관련 정책을 고찰하였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정체성들과 그러한 정체성들의 충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문화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다문화주의정책은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자율성과 민주적인 힘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가. 국내연구

국내의 결혼이민자 관련 선행연구는 출현배경과 밀접하므로 연구동향은 시기별로 차이점을 보인다. 1980년대 말까지는 주로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미국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였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Kim, 1972, 1977; Lee, 1981; Yuh, 2002).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 주제는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최근정, 2003; 이금연, 2003; 석원정, 2004), 국제결혼 여성의 가정폭력실태(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흠, 2003; 설동훈 외, 2005; 이순형 외, 2006; 정기선 외, 2007)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 정책방안 등을 연구하였다(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이외에 중국교포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정과 적응 및 갈등경험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인봉숙, 2001; 한주연, 2002).

2000년대 중반에 오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연구에서 가족연구로 경향이 변화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의 결혼생활,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 사회적 차별, 정체성, 정책수요 등 결혼이민자가족실태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도 전체 국제결혼여성 뿐 아니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등 세분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설동훈 외, 2005; 설동훈 외, 2006; 이순형 외, 2006; 정기선 외, 2007). 최근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갈등과 소통 등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이선 외, 2006; 김이선 외, 2007; 양옥경 외, 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체계의 효율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결혼과정, 사회적응실태, 복지수요, 인권차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결혼과정, 결혼생활, 부부폭력, 자녀양육, 경제생활, 사회적응, 가치관, 서비스이용실태, 가족정책분석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부양, 가족관계, 가족기능, 돌봄실태, 사회적지지, 복지욕구 등 가족단위 정책도출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1) 1970~1980년대 연구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결혼이민자 관련 연구내용은 미군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적응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었다. 1970년대의 연구는 국제결혼의 특수동기부터 부부갈등의 요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배경, 결혼동기, 성격 등 국제결혼의 특성을 규명한 탐색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연구는 임상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관, 가족치료, 임상상담에서 나타난 국제결혼의 문화적 갈등 이외에 대인관계, 가족관계, 재정 관리, 언어소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문화적 갈등의 해소방안을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미군 아내의 대부분이 하류층 또는 기지촌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매춘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미국사회와 교포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들만의 여성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불평등한 국가관계와 부부관계의 관련성 또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2) 1990년~2000년대 연구

1990년대와 2000년대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 대상의 연구와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문화와 소통 등 사회통합의 연구, 서비스지원방안의 개선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결혼이민자 개인대상의 연구와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결혼 후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의 차이로 남편과 시댁식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으로 나타났다(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김혜순 외, 2007). 또한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은 이혼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양순미, 2006).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인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유경, 2005).

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간 폭력은 이민자의 16.9%가 배우자의 가정내 폭력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하였다. 폭력유형은 폭언 또는 모욕적인 말,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음, 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못하게 함, 신체적 폭력, 의처증 또는 의부증, 기타 폭력적 행동 등이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이민자의 부부폭력은 18.6%로 높았다. 부부폭력에 대한 여성 이민자의 대응방식은 배우자를 설득하여 해결한다가 높았고, 싸워서 고친다,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산다,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등의 비율은 낮았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민자의 87.7%가 가정폭력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만이 결혼이민자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및 긴급 상담전화를 이용하였다. 가정폭력 해결방법 중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결혼이민자 상담소의 방문상담이었고, 다음은 경찰신고, 상담전화 이용 순이었다(설동훈 외, 2006). 한편 농촌 이주여성 중에서 남편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은 경우를 경험한 비율은 3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언어적 학대, 송금금지, 외출금지, 신분증을 빼앗는 경우, 의처증,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를 경험한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후 해결방법은 38.2%가 어떤 대책도 없었고, 나머지는 경찰에 신고, 상담소의 방문 상담, 상담전화를 이용하였다.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47.1%로 나타나서 인지도가 낮았다(이순형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관계는 직장, 일터 등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보다 많았으며, 이웃·동네의 친지는 농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많아서 지역사회성원과의 관계가 양호하였다(설동훈 외, 2006; 김이선 외,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지역간에 차이를 보여 도시지역이 다소 높았고,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농촌지역이 다소 높았다(설동훈,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는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취업이유로는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교육비 충당 등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다(설동훈, 2005).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양육은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한글교실 등 기관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약 1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부모, 기타 가족 등이 집에서 양육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도농간에 편차가 컸다(도시: 38.9%, 농촌: 56.7%)(김이선 외, 2008). 특히 모의 한국어 학습문제로 인해 자녀의 한국어 학습이 지체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해서 학습부진으로 나타났다(왕한석 외, 2005).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치관 및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는 ‘남편을 사랑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위하여’ 등으로 지역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종교적’인 것도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부양책임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관 등은 양성평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가부장제의식, 부부평등의식은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높았는데, 이와 같이 부부의식의 괴리는 부부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이순형 외, 2006). 성역할 의식 즉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시댁에만 헌신하도록 하는 요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6; 김혜순 외, 2007). 특히 한국 남편의 성역할 태도, 사회적 관계 정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높아서(이현아, 2001), 한국 남편의 융통성 있는 역할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심리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리나, 2006). 자녀에 대한 가치관으로는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의 건강, 공부 잘하는 것,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사회에서 존경받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는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가족 또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이순형 외, 2006). 문화차이로는 생활문화가 가장 컸으며, 또한 경제제도, 자녀양육, 시댁과의 관계 또한 문화차이로 나타나서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순형 외, 2006).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의 복지수준 및 욕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지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빈곤층의 생계·의료비 지원 등의 인지도가 높았고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보다 높았다. 보건소를 통한 임·출산 지원, 지자체의 생활정보 제공, 기관의 서비스 제공 등은 농촌지역 거주자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가정폭력, 여성폭력과 관련된 지원체계, 취업교육, 일자리 알선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지역 거주자의 인지도가 높았다(이순형 외, 2006).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읍·면·동사무소 등 공적기관과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등 민관기관의 이용이 매우 적었으며, 특히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의 만족도는 평균 이상을 상회하지 않았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교육서비스 제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으며, 다음은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 집을 비울 수 없어서, 생활이 바빠서, 비용이 없어서 순으로 높았다.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교육, 한국 요리실습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컴퓨터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이순형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도움이 된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이었고,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육과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취업교육훈련 등의 순이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가족의 허락과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편리한 시간의 서비스 제공, 자녀돌봄서비스, 교통편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이선 외(2007)의 연구에서는 출산, 자녀양육,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

려움 등을 겪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으며 주된 원인은 서비스 실시가 초기라는 점과 예산 수반 등이 지적되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접근을 제고한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07).

나. 국외연구

국외연구로는 이주민의 현황 및 발생요인과 관련된 연구(Castle and Miller, 2003; Hugo, 2004), 국제결혼과 국제이주노동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Piper, 2003), 국제결혼중개업(Orloff and Sarangapani, 2007; Wang and Chang, 2002),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점(Williams and Yu, 2006; Merali, 2008) 등이 수행되었다.

Castle and Miller(2003)는 아시아 지역 내의 국제이주가 식민지화 및 전쟁 등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현상으로 보고, 아시아 국가 중 식민지경험으로 연결된 북미, 서유럽 각국 및 호주 등지로의 인적유출과 중동으로의 계약노동자 이주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의 노동력 이주를 주요 형태로 파악하였다. 이 중 아시아 지역 내의 노동력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그는 1984~94년 까지 이주노동여성의 대부분이 저임금, 저숙련 그리고 불안정한 직업군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는 본국의 가족과 공동체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와 떨어져 국제이주한 경우, 본국의 가족관계와 역할 분담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Hugo(2004)는 아시아의 국제이주양상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북미, 중동, 서유럽으로의 인적유출이며, 둘째는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소규모의 전문직 기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동력 과잉국가로부터 노동력부족국가로의 아시아 지역 내부의 국제이주 등이

다. 그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인종, 문화, 종교 및 인구·사회적 상황 등이 상이한 점과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큰 점을 들어 아시아 지역 내 국제이주의 양상이 상당히 복잡함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나 많은 수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입지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반복됨을 지적하였다.

Piper(2003)는 국제 노동이주와 국제 결혼이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외국여성이 노동자로서 국제 이주하였다가 현지의 남성과 결혼하여 결혼이민자가 되기도 하고, 결혼이주여성으로 국제 이주하였다가 현지에서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현상을 예로 들며 국제 노동이주와 국제 결혼이주가 결코 양분화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구로는 Orloff and Sarangapani(2007)은 미국을 유입국으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의 현황과 미국의 이민법을 분석하여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Wang and Chang(2002)은 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결혼중개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결혼이주여성이 더욱 더 상품화되어가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Williams and Yu(2006)는 대만의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발생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가정폭력의 경험은 일반여성의 경험과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국제이주 자체가 가정폭력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Merali(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이 가정폭력의 취약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로 국제결혼 및 이민정책이 여성의 권익에 민감하지 못한 점과 결혼이민자의 본인의 권리 및 이민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맞은 배우자의 가정 내 여성에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가치관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제1절 국내외 출현배경 및 원인

1. 국외 출현배경 및 발생원인

국외는 근대 및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동수단의 발달 및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가 간 인구이동이 대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소유한 다문화가족의 출현이 빈번해졌다.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전 세계 인구는 65억 명으로 이 중 약 3%인 1억9천100만 명이 국제이주로 인하여 출생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이주의 규모면에서 7천5백만 명이었던 1960년도와 비교해 무려 2.5배 증가한 수준이며 국제이주의 형태면에서도 이전보다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 2006). 특히, 선진국 국민의 10 분의 1이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70분의 1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의 국제이주자 중 6명은 한국 등 22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UN, 2006). 국제이주자들은 새로 정착한 국가에서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거나 본국의 가족을 추가로 이주시켜 가족의 결합을 이루는 등의 방법으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이주는 다문화가족의 출현 및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발생원인은 크게 거시적 원인과 미시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적 원인은 전쟁 및 식민지화, 세계화, 국가 간 고용시장 및 생활환경의 격차, 그리고 유입국의 인구학적 변화 등 국가의 정

치·경제·사회적 환경에 기반하여 국제이주를 촉발시키는 요인이며, 미시적 원인은 가족의 결합욕구 및 개인의 사회심리적 욕구 등 개인 및 가족의 측면에서 국제이주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거시적인 원인 중 전쟁 및 식민지화는 강제적 이주를 유인하는 특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피난·망명 등의 형태의 국제이주가 발생하게 되며, 신변의 안전, 정치이데올로기 혹은 자유 및 인권의 추구 등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이주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각국의 식민지화, 제 1·2차 세계대전의 발발 및 베트남전·한국전 등이 발생했던 19~20세기 중반의 국제이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에 국가 간 고용환경 및 생활환경의 격차와 유입국의 인구학적 변화는 최근의 국제이주 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고용시장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소득수준이 낮거나, 고용기회가 적거나, 생활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노동자들은 더 나은 고용기회 및 생활환경을 찾아 타국으로 이주하게 된다(Castle, 2000). 또한 국가의 출산율, 사망률, 연령구조 및 노동인력규모 등 인구학적 변화도 국제이주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규모가 축소되는 국가와 청·장년층 감소 등으로 노동인력규모가 축소되는 국가로 인력이 유입되는 경향을 보인다(Hugo, 1998).

미시적인 원인은 개인 혹은 가족이 국제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사회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경제·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이 낮은 국가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환경을 보유한 국가로, 교육기회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국제이주를 통하여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과 결합하고자 하는 욕구는 본국의 가족을 이주한 국가로 이동하도록 하는 결정요인이 된다. 이렇듯 소득의 최대화, 생활수준의 최적화, 가족의 결합 및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등 개

인과 가족의 경제·사회적 복지수준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은 국제이주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2. 국내 출현배경 및 발생원인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전까지 국제사회에서 국제이주 송출국으로서 1960~70년대에는 독일에 광부 및 간호사 등을 파견하였으며, 1970~80년대에는 중동에 건설기술 및 노동인력을 파송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력송출국에서 인력유입국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단순노동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단순노동자의 해외유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Kim, 2006).

1990년대에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하였다(강휘원, 2007).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도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의 단순노동인력감소는 부분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감소에 기인하며 또한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저임금의 단순노동을 기피하려는 현상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강휘원, 2007, 박래영, 1993, 신선인, 2005).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외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입국이 늘어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양질의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한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결혼여건으로 혼인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 함께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상황 및 생활환경 등이 여유로운 국가로 이동하여 더 나은 취업의 기회 및 생활환

경을 개척하고자 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국제결혼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도 타국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상대여성의 출신국가는 주로 일본, 중국이었는데 반해,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저개발국의 경제수준보다 높아 이주여성들에게 상당한 유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일부 종교단체가 일본과 필리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선교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다는 점(전만길, 2005; 김오남, 2006), 또한 결혼상대자를 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박형식, 2006: 1),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¹⁾ 이와 함께 2000년에 들어서면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려는 국제결혼 중개업체²⁾의 증가가 국제결혼 증가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이와 같이 국내의 다문화가족의 발생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 및 노동시장환경, 그리고 혼인시장의 불균형과 출산을 저하 및 농촌지역의 여성인구수 감소 등 국내의 인구학적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

1) 1980년대 말에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1990년 대 초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함.

2) 1999년 8월부터 결혼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그 이후 자유업으로 전화되면서 사설 중개업체들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국제결혼은 급증하게 됨.

제2절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전망

1. 다문화가족의 현황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결혼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로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매년 10,000건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38,491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7년에 11.1%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3.7%가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08).

〈표 3-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2007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75.7%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수는 1990년대에 감소하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24.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120,000명(88.4%)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102,000명(71.7%)으로 대다수가 해당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여성이 증가하다가 2006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규모로 살펴보면 조선족 한국인이 55,789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76.5%가 도시에 거주하는 한편, 23.5%는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으며, 특히 중국 출신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였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캄보디아는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다. 남성결혼이민자도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출신국가의 결혼이민자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 출신의 남성 결혼이민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단위: 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외국인	계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아내	중국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베트남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일본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필리핀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몽골	118	195	318	504	561	594	745
	우즈베키스탄	66	183	329	247	333	314	*1)
	기타	1,016	983	1,259	1,340	1,307	1,920	4,062
외국인	계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남편	중국	222	272	1,199	3,621	5,042	2,597	3,684
	일본	3,011	2,377	2,613	3,378	3,672	3,756	2,489
	미국	1,132	1,210	1,237	1,348	1,413	1,455	1,344
	캐나다	164	174	223	230	285	308	376
	파키스탄	64	126	130	103	219	152	134
	영국	70	87	88	120	106	138	126
	호주	79	89	108	136	102	139	156
	기타	448	515	688	731	850	937	1,039

주: 1) 기타에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에는 44,000명, 2008년에는 58,000명으로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행정안전부, 각 년도). 이 중 6세 이하의 자녀는 57.1%이며, 12세 이하가 32.2%로 영·유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에 대비하여 2008년에는 39.6%가 증가하였다.

〈표 3-3〉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만 6세 미만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계(수)
아동	57.1	32.2	6.3	4.3	100.0(58,007)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08. 7.

2. 다문화가족의 전망 및 영향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국가 간의 정보교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리감이 감소함에 따라 다양성의 추구하고 함께 다문화사회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확대로 만혼화 내지는 결혼기피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 등은 배우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국내외 이주산업(국제결혼 중개업 등)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적·사회적 네트워크가 점차 세계화 되어 가면서 외국인의 한국방문과 이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신국의 잠재적 이주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거주 외국인이 본인의 출신국 외국인(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거주 외국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등의 정책적 변화는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개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추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득수준과 이민자 송출국의 소득수준 간의 격차가 한국 내 다문화가족의 증가양상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또다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물가가 급등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로인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면서 한국과 이민자 송출국 간의 소득수준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으로의 국제이주 특성(출신국가 분포 등) 및 규모 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 하에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결혼을 장기전망(연세대, 2006)에 의하면 국제결혼 비율은 매년 상승하여 우리와 사회·경제 여건이 비슷한 대만 수준인 32%(200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추계에 의하면 국내 결혼이민자는 2007년 말에는 11만 명이었으나 2020년 말에는 30만 7천명, 2030년 말에는 46만 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역시 2006년에 3만 5천명에서 2020년에는 16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다문화가족이 주는 영향을 전망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긍정적 요인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신국가와 우리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글로벌 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즉,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따른 차별 대우와 외국인 배척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이 먼저 경험한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청년 폭동과 같은 '문화충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밀집거주지(게토)가 출현할 경우 외국인 체류자들의 주류사회의 편입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 4 장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지만, 우리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여전히 낮고 자문화 중심적 사고로 인해 편견과 차별은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동화적 입장이 지배적이다. 최근 상호문화이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 제안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의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전문적 기반은 미약한 상태이다.

다문화가족 대상의 사회적 지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2006년 4월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여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대책」으로 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여실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대책은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관리와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저숙련 인력활용’, ‘관리와 통제’ 정책에서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지자체별로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 및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국제센터와 외국인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범법, 위법 행위의 처벌과 관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 외국인은 제도적으로 국적 취득 외에는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체류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불법체류와 강제추방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으로 인해 다문화사회의 갈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으며, 법적·제도적 차별을 그대로 둔 채 복지차원의 지원만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신은주, 2007).

2007년 개인적 인권 피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손상의 원인이 되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부도덕적인 상업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을 통하여 결혼중개업의 등록과 인신매매적 행위나 거짓, 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국제결혼 중개업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좀 더 강력한 정부의 문제해결의지, 관련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명칭이 공식화 되었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명칭이 변경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법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국적취득을 전후한 결혼이민자 가족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채 지원대상이 제한되어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나 범위,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 전문가 간에 활발한 참여 및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학자들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의 사정과 유사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여러 국가의 이주민 정책을 볼 때, 오랜 동안의 고민과 논쟁의 역사를 거쳐 자리 잡은 정책조차도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외국의 경험을 살려 좀 더 갈등대처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정책은 단시간 안에 관주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함께 일해 온 실천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인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와 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이혜경, 2008).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법·제도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관련 정부 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제정된 주요 관련법과 제도는 <표 4-1>과 같다. 현행법들은 다문화가족의 형성 단계에 따른 제도적 장치들로 모두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들은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과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실제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인권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기 위한 법률도 있다(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표 4-1〉 다문화가족 관련 제도 현황

관련 제도	해당부처	제정일시 (시행일시)	제도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 가족부	2008. 3. 21. (2008. 9. 2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 가족부	2007. 12. 14 (2008. 6. 15.)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이 용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국적법	법무부	2007. 7. 5. 개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법무부	2007. 5. 17. (2007. 7. 18.)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응하여 개 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대 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 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 과 사회통합에 기여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2005. 8. 4.개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 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료: 박지영,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p. 22, 2008.

결혼이민자는 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동법 제4조) 중 간이귀화요건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1)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배우자의 사망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4)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 또는 양육예정인 자’의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지역 내에서 외국인으로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인 경우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적용되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박지영, 2008: 23-25). 주요 법률을 제정배경과 취지, 주요내용,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사례, 금전문제를 둘러싼 가족갈등과 폭력피해 사례, 가출 및 별거·이혼 등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결혼중개업에 의한 위장결혼, 거짓정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에는 그동안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인권 침해 및 여러 부정적인 사안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제 결혼중개업¹⁾의 등록과 유지 기준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를 예방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들 중개업자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음 <표 4-2>에는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된 사항, 외국 현지 형사법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의 댓가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수령하는 업을 “결혼중개업”이라 함.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중개업을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지칭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령 위반의 범위와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중개업 관리를 위한 신고와 등록, 게시의무, 위반사항의 구체적 내용, 중개업자 대상의 교육의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 4-2〉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기준 사항(안 제3조)
2) 결혼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작성하게 한 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와 그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국내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결혼중개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방법, 시간과 교육실시 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국제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법에 정한 중개업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와 처벌규정을 명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절차상의 위반에 대한 중개업의 시정명령(제17조)과 영업정지(제18조), 폐쇄조치(제19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의 보장(제25조), 벌칙으로 형사처벌과 벌금형(제26조), 과태료 부과(제28조) 등 처벌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담당인력의 확보, 관련 부처 간 업무협력, 관련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감독 관리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 외에도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한 규정(제3조)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동법에 국내결혼의 양상과 절차, 처벌 규정을 포괄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규정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맞게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보다는 국제 중개업의 위반, 탈법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결혼이민자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제정되어 2008년 9월에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많이 기대하던 내용과는 달리 그 정의나 범위, 지원책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좀 더 관련 전문가 간 참여와 토의가 이루어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법은 다문화 가족이 형성, 안정되는 과정에서 이해와 적응 과제들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혜경, 2008).

1) 제정배경 및 취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

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②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야 할 필요로는 첫째,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린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은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보·조용만, 2006).

2) 주요내용

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

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제9조 내지 제14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 등의 자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 간 및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있어서 차별하여서 안 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부모의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결혼이민자 아동 또는 부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과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

며,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제1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 영역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3년마다 정기적인 다문화가족 실태파악 등이다.

3) 성과와 한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우리사회에서 수용하고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목적을 둬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그 범위가 너무 축소된 점, 둘째,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가족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고 외국인근로자

나 북한이주민 등 우리사회 내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 점, 셋째, 우리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가족지원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지원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일차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와 북한이주민, 나아가서는 이민자 가족과 재외동포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권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통합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우리사회의 기본 태도를 규명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정의와 범위,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갖추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 면에서도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이 개선된 진일보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법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²⁾

1) 제정배경 및 취지³⁾

이 기본 법안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의 증가 및 국제결혼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 또한 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 동포·결혼이민자·난민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시행일 2007.7.18.

3) 본 절은 전진희(2007), 『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하였음.

응할 필요성이 야기 되었다. 또한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된 정책의 충돌·중복·부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조기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는 재한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을 합법체류자로 한정한 이유는 동법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장에서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한외국인을 불법체류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정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외국인의 체류질서 문란, 사회비용 및 갈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제2장(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 내지 제9조) 외국인정책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2조 제3호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적법도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었던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보아 지원시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여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5조는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의무와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무부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 국적부여, 난민인정 등 포괄적인 외국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법무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근거한다. 법무부장관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①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귀화자에 대한 실태조사, ② 기본계획 수립 필요사항 연구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부의 안건 사전 연구 ④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 및 통계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 처리, ⑤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⑥ 그 밖에 외국인 정책 관련 연구 및 정책 추진이다.

제10조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강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1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3년)은 정부의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귀화 등의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초기에는 외국인이 언어와 문화관습의 차이 등으로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적취득 후에도 3년 정도는 조기정착 지원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성과와 한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최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만을 “재한외국인”이라 하여 그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영주자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의 문제가족 결합권과 관련된 외국인 자녀의 국내입국의 문제,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동법안은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 국가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개정이 요구된다. 우선, 결혼이민자는 한국국민과 결혼한 배우자로 국적취득 전이라고 하더라도 재한외국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일시적인 체류자와 같이 재한외국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로, 동법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처우 범위에 가족해체나 이혼 후의 처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조항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중첩되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경험이 없던 우리 사회에서 초기에 이들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좀 더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 처우를 제시하는 동법 제12조에 나타나 있듯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법 전체에 있어서 자문화중심의 동화적 철학이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문화의 평등성과 가치에 기반한 다문화적 철학과 접근을 반영하여 우리사회의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외국인 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라. 체류 및 국적 관련법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4) 이 절은 김오남(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에서 발췌함.

결혼하게 되면 ‘국민배우자(F-2)’ 비자를 발급받는다. F-2비자는 체류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부여된다.

관련 법에 명시되었듯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더라도 그의 신분이 바로 한국인이 되지 않는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 후 2년까지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여 1년을 거주한 뒤에는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고, 거주지를 이전할 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했을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혼인하여 2년을 산 후 ‘F-5’나 ‘한국 국적신청(간이귀화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영주자격(F-5)과 국적취득의 다른 점은 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싶은 경우에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며, 국적취득은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주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투표권, 공무 부담권 등), 사회권(사회보장 혜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체류 연장과 국적신청을 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후 2년 동안은 결혼이민자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부 사이를 동등한 것이 아닌 위계적인 관계로 이끌도록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F-2 체류자격 비자를 취득하거나, 국적취득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되는데, 결혼이민자에게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입국 시 외국인에게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5) 간이귀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일반적인 귀화절차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필요한 것에 비해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하면 2년으로 단축된 국내거주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함.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이미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결혼이민자에게 재정능력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혼인에 근거한 체류 연장 및 간이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외국인은 체류 연장 신청 및 귀화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이 중단된 것에 대해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이 중단되었어도 체류 연장 및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출신국에 자녀만 보내게 되는데 그 사회에서 외국인 아동으로 소외되고 제대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 중단된 이후 결혼이민자 자신의 안정적인 체류와 자녀 양육을 위해 체류 연장 및 귀화취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마.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⁶⁾

법무부는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종·민족·문화·국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민자 및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가지도록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후 귀화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적을 취득하므로 한국어 능력이 초급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귀화 신청자의 경우도 5년 이상 한국사회에 거주하였음에도 한국사회 및 다양성 이해 등 기본소양 함양이 부족하여 사회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

6) 본 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서 발췌함.

다. 또한 국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1) 적용대상

200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거나 장기체류를 예정하는 귀화신청자 및 국민에게 선택적용하고 2009년 중반부터 영주자격신청자 등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가) 제 1안: 귀화필기시험과 이수제 병행 시행

2009년부터 일반귀화자를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 및 이수제를 병행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귀화면접시험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009년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국적취득 방식을 유지하되, 2009년 이후 입국자에게 귀화필기시험 부활 및 이수제를 병행 실시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귀화 면접시험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한다.

나) 제 2안: 일반귀화신청자 및 결혼이민자에게 이수 인센티브제 도입

일반귀화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심사의 혜택을 부여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 국적취득 방식(귀화필기시험 면제)을 유지하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심사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한다.

〈표 4-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특혜

구 분	인센티브 부여	세부사항
2009.1.부터 귀화신청 예정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대기기간 1년 정도 단축, 귀화면접심사 등에 반영	국적취득 최대 소요기간 현 3년 6개월→2년 6개월로 1년 단축
2009.1.부터 귀화신청 예정인 일반귀화신청자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취득 대기기간 대폭 단축, 귀화면접심사 등에 반영	국적취득 최대 소요기간 현 7년→5년 6개월로 1년 6개월 이상 단축
2009.1부터 귀화신청자의 배우자, 가족 등 국민	결혼이민자의 사증발급 기간 단축, 이민자의 귀화면접심사에 반영	'08년 하반기 국제결혼이민자 남편대상으로 다문화사회이해 사전교육 실시 예정

2) 구성 및 과정

가) 구성

본 과정은 기본소양 사전평가, 언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참여도 사후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민자에게는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위주로 적용되며, 국민에게는 타언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위주로 적용된다.

나) 언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1) 언어 과정: 초급~고급 5단계

초급단계는 원어민과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 또는 제한적으로 단순/반복적 용어의 의사소통 수준의 이민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표현이 가능한 자가 속한다.

중급단계는 1과 2로 나뉘어 중급 1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

등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고, 중급 2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등 원어민과의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다. 고급단계는 원어민의 의사소통 수준 정도의 이민자가 속한다.

(2)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 2단계

첫째 단계: 『다문화사회 이해 활동』

- ① 직업교육 등 이민자의 독립적인 경제활동 지원으로 컴퓨터, 요리, 한국어 강사양성교육 참여 등이 포함된다.
- ②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및 다양한 인종, 민족과 공존으로 다문화 캠프, 이민자 체육대회,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이 포함된다.
- ③ 이민자의 의식주 해결, 공공시설 이용방법 등 이해로 시장탐방, 대중교통 이용, 관공서 방문 등이 포함된다.
- ④ 이민자의 한국사회 이해로 주말 나들이 장소찾기, 직장체험 등이 포함된다.
- ⑤ 이민자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로 반사회,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 ⑥ 이민자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목하여 글로벌 다양성 문화로 승화시킴을 목적으로 다문화 국가의 음식 만들기, 세계 이문화동아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

〈표 4-4〉 과정별 단계

과정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언 어		초급 1 참여	초급 2 참여	중급 1 참여	중급 2 참여	고급 면제
다문화사회		◀ 다문화사회 이해 활동 ▶ - 각종 교육, 봉사활동, 생활정보, 다양성 활동 등 - 직업교육 및 직업 활동 등				일반강좌
		20시간		20시간	20시간	30시간
평가	결혼 이민자	39 이하	40~49	-	-	50~100
	일반 이민자	39 이하	40~49	50~69	70~89	90~100

둘째 단계: 『다문화사회 이해 일반교육』

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및 이문화 등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 등이 포함된다.

〈표 4-5〉 다문화사회 이해일반교육 과목(안)

	이민자	국민
	일반교육 과목(안)	
	1. 한국의 역사	1. 동포사회 이해
	2. 한국의 풍습문화	2. 난민의 이해
	3. 한국의 정치, 행정제도	3. 국제결혼가정 이해
	4. 타문화 의사소통	4. 외국인근로자의 이해
	5. 한국의 가족생활	5. 다문화사회의 이해
	6. 다문화사회	6. 인종차별예방 등 인권보장
	7. 타문화 이해와 적응	7. 기업의 이문화 경영
	8. 한국의 기초경제활동	
	9. 한국의 교육제도	
	10. 한국의 기초법률	
	11. 기업의 이문화 경영	
	12. 한국의 보건복지	
	13. 한국에서의 동포사회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의 기대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함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또는 일반귀화신청자에게 귀화필기시험 면제, 귀화면접 반영 및 국적취득 소요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2년 거주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지라도 영주권을 부여하여 신분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국민의 타문화 이해를 증진시킴으로 이민자의 남편, 시부모 등의 타문화 이해를 통해 상호 소통을 활성화 한다. 넷째, 이민자의 언어, 한국역사, 문화, 제도, 직업교육 및 다양성 이해 등의 과정 참여로 이민자 지원센터 및 다문화이해센터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가. 다문화가족정책의 개념과 특성⁷⁾

<표 4-7>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등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초와 관점은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변화를 보였다. 우선, 다문화 정책기조라는 측면에서 국민우선의 원칙에서 인권보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둘째, 정책적 관점에 있어서 일회성 인력수급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셋째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에서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넷째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다섯째 추진 체계에 있어 개별부처 추진체계에서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총괄추진체계로 변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7) 이해경(2008),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 『다문화 가족복지론』에서 발췌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표 4-7〉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변화

구분	2006년 4월 이전	2006년 4월 이후
정책 기초	국익우선의 원칙	국익과 인권보장의 조화
관점	(일회성) 인력	더불어 사는 이웃
한국사회 지향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	다문화(다양성) 존중
외국인 처우	통제·관리 중심	상호 이해와 존중
추진 체계	개별부처 추진체계	총괄 추진체계

자료: 이해경,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 다문화가족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p. 89,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간 외국인과의 더불어 사는 경험이 적었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상징적인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및 ‘다문화주의’란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 등,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인 모습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료한 상태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82).

나.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대책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처음에는 국제결혼이 초래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농어촌지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였다(설동훈 외, 2005). 따라서 1990년대에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은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고, 지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이들의 상황이 알려진 후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04년 후반부터 전국적인 실태파악에 나섰고, 여기에 2005년 5월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포함과제는 아니나,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하라”고 지시하면서(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결혼 이민자 정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06년에는 미국의 슈퍼볼에서의 한국계 미국인 하인즈 워드의 성공스토리가 알려지면서, 폐쇄적인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결혼이민자,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은 힘이 실리게 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유입이 던져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8월 16일과 11월 25일, 2006년 4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05년 8월 정부는 제1차로 체류불안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였다.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이 그 핵심 내용이다. 9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2차 대책은 생활안정대책으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제3차 대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에 맞춰졌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여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

런부처가 모두 모여 결혼에서부터 생활적응, 출산·육아·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 이민자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통합’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였다. 여기에서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 총 7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부 부처를 포괄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도 구축하였다 (권미경, 2006).

〈표 4-8〉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영역	과제
탈법적인 결혼중개방지 및 당사자 보호	·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 ·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안정적인 체류지원	·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관리 강화 · 혼인파탄 입증책임 및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교육 실시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 집단 따돌림 예방,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산전 후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기초생활 보장,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부문 취업 지원 ·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 진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교육	·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구축 및 분위기 조성 · 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상담 강사 통역 인력 양성 · 업무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 편, 2006. <http://www.president.go.kr>.

〈표 4-9〉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정책의 분류

정책과제의 내용		정책의 대상 집단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부모	일반 국민
제도 정비	사회복지제도	국민과 동등한 복지혜택	-	-	-	-
	채류·시민권제도	안정적 채류 국적취득 요건	-	-	-	-
	국제결혼중개 규제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탈법적 결혼 중개 방지
제도 운영	상담과 재발방지서비스	가정폭력상담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	-	-	-
	한국어 및 적응교육	언어·적응 교육 의무화	-	-	-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자긍심 고취 교육	결혼이민자 출신국 사회 이해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출산국 사회	인식개선 홍보
접근 방법	쌍방향적 적응	이민자와 그 자녀		배우자를 비롯한 한국인		
	민관협력 파트너쉽	이민자 자체 네트워킹		결혼이민자 가족		시민사회 민간복지기관

자료: 설동훈 외(2006: 303).

2) 부처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촉진정책

각 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의 통합과 관련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현 여성부)와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주요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2세들에 대한 통합과 복지차원의 접근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교육을 지원하였다. 한편 농림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중의 상당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상황을 반영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표 4-10>은 2008년 각 부처별로 발표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2007년에 이어서 2008년에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향후 시행 계획에 있는 사업들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0> 2008년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부처별	지원정책
보건 복지 가족부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이민자 인권보호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정보제공·상담 배우자 사전교육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가족관계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부모의 양육능력 배양 영유아 보육, 교육 강화 생활보장지원 임신, 출산 지원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 부모, 자녀 건강관리 아동언어, 학습발달지원 청소년 역량개발지원 빈곤,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 부모 교사의 자녀 교육 역량강화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자녀 양육지원, 아동보호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해체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교육 지자체의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우수사례발굴확산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지원 온누리안, 이주민 다문화체험 지원 특수소외계층문화권신장,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다문화체험 지원 이주노동자 축제 문화가이드북 제작 문화예술교육지원

〈표 4-10〉 계속

부처별	지원정책
법무부	비자 인터뷰제도 강화 탈법적 결혼 중개방지 국제결혼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방지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법무부주관),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 외국인자녀-정착지원, 차별해소지원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 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 결혼이민자의 이혼, 별거 시 자녀 접견 위해 국내 체류 허가 결혼이민자네트워크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 대학생 멘토링 실시 교사 연수센터 실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현행교과서를 검토, 분석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 교사역량강화 다문화 교육 센터 설치 다문화 교육 센터 지정 및 다문화 교육 공모사업 다문화교육 교사연수센터 지원 시·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활성화 지원
노동부	여성결혼이민자고용촉진 대책추진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지원 공공서비스부문의 여성결혼이민자 진출지원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지식경제부	여성결혼이민자의정보화 교육 전문교재개발
행정안전부	자체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기초자료확보 지자체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조직, 인력, 예산확보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여성부	전국상담시스템 구축 이주여성 컴퓨터대설치 및 보호·주거지원 강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자하는 남성교육(부처협력시스템)

자료: 각 부처별 내부자료, 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지원방안이 한국 사회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넘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놓고 보았을 때, 결혼이민자들은 우리의 자원이다. 한국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자유롭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케 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교사 이외에 이중언어 통역사,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강사, 기업체의 해외 지사에 대한 업무 파트너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민자들 사회참여는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는 정부의 지원이 밀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가 2007년 12월 3일에 공포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406호 제13조 제6항에 제8호~제11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볼 수 있듯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표 4-11〉 행정자치부령 제406호

제13조 제6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추진
9.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10.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방안 연구
11. 외국인주민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육성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641호 2007. 12. 3(월)”, 2007.

나) 보건복지가족부

새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으로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은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었다.

[그림 4-1]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2008.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2008년 10월 30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즉, 입국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표 4-12〉 5단계 세부내용

◎ 5단계 가족역량 강화기

1.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출신국별 취업형/창업형 자립모델 개발·보급(‘09년)
- 지역 및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직종 발굴(‘09년)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돕고 농업인력으로서의 육성을 위해 영농기술교육 실시 예정 (연중)
 - ※ ‘08년 162개 센터에서 실시 예정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기술 등을 통한 정보 습득 및 온라인교육 참여능력 제고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 실시
 - ※ ‘08년 23개 지역 1,128명 교육 예정
-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 지원(연중)
 - ※ ‘08년 14개 지역 236명 지원 예정
-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연중)
 - ※ ‘08년 11개 지역 126명 양성 예정
-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연중)
 - ※ ‘08년 17개 지역 영어강사 258명, 중국어강사 15명 양성 예정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전담 지원기관 및 정부기관·지자체간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09~)

2.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통합 지원 멘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배우자 자조모임, 시부모 자조모임, 시부모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연중)
 - ※ ‘08년 국적별, 결혼이민자·배우자·부부 자조집단 4,162명 참여(연인원)
- 자조모임에 센터종사자 및 정책전문가 참여해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발전 도모(‘09~)
-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연중)
- 중앙 차원에 다문화가족 생활불편 해소창구 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 개발(‘09~)
- 결혼이민자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연계(Bridge) 프로그램 개발·보급(‘09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2008.

동 계획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창업 지원모델 및 적합직종 개발, 취업역량강화(영농기술교육, 취업교육, 정보화 교육)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조모임 활성화,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연계(Bridge)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으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사회 통합선도자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다) 여성부

2007년 12월 여성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을 세웠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국가계획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속 확대를 위한 견고한 여성 일자리 확대, 분야별·대상별 여성인력의 직업능력 향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그리고 직장 내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등 여성에게 특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계획하였다.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을 위해서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가족과 사회 전반의 평등문화를 정착하고 구성원들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수용성을 제고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역량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라는 세 가지의 주요 전략목표를 세웠다. 특히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2] 여성정책 추진체계



자료: 여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세 가지의 하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첫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셋째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첫째, 다문화 강사, 통역서비스, 기타

고용서비스 분야 활동가 등 이민자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취업 교육·상담·연계 등 취업지원 내실화하였다. 즉,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훈련과정 안내 및 이력서 작성법을 가르치고, 면접방법 등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검토하였다. 넷째, 이주여성이 본격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브릿지(Bridge)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적응 증진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노동부

노동부는 2007년 3월 13일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을 다음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은 다음 <표 4-14>와 같다.

〈표 4-13〉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 | |
|---|
| <p>1. 추진계획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교육 실시 ○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기타 관련부처의 인프라를 통한 취업지원 <p>2. 세부추진계획(산자부 등과 공동추진)</p> <p>(1) 여성가족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교육 실시('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07년 38개소)를 통한 기술교육 실시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신규실업자 훈련기회 제공 <p>(2)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관련부처의 인프라를 통한 취업지원('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희망일터 지원단을 통한 취업지원 -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안내·홍보 강화 →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 적극 유도 <p>※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문 발송(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각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별 홍보 추진</p> <p>(3)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07년 상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배려 |
|---|

자료: 노동부,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2007.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는 2006년 5명에서 2007년 75명으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 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 70명을 고용(저소득층노인 간병 및 가정봉사서비스 제공 사업)하였고, 영광 청람사회복지회는 여성결혼이민자 5명을 고용(저소득층 노인 대상 간병 제공)하였다 (노동부, 2007).

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12월 28일 다문화 정책팀의 신설과 함께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대비한 ‘다문화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표 4-14〉 문화관광부령 제175호 제6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국제문화협력팀 및 공간문화팀”을 “국제문화협력팀·공간문화팀 및 다문화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다문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민과 이민자간 문화적 소통에 관한 사항
 6.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연구
 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637호 2007. 11. 27(화)”, 2007.

문화관광부는 2006년 5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 TF’를 운영하여,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보다 본격적인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포함, 총 5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우선 기존의 차별배제, 동화주의 입장을 넘어서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존중,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의 제정 검토와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한 이주민 문화전용공간 확충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주민의 한국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 또는 이미 한국사회에 적응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 새내기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률을 돕고, ‘다문화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이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풍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주민의 한국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전달체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범부처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06년 범정부 대책 수립 시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총괄키로 하였으며, 2007년 말 부처 간의 사업 중복을 막고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조정하였다. 즉,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는 농림부와 여성부, 정보제공 책자발간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그리고 법무부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영농기술교육 예산은 여성부로 신규편성(10억)되었으며, 한국어교재개발 사업은 문화부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내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로 3개의 실을 두고, 10여개 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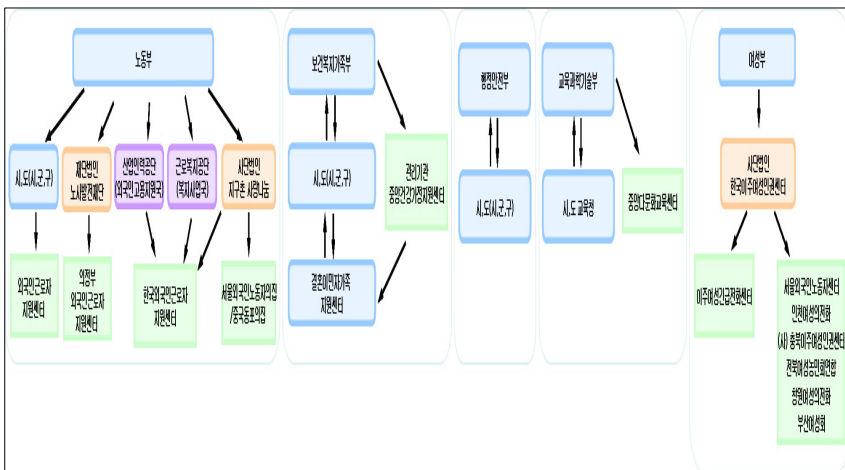
[그림 4-3] 부처별 다문화관련 소관업무

법무부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문화부
소관업무 외국인정책 총괄 분야	소관업무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소관업무 외국인 노동자 총괄	소관업무 자녀의 교육지원	소관업무 사회전체의 다문화성 제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10. 30)

[그림 4-4]는 각 부처별 다문화업무의 전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고용지원국,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사업국을 통해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다문화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부처별 사업이 지자체에 내려오면 유사한 사업들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어교육, 문화적응프로그램, 다문화이해교육 등으로 각 부처별 담당업무의 역할조정과 특화된 전문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과제라고 하겠다.

[그림 4-4] 다문화관리체계의 현황



자료: 장미혜,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심포지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8.

3. 다문화가족 지원기관과 서비스 현황

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의 현황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고 이 외에도 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으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코시안 및 외국인 자녀와 가족 지원을 위해 혼혈아동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현재 80여개소가 설립, 운영 중이며 5개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센터의 공통사업으로는, 교육사업(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상담사업, 자녀보육, 자조집단사업, 문화·정서지원사업(출산도우미,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 매칭, 결혼이민자 가족단위 네트워크구축),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다. 지역과 센터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차별적인 사업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가족문화 행사에 치우친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 상에서 지역 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나 센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센터의 과도한 관리기능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민간기관으로는 한국여성재단이 이주여성가족친정방문사업 ‘날자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상담, 라디오방송,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고용허가제 정착지원 및 상담통역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열린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역생활 문화축제와 다문화캠프를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문화가이드북을 발간하

고 있다. 그 외에도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와 이주여성사랑방과 어머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푸른시민연대, 다문화 청소년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자녀 지원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와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1577-1366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있다.

실무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사된 바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실천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사업비의 예산부족, 이들 가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초기에 가족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였다. 심한 경우 결혼이민자가 감금수준 상태에 있거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인이 어렵고, 신고하기가 매우 애매하며 가족들이 도움 또는 개입을 거부하거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족 대상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에도 대개의 경우 1명의 담당인력으로는 사례관리가 역부족일 때가 많다(최현미 외, 2006).

실천현장에서도 다문화가족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배운 범위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문화나 언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짐작하는 수준에서, 또는 미리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욕구나 필요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 안타까운 경

우가 많은 실정이다. 대상자도 실천가의 언어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Choi & Choi, 2007).

나. 지원서비스 현황

전국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소, 이주노동자센터 및 쉼터 5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2개소, 종교기관 21개소, 여성단체 34개소, 기타 의료기관, 상담소, 협의회,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38개소 등 총 239개소가 파악되었다. 전국의 다문화관련 기관 및 주요 지원사업을 6개 권역 즉,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영동·영서권(강원도), 충청권(대전), 호남권, 영남권(부산·울산),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지역별 기관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98개소, 영남권 58개소, 호남권 42개소, 충청권 27개소, 영동·영서권 10개소, 제주권 4개소의 순이었고 지역별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239개소의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최현미, 이수연, 2008).

<표 4-15>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우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예절교육, 문화체험(문화유적 탐방, 나들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이 8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가족, 부부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89.1%로 매우 높은데, 이는 결혼이민여성이 가족 및 부부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 주요 사업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교육, 부부교육, 가족캠프도 결혼이민여성 대상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표 4-15〉 다문화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현황

한국어 교육	- 한글교육(83.7%)
상담	- 개인(노동, 법률, 직업상담 등), 가족상담(89.1%) - 컴퓨터 제공(18%) - 통·번역(3.3%)
의료	- 의료지원(40%) - 정기적 무료진료(32.6%)
가족지원	- 아동양육 도우미(34.3%) - 가족교육 및 부부교육(22.6%) - 가족캠프(9.2%) - 출산도우미, 임신, 육아, 산모교실(9.2%)
문화, 정서지원	- 자조집단 지원 및 멘토링(32.6%) - 생활요리교실(25.9%) - 문화체험(66.1%) - 문화행사(64.4%)
결혼이민자 가족 역량강화	- 컴퓨터 교육(40.2%) - 다문화 강사 및 원어민 강사 양성(1.7%)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2.9%)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 축제(64.4%) - 인식개선 캠페인(10.5%) - 다문화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조사(11.7%)
찾아가는 서비스	- 방문교육(28.5%)
종교활동	- 선교활동(7.9%)
네트워크 구축	- 국내(관공서, 정부부처, 병원, 복지기관, 기업 등), 국외 연대활동(2.5%) - 리더쉽, 안전, 금융, 영양, 직업, 인권, 국제언어, 상담원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운영(지구촌학교, 일요학교) - 장례식 지원
기타	- 무료급식 및 푸드뱅크 사업 - 귀환/친정 보내기 프로그램 - 태권도/노래/국악 - 무료 이·미용/ 이동도서관 서비스 - 온라인 카페 운영

자료: 최현미, 이수연,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현황분석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연구』 제2호: p.7, 2008.

<표 4-15>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민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검진, 심리치료, 출산 도우미 파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

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교육, 즉 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요리교실, 노래교실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문화축제(64.4%) 등의 문화행사와 세미나와 연구조사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가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문교육(찾아가는 서비스, 28.5%)과 아동양육 도우미 사업(34.3%)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종교단체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상담, 쉼터 제공과 무료진료 및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 소식지 발행, 조사연구, 자조집단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컴퓨터교육(40.2%)에 치중되어 있고 전문강사 교육이나 일자리 알선사업(2.9%)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 교육과 취업 알선, 통·번역 사업(3.3%)은 다양한 사업 중 가장 취약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참여와 취업욕구를 감안해 볼 때 이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국외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국외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과 밀접하다. 출생률과 경제요인은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경제적 불황이 있으면서도 출생률이 높은 지역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출생률이 낮은 지역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Huge, 1998). 이러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남서유럽이다. 이 지역

의 출생률은 1.2명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인구재생산에 필요한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 결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는 동시에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어들며 따라 특히 저숙련 직종의 경우 심각한 노동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지중해 남쪽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높은 출산률을 보이며, 동시에 노동력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새로운 노동자들이 유입될 공간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EU가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fortress Europe)’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젊은 노동자들이 북으로 이주하는데 원인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 두 국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출산률이 저하되고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면서 해외노동력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서구 국가들의 이주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온 ‘신-고전경제학’은 자신의 출생국과 비교하여,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 수입의 차는 이주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자유시장 모형을 살펴보면, 국제이주로 인하여 중국에는 이주를 보낸 국가와 이주를 받은 국가의 임금 수준이 수렴하게 되고, 따라서 이주가 감소한다. 그러나 국제 이주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두 국가 간 수입의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고전모델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주를 야기한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된 역사적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이주는 한번 시작된 이상, 이를 멈추는 일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이주를 받는 국가 내 영향력 있는 집단들 간의 이익 갈등과 관련이 있다.⁸⁾ 이전의 이주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주사슬(chain migration)’

8)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7년과 1999년 사이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본국으로 송환시키고자 하였으며, 경영인들은 이들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급히 중재에 나섬.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익 갈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의 농장 소유주들은 멕시코 노동자 고용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로비를 벌였

이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주에 있어서의 ‘네트워크’와 모국의 지역사회와 이주국가의 지역사회 간 연계들이 생성되는 방법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기술과 교통수단 기술이 향상되어짐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지고, 더욱 탄탄해진다.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경계선을 통제한다거나, 문화적으로 단일화시키는 과정 혹은 소수민족들을 종속시키는 과정을 통해 민족들 간의 차이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1970년대 산업화 국가로 임시 이주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양상은 달라졌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원치 않는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이주국가에서의 가족 재결합, 지역사회 형성, 새로운 소수민족의 출현 등의 사회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화와 급격한 수적 상승을 보이는 국제이주에 맞서서 겪는 딜레마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Hollifield(2004)가 말하는 ‘자유주의 패러독스’에 직면하게 되었다.⁹⁾

자유주의 패러독스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특히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세계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단일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Bradshaw and Wallace, 1996). 이들은 숙련노동력과 비숙련노동력 모두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민족들로부터 대규모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이 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정부는 물질적 부와 경제적 안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는 경제 세력과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계약을 보존하고자 이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 갇혀버렸다. 국가로서는 개방과 폐쇄

고, 독일에서는 고용주들이 건설 산업에서 일할 지역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섬.

9)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에서, 경제 세력들(무역, 투자, 이주)은 국가가 더 많은 개방을 하도록 강요해 왔으며, 국내의 정치 세력들은 국가의 개방을 반대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험하는 모순, 바로 ‘자유주의 패러독스’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도전을 경험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은 인권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규제제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국제법(United Nation Charter,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1년 제네바협정)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헌법·법률에 따르면, ‘인권기반 자유주의’는 다문화가족들이 설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공간을 국내외 모두에서 생성해낸다.

한편, 서구 유럽과 미국의 정책들은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1995~1996년에 외국인 거주자들의 권리를 통제하고 다문화가족들의 귀화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대거 법제화하였다(Brochmann & Hammer, 1999). 또한 미국은 1996년에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 권리 혹은 복지의 권리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를 축소시키는 이민 정책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동 시기에 특정 카테고리의 노동력, 특히 고도로 숙련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합법적 이민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주었다. 1997년의 프랑스, 그리고 1999년의 독일은 좌파정부에 의해서 귀화정책과 시민권 정책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통과되었다(Hollifield, 2000).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담론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대변하는 유행어로 급부상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부유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상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 특징을 규정하는데 있어 문화, 정체성, 다름에 대한 치열한 투쟁이 정치의 중심부로 확산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분쟁의 쟁점들이 인종, 여성, 동성애, 사회 집단들의 사회, 정치적 권리 주장, 원주민의 문화권, 정치 투쟁(indigenous peoples' struggle for cultural rights and political sovereignty),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분쟁, 국제인권운동 등 다문화주의의 이름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국가별 다문화가족 정책과 서비스

외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근로자나 이민자 가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국제결혼이나 이주노동자 가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도 이 외에도 이민가족과 재외동포를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선,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의 정책을 갖고 있는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 가족 대상의 정책으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 후 향후 광의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해 서구의 외국인주민과 이민정책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만

1) 대만의 다문화가족 현황

1987년 2008년 3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외국 및 대륙 배우자 수는 402,701명이고, 그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는 137,859명(34.23%), 대륙 배우자(홍콩 및 마카오 포함)는 264,842명(65.77%)이다.

대만에서는 외국인과 결혼이 2003년에 최고조로 달했는데, 전체 결혼율의 31.9%에 해당한다. 이는 3.1쌍 중 1쌍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과 결혼이 점차로 감소하여 2007년 말에는 평균 5.5쌍 가운데 1쌍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

2)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보호정책의 현황

결혼이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은 2003년 [외국인및대륙배

우자보호상담정책]을 제정하였고, 이는 중앙의 각 위원회 및 지방 정부가 집행하는 주요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가) 결혼이민자의 대만 국적취득

대만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국적법(국적법 제3조, 국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현재 중화민국 영역 내에 거소를 갖고 있고 아래 열거한 각 조건을 갖춘 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5년 이상 연속된 자
- ② 20세 이상 자로서 중화민국법을 및 그 모국법에 모두 행위능력을 갖춘 자
- ③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자
- ④ 상당한 재산 혹은 전문기술을 보유하여 자립이 충분하거나 생활보장에 문제가 없는 자

제4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현재 중화민국 영역 내에 거소를 갖고 있고 전조의 제2관에서 제4관 조건을 갖춘 자가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3년 이상 연속된 자, 또한 아래 열거한 각 조건을 갖춘 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중화민국 국민의 배우자
- ② 부모 중 한 사람이 현재 혹은 과거에 중화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자
- ③ 중화민국 국민이 양육한 자녀
- ④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출생한 자

2001년 2월 신증설국적법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귀화하여 대만국적을 취득할 경우, ‘경찰기록증명서’와 상당한 재산 혹은 전

문기술을 갖추어 자립이 가능하거나 혹은 생활보장의 우려가 없는 자란
증명이 필요하다.

사실상 대만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본국인 여성과 결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대만에
정부가기 시작하여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3년을 기다려 귀화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호적을 발급받아야 한다. 즉 4년을 기다려야 국민신분
증을 수령할 수 있다.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
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낮은 국제결혼 가족은 관련 법규의 이해와 대외
정보 획득에서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권리와 복지혜택을 향
유하기는 쉽지 않다(김오남, 2008).

나) 결혼이민자의 취업관련 사항

(1) 2002년 취업서비스법 개정: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권 제공

2002년 1월 23일 ‘취업서비스법’의 제51조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51조 다음에 열거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본 법 제46조 제1항, 제
3항, 제47조, 제52조 제3항, 제4항, 제57조 제5관, 제72조 제4관 및 제74조
에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제55조에 규정한 취업안정비 납부를
면한다.

- ① 거류를 허가받은 난민
- ② 중화민국 경내에서 연속하여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연속
거류 만 5년이 되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 자
- ③ 공식허가를 통하여 중화민국 경내에 호적을 둔 직계 혈친과 공동생
활하는 자
- ④ 영구거류를 취득한 자

전항 제1관, 제3관 및 제4관의 외국인인 사용자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2003년 취업서비스법 개정: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권 보장

2003년 5월 16일 공포, 실시된 취업서비스법 제48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한다. 단, 각급 정부 및 그 소속 학술 연구기구가 고문, 연구원을 초빙한 경우나, 중화민국 경내에 호적을 둔 국민과 결혼하여 거류자격을 획득한 자는 허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3) 취업권 미획득자에 대한 보장

대만에서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 동안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2004년 ‘중국지역배우자의친척결합거류기간 취업허가 및 관리방안’ 제3조 제1항 제3관 제7목에 “가정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는 친척결합기간 중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노동위원회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만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 개정 법률은 2004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김오남, 2008).

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1) 생활적응 상담

생활적응 상담반 추진 및 교사훈련을 강화하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용 생활관련 자료 책자 발행 및 홍보 동영상 발급하여 관련 법령규칙, 대만 생활자료 등을 제공한다. 민간단체 자금을 이용하여 외국인 배우자 가정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결혼이민 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지역서비스 정책을 향상시킨다. 또한 민사, 형사 소

송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상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권유하고 다국어로 된 시험 동영상 제작한다. 입국 전 상담기구를 개설하고, 취업상담 책자를 발행하여 대만 도착 후 적응기간을 단축한다.

(2) 의료보전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이 가입하도록 상담한다. 외국인 배우자 육아 보건 수첩을 제작하고 외국인 배우자 입국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진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교육 협조

외국인과 대륙 및 배우자의 성인 기초교육 연수반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개설하며 지역사회화 어문 훈련을 실시한다.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 및 그 자녀 교육 계획을 강화하여 다문화 교육과정 교사를 양성한다. 외국인 배우자 가정교육 활동을 계획하여 국경을 초월한 결혼, 다문화 가정 및 성별 평등 관념을 국제결혼 가정에 보급, 교육하고 사회전체가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대만 국적 배우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가 중학교 및 초등학교 진학하여 정식으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가 성인 기초교육 교사 연수 및 교재를 참고하여 연구개발하고 교재 내용을 인터넷으로 올려 정보를 공유하여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교육우선지역을 설립하여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학습 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4) 자녀양육 협조

향후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자녀들은 전면적으로 영유아 건강보전시스템에서 수용하도록 한다.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자녀의 아동발달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아울러 자녀들의 발달장애가 있을 경우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과 대륙배우자 자녀의 언어 및 사회문화 학습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습보강을 제공하며 환경 적응 및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국어 유아 부모교육 책자를 발행한다.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의 자녀를 공립유치원 및 탁아소에 우선 진학시킨다.

(5) 신변안전보호

외국인과 대륙배우자의 폭력 행사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력을 당한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의 긴급구조 정책을 강화한다. 가정폭력통보제도를 확립하여 113 전담긴급구조전화를 개설하여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등 5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법제도의 정착

관련 법령 규정 및 시책을 수정하고 결혼중개업체의 관리를 강화한다. 내국인에 대한 다른 문화, 종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평등대우, 수용, 포용 등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외국 배우자의 외국어 방송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고 다문화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매체 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교재를 기획하고, 민간단체 혹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관련 활동을 추진한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권장하여 외국인과 대륙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이상과 같이 대만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원 법과 서비스도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점으로는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게도 일정기간 취업

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체가족의 증가로 불법체류의 문제를 안게 되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생활보장을 위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일본¹⁰⁾

1) 일본의 다문화가족 현황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말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인구의 1.5%를 넘어섰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조선인」을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난민을 수용하고, 유학생 증가 계획, 나아가 버블 경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계기로 남미나 아시아각국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대량 유입되어, 일본의 외국인 구성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뉴커머(Newcomer) 외국인 안에는 가족을 불러 온 자와 일본인과 결혼하는 자도 많았기 때문에 일본에 정착하는 외국인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커다란 사회 현상이 되었다. 1985년, 무라야마 지방의 인구 10,000명 가량의 아사히 마을의 마을 사무소는 사설 결혼중개인과 협력하여 마을의 남성들과 필리핀의 압카이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들 간의 결혼들을 추천했고 이후 이러한 국제결혼방식을 ‘아사히 마을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야마가타 현과 멀리 떨어진 하가시 이

¹⁰⁾ 고우토미키(2008), “일본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다문화 사회복지사의 역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김범수 외(2007), “일본 다문화사회의 제도와 접근방법,” 『다문화 사회복지론』에서 발췌함.

야야마 마을(東祖谷山村), 토쿠시마 현(德縣), 시코쿠(四國)의 마을 사무소가 필리핀의 산티아고 시와 협력하여 마을의 일본 남성과 도시의 필리핀 여성 간의 결혼을 중개하였다. ‘아사히 마을 방식(朝日町方式)’이 일본 전 지역에 퍼지자,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필리핀 외에 스리랑카, 태국, 브라질,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까지 확산되었다(김범수, 2008).

브라질인의 일본으로의 유입이 증가한 것은 1990년 입관개정법 이후이다.¹¹⁾ 이 개정에 의해 전쟁 전 남미와 아시아에 이주한 일본인 자손인 ‘일제인’이 취업에 제약이 없는 재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배우자, 자녀에게도 재류자격이 인정되어서 가족단위로 이주가 계속되었다. 브라질인 가족은 일본에서 ‘단지’라 불리는 지자체에서 세운 집합주택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주위에는 그들 말이 통하는 음식점·잡화점이 많고 최근에는 브라질 인을 위한 에스닉 미디어(ethnic media)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전혀 되지 않더라도 생활에 곤란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브라질인 중에는 집주지구와 직장만 왕복하고 직장 이외에는 일본인과 별로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도 많고 일본인과 일본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그 가족들을 보면 브라질에서 태어나 브라질에서 성장해 브라질어만을 말할 수 있는 부모세대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자녀로 구성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브라질인 가족 중에는 가정 내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다문화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다양하나 그 가운데도 최근 심각해 진 것은 자녀의 교육문제이다. 언어·

11) 버블 경제기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에서 노동자를 유입하나 일본에서는 단순 노동자에게 자격을 주지 않아 재류기간이 지나도 일본에 남아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해 이러한 기간을 말하는 소위 ‘오버 스테이’ 문제가 현재화됨. 이 문제를 증시한 정부는 1990년 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전쟁 전 남미와 아시아에 이주한 일본인 자손을 취업과 노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격을 받아들여 ‘오버 스테이’를 대신할 노동력이 되도록 지향한 것임.

문화의 차이에서 일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브라질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등교거부 아동에 대해 일본어가 부자유한 아동을 방과 후에 학습시키거나 아동의 고민을 들어주는 네이티브 상담원을 파견하거나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시정촌도 많으나, 그러한 대응에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동 가운데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이 되어도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젊은이도 있어 지역사회의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의 아동을 위해 포르투갈어로 교육을 하는 브라질 학교도 현재 각지에 있으나, 이러한 브라질 학교는 개인 경영이므로 운영이 불안정하게 되기 쉽고 또한 이러한 외국인 학교에 대한 법 정비도 불충분하여 그들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결코 충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다문화가족 집단은 필리핀인으로 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으로 대거 입국이 시작되었다. 일본에 입국한 필리핀인의 다수가 여성이며, 「홍행」¹²⁾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행 비자로 일본에 들어오는 필리핀 여성은 그 후 증가가 일정 수준까지 계속되어 주된 취업처인 「philippines·pub」¹³⁾에서 만난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도 많았기에 1980년대 후반 이래, 안정화 경향이 강해진다. 필리핀인의 경우 타국 출신의 외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고,¹⁴⁾ 외국인 등록을 하는 필리핀인의 남녀비는 약 2:8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필리핀인·일본인 부부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아내에의 폭력과 이혼문제이다. 특히 2005년에 홍행 비

12) 입국에서는 「홍행」의 재류 자격에 대해 「연예, 연극 (중략) 스포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Bar나 클럽 등 접객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격과 실태와의 괴리를 지적하는 입국행정의 부적절에 대한 비판도 많음.

13) 필리핀 여성이 일하는 음식점을 일본에서는 「필리핀·팝」이라 부름.

14) 다만, 재류자격이 없는 「초과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됨.

자 발급이 엄격화 되면서 재류자격의 안정을 위해 일본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결혼의 경우 알게 된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을 결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양자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시작해, 이것이 폭력문제 등 부부 불화의 일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필리핀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본국의 친척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기고 그 후 자신의 생활이 안정된 후 일본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자녀가 다시 일본에서 생활할 경우 교육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인 가족과 필리핀인 가족을 상세하게 보면, 본래의 배경, 가족형태, 거주 형태 등은 다르나, 양자 모두 20대·30대의 한창 일할 나이의 부부와 학령기에 있는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이 많다. 또한 양친이 일본 이외의 제 3국 출신자에 의해 구성된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국제결혼은 필리핀 여성과 브라질 남성, 브라질인과 페루인 등 남미 출신자끼리의 커플이다. 양친모두 재혼, 첫째와 둘째의 아빠의 국적이 각각 다른 경우 등 매우 복잡한 가족도 보여진다.

일본의 다문화가족은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 등 다양한 생활 방면에 있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원인으로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NGO와 자원봉사 그룹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그들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일본어 교실을 개최하거나 외국어를 통한 정보제공 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 주민의 문제에 노력해 왔다.

2) 다문화공생사업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일본은 현 단위에 「외국인 모두가 아이치 현민으로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현청 국제과에 「다문화 공생 추진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시

도를 해오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협회(Aichi International Association)』¹⁵⁾에 다문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07년 4월에 아이치 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배치된 다문화 사회복지사 제도는 그 전문성을 높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 사회복지사는 NGO, 행정 전문기관과 시정촌과 어떻게 연계할지도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는 다문화 사회복지사가 필요에 따라 타 기관에 연락을 취해 지원의뢰를 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인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우토미키, 2008).

3) 다문화 사회복지사의 배치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주민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관민에 의한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고, 일본 각지에서 외국인 생활 상담에 관해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되었다. 아이치 현에서 시작된 『다문화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활용은 그러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2006년 아이치 현은 전국에서 최초로 『다문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2007년 4월부터 현의 국제교류협회에 다문화 사회복지사를 배치했다(고우토미키, 2008).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는 현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맞게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적극 주선하였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국제결혼의 출신국 구성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역시 가족해체의 문제와 이혼, 재혼 등 다양한

¹⁵⁾ AIA는 외국과의 유호친선·상호이해를 지향하고, 이 지역의 국제화, 현민 참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0년에 설립됨. 도서관과 회의실을 가진 『아이치 국제 프라자』를 운영, 일본어 교실과 일본인 현민을 위한 재일 외국인에 관한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음. 1991년부터는 현내 재주 외국인에 대해 다언어로 정보제공을 하는 『정보제공·상담』사업이 시작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자체의 국제결혼 알선 등 서비스 내용은 많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의 서비스 내용은 오히려 더 다양해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며, 대학과의 협력 하에 ‘다문화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중언어 사회복지사를 현장에 배치한 점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 독일¹⁶⁾

1) 독일의 다문화가족 현황

독일은 이미 19세기에 산업화에 따라 많은 농촌인구들이 도시와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주로 농업부문에 계절마다 이탈리아, 폴란드로부터 노동력을 불러 들였다. 제 1차 세계대전과 나치시대에는 외국인 노동력을 강제 징용하여 전쟁산업에 투입하였다(강정숙, 2001).

이로써 2006년 독일거주 외국인 수는 730만 명(전체 인구의 8.9%)으로 증가하였고, 약 1,530만명(전체 인구의 18.6%)의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¹⁷⁾이 독일에 거주한다. 2006년 독일 거주 외국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터키(1,738,831명), 이탈리아(534,657명), 폴란드(361,696명), 세르비아-몬테네그로(316,823명),

16) 본 절은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정재훈(2007), “독일 다문화사회의 제도과 접근방법,” 『다문화사회복지론』에서 발췌함.

17) 구 소련 거주 독일동포의 귀환은 독일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독일 이민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구 소련 출신의 독일 동포들을 함께 지칭하기 위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통용됨. 이는 외국인과 독일인 모두를 칭하고, 또 이민자 출신 독일인(즉, 교포 또는 귀화한 외국인)과 독일에서 출생한 2세 및 3세를 칭하는 용어임.

그리스(303,761명), 크로아티아(227,510명), 러시아(187,514명), 오스트리아(175,653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57,094명), 우크라이나(128,950명) 순이다.

개인의 이민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이주해 온 외국인(560만 명/이주배경자 중 36%)과 귀화한 시민(300만 명/이주배경자 중 20%)이 가장 많고, 독일동포는 180만 명(이주배경자 중 12%)로 그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이는 독일에 거주하는 귀화동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1999년 8월 1일 이전에 이민 온 이들은 귀화한 시민으로 간주되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귀화시민들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 경험은 없지만 부모 중 한 명이 귀화동포, 귀화한 시민 또는 외국인인 독일시민은 약 270만 명(이주배경자 중 18%)에 달한다.

2) 다문화가족 정책 및 대인서비스 차원에서의 개입

독일에서 외국인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및 대인서비스 차원의 개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 목적·목표·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포럼 ‘가족(Das Bundesforum Familie)’을 조직·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가족연대(Lokale Bündnisse für Familie)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가족이 갖는 욕구 충족과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이다(정재훈, 2007).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도하는 외국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은 동등한 참여권리·기회평등·법적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방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BMFSFJ)가 2000년에 조직한 연방포럼 ‘가족’이다. 연방포럼 ‘가족’은 2005년 현재 독일 전국에 걸쳐 약 100개의 가족 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이며, 가족친화적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연방포럼 ‘가족’에는 노동자복지회 등 사회복지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여성·가족 관련부, 전국독신부모연합회 등 자조

단체, 독일모슬렘중앙회 등 종교 단체가 총망라되어 소속되어 있다.

연방포럼 ‘가족’은, 가족정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민가족: 통합과 배제 사이에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대상 연방정부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 보육지원, 이중언어 교육과 교사 대상의 교육

교육은 정치 참여, 동등한 기회 획득, 사회 참여 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외국인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중 언어 구사 능력과 다문화 적응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외국인 구분을 떠나 가능한 어릴 때부터 양질의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적절하고 충분히 구축한 보육 인프라는 외국인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언어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일제학교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아동들이 보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보육·교육하는 교사 등 교육 인력이 다문화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 노동자복지회를 통한 기업의 다문화화

외국인 가족은 독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독일인 여성에서 출생하는 아동 수가 증가할 추세에 전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두고 볼 때 외국인 가족이 독일 사회 및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족이 취업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받는 대우는 이들이 기여하는 정도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열악한 형편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외국인 가족이 가진 취업 능력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하고 재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 인력정책 재편은 국가에서 개별 기업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취업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개별 기업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모델 제시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동자복지회에 위탁하여 ‘경영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라는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노동자복지회(AWO)에서는 이주과정이 대량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본래 갖고 있던 행동 유형·문화·지향하는 태도를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형성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경영 과정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노동자복지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속 조직이나 기관의 경영 과정을 평가한다.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노동자복지회에서는 상부 구조에서부터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운영 원칙에 포함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하부 구조에 실천 원칙을 제시·전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복지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판단 기준으로 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조직은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영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 둘째, 정해진 원칙과 운영 방향에 따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및 실천 단계를 정해야 한다. 셋째, 운영 원칙과 목표를 특히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적 요소를 경영 과정에 도입하는 작업에서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다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들이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필요에 따라 다문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일곱째, 다문화적 요소 도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인복지서비스 외에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서 특이한 점은 연방정부 여성가족부가 주도가 되어 2003년 12월 1일 이후 현재 독일 전국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212개의 ‘지역가족연대’가 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방 여성가족부는 지역가족연대 구성을 위한 상담 사무소를 베를린에 개소하고, 각 지역사회에서 가족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가족연대는, 물론, 외국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 그러나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가족이 갖는 문제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방가족부는 지역가족연대 구성에 관련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뿐 지역가족연대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 다만, 베를린에 지역가족연대 구성을 위한 서비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 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정보 제공, 상담, 연계업무 등이다. 지역가족연대는 삶의 현실에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연방 여성가족부의 정책 목표에 발맞춰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역가족연대에 참여하는 대상은 지역사회 내 모든 사회집단이 될 수 있으며, 일단 연대에 참여한 주체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지역가족연대에 참여하는 주체의 예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사회단체, 종교기관, 노동조합,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지역가족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3) 이민관련 정책

1993년까지 독일 거주 외국인은 대개 독일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으나 1993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 독일 이민정책의 발전은 1998년에 시작된 개혁에서 비롯된다. 특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민의 체계가 잡히고 통합이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독일 정부, 야당 및 주정부가 이민법에 합의하였는데 이 법은 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다.

독일의 이민 및 통합정책은 다음의 3가지 주요 원칙을 따른다. 첫째,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이민은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더 다양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셋째 이민에 있어 치안을 중시해야 한다. 그 외, 독일 헌법 및 구속력이 있는 여러 국제 협약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국가 의무 수행 역시 주요 원칙 중의 하나이다.

2006년 채택된 국민통합계획(National Integration Plan)은 독일 통합정책의 새로운 기초가 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각계 대표, 시민사회의 대표 그리고 이민자들이 지속적인 통합정책에 합의하였다. 이는 1년 동안 관계된 다양한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책은 분명한 정책 목적 아래 공공기관과 민간이 이행해야 할 400개 이상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자의 통합은 연방 독일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독일어 능력과 기초 사회지식이 통합의 기초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민자와 독일 사회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민자들에

게 있어 법적 지위획득 및 사회참여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비독일 출신 배우자와 독일 동포의 자녀는 독일 입국 전에 기초적인 독일어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독일 사회는 관용 및 포용을 보여야 하며 새로운 사회 일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독일의 통합정책은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와 전문분야, 문화 및 지역사회에 빠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성공적인 통합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 독일의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정책·서비스와 이민정책을 살펴볼 때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주 외국인 가족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족이 갖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 개입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고 단지 프로젝트나 정책 방향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정재훈, 2007). 노동자복지회를 통해 기업이 다문화화에 따른 변화를 시도하는 점이나 다문화가족에게 보육정책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 사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2006년 채택된 국민통합계획이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 기타 국가의 이민정책¹⁸⁾

1) 호주

가) 호주의 다문화가족 현황

2,100만을 약간 상회하는 현재의 호주 인구 가운데 45%는 외국인 태생

¹⁸⁾ 본 절은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에서 발췌하였음.

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외국인 태생이다. 약 660만 명의 사람들이 1945년 10월 이래 호주로 이주하였다. 주로 유럽의 몇몇 국가들로부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도착하였다. 1970년대 이래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출신국은 점점 다양해졌다. 2006년과 2007년에 200개국 이상의 국가들로부터 사람들이 이주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최상위 10개국을 꼽아보면, 영국, 뉴질랜드, 인도, 중국, 필리핀, 남아공,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수단이다.

나) 이주와 인도주의 프로그램

호주가 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술능력을 갖추었거나 기존 이민자의 가족 그리고 특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이주 프로그램이며 또 하나는 인도적 필요성에 의한 이주 프로그램이다. 호주는 현재 2008년과 2009년에 19만 명을 목표로 하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민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 133,500명과 기존 입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56,600명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1945년에 이민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후 최대의 연간 이민자 프로그램이다.

다) 다문화가족정책

(1) 정착지원 서비스

일단 호주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통합된 인도적 정착 전략(IHSS)을 통해 제공하는 집중적 서비스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하도록 외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공항에서 이민자 맞아들이기, 적절한 숙소 찾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공급, 이민자들을 호주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기, 소득지원

관련 신청하고 일자리 찾도록 지원하기 이민자들은 고문과 정신적 상처에 관한 상담받기 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첫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제공된다.

이민국의 정착서비스는 새 이민자들이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추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민국이 행하는 서비스는 초기 정착 시기에 자력을 기르도록 영어 능력을 쌓도록 그리고 주요 서비스들과의 연계가 완만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기존 이민자들의 가족으로서는 도착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호주 내의 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영어구사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 정착보조금 지원프로그램(SGP)에 의거하여 추가로 지원한다. 호주 도착 후 최고 5년간 이민자들을 돕는데 운전교육, 종업원 멘토링, 숙제 클럽, 청소년 스포츠 활동 등의 실질적 지원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의 몇 가지 예이다.

(2) 언어교육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유자격 성인 다문화가족 들과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이 허가된 사람들에게 AMEP(성인 다문화가족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AMEP는 전국의 전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최대 510시간(난민에게는 100시간 추가)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일과정과 반일과정이 있으며 시간대도 주간, 야간, 주말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책이나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한 통신교육이나 개별가정방문교육도 제공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초 영어뿐만 아니라 호주의 문화적 배경이나 관습을 비롯해 호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들을 위해 탁아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

해 호주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61 450)로 연결가능한 통·번역라인 TSI National(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을 설치하여 1800여명의 전문 통역자를 통해 100여개국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시민단체, 복지기관, 의회의원, 지방행정기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할 때에나 비상시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언어교육, 통역서비스와 함께 이민·다문화부(DIMA)에서는 지역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들을 지원하는 이민자자료센터, 이민자 지원센터, 지역사회 정착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역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거나 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갈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06년 7월부터 이민자자료센터, 이민자 지원센터, 지역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정착기금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민자들의 기초적 생활적응 뿐 아니라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대비하는 프로그램까지 통합되어 있다.

(3) 문화적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호주 정부는 이민자들이 호주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이 기초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민자들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민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민자를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주요 자원으로 인식, 활용하는 데에서 다문화 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로서 호주의 특수

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과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은 공동체적 조화를 장려하고 집단간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종주의의 발생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각 지역의 소수민족 단체나 민족집단 간 화합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중심으로 있다. 지원사업 중에는 다양한 민족, 문화 출신 여성들 간 교류, 특정 민족 여성의 역사와 문화 홍보, 여성과 관련된 민족적 편견이나 특정 민족의 젠더 문화에 대한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젠더문화에 대한 비교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한 워크숍 등 여성관련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증진을 위해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주요 프로그램은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다양한 문화 자체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개발하고 그 생산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기업에서 다양한 민족출신자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즉 외국어 실력과 문화적 지식과 이해력, 해외 시장에서 기업 네트워크와 기업 관행에 대한 지식,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상세한 지식 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1년부터 파트너 기업을 선정하여 사원들이 자신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와 기술, 기업 네트워크, 경험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다양성 훈련을 실시하고 자체 활동을 장려하며 화합의 날 행사와 다양성 증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 호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주로 이민자 가족 대상의 정책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호주의를 표방했던 국가가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 이민자 가족의 입국 후 정착지원을 위해 인도주의 정책을 펴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점,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 을 비롯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점, 통·번역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돋보인다.

2) 영국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영국 정부는 의사·간호사·교사 등 전문직 외국인을 ‘영주 목적 이민’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반면, 비숙련 이민자들은 영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공 복지혜택 수혜자로서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인들의 이민 수용은 가급적 기피하려 한다. 전문직 종사자는 영어와 영국생활지식 등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아 영국에 온 다른 직업 종사자들은 한시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합 정책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결혼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에게,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와 ‘영국생활방법’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이수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이한 점은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EU국가 시민권자)이 비유럽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는 국제결혼한 영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자신도 지방정부에 주민 등록을 해야 한다. ‘EU국가 시민권자의 동반자 사증’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4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즉,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결혼이민자’를 영주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영어·영국생활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영국 정부는 2004년 7월 28일부터 귀화 신청자에게 ‘영어 구사능력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귀화 신청자의 ‘영어구사력’과 아울러 ‘영국생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언어 요건’(language requirement)이 도입된 것은 영어 학습이 ‘사회통합’의 기본 전제조건이고, ‘영국 생활에 대한 지식 요건’은 영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영어 구사력은 영국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요구되는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은 그 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영국생활 지식 요건은 “영국인으로의 귀화 자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의 가치관과 전통을 시민권 신청자와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불합격자에게는 귀화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식·역사·사회·정치제도 등을 총 망라하여 객관식 24문제가 출제되며 18문제(75%)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이다. 불합격한 경우에는 횃수에 상관없이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004년 7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사이에 영국에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은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강좌 제3단계 이상 이수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¹⁹⁾

19) 영어구사력은 다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음. ①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장(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 고등학교

2005년 11월 1일 이후 귀화신청자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이수증 명서와 아울러, ‘영국생활시험센터’(Life in the UK Test Centre)에서 영국생활지식 시험을 치른 후 그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국생활지식 시험은 영어로 출제되므로, 그것은 귀화 신청자의 영어 실력을 재검증하는 의미를 지닌다.

영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한국인이 영국인과 국제결혼한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²⁰⁾ 영국 국적취득자가 원국적을 포기할지 안 할지는 개별적으로 추후에 결정하면 된다. 영국 여권이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는 모든 면에서 기존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영국인들은 귀화자들이 영국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점에서 영국의 시민권 정책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귀화자들은 다른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EU회원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 졸업장(A-Level), 국제영어시험 성적(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또는 대학의 학위나 이수증명서. ②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강좌 제3단계 이상 이수증명서(ESOL certificate at Entry 3 level). ③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강좌 제3단계 이상 수준의 언어가 사용되는 코스를 이수한 증서 또는 졸업장. ④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받은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 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신청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해당 교육을 영어로 진행해서 받았다는 확인서. ⑥ 그 외 경우는 지방정부(local council)에서 운영하는 성인대학(Adult college)에서 실시하는 ‘시민권을 위한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시험’(ESOL Test for Citizenship) 합격통지서.

20) 대한민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영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존의 원리’로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를 강조해왔다. 톨레랑스의 정신은 한 사회의 정신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체념과 무관심의 다른 표현인 때도 많다. 어쨌든 이슬람교도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거 몰려 오기 시작한 1950~1960년대에 이슬람 문화는 톨레랑스를 높이 외치는 프랑스 사회와 대립적이지 않았다. 이슬람교도 주민들은 ‘가정’(家庭)과 같은 ‘사적 영역’에 주로 머물렀고, 그들의 종교생활 양식은 프랑스인이 가톨릭을 믿는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들이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상당히 협조적 태도를 취하였다(김정희, 2004: 188). 그러나 이슬람교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고, 또 이슬람 문화를 공적 생활 영역에서까지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갈등이 생겨났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이민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공화주의 동화모형은 프랑스는 일시적으로 다민족 사회이지만 영원히 다문화 사회로 존속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관련 법으로는 2006년 7월 25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이민·통합법’은 프랑스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이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립학교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법’(The Law Prohibiting the Wearing of

Conspicuous Religious Symbols in Public Schools):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스카프법(scarf law)이 2004년 2월 14일 프랑스 의회에서 찬성 439표, 반대 36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한 유형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외국인이나 주로 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는 등 각국마다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이슬람 소수집단과의 갈등이 보여 주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제3절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의 시사점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내 법·제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의 부처별 다문화가족 정책과 서비스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으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체류및국적 관련법」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통합교육이수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검토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의 근간이 되어야 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가족에 국한함으로써 매우 제한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기본법에서는 한 집단을 국한하기 보다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 확대,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가족과 북한이주민 가족, 이민자가족, 재

외동포까지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정책은 자문화중심의 동화주의 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나 문화는 그 가치 면에서 동등하다는 신념과 다문화를 수용, 존중하여야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전반적인 시각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일환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수정되어야 하며,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도 점차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 문화다양성 존중과 문화향유권의 확대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법과 제도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혼인 중인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최근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혼인지속여부나 자녀 양육 여부를 떠나서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류 및 국적 관련법』을 비롯하여 ‘사회통합교육이수제’ 등 다문화가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지원방안이 한국 사회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넘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결혼이민자는 우리의 자원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 교육, 이해시킴으로써 다문화 가족들을 한국

인화(韓國人化) 시키려는 노력들이다.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각 문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별 사업이 지자체에 내려오면 유사한 사업들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어교육, 문화적응프로그램, 다문화이해교육 등으로 각 부처별 담당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며,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외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로 대만, 일본, 독일을 비롯하여 기타 호주, 영국,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은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게도 일정기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체가족의 증가로 불법체류의 문제를 안게 되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생활보장을 위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각 현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의 문제와 이혼, 재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학과의 협력 하에 ‘다문화 사회복지사’ 라는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중언어 사회복지사를 현장에 배치한 점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의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독일은 노동자복지회를 통해 기업이 다문화화에 따른 변화를 시도하는 점이나 다문화가족에게 보육정책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2006년 채택된 국민통합계획이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호주는 이민자 가족의 입국 후 정착지원을 위해 인도주의 정책을 펴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점,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을 비롯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점, 통·번역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돋보인다. 그리고 영국은 결혼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이수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제출하도록 한 서류와 절차상 까다로운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주권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혜택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프랑스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동화적 정책은 프랑스와 이슬람 소수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²¹⁾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1)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존의 원리’로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를 강조해왔다. 이슬람교도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1950~1960년대에 이슬람 문화는 톨레랑스를 높이 외치는 프랑스 사회와 대립적이지 않았음. 그러나 이슬람교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고, 또 이슬람 문화를 공적 생활 영역에서까지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갈등이 발생함.

제5장 다문화가족 유형별 특성 및 실태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실태

1. 다문화가족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가. 일반특성

일반 결혼이민자 가구 조사대상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농촌지역보다 더 많았으며,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20대 이하가 50% 이상이었고, 30대가 34.4%, 40대 이상이 14.5%이었다. 평균 연령은 결혼이민자는 30.74세, 한국인배우자는 41.36세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간의 연령차이는 10.62세이었다. 이는 설동훈 외(2006)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78.1%이었고,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로 가구의 배우자이었다. 가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1.7%와 한국인배우자 응답자의 8.8%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본 조사의 국적별 분포의 현황은 타 연구와 비교할 때 다른 분포를 보인다²²⁾. 이는 본 조사의 경우 결혼이민자센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자센터를 방문하거나 방문지도

²²⁾ 설동훈 외(2006)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중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음.

사가 방문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표집방법 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특성

		(단위: %, 명, 세)	
	특성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지역	도시	60.9	59.3
	농·어촌	39.1	40.7
성	남자	1.8	99.7
	여자	98.2	0.3
연령	15~29	51.1	1.9
	30~39	34.4	40.3
	40~49	13.4	49.9
	50대 이상	1.1	7.9
	(평균)	(30.74)	(41.3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3	6.4
	중학교	15.6	9.1
	고등학교	42.0	55.6
	대학교 이상	36.1	28.8
가구주여부	가구주	1.5	86.6
	가구주 배우자 및 기타	98.5	13.4
가구유형	부부	12.3	11.3
	부부+자녀	46.7	46.1
	3세대	22.4	24.3
	기타	18.7	18.2
장애유무	있음	1.7	8.8
	없음	98.3	91.2
외국인본인(배우자)의 본국 국적	중국	18.8	18.8
	중국(한민족)	9.1	9.2
	베트남	27.8	27.3
	필리핀	15.1	14.9
	일본	13.6	13.9
	태국	6.6	6.6
	몽골	5.8	5.7
	기타 ¹⁾	3.2	3.6
계(수)		100.0(1,157)	100.0(1,015)

주: 1)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연령차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25.16세 인데 비해 한국인배우자는 41.39세로 16.23세의 차이를 보여 연령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몽골(11.92세), 중국(10.13세), 태국(9.29세) 등이었고, 일본의 경우가 3.58세로 연령차이가 가장 적었다(표 5-1 참조). 일본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39.32세로 타 국적 이민자에 비해 가장 고령자이었다. 이와 같은 국적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간의 연령차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입국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최고령자인 일본 결혼이민자의 경우 1990년대 입국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표 5-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평균 연령 비교

(단위: 세)

구분	결혼이민자(A)	한국인배우자(B)	차이(B-A)
전체	30.74	41.36	10.62
중국	29.88	40.01	10.13
중국(한민족)	31.92	40.11	8.19
베트남	25.16	41.39	16.23
필리핀	32.09	42.73	10.64
일본	39.32	42.90	3.58
태국	32.36	41.65	9.29
몽골	28.38	40.30	11.92
기타 ¹⁾	28.06	39.37	11.31
F값	56.176***	3.495**	-

주: 1)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됨.

2) ***p <.000, ** p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 <표 5-3>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간의 교육수준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한국인배우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은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 이상은 한국인배우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국적별로는 차이를 보여, 중국, 중국(한민족), 베트남은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한국인배우자의 교육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등은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한국인배우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과 일본국적의 결혼이민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이 각각 94.6%, 97.3%인데 비해 한국인배우자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은 각각 78.2%와 80.7%로 한국인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교육수준별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계(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계(수)
전체	5.5	18.5	39.2	36.8	100.0(620)	6.4	9.1	55.6	28.8	100.0(624)
중국	7.0	22.6	47.8	22.6	100.0(115)	2.5	3.3	63.6	30.6	100.0(121)
중국(한민족)	1.6	14.3	38.1	46.0	100.0(63)	5.1	6.8	57.6	30.5	100.0(59)
베트남	13.8	39.6	40.3	6.3	100.0(159)	4.6	9.3	63.6	22.5	100.0(151)
필리핀	1.1	4.3	34.8	59.8	100.0(92)	6.9	14.9	57.5	20.7	100.0(87)
일본	0.9	1.8	39.3	58.0	100.0(112)	12.3	7.0	42.1	38.6	100.0(114)
태국	0.0	13.9	41.7	44.4	100.0(36)	9.5	23.8	47.6	19.0	100.0(42)
몽골	3.2	9.7	25.8	61.3	100.0(31)	5.7	8.6	54.3	31.4	100.0(35)
기타 ¹⁾	0.0	25.0	8.3	66.7	100.0(12)	6.7	6.7	20.0	66.7	100.0(15)
χ^2	192.173***					57.127***				

주: 1)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됨.

2) *** p < .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나. 입국목적 및 한국국적 취득여부

결혼이민자들의 혼전 입국 목적을 살펴보면, 결혼을 위한 입국이 주를 이루며(92.3%), 그 외 취업·경제활동, 친척 방문이나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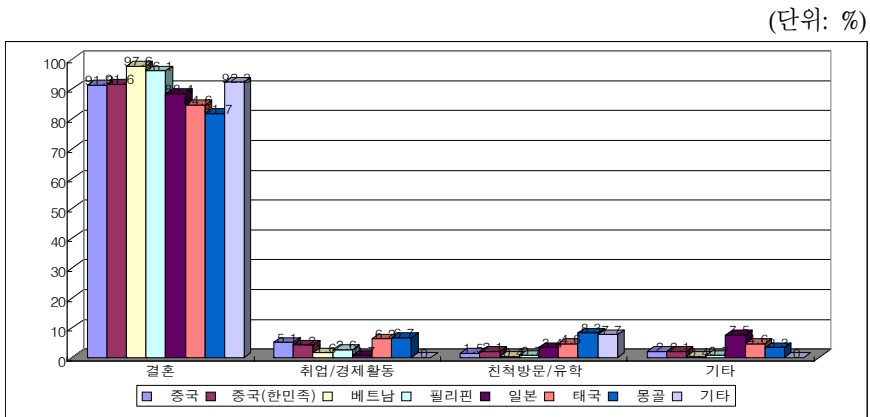
〈표 5-4〉 결혼이민자의 혼전 입국목적

구분	(단위: %, 명)				계(수)
	결혼	취업· 경제활동	친척방문 ·유학	기타	
전체	92.3	3.1	2.2	2.4	100.0(1,1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국적별 혼전 입국 목적을 보아도 모두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을 위한 입국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5-1]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혼전 입국 목적



주: 결혼이민자(n=99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향후 취득계획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율은 결혼이민자 중 22.1%이었으며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중 향후

취득계획이 있는 비율은 75.4% 이었다. 이는 설동훈 외(2006)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본 연구가 낮은 편이나 향후 취득계획은 본 연구가 더 높은 편이었다²³⁾.

〈표 5-5〉 결혼이민자의 현재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여부
(단위: %, 명)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취득계획 여부 ¹⁾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22.1	77.9	100.0(1,123)	75.4	24.6	100.0(829)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현 거주지 및 본국 국적별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향후 취득계획을 살펴본 결과, 현 거주지인 도시와 농·어촌별로는 현재 한국국적 취득률은 22.1%로 동일하였으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한국국적 취득계획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어촌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국 국적별로는 차이를 보여 현재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중국(한민족)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태국과 일본이 한국국적 취득률이 낮았다.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중 향후 취득하겠다는 경우도 중국(한민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88.1%)이었으며, 일본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낮았다(33.3%). 그러나 현재 한국국적 취득률이 가장 낮았던 태국의 경우 향후 한국국적 취득희망률은 72.7%로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설동훈 외(2006) 연구에 의하면, 향후 한국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결혼이민자가 지적인 한국국적 미취득 이유는 한국 국적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해서 등

²³⁾ 설동훈 외(2006)연구에서는 현재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34.2%이었고, 향후 취득계획은 66.3%이었음.

의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해서(31.9%), 한국 국적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26.4%), 그리고 국적취득 필요성을 못 느껴서(15.3%) 등이었다.

〈표 5-6〉 거주지 및 본국 국적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단위: %, 명)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취득계획 여부 ¹⁾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22.1	77.9	100.0(1,074)	75.4	24.6	100.0(828)
지역						
도시	22.1	77.9	100.0(657)	75.4	24.6	100.0(487)
농·어촌	22.1	77.9	100.0(417)	75.2	24.8	100.0(306)
χ^2		0.000			0.004	
국적						
중국	15.1	84.9	100.0(212)	84.3	15.7	100.0(172)
중국(한민족)	57.3	42.7	100.0(103)	88.1	11.9	100.0(42)
베트남	18.2	81.8	100.0(302)	85.0	15.0	100.0(233)
필리핀	40.9	59.1	100.0(171)	92.9	7.1	100.0(98)
일본	7.1	92.9	100.0(155)	33.3	66.7	100.0(135)
태국	6.7	93.3	100.0(75)	72.7	27.3	100.0(66)
몽골	14.9	85.1	100.0(67)	73.6	26.4	100.0(53)
기타	16.2	83.8	100.0(37)	72.4	27.6	100.0(29)
χ^2		151.360***			167.736***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한국 방문횟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1회 방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1회 방문이 90.3%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1회 방문은 5.8%에 불과하고 3회 이상이 89.2%로 타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차이를 보였다.

〈표 5-7〉 본국 국적별 한국 방문횟수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χ^2
전체	65.2	11.4	23.4	100.0(948)	
중국	65.8	19.3	14.9	100.0(161)	
중국 (한민족)	59.7	19.4	20.8	100.0(72)	
베트남	90.3	5.2	4.5	100.0(289)	
필리핀	72.3	14.6	13.1	100.0(130)	451.773***
일본	5.8	5.0	89.2	100.0(139)	
태국	68.3	9.5	22.2	100.0(63)	
몽골	70.5	16.4	13.1	100.0(61)	
기타	60.6	18.2	21.2	100.0(33)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의 방문횟수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에 관해 살펴본 결과, 한국 방문 횟수가 적을수록 한국국적 취득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문횟수가 적을수록 결혼목적의 입국비율이 높은 점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방문횟수별 입국목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5-8〉 한국 방문횟수별 한국국적 취득여부 및 입국 목적

					(단위: %, 명)
구분	한국 방문횟수			전체	χ^2
	1회	2회	3회 이상		
한국국적 취득					
취득	22.0	18.9	16.7	20.4	3.008
미취득	78.0	81.1	83.3	79.6	
계(수)	100.0(600)	100.0(106)	100.0(222)	100.0(928)	
입국목적					
결혼	96.6	80.9	81.8	91.3	
취업·경제활동	1.7	9.6	6.1	3.6	59.494***
친척방문·유학	1.1	5.3	5.1	2.6	
기타	0.6	4.3	7.1	2.6	
계(수)	100.0(531)	100.0(94)	100.0(198)	100.0(823)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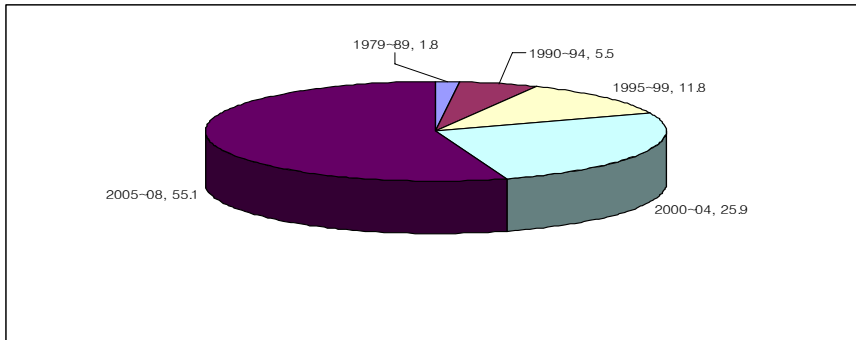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 한국 첫 입국년도 및 거주기간

본 조사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첫 입국년도는 1989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1.8%이었으며, 1990~1994년 입국한 경우는 5.5%, 1995~1999년 11.8%, 2000~2004년 25.9%, 2005~2008년 55.1%로 2000년대에 입국한 경우가 81.0%이었으며, 이 중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림 5-2] 결혼이민자의 한국 첫 입국년도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한국 첫 입국년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어촌의 결혼이민자가 58.7%로 도시(52.8%)보다 더 많았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아 84.6%이었으며, 중국이 75.0%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는 1990년대에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 이후 입국한 경우는 3.4%에 불과하여 국적별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한국의 입국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 주목적이었으며, 특히 최근의 결혼중개업체 등

을 통한 결혼이민자 모집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5-9〉 한국 첫 입국년도

(단위: %, 명)

구분	1979~ '89	1990~ '94	1995~ '99	2000~ '04	2005~ '08	계(수)	χ^2
전체	1.8	5.5	11.8	25.9	55.1	100.0(1,028)	
지역							
도시	2.1	6.7	12.0	26.5	52.8	100.0(631)	6.406*
농·어촌	1.3	3.8	11.3	24.9	58.7	100.0(397)	
국적							
중국	0.0	0.5	6.7	17.8	75.0	100.0(208)	
중국(한민족)	1.0	1.0	25.7	40.6	31.7	100.0(101)	
베트남	0.3	0.3	1.6	13.1	84.6	100.0(306)	727.992
필리핀	0.0	0.7	15.8	44.7	38.8	100.0(152)	***
일본	12.1	35.6	31.5	17.4	3.4	100.0(149)	
태국	0.0	0.0	13.1	52.5	34.4	100.0(61)	
몽골	0.0	0.0	3.1	43.1	53.8	100.0(65)	
기타	0.0	5.9	11.8	20.6	61.8	100.0(34)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총 거주기간은 평균 113.03개월로 9.4년 정도이었으며, 1~3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35.4%).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1~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인 경우는 1~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중국(한민족)은 3~5년 미만 이, 필리핀과 태국은 5~10년 미만 이, 그리고 일본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국적별 거주기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평균 거주기간은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국적별 평균 거주기간은 태국, 필리핀, 중국(한민족), 일본 등의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방문횟

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10〉 한국 총 거주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3	35.4	17.5	23.1	10.8	100.0(1,031)	113.03
지역							
도시	13.1	33.9	17.7	24.4	10.9	100.0(632)	108.4
농·어촌	13.5	37.8	17.0	21.1	10.5	100.0(399)	120.2
χ^2	2.389						
국적							
중국	25.6	45.4	14.5	11.6	2.9	100.0(207)	75.5
중국(한민족)	6.0	16.0	29.0	28.0	21.0	100.0(100)	116.7
베트남	14.3	58.7	18.3	6.3	2.3	100.0(300)	91.3
필리핀	9.7	20.1	19.5	42.2	8.4	100.0(154)	169.0
일본	3.2	7.1	10.3	38.7	40.6	100.0(155)	115.8
태국	4.6	24.6	13.8	49.2	7.7	100.0(65)	199.1
몽골	14.3	34.9	23.8	27.0	0.0	100.0(63)	97.4
기타	26.5	38.2	8.8	17.6	8.8	100.0(34)	118.4
χ^2	461.657***						
방문횟수							
1회	20.4	45.2	16.3	14.0	4.1	100.0(584)	89.1
2회	5.7	34.3	21.0	28.6	10.5	100.0(105)	89.8
3회 이상	2.3	12.5	16.2	41.7	27.3	100.0(216)	112.5
χ^2	227.751***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현거주지 중심으로 본국에서의 최장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본국에서도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본국에서도 농·어촌에 오랫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11〉 결혼이민자의 현 거주지별 본국에서의 최장거주지

(단위: %, 명)

현 거주지	본국에서의 최장거주지			χ^2
	도시	농·어촌	계(수)	
전체	56.2	43.8	100.0(1,070)	43.397***
도시	64.1	35.9	100.0(655)	
농·어촌	43.6	56.4	100.0(415)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라.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자

결혼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친구 또는 선·후배와 결혼중개업체이었으며, 부모·형제·자매 등도 상당비율을 차지하였다.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는 아무도 없음이 2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친구, 선·후배(19.9%), 친척(14.2%), 알고 지냈던 본국인(13.4%), 나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2.7%), 언론매체, 영화(8.1%), 결혼중개업체(5.1%) 등의 순이었다. 아무도 없음을 제외할 경우 친구, 선·후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결혼중개업체가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입국목적과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대부분(92.3%)은 결혼을 위해 입국한 경우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정보를 입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는 첫 방문목적이 결혼인 경우가 78.7%로 본 연구보다 낮은 비율이며, 따라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는 친구 또는 선·후배(25.8%), 결혼중개업체(20.4%), 부모, 형제·자매(11.5%) 등의 순이었으나,

농·어촌은 결혼중개업체(28.1%), 친구 또는 선·후배(18.7%), 부모, 형제·자매(13.9%) 순으로 차이를 보여 농·어촌의 경우 도시보다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은 친구 또는 선·후배에 의해서, 베트남과 태국 등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중국 한민족 등은 부모·형제·자매, 친척·친지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 관한 정보제공자에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결혼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제공자

(단위: %, 명)

구분	아무도 없었음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지	친구, 선· 후배	본국 사람	결혼 중개 업체	언론 매체 등	기타	계(수)
전체	3.8	12.6	8.3	23.2	7.3	23.0	10.2	11.7	100.0(1,030)
지역									
도시	4.6	11.5	8.8	25.8	7.4	20.4	10.1	11.3	100.0(592)
농·어촌	2.3	13.9	7.1	18.7	7.3	28.1	11.1	11.4	100.0(395)
χ^2	16.709*								
국적									
중국	5.3	6.9	10.1	29.6	6.3	24.3	7.4	10.1	100.0(189)
중국(한민족)	2.2	21.5	20.4	16.1	16.1	4.3	8.6	10.8	100.0(93)
베트남	1.7	16.2	6.4	14.2	4.1	42.6	11.5	3.4	100.0(296)
필리핀	6.0	15.3	8.7	30.7	5.3	17.3	4.0	12.7	100.0(150)
일본	0.0	7.2	1.4	37.7	11.6	0.0	9.4	32.6	100.0(138)
태국	3.0	14.9	4.5	16.4	14.9	26.9	0.0	19.4	100.0(67)
몽골	9.4	4.7	12.5	18.8	1.6	7.8	40.6	4.7	100.0(64)
기타	15.2	9.1	6.1	15.2	3.0	36.4	12.1	3.0	100.0(33)
χ^2	400.260***								

주: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2.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허위정보와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등 인권 침해적인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할 경우 언어, 문화, 가치관 등 이질적인 환경에 의해서 부부 또는 가족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과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의 결혼과정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요하다.

가. 결혼과정

본 결혼과정에서는 배우자 소개경로, 소개료 지불여부, 배우자 정보의 진위정도와 가장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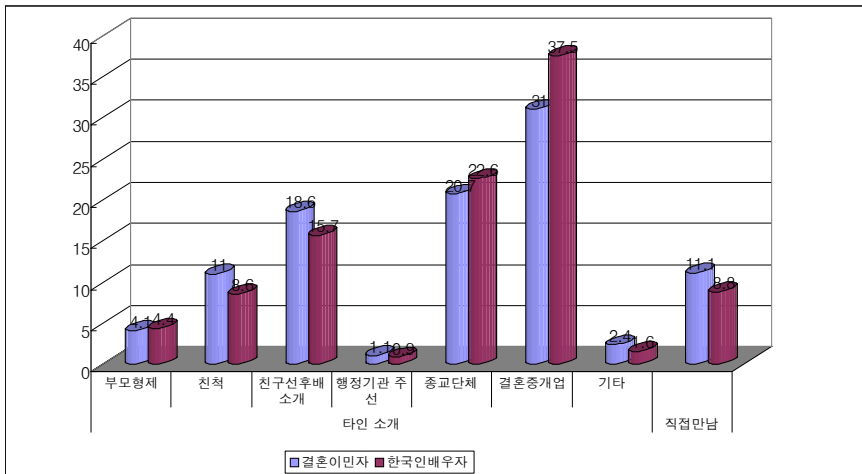
1) 배우자 만나게 된 경로

결혼이민자인 경우 현재 한국인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는 결혼중개업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단체, 친구·선후배소개, 친척소개 순으로 많았고 부부 당사자가 직접만나는 비율은 11.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가족의 3분의 1 정도는 결혼중개업자에 의해서 국제결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인배우자의 경우도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결혼중개업이나 종교단체 등에 의한 소개가 더 많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만난 방법은 가족·친족 소개가 4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기 스스로, 결혼중개업체, 종교기관, 기타, 지방정부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인배우자는 가족·친족 소개가 43.6%로 가장 높았고, 결혼중개업체, 스스로, 종교기관, 기타,

지방정부 등이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소개경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연구 간의 표집방법과 표집의 성, 연령, 국적 등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5-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소개받은 경로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133), 한국인배우자(n=1,0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현재 한국인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15~29세 연령층은 결혼중개업과 친척·친구·선후배에 의한 소개가 각각 43.8%, 31.6%로 높은 편이었다. 30~39세는 종교단체에 의한 소개가 31.7%, 친구·선후배소개가 21.7%로 높은 반면, 결혼중개업에 의한 소개는 16.7%로 낮았다. 특히 15~29세와 30~39세 연령층은 직접만남에 의한 비율도 각각 11.5%, 12.8%로 높았다. 한편 40~49세 연령층은 종교단체에 의한 소개가 63.6%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되었고, 결혼중개업은 7.3%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50세 이상은 결혼중개업과 종교단체에 의한 소개가 각각 44.4%,

33.3%로 높았다. 이와 같이 40세 이상 연령층은 종교단체와 결혼중개업의 소개에 의한 결혼이 높은 반면 39세 이하 연령층은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에 의한 소개 외에 친척, 친구·선후배에 의한 소개 그리고 직접만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종교단체, 결혼중개업 등의 외부적 개입에서 결혼이민자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중국(한민족), 몽골 출신국가의 결혼이민자는 친척·친구·선후배소개 외에 직접 만남에 의한 결혼이 높은 반면, 베트남 출신은 결혼중개업이 61.0%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되었고, 필리핀, 일본, 태국 출신국가 결혼이민자는 종교단체에 의한 소개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출신국가별로 결혼유입시기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 모두 조선족과 한족은 가족·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스스로가 많았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69.2%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었고, 일본, 필리핀 출신국가 여성결혼이민자는 종교기관에 의한 결혼이 각각 87.4%, 45.3%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국적별 배우자의 소개경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5-1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배우자 소개받은 경로 비교

(단위: %, 명)

구분	타인 소개								계(수)	χ^2
	부모· 형제 소개	친척 소개	친구· 선후배 소개	행정 기관 주선	종교 단체	결혼 중개업	기타	직접 만남		
전체	4.1	11.0	18.6	1.1	20.7	31.0	2.4	11.1	100.0(1,133)	
연령										
15~29세	4.1	14.1	17.5	1.7	5.5	43.8	1.9	11.5	100.0(418)	
30~39세	4.6	8.9	21.7	0.4	31.7	16.7	3.2	12.8	100.0(281)	235.173
40~49세	2.7	7.3	13.6	-	63.6	7.3	0.9	4.5	100.0(110)	***
50세 이상	11.1	-	11.1	-	33.3	44.4	-	-	100.0(9)	
국적										
중국	5.2	16.0	26.3	0.5	1.4	30.0	1.9	18.8	100.0(213)	
중국(한민족)	6.9	35.3	26.5	-	1.0	11.8	4.9	13.7	100.0(102)	
베트남	4.1	8.9	15.9	1.3	2.2	61.0	0.6	6.0	100.0(315)	
필리핀	5.4	7.2	18.6	4.2	35.3	15.6	2.4	11.4	100.0(167)	753.403
일본	0.6	3.8	7.6	0.6	79.0	1.3	1.9	5.1	100.0(157)	***
태국	4.1	9.5	14.9	-	35.1	12.2	5.4	18.9	100.0(74)	
몽골	1.5	1.5	30.3	-	13.6	39.4	1.5	12.1	100.0(66)	
기타 ¹⁾	2.8	-	11.1	-	11.1	55.6	8.3	11.1	100.0(36)	

주: 1) 기타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기타 등이 포함됨.

2)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편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결혼이민자를 소개 받은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배우자는 결혼중개업에 의한 소개가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단체 23.2%, 친구·선후배소개 16.8% 등의 순이었고, 직접만남 비율도 11.0%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결혼중개업에 의한 소개가 43.7%로 도시지역보다 높았고, 종교단체, 친구·선후배소개, 직접만남 비율 등은 도시지역보다 낮았다. 공통적으로 결혼중개업과 종교단체 등 타인소개에 의해 결혼한 비율이 높았으나 이외에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 부모·형제·친척, 친구·선후배소개, 직접만남 등 사적인 영역에서

결혼이 선택·결정되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는 직접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는 결혼중개업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0대: 36.8%, 40대: 35.1%), 50세 이상은 종교단체에 의한 소개(32.8%)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14〉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배우자 소개받은 경로 비교

(단위: %, 명)

구분	타인 소개							직접 만남	계(수)	χ^2
	부모· 형제 소개	친척 소개	친구· 선후배 소개	행정 기관 주선	종교 단체	결혼 중개 업	기타			
전체	4.4	8.6	15.7	0.9	22.6	37.5	1.6	8.8	100.0(1,005)	
지역										
도시	4.5	7.9	16.8	0.7	23.2	33.9	2.1	11.0	100.0(573)	20.133
농·어촌	3.8	9.0	14.3	1.3	21.7	43.7	0.5	5.6	100.0(391)	**
연령										
15~29세	-	26.7	-	-	13.3	20.0	-	40.0	100.0(15)	
30~39세	6.1	9.7	13.9	1.6	16.5	36.8	2.3	13.2	100.0(310)	71.690
40~49세	3.6	9.1	16.6	0.5	28.8	35.1	1.6	4.7	100.0(385)	***
50세 이상	1.6	1.6	26.2	-	32.8	31.1	1.6	4.9	100.0(61)	

주: 1) 기타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기타 등이 포함됨.

2)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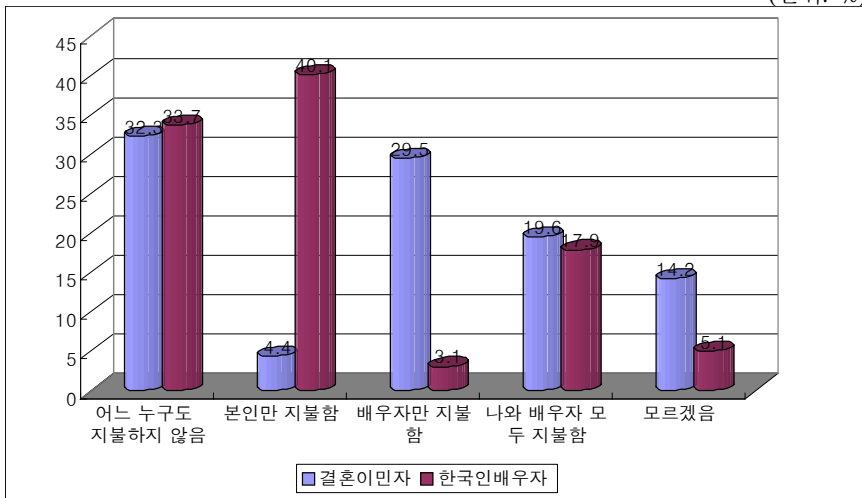
2) 소개료 지불여부

타인 또는 기관이 개입하여 만나게 된 경우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하여 소개료를 지불한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53.5%, 한국인배우자는 61.1%가 해당되었다. 특히 한국인배우자만 소개료를 지불한 비율은 40.1%로 높았으며 부부 쌍방 모두 지불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소개시 사례비 지급여부는 결혼이민자는 33.6%로 본 연구결과가 19.9%포인트 높았는데 이는 소개경로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연구 간의 표집방법과 표집의 성, 연령, 국적 등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5-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의 소개료 지불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899), 한국인배우자(n=8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로 타인 또는 기관이 개입하여 만나게 된 경우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하여 소개료를 지불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개료를 지불한 비율은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6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 국가들, 몽골, 중국, 필리핀, 중국(한국동포),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결혼중개업에 의한 소개가 높은 국가 순으로 나타나서 소개료 지불은 주로 결혼중개업에 의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기타 국가들은 한

국인배우자만 지불하는 비율도 30.7~50.0% 범위로 높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에 의하면 소개료를 지불한 비율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6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필리핀, 기타, 중국 한족, 일본, 중국 조선족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중국 한족 출신 남성결혼이민자는 동 비율이 16.7%, 중국 조선족은 14.3%로 여성결혼이민자보다 낮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소개료 지불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국적은 일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집국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표 5-15〉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배우자의 소개료 지불 여부¹⁾

(단위: %, 명)

구분	어느 누구도 지불안함	본인만 지불함	배우자만 지불함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함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32.3	4.4	29.5	19.6	14.2	100.0(899)	
중국	41.8	1.9	11.4	34.8	10.1	100.0(158)	
중국(한민족)	53.3	8.0	20.0	10.7	8.0	100.0(75)	
베트남	10.4	4.2	46.7	18.9	19.7	100.0(259)	
필리핀	30.7	3.9	30.7	7.9	26.8	100.0(127)	274.615
일본	61.1	5.6	4.9	27.1	1.4	100.0(144)	***
태국	18.9	7.5	49.1	13.2	11.3	100.0(53)	
몽골	28.8	3.8	46.2	7.7	13.5	100.0(52)	
기타 ²⁾	14.3	3.6	50.0	14.3	17.9	100.0(28)	

주: 1) 배우자를 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만을 분석함.

2) 기타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기타 등이 포함됨.

3)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3) 배우자 정보 일치여부

결혼 전에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들었던 상대 배우

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한다는 비율은 결혼이민자 47.9%, 한국인배우자는 55.6%로 과반수에 불과하였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결혼이민자는 23.4%, 한국인배우자는 15.1%로 적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8.3%포인트 많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상대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한다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71.0%, 한국인배우자는 73.0%이었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12.2%, 한국인배우자는 7.9%로 본 연구결과와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 수준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표 5-1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 비교¹⁾
(단위: %, 명)

구분	전혀 일치하지 않음	별로 일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일치함	모두 일치함	계(수)
결혼이민자	7.7	15.7	28.8	26.0	21.9	100.0(874)
한국인배우자	4.2	10.9	29.3	32.4	23.2	100.0(786)

주: 1) 배우자를 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만을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들었던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소개받은 경로 별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한다는 비율은 친구·선후배 소개가 5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행정기관추천, 기타, 종교단체, 부모·형제·친척소개, 결혼중개업체 순이었다. 반면 상대 배우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인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 방법, 부모·형제·친척소개, 종교단체, 행정기관추천, 친구·선후배 소개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 받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허위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5-1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¹⁾

(단위: %, 명)

구분	전혀 일치하 지 않음	별로 일치하 지 않음	보통	대체로 일치함	모두 일치함	계(수)	χ^2
전체	7.7	15.7	28.8	26.0	21.9	100.0(874)	
배우자 소개 받은 경로							
부모·형제·친척소개	8.8	15.6	29.3	24.5	21.8	100.0(147)	16.201
친구·선후배소개	5.5	10.9	33.3	30.1	20.2	100.0(183)	
행정기관추선	10.0	10.0	30.0	20.0	30.0	100.0(10)	
종교단체	4.8	16.4	30.0	25.6	23.2	100.0(207)	
결혼중개업체	10.4	17.9	25.4	24.8	21.5	100.0(307)	
기타	5.0	20.0	25.0	25.0	25.0	100.0(20)	
국적							
중국	6.3	13.2	26.4	34.6	19.5	100.0(159)	97.570 ***
중국(한민족)	2.7	12.2	36.5	36.5	12.2	100.0(74)	
베트남	8.8	14.3	27.9	19.1	29.9	100.0(251)	
필리핀	6.9	29.3	29.3	13.8	20.7	100.0(116)	
일본	4.2	6.9	30.6	31.9	26.4	100.0(144)	
태국	18.8	27.1	25.0	18.8	10.4	100.0(48)	
몽골	15.4	25.0	21.2	32.7	5.8	100.0(52)	
기타 ²⁾	7.1	3.6	39.3	28.6	21.4	100.0(28)	

주: 1) 배우자를 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만을 분석함.

2) 기타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기타 등이 포함됨.

3)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국적별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한다는 비율은 중국이 5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기타 국가, 베트남, 중국(한국동포), 몽골, 태국 순으로 높았다(표 5-17 참조). 그러나 상대 배우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태국이 4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몽골, 필리핀, 베트남, 중국, 중국(한국동포), 일본, 기타 국가 순으로 높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이는 대체로 결혼중개업, 종교단체, 친구·선후배 소개에 의한 경우가 높은 국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태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중국 출신국가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허위정보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를 소개 받은 경로별로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들었던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한다는 비율은 사례수가 적은 행정기관주선을 제외하면 부모·형제·친척 소개가 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단체, 친구·선후배소개, 결혼중개업체, 기타 방법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한 경우가 2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 방법, 행정기관주선, 종교단체, 부모·형제·친척소개, 친구·선후배소개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따라서 한국인배우자의 경우도 결혼이민자와 같이 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 받은 경우 허위정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18〉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소개 경로별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¹⁾
(단위: %, 명)

구분	전혀 일치하 지 않음	별로 일치하 지 않음	보통	대체로 일치함	모두 일치함	계(수)	χ^2
전체	4.2	10.9	29.3	32.4	23.2	100.0(786)	
부모·형제·친척소개	4.9	4.9	22.5	35.3	32.4	100.0(102)	
친구·선후배소개	3.1	5.5	29.9	35.4	26.0	100.0(127)	
행정기관추선	-	12.5	12.5	62.5	12.5	100.0(8)	79.673
종교단체	4.1	5.1	26.5	27.0	37.2	100.0(196)	***
결혼중개업체	4.6	17.9	32.7	32.9	11.8	100.0(346)	
기타	-	14.3	42.9	28.6	14.3	1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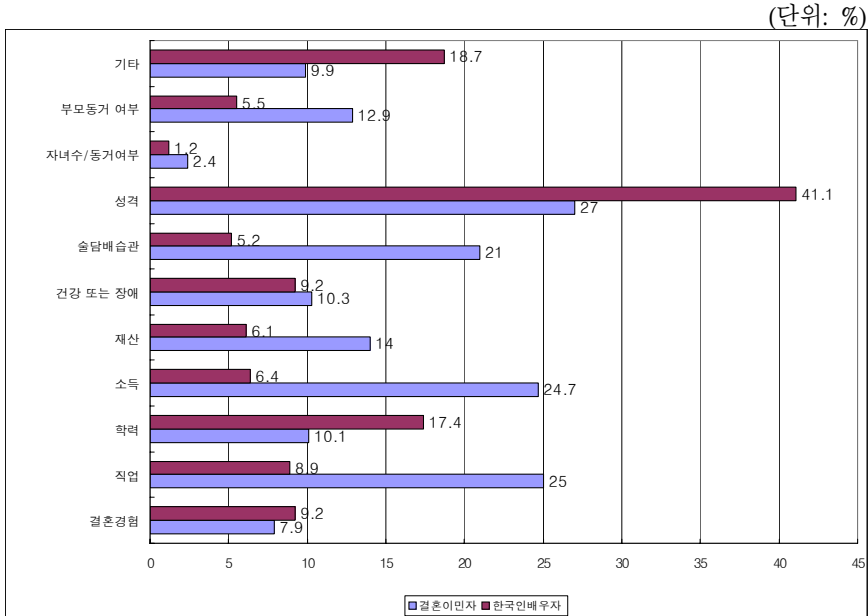
주: 1) 배우자를 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만을 분석함.

2)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 중에서 허위 부분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공통적으로 배우자의 성격이 실제와 가장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직업, 소득 등 경제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결혼 이민자의 학력이 실제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났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배우자 재산과 배우자의 성격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차이가 큰 편이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직업, 배우자 생활습관, 배우자 소득 등이었다. 본연구와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허위 정보 부분은 배우자의 성격, 배우자의 직업, 소득이 비율이 높았다.

[그림 5-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허위 정보 부분 비교



주: 결혼이민자(n=534), 한국인배우자(n=3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4) 결혼횟수 및 이유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횟수를 보면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가 83% 이상²⁴⁾으로 다수가 해당된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라도 재혼인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12.4%, 한국인배우자는 12.7%로²⁵⁾ 나타나서 국제결혼의 범위가 농촌총각의 장가가기에서 출발해서 점차 재혼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일반가족의 결혼형태와 비교하면

24) 설동훈 외의 연구(2006)에 의하면 초혼인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79.1%, 한국인배우자는 76.4%로 본 연구에 비해 각각 13.5%포인트, 10.4%포인트 낮았음.

25) 설동훈 외의 연구(2006)에 의하면 재혼인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21.0%, 한국인배우자는 23.6%로 본 연구에 비해 각각 8.6%포인트, 10.9%포인트 높았음.

2006년 부부 모두 초혼인 비율이 96.0%이었고, 한쪽 부부만 재혼은 1.9%, 부부 모두 재혼은 2.2%의 비율을 보였다(김승권 외, 2006).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결혼형태는 우리나라 일반가족에 비하여 부부 초혼으로 구성된 비율이 낮은 반면 재혼의 구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횟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둘다 초혼	결혼이민자- 초혼/한국인 배우자재혼	결혼이민자- 재혼/한국인 배우자초혼	둘다 재혼	계(수)
결혼이민자	83.8	8.9	3.5	3.8	100.0(1,084)
한국인배우자	83.0	3.5	9.2	4.2	100.0(9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현재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가 2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본국 가족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2.9%, ‘종교적인 이유’로 12.9%,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 살기위하여’ 11.0%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15.6%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결혼이민자의 현 배우자와의 결혼이유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특별한 이유 없음	171	15.6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 살기 위하여	121	11.0
본국 가족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41	12.9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49	4.5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26	2.4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로	55	5.0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309	28.2
한국인으로 귀화하려고	15	1.4
종교적인 이유로	141	12.9
기타	68	6.2
계	1,096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가 결혼한 이유는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이 22.4%로 가장 높아서 결혼이민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님, 가족이 권유해서’가 16.9%, ‘순정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가 10.4%로 한국인배우자의 27.3%는 부모님 또는 가족 때문에 현 배우자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가 9.9%이었고, ‘배우자와 같은 국가 출신과 결혼을 한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이 권해서’도 9.8%로 나타나서 국제결혼이 우리 사회의 결혼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한국인배우자가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사람과 외모 차이가 없어서’가 3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순종적, 부모 공경할 것 같아서’, ‘배우자 사랑해서’, ‘배우자 출신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 권유’, ‘부모·가족의 권유’, ‘종교적 이유’, ‘배우자 출신국가에 대한 친근감’, ‘결혼중개업자의 권유’ 등의 순이었다. 본연구와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로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이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는 표집국적 등을 포함한 표집대상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로 설명된다.

〈표 5-21〉 한국인배우자의 현 배우자와의 결혼이유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특별한 이유 없음	122	12.5
부모님, 가족이 권유해서	165	16.9
결혼중매업자의 권유로	73	7.5
배우자와 같은 국가의 출신과 결혼한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이 권해서	96	9.8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것 같아서	102	10.4
우리나라 사람과 외모 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50	5.1
배우자의 출신국에 대해서 친근감이 느껴져서	15	1.5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219	22.4
종교적인 이유로	97	9.9
기타	40	4.1
계	97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결혼생활

결혼생활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 부부의 의사결정권,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분석하고, 결혼이민자의 언어생활, 본국인과의 교제생활, 결혼생활의 적응과 어려움, 그리고 부부폭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부관계 및 의사결정권

부부관계 만족도는 결혼이민자는 부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부사이의 애정·친밀감(56.3%), 부부간의 성생활(45.9%), 부부간의 대화·의사소통(42.0%), 배우자의 소비생활(41.8%) 순으로 높았으나 배우자의 소비생활과 생활습관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는 배우자의 생활습관

에 만족하는 비율이 6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부사이의 애정·친밀감(67.0%), 믿고 이해하는 정도(63.8%), 소비생활(58.37%), 성생활(58.5%) 등은 높았으나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비율은 32.9%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부부관계만족도의 평균점수는 한국인배우자 3.74점으로 결혼이민자의 3.66점 보다 높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평균점수는 3.95점으로 본연구보다 0.29점이 높았다. 그리고 영역별로도 부부간의 대화·의사소통, 성생활, 가사노동분담,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대한 부부관계만족도 평균점수는 본연구보다 0.41~0.51점이 높았다. 이는 본연구와 선행연구 간의 표집대상이 결혼기간, 부부간의 연령, 가족환경 등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표 5-2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대화·의사소통	애정·친밀감	믿고 이해하는 정도	성생활	가사노동분담	생활습관	소비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전반적 만족도
결혼이민자									
매우 불만족	4.3	2.3	2.7	2.6	4.9	9.1	4.6	8.2	2.6
대체로 불만족	9.8	6.1	6.1	4.2	12.9	16.8	9.3	15.2	6.2
보통	43.9	35.3	30.2	47.4	44.8	34.8	44.3	41.1	34.1
대체로 만족	26.3	31.2	32.4	28.5	22.1	21.0	24.5	20.8	36.5
매우 만족	15.7	25.1	28.6	17.4	15.4	18.4	17.3	14.8	2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01)	(1,091)	(1,091)	(1,081)	(1,065)	(1,067)	(1,063)	(1,074)	(1,079)
평균	3.39	3.71	3.78	3.54	3.30	3.23	3.41	3.19	3.66
한국인배우자									
매우 불만족	2.8	1.2	1.4	1.3	1.7	1.7	0.9	3.7	1.1
대체로 불만족	9.7	3.6	5.5	3.7	5.3	3.7	5.3	10.6	4.1
보통	38.4	28.2	29.2	36.4	38.9	26.3	35.2	52.8	33.9
대체로 만족	35.5	40.5	39.7	39.8	35.1	34.1	34.6	22.4	41.0
매우 만족	13.5	26.5	24.1	18.7	19.1	34.2	24.1	10.5	1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86)	(981)	(979)	(972)	(964)	(953)	(952)	(965)	(968)
평균	3.47	3.87	3.80	3.71	3.65	3.95	3.76	3.25	3.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은 가족 내에서 부부의 권력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공통적으로 비슷한 권력구조를 보여주었는데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부부의 취업 및 이직,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은 비교적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 주택매매 및 이사 등 경제생활 또는 재산과 관련이 높은 것을 결정하는 데는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독단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김승권 외, 2006)결과에서 보듯이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는 주로 부인이 결정하고 부동산 및 재산관리 등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것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사결정권 비교

(단위: %, 명)

구분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투자 및 재산 관리	주택 매매 및 이사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부부의 취업 및 이직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혼이민자						
내가 혼자	11.0	3.8	1.6	6.8	3.5	3.1
내가 보다 많이	11.5	4.6	3.4	15.1	3.2	4.2
부부함께 결정	35.0	34.7	45.0	63.2	51.7	56.7
배우자가 보다 많이	20.7	24.5	21.4	8.1	20.2	17.5
배우자 혼자	21.9	32.3	28.7	6.9	21.5	1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75)	(1,039)	(1,010)	(1,005)	(979)	(999)
한국인배우자						
내가 혼자	24.2	35.1	29.5	9.3	21.3	20.9
내가 보다 많이	24.6	23.4	18.1	13.7	17.8	14.9
부부함께 결정	34.1	33.3	45.9	61.4	55.1	57.2
배우자가 보다 많이	10.3	4.3	3.3	12.5	3.5	4.1
배우자 혼자	6.8	3.9	3.2	3.1	2.3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76)	(946)	(908)	(905)	(895)	(9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경제문제가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문제(26.0%),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20.6%), 가사 및 육아부담(20.1%) 순으로 높았다. 평균은 경제문제 3.06점, 자녀문제 3.19점, 가사 및 육아부담 3.23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도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경제문제가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문제와 가사 및 육아부담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내부모·형제자매관계가 17.0%로 높아서 외국인 며느리와 고부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은 경제문제 3.01점, 자녀문제 3.19점, 가사 및 육아부담 3.27점, 내부모·형제자매관계가 3.42점으로 동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경제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 부모·형제자매 관계, 가사 및 육아부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2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갈등 정도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경제문제	자녀문제 (교육·생활 방식)	가사 및 육아부담	부부관계	내 부모·형제 자매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관계
결혼이민자						
매우 그럼	8.4	6.8	5.4	3.6	4.6	7.8
약간 그럼	22.3	19.2	14.7	8.9	8.3	12.8
보통	37.0	38.2	44.0	44.9	37.4	38.4
별로 그렇지 않음	20.5	22.1	23.5	27.5	24.7	20.9
전혀 그렇지 않음	11.9	13.6	12.4	15.1	25.0	2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469)	(982)	(1,005)	(1,029)	(1,033)	(1,043)
평균	3.06	3.19	3.23	3.41	3.57	3.33

주: 부부갈등정도는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표 5-24〉 계속

구분	경제문제	자녀문제 (교육·생활 방식)	가사 및 육아부담	부부관계	(단위: %, 명, 점)	
					내 부모·형제 자매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관계
한국인배우자						
매우 그렇	9.2	5.7	3.9	2.2	4.2	2.5
약간 그렇	23.7	18.8	15.1	9.3	12.8	8.6
보통	35.1	38.6	44.0	40.3	38.0	38.5
별로 그렇지 않음	20.8	24.7	24.2	30.3	26.5	28.1
전혀 그렇지 않음	11.1	12.2	12.8	17.8	18.5	2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42)	(887)	(889)	(936)	(935)	(932)
평균	3.01	3.19	3.27	3.52	3.42	3.59

주: 부부갈등정도는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족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농·어촌보다 자녀문제, 가사 및 육아부담, 부부관계, 내부모·형제자매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에 부부갈등이 높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경제문제에 대한 부부갈등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문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적별로는 경제문제와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은 일본, 태국, 필리핀, 중국(한민족) 순으로 높았다.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태국, 필리핀 등이 심각하였다. 부부관계로 인한 갈등은 태국이 심각한 편이었고, 부모·형제자매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은 필리핀, 일본 등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경제문제, 자녀문제,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태국, 필리핀, 부부관계는 태국, 부모·형제자매관계로 인한 갈등은 필리핀, 일본 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2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부부갈등 정도¹⁾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경제문제	자녀문제 (교육·생활 방식)	가사 및 육아부담	부부관계	내부모· 형제·자매 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 관계
전체	3.06	3.19	3.23	3.41	3.57	3.33
지역						
도시	3.06	3.12	3.17	3.38	3.58	3.29
농어촌	3.05	3.31	3.30	3.47	3.59	3.37
T값	.084	-2.614**	-1.889	-1.282	-.126	-1.126
결혼기간						
2년 미만	3.33	3.66	3.54	3.57	3.76	3.48
2~4년 미만	3.13	3.23	3.24	3.43	3.64	3.37
4~6년 미만	3.12	3.01	3.02	3.37	3.47	3.24
6년 이상	2.65	2.83	3.00	3.29	3.39	3.16
F값	18.485***	24.707***	14.340***	4.050**	5.834**	3.85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99	3.09	3.12	3.35	3.48	3.29
100~199만원	2.84	3.08	3.17	3.36	3.50	3.25
200~299만원	3.26	3.31	3.34	3.52	3.73	3.41
300만원 이상	3.50	3.55	3.42	3.61	3.68	3.54
F값	14.923***	5.958**	3.141*	2.905*	2.845*	2.403
국적						
중국	3.29	3.45	3.45	3.60	3.89	3.66
중국(한민족)	3.00	3.26	3.31	3.36	3.63	3.51
베트남	3.36	3.30	3.26	3.46	3.64	3.35
필리핀	2.78	2.93	2.99	3.35	3.30	3.05
일본	2.61	2.82	3.21	3.38	3.31	3.03
태국	2.75	2.86	2.95	2.97	3.47	3.28
몽골	3.22	3.53	3.32	3.57	3.65	3.42
기타 ²⁾	3.11	3.65	3.27	3.31	3.52	3.35
F값	10.528***	7.577***	3.327**	3.719**	5.563***	5.689***
(분석대상수)	(1,002)	(947)	(963)	(985)	(988)	(997)

주: 1) 부부갈등정도는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2) 기타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기타 등이 포함됨.

3)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편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족문제가 무엇인지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과 결혼기간별로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가족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구소득별로는 차이를 보여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이 높았다. 자녀문제, 가사 및 육아부담, 부부관계로 인한 갈등은 3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은 99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편이었다.

〈표 5-26〉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부부갈등 정도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경제문제	자녀문제 (교육·생활 방식)	가사 및 육아부담	부부관계	내부모· 형제·자매 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와의 관계
전체	3.01	3.19	3.27	3.52	3.42	3.59
지역						
도시	3.03	3.18	3.26	3.52	3.45	3.62
농어촌	2.97	3.20	3.27	3.52	3.39	3.57
T값	.772	-.287	-.175	.006	.847	.711
결혼기간						
2년 미만	3.09	3.39	3.41	3.57	3.48	3.67
2~4년 미만	3.00	3.17	3.23	3.51	3.46	3.63
4~6년 미만	3.06	3.08	3.34	3.60	3.44	3.64
6년 이상	2.93	3.11	3.18	3.52	3.37	3.51
F값	.924	3.805*	2.323	.347	.533	1.17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62	2.91	3.13	3.37	3.33	3.53
100~199만원	2.76	3.07	3.22	3.46	3.29	3.49
200~299만원	3.31	3.42	3.44	3.70	3.61	3.73
300만원 이상	3.35	3.31	3.30	3.60	3.53	3.67
F값	19.488***	7.309***	3.011*	4.016**	4.984**	3.039*
(분석대상수)	(904)	(849)	(852)	(897)	(897)	(893)

주: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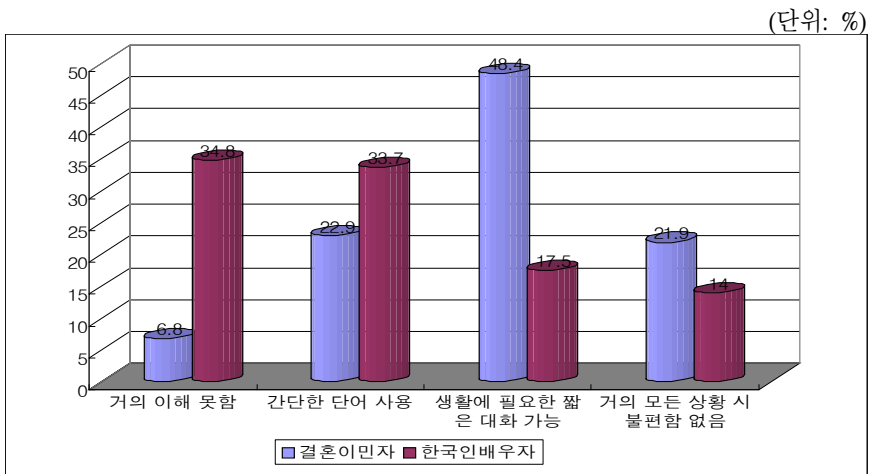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는 결혼기간, 가구소득, 국적에 따라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차이를 보인 반면, 한국인배우자의 경우는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결혼기간은 자녀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언어생활 및 본국인과 교제생활

결혼이민자의 한국말 실력을 보면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정도가 48.4%,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가 22.9%로 결혼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한국어 소통에 미숙함을 말해준다. 반대로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국가의 언어실력을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율은 51.2%로 과반수 정도이었고,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도 34.8%로 높았다. 이와 같이 언어생활의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부부간 또는 외국인 며느리와 고부간, 형제자매간에 갈등의 발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국가의 언어 실력 정도 비교



주: 결혼이민자(n=1,110), 한국인배우자(n=99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한국말 실력수준을 보면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기간별로는 한국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9.5%로 가장 높았고,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의 비율 또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34.4%로 높았다. 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는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38.2%로 가장 높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2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말 실력정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이해하지 못함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임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임	계(수)	χ^2
전체	6.8	22.9	48.4	21.9	100.0(1,110)	
지역						
도시	6.2	22.7	48.2	23.0	100.0(649)	2.870
농어촌	7.5	24.1	49.4	19.0	100.0(411)	
결혼기간						
2년 미만	9.5	34.4	47.2	8.9	100.0(326)	101.996 ***
2~4년 미만	5.5	21.5	54.6	18.4	100.0(293)	
4~6년 미만	5.3	17.4	47.7	29.5	100.0(132)	
6년 이상	4.9	14.2	42.7	38.2	100.0(267)	
국적						
중국	6.6	20.3	58.5	14.6	100.0(212)	241.319 ***
중국(한민족)	6.9	2.0	26.7	64.4	100.0(101)	
베트남	5.1	33.0	50.8	11.1	100.0(297)	
필리핀	14.1	31.2	47.6	7.1	100.0(170)	
일본	1.9	14.9	46.1	37.0	100.0(154)	
태국	5.5	21.9	57.5	15.1	100.0(73)	
몽골	4.8	15.9	34.9	44.4	100.0(63)	
기타 ¹⁾	16.2	24.3	43.2	16.2	100.0(37)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국적별로는 한국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은 기타 국가가 1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필리핀이 14.1%로 높았다. 간단한 단어를 말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비율은 베트남이 8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태국, 중국, 필리핀, 기타 국가, 일본, 몽골 등이었다. 한편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중국(한국동포)이 6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몽골 44.4%, 일본이 37.0%로 높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오래 될수록 결혼이민자의 한국말 실력수준은 높은 편이었고, 중국(한국동포), 몽골,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타 국가보다 한국말 실력이 높은 편이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공통적으로 부부간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나타났고 미미한 비율이나 영어, 본국어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화주의적 관점에 편중되어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언어와 문화생활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쌍방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와 주로 사용하는 언어 비교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영어	본국어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85.6	5.0	5.1	4.3	100.0(1,121)
한국인배우자	91.2	2.4	4.2	2.1	100.0(9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공통적으로 결혼이민자와 본국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와 가족이 좋아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즉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가족이 좋아한다는 비율이 41.9%이었고, 한국인배우자는 59.2%로 응답자의 과반수 내외 정도만이

외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0% 내외는 배우자가 본국인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태도까지 보여서 한국인배우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본국인과의 교제에 대한 배우자 태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본국 사람 만난 적 없음	본국사람을 만난 적 있음							계(수)
		매우 싫어함	약간 싫어함	그저 그럼	좋아 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관심 없는 편임	모르 겠음	
결혼이민자	2.3	5.2	5.4	37.0	25.2	16.7	4.4	3.8	100.0(1,117)
한국인배우자	1.1	1.6	6.7	25.3	47.35	11.7	4.6	1.5	100.0(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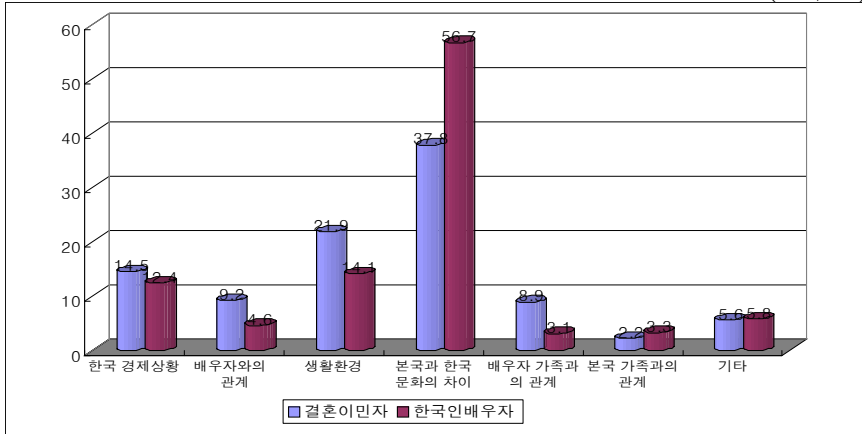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3) 결혼생활의 적응과 어려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기대한 것과 실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응답하였다. 또한 생활환경, 한국의 경제상황,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등도 결혼 전·후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전·후 가장 차이 나는 부분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110), 한국인배우자(n=99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결혼해서 적응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60.1%, 한국인배우자는 66.4%로 부부 모두 과반수 이상이 해당되었으며, 특히 6개월 미만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각각 33.9%, 37.7%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및 교육·훈련 등 적응력제고 프로그램이 조기에 투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3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후 적응까지 소요기간 비교

(단위: %,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계(수)
결혼이민자	33.9	26.2	19.4	11.9	8.6	100.0(1,072)
한국인배우자	37.7	28.7	21.0	8.6	4.0	100.0(9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이 결혼 후 적응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역, 연령, 교육 수준 및 결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결혼 후 적응하기까지 소요기간

(단위: %,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 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계(수)	χ^2
전체	33.9	26.2	19.4	11.9	8.6	100.0(1,072)	
지역							
도시	34.1	24.7	17.3	14.3	9.7	100.0(631)	12.808*
농·어촌	33.2	28.9	22.1	8.6	7.1	100.0(394)	
연령							
15~29	37.5	33.8	17.36	7.8	3.8	100.0(400)	76.413***
30~39	28.6	20.9	21.2	15.8	13.6	100.0(273)	
40~49	21.8	13.9	24.8	18.8	20.8	100.0(101)	
50대 이상	42.9	42.9	14.3	-	-	100.0(7)	
교육수준							
초등학교	54.5	30.3	9.1	3.0	3.0	100.0(33)	26.919**
중학교	38.0	27.2	18.5	9.8	6.5	100.0(92)	
고등학교	29.4	32.0	16.7	14.0	7.9	100.0(228)	
대학교 이상	29.5	20.0	23.6	14.5	12.3	100.0(220)	
결혼기간							
2년 미만	49.7	33.0	11.1	3.6	2.6	100.0(306)	201.698***
2~4년 미만	31.6	35.8	18.4	9.0	5.2	100.0(288)	
4~6년 미만	31.3	17.6	23.7	19.1	8.4	100.0(131)	
6년 이상	17.6	12.6	28.7	22.2	18.8	100.0(261)	

주: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2%이었고, 다음은 한국생활의 적응 부담감, 자녀문제 순으로 높았다. 또한 한국인배우자도 결혼이민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결혼이민자는 배우자가족과의 관계를, 한국인배우자는 경제적 측면을 결혼 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한국인배우자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겪는 어

려움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1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의 비자갱신·국적취득문제, 배우자 한국생활 지원 부담감, 이민자에 대한 편견·차별, 자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와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5-3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어려움 없음	4.9	11.5
어려움 있음	95.1	88.5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29.2)	(27.4)
(한국생활 적응 부담감)	(17.9)	(15.6)
(자녀문제)	(15.1)	(12.6)
(배우자와 본인가족간의 관계)	(2.7)	(6.2)
(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8.4)	(2.6)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2.7)	(6.2)
(본인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문제)	(1.7)	(3.6)
(경제적 측면(용돈, 생활비 등))	(6.3)	(8.8)
(취업관련 어려움)	(2.6)	(1.2)
(배우자와의 갈등)	(2.9)	(2.2)
(가사)	(1.3)	(0.4)
(본인 건강문제)	(1.6)	(1.0)
(기타)	(2.7)	(0.7)
계(수)	100.0(1,094)	100.0(9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결혼 후의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및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 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감이 16.9%로 높았다. 이외에 10% 미만이나 자녀문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등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2~4년 미

만인 경우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문제,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경제적인 측면, 배우자와 본인가족과의 관계 등이 결혼 후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4~6년 미만인 경우는 자녀문제가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순이었다.

〈표 5-3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0=어려움 없음 1=배우자와의 의사소통 2=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3=자녀문제 4=배우자와 본인가족간의 관계 5=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6=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7=본인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문제 8=경제적 측면 9=취업관련 어려움 10=배우자와의 갈등 11=가사 12=본인건강문제 13=기타														계(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전체	4.9	29.2	17.9	15.1	2.7	8.4	2.7	1.7	6.3	2.6	2.9	1.3	1.6	2.7	100.0 (1,094)
지역															
도시	4.8	29.3	19.4	16.0	2.3	7.1	2.6	1.6	5.0	3.0	3.6	0.9	1.2	3.1	100.0(644)
농·어촌	4.7	30.0	14.6	13.6	3.2	9.4	3.0	2.2	8.9	2.2	1.7	2.0	2.0	2.2	100.0(403)
χ^2	20.27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4	36.4	14.8	14.8	3.4	2.3	1.1	2.3	13.6	1.1	3.4	-	-	3.4	100.0(88)
100~199만원	4.5	29.6	17.5	15.3	2.3	8.0	1.8	2.0	7.3	2.5	2.8	1.5	2.5	2.5	100.0(399)
200~299만원	5.0	27.9	20.0	18.2	1.8	8.6	3.9	0.7	4.3	2.1	3.6	1.1	1.4	1.4	100.0(280)
300만원 이상	3.8	28.2	18.3	13.0	3.1	11.5	3.1	2.3	3.8	4.6	2.3	2.3	-	3.8	100.0(131)
χ^2	43.151														
결혼기간															
2년 미만	6.6	41.6	16.9	6.6	1.9	6.3	1.9	1.3	3.8	4.4	2.5	1.9	0.9	3.8	100.0(320)
2~4년 미만	3.8	32.1	14.3	15.0	4.4	7.2	2.7	2.7	7.2	1.7	2.7	0.7	3.8	1.7	100.0(293)
4~6년 미만	9.9	20.6	16.8	22.1	1.5	13.0	1.5	2.3	3.1	3.1	3.8	0.8	-	1.5	100.0(131)
6년 이상	1.5	16.2	20.8	21.5	2.3	10.8	4.2	1.2	11.5	1.2	3.5	1.5	1.2	2.7	100.0(260)
χ^2	140.232***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는 결혼 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문제가 21.5%로 가장 높았고,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감,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경제적측면, 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결혼초기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감, 자녀문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경제문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결혼 후의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소득 및 결혼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결혼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자녀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 어려움으로 나타난 반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도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결혼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17.3%로 높았다. 이외에 10% 미만이나 자녀문제, 배우자와 본인가족과의 관계, 경제적 측면 등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2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감, 경제적 측면, 자녀문제 등이 결혼 후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도 공통적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자녀문제 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10% 미만이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우자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문제, 경제적 측면 등도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도 10% 이상으로 적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모두 결혼기간별로 공통된 어려움을 응답하였으며, 특히 한국인배우자의 경우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우자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문제에 대해 주요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0=어려움 없음 1=배우자와의 의사소통 2=결혼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3=자녀문제 4=배우자와 본인가족간의 관계 5=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6=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7=배우자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문제 8=경제적 측면 9=취업관련 어려움 10=배우자와의 갈등 11=가사 12=본인건강문제 13=기타													계(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전체	11.5	27.4	15.6	12.6	6.2	2.6	6.2	3.6	8.8	1.2	2.2	0.4	1.0	0.7	100.0(975)
지역															
도시	12.5	25.0	16.4	14.1	5.0	2.9	6.8	3.4	8.8	1.1	2.0	0.7	0.9	0.5	100.0(560)
농·어촌	10.1	31.9	14.4	9.8	7.7	2.1	5.6	4.3	8.0	1.6	2.1	-	1.3	1.1	100.0(376)
χ^2	17.65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0	29.8	15.5	10.7	3.6	2.4	3.3	6.0	13.1	2.4	1.2	-	4.8	1.2	100.0(84)
100~199만원	8.6	30.1	13.8	13.8	5.7	2.3	5.2	4.0	12.0	1.1	1.7	-	1.1	0.6	100.0(349)
200~299만원	15.9	24.0	17.8	14.0	5.8	2.7	5.8	3.1	6.6	1.2	1.9	0.8	0.4	-	100.0(258)
300만원 이상	16.2	24.6	14.6	6.9	9.2	3.1	10.0	1.5	6.2	1.5	4.6	0.8	0.8	-	100.0(130)
χ^2	60.665*														
결혼기간															
2년 미만	9.5	38.8	17.3	5.1	7.1	2.0	5.4	2.4	8.2	1.0	0.7	0.7	0.7	1.0	100.0(294)
2~4년 미만	10.9	25.3	16.2	11.7	5.3	3.0	5.7	3.0	12.5	0.8	2.6	0.8	1.1	1.1	100.0(265)
4~6년 미만	15.6	22.1	12.3	18.9	4.9	0.8	5.7	8.2	5.7	1.6	4.1	-	-	-	100.0(122)
6년 이상	13.3	19.5	13.7	18.3	6.2	3.7	7.1	3.3	8.7	1.7	2.1	-	2.1	0.4	100.0(241)
χ^2	84.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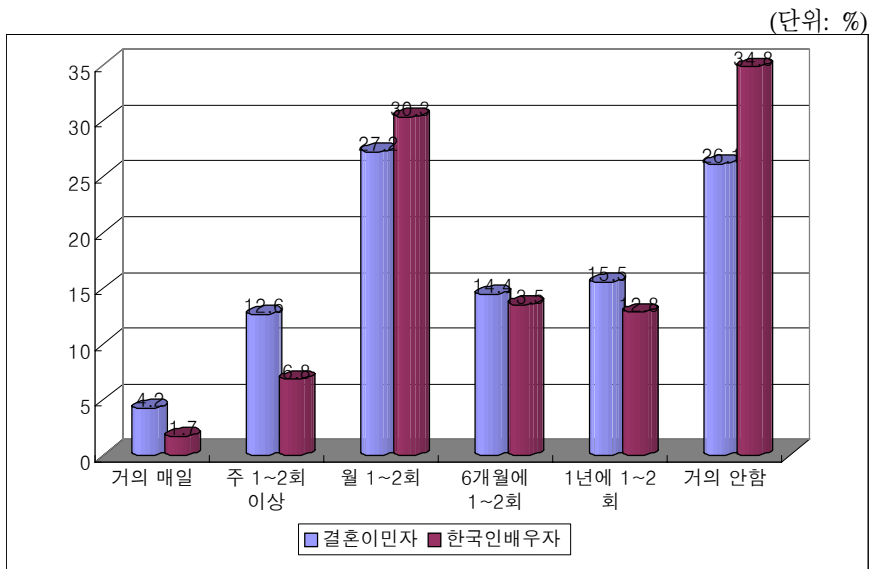
주: *** p <.001,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4) 부부폭력

부부싸움의 빈도는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결혼이민자는 26.1%, 한국인배우자는 34.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부부의 3분 2 이상은 부부싸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두 차례 싸우는 비율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각각 27.2%, 30.3%로 비교적 빈번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는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2.2%이었고, 나머지 47.8%는 부부싸움을 주기적으로 하였다. 특히 한 달에 한두 차례 싸우는 비율은 20.0%이었다. 2006년에 비해서 부부싸움을 주기적으로 하는 비율은 26.1포인트 높아졌고, 한 달에 한두 차례 싸우는 비율도 7.2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5-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싸움의 빈도 비교



주: 결혼이민자(n=1,047), 한국인배우자(n=99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부부싸움의 빈도를 보면 지역 및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 및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부부싸움의 빈도 분포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차례 이상	한달에 한두차례	6개월에 한두차례	1년에 한두차례	거의 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4.2	12.6	27.2	14.4	15.5	26.1	1000(1047)	
지역								
도시	4.4	13.5	27.3	15.0	14.3	25.5	100.0(608)	3.194
농·어촌	3.8	10.9	27.5	13.9	17.2	26.8	100.0(39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	11.0	34.1	15.9	17.1	20.7	100.0(82)	24.439
100~199만원	5.3	10.6	30.3	15.0	13.5	25.3	100.0(379)	
200~299만원	3.3	16.1	23.4	15.7	15.7	25.9	100.0(274)	
300만원 이상	5.6	12.0	18.4	10.4	21.6	32.0	100.0(125)	
교육수준								
초등학교	3.0	12.1	30.3	15.2	21.2	18.2	100.0(33)	29.758*
중학교	1.1	7.6	32.6	16.3	6.5	35.9	100.0(92)	
고등학교	3.9	13.4	29.9	16.5	13.4	22.9	100.0(231)	
대학교 이상	7.2	12.1	20.3	13.0	21.3	26.1	100.0(207)	
결혼기간								
2년 미만	3.3	11.6	25.6	12.0	9.0	38.5	100.0(301)	48.479***
2~4년 미만	4.5	13.4	29.9	15.5	16.2	20.6	100.0(291)	
4~6년 미만	5.6	15.2	25.6	17.6	16.0	20.0	100.0(125)	
6년 이상	3.6	13.4	25.1	14.6	22.7	20.6	100.0(247)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 부부싸움을 거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중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부싸움을 일주일 한두 차례 이상하는 비율은 중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부부싸움의 빈도는 일정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별로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대체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반면 부부싸움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하거나, 6개월에 한두 차례하는 경우는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부부싸움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부부싸움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부부싸움의 빈도를 보면 지역,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6〉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부부싸움의 빈도 분포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차례 이상	한달에 한두차례	6개월에 한두차례	1년에 한두차례	거의 하지 않음	계(수)
전체	1.7	6.8	30.3	13.5	12.8	34.8	100.0(990)
지역							
도시	1.8	7.6	28.9	14.1	12.9	34.7	100.0(567)
농·어촌	4.8	5.5	32.4	12.3	12.5	35.5	100.0(38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1	3.4	37.5	10.2	13.6	34.1	100.0(88)
100~199만원	1.7	6.6	31.1	14.0	13.1	33.6	100.0(351)
200~299만원	2.3	7.7	28.8	14.2	10.8	36.2	100.0(260)
300만원 이상	0.8	6.9	27.5	13.0	14.5	37.4	100.0(131)
교육수준							
초등학교	5.1	2.6	23.1	17.9	10.3	41.0	100.0(39)
중학교	5.7	7.5	24.5	13.2	15.1	34.0	100.0(53)
고등학교	1.3	8.5	32.2	14.0	14.0	30.0	100.0(307)
대학교 이상	1.2	6.5	29.8	11.9	15.5	35.1	100.0(168)
결혼기간							
2년 미만	2.0	9.1	27.2	12.1	7.7	41.9	100.0(298)
2~4년 미만	0.4	7.1	33.2	16.8	10.8	31.7	100.0(268)
4~6년 미만	2.4	6.3	32.5	11.9	8.7	38.1	100.0(126)
6년 이상	2.4	4.5	27.8	12.2	23.7	29.4	100.0(245)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기간별로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또한 부부싸움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하는 경우도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으며 나머지 경우는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싸움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서 주목된다.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와의 생활방식을 응답한 비율이 결혼이민자는 17.9%, 한국인배우자는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와 성격차이이었다. 이외에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음주 등 생활습관을 응답하였고, 한국인배우자는 생활비문제, 경제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부부간의 언어소통, 문화차이 등으로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서 동일 민족끼리 사는 가족보다 부부싸움이 발생할 요인이 많고 이는 가족해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부부싸움의 이유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가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와의 생활방식 차이, 생활비문제, 자녀의 교육·행동, 음주로 인한 늦은 퇴근 등이었다. 대체로 본연구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3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16.0	16.2
배우자와의 생활방식의 차이	17.9	33.1
생활비문제, 경제(돈)문제	13.3	14.7
자녀와의 교육 또는 행동	8.7	8.8
음주(또는 늦은 귀가)	15.2	9.3
부모와의 불화	7.3	4.9
나 또는 배우자의 외도	0.6	0.2
나의 취직문제	1.4	1.2
나의 본국가족에 대한 송금문제	7.5	2.4
기타	11.9	9.1
계(수)	100.0(1,148)	100.0(9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경험률을 폭력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에게 경험한 폭력유형은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히는 정서적인 폭력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신체적 폭력이 25.3%로 높았으며, 부부간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방임도 22.1%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빼앗는 인권침해 수준의 폭력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에게 받은 폭력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방임이 26.5%,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신체적 폭력이 22.4%,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히는 정서적 폭력이 20.3%이었고,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하는 폭력도 10.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폭력 경험비율은 2.7~27.9% 범위로 언어·정서적 폭력부터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성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폭력 유형별 경험률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힘	27.9	20.3
때리겠다고 위협함	14.6	11.6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침	25.3	22.4
세게 밀거나 벽으로 밀어붙임	12.2	8.0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음	11.1	9.8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	9.2	10.7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음	5.8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음	9.9	8.2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함	10.5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함	22.1	26.5
원하지 않은 때에 성행위를 강요함	7.0	6.6
원하지 않는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함	3.5	2.7
(분석대상수)	(1,038)	(9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로 부부 2쌍 중 한 쌍은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김승권 외, 2007)와 비교하면 2008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 폭력발생률은 38.8%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가 9% 포인트 높았다. 이는 폭력의 측정척도, 범위 그리고 조사대상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동 발생률은 지역, 결혼기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아내폭력발생이 높았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 학대는 도시지역에서 높았으나, 경제적 착취, 방임은 농·어촌 지역이 높았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 발생이 높았으며 동 비율은 경제적 착취를 제외한 모든 폭력유형에서 높았다.

〈표 5-39〉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폭력유형별 폭력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성학대	(분석 대상수)
전체	47.8	28.9	30.6	12.6	19.6	6.6	(1,157)
지역							
도시	48.6	30.6	30.3	11.9	19.5	7.0	(671)
농·어촌	46.4	26.0	30.2	12.5	19.7	5.3	(431)
연령							
15~29	43.3	24.8	29.5	13.6	18.0	4.4	(427)
30~39	51.6	33.1	31.7	11.1	22.0	9.4	(287)
40~49	57.1	42.0	26.8	12.5	22.3	5.4	(112)
50대 이상	33.3	11.1	11.1	11.1	-	-	(9)
교육수준							
초등학교	47.1	23.5	38.2	17.6	8.8	2.9	(34)
중학교	39.2	21.6	26.5	16.7	12.7	2.9	(102)
고등학교	53.9	34.6	32.5	14.0	23.9	6.2	(243)
대학교 이상	49.1	32.0	28.1	8.3	21.1	8.3	(228)
결혼기간							
2년 미만	36.6	19.9	24.7	10.4	14.9	4.8	(336)
2~4년만	50.8	26.1	33.9	16.3	20.8	5.5	(307)
4~6년만	50.4	34.8	34.1	14.8	22.2	9.6	(135)
6년 이상	58.9	42.2	33.8	12.4	22.9	9.1	(2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에 의한 한국인배우자 폭력발생률은 5.0%로 나타나서 결혼이민자 폭력발생률인 47.8%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배우자 폭력발생률은 지역 및 결혼기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배우자 폭력발생률은 농·어촌지역이 6.0%로 도시지역 4.1%보다 높았으며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등은 도시지역이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성 학대는 농·어촌지역에서 발생이 높았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인배우자 폭력 발생이 높았으며 폭력유형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5-40〉 한국인배우자의 특성 및 폭력유형별 폭력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성학대	(분석 대상수)
전체	5.0	24.1	30.7	8.2	26.5	6.8	(973)
지역							
도시	4.1	24.1	31.2	7.9	27.7	6.7	(577)
농·어촌	6.0	23.5	30.6	9.0	24.3	7.4	(396)
교육수준							
초등학교	0	25.0	26.5	8.8	18.8	9.4	(40)
중학교	6.1	34.0	28.6	16.3	40.8	12.2	(57)
고등학교	3.8	26.5	33.2	9.2	29.7	7.8	(312)
대학교 이상	3.1	20.9	26.4	3.7	25.9	3.1	(171)
결혼기간							
2년 미만	4.7	17.5	28.6	7.2	22.0	5.4	(302)
2~4년만	5.1	27.7	37.0	10.2	28.3	4.3	(271)
4~6년만	5.1	28.1	28.3	8.5	33.6	8.4	(126)
6년 이상	5.3	27.5	27.6	5.8	28.1	10.2	(2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부부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53.4%, 한국인배우자가 58.1%로 나타나서 부부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4.7%포인트 높았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부부 중에서 부부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혼이민자는 ‘그냥 참고 산다’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한국인배우자는 ‘말로 설득하여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부부폭력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배우자의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배우자를 설득하여 해결’한다가 1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싸워서 고친다’,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산다’,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폭력 경험시 ‘설득하거나 고친다’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은 17.0%로 선행연구결과인 18.9%보다 1.9%포인트 감소한데 반해 ‘참고 산다’ 등 소극적인 대응방식은 4.4배나 높아졌다.

〈표 5-4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부부폭력 경험시 대응형태 비교
(단위: %, 명)

구분	부부 폭력 경험 없음	부부폭력 경험 있음								계 (수)
		말로 설득 하여 해결	싸워서 고침	일단 파하고 봄	그냥 참고 삼	본국으 로 돌아감	별가· 이혼하 자고 함	상담전 화 1366 상담소 를 방문	기타	
결혼이민자	53.4	13.2	3.8	5.4	16.7	1.2	2.3	2.0	2.2	100.0(1,057)
한국인배우자	58.1	17.2	2.8	4.1	14.8	1.3	0.4	1.2	-	100.0(9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부부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중에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비율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다수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폭력 대응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중 언어 상담인력 확보, 동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5-4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주여성상담소 방문 및 상담전화 이용 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부부폭력 경험 없음	부부폭력 경험 있음			계(수)
		이주여성 상담소를 방문함	상담 전화를 이용함	상담서비스 를 이용한 적이 없음	
결혼이민자	53.4	4.5	2.7	35.4	100.0(1,066)
한국인배우자	58.1	5.2	1.7	35.0	100.0(9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방문상담 및 상담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부부 중에서 결혼이민자는 상담소 방문상담 및 상담전화 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각각 51.2%, 40.7%로 높았다.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상담소의 방문상담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40.7%이었고, 상담전화 이용은 동 비율이 66.6%로 높은 편이었으나 실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가 적다.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대응서비스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낮아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4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상담소 방문상담 및 상담전화 이용의 도움정도 비교¹⁾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이주여성 상담소 방문상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2.2	43.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9.8	12.5
보통	19.5	25.0
약간 도움이 됨	12.2	12.5
매우 도움이 됨	39.0	6.3
계(수)	100.0(41)	100.0(16)
상담전화 이용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4.8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11.1	-
보통	33.3	33.3
약간 도움이 됨	11.1	33.3
매우 도움이 됨	29.6	33.3
계(수)	100.0(27)	100.0(9)

주: 1) 부부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이주여성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거나 상담 전화를 이용한 경우만을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3. 취업 및 경제생활

가. 취업

1) 한국오기 전 취업여부 및 직종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취업여부를 보면 전체 72.1%가 취업 중이었으며,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약간 더 높았다.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의 본국에서의 취업률은 76.9%로 본 연구에서의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취업률이 높아 20대 이하는 63.6%이었으나 30대는 81.7%, 40대 이상은 8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중학교 이하 학력자는 65.9%이었으나 고등학교 학력자는 72.0%이었고, 대학교 이상은 79.4%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44〉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

(단위: %, 명)

구분	한국 오기 전 취업 여부			χ^2
	취업	비취업	계(수)	
전체	72.1	27.9	100.0(1,052)	
지역				
도시	71.3	28.7	100.0(648)	0.480
농·어촌	73.3	26.7	100.0(404)	
연령				
15~29세	63.6	36.4	100.0(404)	37.294***
30~39세	81.7	18.3	100.0(279)	
40세 이상	85.1	14.9	100.0(11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5.9	34.1	100.0(129)	7.936*
고등학교	72.0	28.0	100.0(239)	
대학교 이상	79.4	20.6	100.0(218)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한국에 오기 전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일본 결혼이민자로 90.8%가 취업한 경험이 있으며, 그 다음은 중국(한민족) 86.9%, 몽골 81.0%, 태국 78.1%, 중국 77.0%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45〉 결혼이민자 국적별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

(단위: %, 명)

구분	한국 오기 전 취업 여부			χ^2
	취업	비취업	계(수)	
전체	71.9	28.1	100.0(1,100)	97.816***
중국	77.0	23.0	100.0(213)	
중국(한민족)	86.9	13.1	100.0(99)	
베트남	53.8	46.2	100.0(303)	
필리핀	68.5	31.5	100.0(162)	
일본	90.8	9.2	100.0(153)	
태국	78.1	21.9	100.0(73)	
몽골	81.0	19.0	100.0(63)	
기타 ¹⁾	58.8	41.2	100.0(34)	

주: 1)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됨.

2)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 비취업 상태이었을 때는 전업주부 또는 학생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모두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농·어촌인 경우 더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전업주부 비율이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에 오기 전 취업여부별 현 취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에 취업했던 사람이 현재도 취업을 하는 비율은 22.0%이었으며, 현재 비취업중인 비율은 78.0%로 본국에서 취업경험자들이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었다. 설동훈 외(2006)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53.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8.6%), 한국말이 서툴러서(7.6%), 배우자나 그 가족의 반대로(5.6%),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4.9%)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과 자녀양육 부담과는 관련성이 높으며,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비취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6〉 한국 오기 전 비취업 시 상태

(단위: %, 명)						
구분	학생	전업주부	군인	실업자	기타	계(수)
전체	28.1	35.4	1.1	16.3	19.0	100.0(263)
지역 ¹⁾						
도시	30.1	33.7	0.0	16.9	19.3	100.0(166)
농·어촌	24.7	38.1	3.1	15.5	18.6	100.0(97)
연령 ¹⁾						
15~29세	24.8	37.6	1.5	17.3	18.8	100.0(133)
30~39세	20.0	35.6	0.0	24.4	20.0	100.0(45)
40세 이상	33.3	26.7	0.0	20.0	20.0	100.0(15)
교육수준 ¹⁾						
중학교 이하	5.0	45.0	2.5	17.5	20.0	100.0(40)
고등학교	21.1	33.3	0.0	22.8	22.8	100.0(57)
대학교이상	45.2	22.8	2.4	14.3	14.3	100.0(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47〉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별 현 취업여부

(단위: %, 명)			
과거 취업여부	현 취업 여부		
	취업	비취업	계(수)
전체	19.4	80.6	100.0(1,090)
취업	22.0	78.0	100.0(783)
비취업	12.7	87.3	100.0(307)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들 중 한국에 오기 전 취업경험자들의 취업직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무직 종사자였던 경우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종사자 18.6%, 단순노무종사자 및 기타 17.7%, 판매종사자 11.4% 등이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취업 직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자는 농·어촌지역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 관리자·전문가, 판매종사자, 기술공·준전문가 등이

높은 비율이었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서비스직 종사자, 농·임·어업,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았고,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서비스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관리직·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비율은 높아지고,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48〉 한국 오기 전 취업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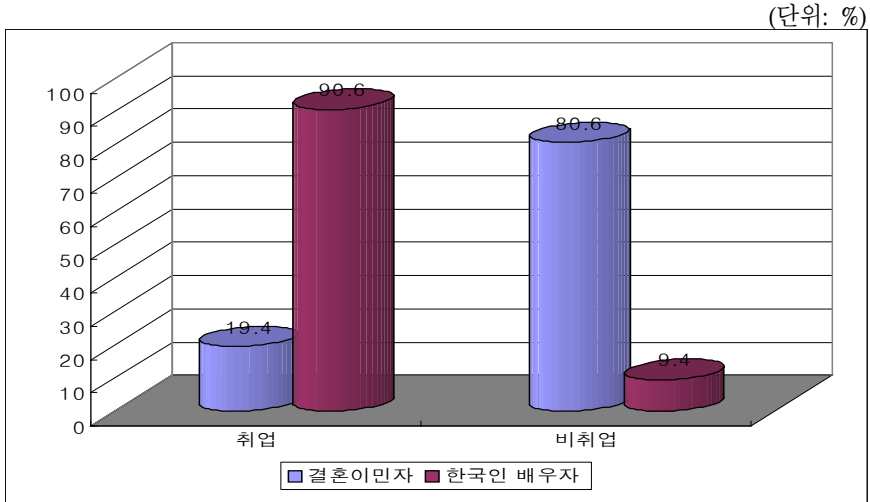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 전문가	기술 공·준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임· 어업	기능원 및 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 종사자 및 기타	계(수)	χ^2
전체	9.4	4.2	26.9	18.6	11.4	4.5	7.3	17.7	100.0(684)	
지역										
도시	11.8	4.5	29.2	16.3	12.0	3.5	6.6	16.0	100.0(424)	17.964
농·어촌	5.4	3.8	23.1	22.3	10.4	6.2	8.5	20.4	100.0(260)	*
연령										
15~29세	5.2	3.0	20.8	20.3	18.2	4.3	7.8	20.3	100.0(231)	45.854 ***
30~39세	10.6	5.3	32.2	16.8	10.6	5.3	5.3	13.9	100.0(208)	
40세 이상	18.2	4.5	38.6	12.5	1.1	2.3	8.0	14.8	100.0(8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2.6	15.4	20.5	14.1	9.0	11.5	25.6	100.0(78)	52.669 ***
고등학교	5.6	3.1	31.9	21.9	14.4	2.5	6.9	13.8	100.0(160)	
대학교이상	18.8	6.3	33.1	11.3	8.8	4.4	6.3	11.3	100.0(160)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2)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현 취업여부 및 직종

결혼이민자는 현재 19.4%가 취업중이나 한국인배우자는 90.6%가 취업중이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남성들로 구성된 한국인배우자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현 취업여부



주: 결혼이민자(n=1,090), 한국인배우자(n=99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 중 현 취업자는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48.8%).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는 결혼이민자와 동일하게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많았고,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57.1%).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자가 가장 많아 57.8%이었다.

〈표 5-4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				
도시	122	59.8	511	59.3
농·어촌	82	40.2	351	40.7
연령				
15~29세	63	37.7	13	1.9
30~39세	67	40.1	285	41.0
40세 이상	37	22.2	397	5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	15.2	80	14.3
고등학교	45	36.0	324	57.8
대학교이상	61	48.8	157	28.0
계	204	100.0	862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 중 현취업자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종사자 및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비스 종사자, 관리직 및 전문직 등의 순이었다. 한국인배우자도 단순노무직종사자 및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기능원·기계조작원, 농·임·어업, 기술공·준전문가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배우자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았다.

〈표 5-5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현 직종 분포

(단위: %, 명)

구분	관리자·전문가 ¹⁾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임·어업	기능원·기계조작원	단순노무종사자·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15.9	10.2	8.5	18.2	7.4	11.9	3.4	24.4	100.0(176)
한국인배우자	3.1	15.6	8.2	11.6	4.3	17.6	19.0	20.6	100.0(809)

주: 1) 관리자·전문가에는 컴퓨터관리자,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영양전문가,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행정전문가,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취업직종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단순노무직종사자 및 기타, 서비스 종사자, 관리직 및 전문직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으나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사자 및 기타, 농·임·어업, 관리직 및 전문직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지역별 직종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연령별과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5-5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현 직종 분포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임· 어업	기능원· 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 종사자 · 기타	계(수)	χ^2
결혼이민자 지역	15.9	10.2	8.5	18.2	7.4	11.9	3.4	24.4	100.0(176)	
도시	15.5	14.6	6.8	21.4	8.7	4.9	3.9	24.3	100.0(103)	18.040*
농·어촌	16.4	4.1	11.0	13.7	5.5	21.9	2.7	24.7	100.0(73)	
연령 ¹⁾										
15~29세	8.0	10.0	10.0	12.0	16.0	20.0	0.0	24.0	100.0(50)	26.974
30~39세	24.2	11.3	9.7	19.4	3.2	4.8	0.0	27.4	100.0(62)	
40세 이상	30.3	12.1	6.1	9.1	6.1	12.1	6.1	18.2	100.0(33)	
교육수준 ¹⁾										
중학교 이하	5.3	21.1	5.3	15.8	21.1	15.8	0.0	15.8	100.0(19)	20.088
고등학교	16.7	7.1	11.9	7.1	7.1	16.7	2.4	31.0	100.0(42)	
대학교 이상	33.3	13.0	3.7	14.8	7.4	5.6	1.9	20.4	100.0(54)	
한국인배우자 지역	3.0	15.3	8.0	11.5	4.5	17.9	19.2	20.7	100.0(777)	
도시	2.8	18.8	8.4	14.7	5.8	5.6	22.7	21.0	100.0(462)	128.037
농·어촌	3.2	10.2	7.3	6.7	2.5	35.9	14.0	20.3	100.0(315)	***
연령 ¹⁾										
15~29세	23.1	7.7	15.4	7.7	15.4	0.0	15.4	15.4	100.0(13)	29.892*
30~39세	3.8	14.2	10.0	13.8	3.5	13.8	19.2	21.5	100.0(260)	
40세 이상	2.5	15.1	6.7	10.4	5.0	19.0	21.0	20.2	100.0(35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16.9	0.0	18.3	1.4	19.7	15.5	25.4	100.0(71)	43.511
고등학교	2.1	13.0	5.5	13.0	4.5	17.5	21.6	22.9	100.0(292)	
대학교 이상	5.9	16.4	17.1	9.2	7.2	11.2	15.8	17.1	100.0(152)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는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기능원·기계장치 조작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지역은 농·임·어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았고, 기술공·준전문가와 농·임·어업 종사자와 기능원·기계조작용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및 기타의 비율이 각각 가장 높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비율이었다. 사무종사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으나 서비스 종사자와 농·임·어업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및 기타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근로자인 14.3%까지 합할 경우 44.6%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의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5-5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1.7	18.9	30.3	14.3	10.3	10.3	14.3	100.0(175)
한국인배우자	3.1	39.8	8.1	14.0	26.2	4.4	4.3	100.0(8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으며,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0대 이하보다는 30대 이상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영업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비율이 대학교 이상 학력자에게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는 고학력

으로 갈수록 높았다.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39.8%, 자영업자 26.2% 등이었고, 임시근로자 8.1%, 일용근로자 14.0%로 임시직 또는 일용직은 22.1%에 불과하였다.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고용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비율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더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표 5-53〉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중 현 취업자의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 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수)	χ^2
결혼이민자 지역	1.7	18.9	30.3	14.3	10.3	10.3	14.3	100.0(175)	
도시	2.0	16.0	39.0	15.0	6.0	6.0	16.0	100.0(100)	15.869*
농·어촌	1.3	22.7	18.7	13.3	16.0	16.0	12.0	100.0(75)	
연령 ¹⁾									
15~29세	1.8	12.5	32.1	14.3	10.7	16.1	12.5	100.0(56)	8.241
30~39세	1.9	20.4	37.0	11.1	9.3	3.7	16.7	100.0(54)	
40세 이상	0.0	20.0	28.6	20.0	8.6	11.4	11.4	100.0(35)	
교육수준 ¹⁾									
중학교이하	6.7	20.0	33.3	13.3	6.7	13.3	6.7	100.0(15)	10.010
고등학교	2.6	26.3	23.7	10.5	7.9	15.8	13.2	100.0(38)	
대학교이상	0.0	15.8	40.4	14.0	8.8	5.3	15.8	100.0(57)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53〉 계속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 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수)	χ^2
한국인배우자 지역	3.1	39.8	8.1	14.0	26.2	4.4	4.3	100.0(812)	
도시	3.7	47.2	8.4	15.7	19.6	1.8	3.5	100.0(489)	62.340
농·어촌	2.2	28.5	7.7	11.5	36.2	8.4	5.6	100.0(323)	***
연령									
15~29세	0.0	58.3	16.7	0.0	16.7	0.0	8.3	100.0(12)	
30~39세	3.7	46.2	7.0	12.1	23.1	5.5	2.6	100.0(273)	17.315
40세 이상	2.7	37.8	8.8	15.3	27.6	2.7	5.1	100.0(373)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4.0	32.0	10.7	18.7	24.0	6.7	4.0	100.0(75)	
고등학교	2.6	39.5	9.3	14.5	27.0	2.9	4.2	100.0(311)	14.771
대학교이상	4.0	51.0	5.4	10.7	23.5	2.7	2.7	100.0(149)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맞벌이 여부

전체적으로 한국인배우자만 취업중인 경우가 7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부부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는 19.6%이었으며, 결혼이민자만 취업 중인 경우 2.1%, 부부 모두 비취업 중인 경우도 7.3%나 되었다.

지역별로도 한국인배우자만 취업중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비율이 높았으며, 결혼이민자만 취업한 경우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다. 부부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모든 국적에서 한국인배우자만 취업한 경우에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80.1%). 맞벌이는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 부부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결혼이민자

만 취업한 경우는 중국(한민족)의 경우, 그리고 부부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일본인 결혼이민자 부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표 5-54〉 결혼이민자 부부의 맞벌이 여부

(단위: %, 명)

구분	맞벌이	한국인배우 자만 취업	결혼이민 자만 취업	부부모두 비취업	계(수)	χ^2
전체	19.6	70.9	2.1	7.3	100.0(980)	
지역						
도시	16.7	73.2	2.8	7.3	100.0(563)	6.727**
농·어촌	22.3	68.7	1.3	7.7	100.0(377)	
국적						
중국	20.0	73.5	0.5	5.9	100.0(185)	61.163***
중국(한민족)	26.4	57.1	8.8	7.7	100.0(91)	
베트남	13.5	80.1	0.4	6.0	100.0(267)	
필리핀	26.7	65.8	1.4	6.2	100.0(146)	
일본	20.3	67.7	3.0	9.0	100.0(133)	
태국	20.6	66.7	4.8	7.9	100.0(63)	
몽골	14.3	76.8	1.8	7.1	100.0(56)	
기타	17.1	57.1	2.9	22.9	10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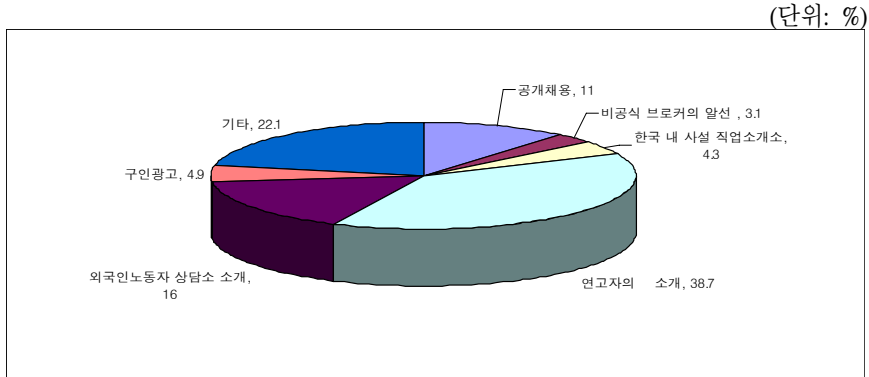
주: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4) 결혼이민자의 취업경로, 현 직장 취업 이유 및 평균 근무기간·시간

결혼이민자들의 현 직장의 취업경로를 보면, 친구·친지 등 연고자의 소개로 취업하는 경우(38.7%)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상담소개소를 통해 취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5-10] 결혼이민자의 현 직장 취업경로



주: 결혼이민자(n=1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들의 특성별 취업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은 연고자의 소개(41.0%),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소개(20.0%) 등의 순이었으나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연고자의 소개(34.9%), 공개채용(17.5%),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소개(9.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연고자의 소개에 의한 취업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연고자의 소개에 의한 취업의 비율은 낮아지며, 공개채용으로 인한 취업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55〉 결혼이민자 특성별 현 직장의 취업경로

(단위: %, 명)

구분	공개 채용	비공식 브로커 의 알선	한국 내 사설 직업소 개소	연고자 의 소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소개	구인 광고	기타	계(수)	χ^2
전체 지역 ¹⁾	11.0	3.1	4.3	38.7	16.0	4.9	22.1	100.0(163)	
도시	7.0	3.0	4.0	41.0	20.0	5.0	20.0	100.0(100)	7.429
농·어촌	17.5	3.2	4.8	34.9	9.5	4.8	25.4	100.0(63)	
연령 ¹⁾									
29세 이하	13.2	7.5	3.8	30.2	13.2	3.8	28.3	100.0(53)	11.757
30~39세	14.8	0.0	1.9	44.4	14.8	5.6	18.5	100.0(54)	
40세 이상	9.1	0.0	0.0	42.4	18.2	6.1	24.2	100.0(33)	
교육수준 ¹⁾									
중학교 이하	6.7	0.0	0.0	60.0	6.7	0.0	26.7	100.0(15)	9.289
고등학교	13.5	5.4	2.7	35.1	21.6	8.1	13.5	100.0(37)	
대학교 이상	16.1	3.6	1.8	37.5	12.5	3.6	25.0	100.0(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현 직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배우는 것이 많아서, 임금이 높아서, 여가시간이 많아서, 친구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등 다양하였다.

〈표 5-56〉 결혼이민자의 현 직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임금이 높아서	작업환경이 좋아서	여가시간 이 많아서	동료, 직장상사 마음에 들어서	친구,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배우는 것이 많아서	내가 선택할 여지 없었음	기타	계
전체	1	-	1	-	1	2	-	1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현 직장의 근무기간은 평균 24.59개월이었으며, 직종별로는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의 근무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외 기능원·기계조작원,

사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등의 순으로 평균 근무기간이 길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57〉 결혼이민자 현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5년 이상	계(名)	%	평균	F값
전체	44.8	17.5	13.3	11.9	12.6	100.0(143)		24.59	
관리자·전문가	42.9	25.0	7.1	7.1	17.9	100.0(28)		29.43	
기술공준전문가	66.7	13.3	6.7	13.3	0.0	100.0(15)		11.53	
사무종사자	30.8	0.0	30.8	23.1	15.4	100.0(13)		35.38	
서비스종사자	50.0	10.7	14.3	10.7	14.3	100.0(28)	34.881	23.89	1.870
판매종사자	22.2	44.4	22.2	0.0	11.1	100.0(9)		23.78	
농·임·어업	40.0	10.0	10.0	10.0	30.0	100.0(10)		42.90	
기능원·기계 조작원	16.7	0.0	33.3	16.7	33.3	100.0(6)		36.00	
단순노무종사자·기타	50.0	23.5	8.8	14.7	2.9	100.0(34)		16.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취업중인 결혼이민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10~29시간이 34.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5시간 이상인 경우도 20.9%나 되어 상당수의 결혼이민자들의 근무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26.38시간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이 38.5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36.18시간), 판매종사자(35.56시간), 농·임·어업(31.30시간)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직종별 평균 근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인배우자의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이 24.8%로 가장 많았으며, 45시간 이상은 49.1%로 취업자의 약 1/2은 근무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으로 보면,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43.76시간), 서비스 종사자(42.70시간), 단순노무종사자 (41.64시간), 판매종사자(40.27시간) 등이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경우 대체적으

로 한국인배우자의 근무시간이 결혼이민자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표 5-58〉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현 직종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10시간 미만	10~29 시간	30~44 시간	45~59 시간	60시간 이상	계(수)	χ^2	평균	F값
결혼이민자	27.5	34.2	17.5	11.7	9.2	100.0(120)		26.38	
관리자·전문가	32.0	40.0	16.0	8.0	4.0	100.0(25)		20.48	
기술공·준전문가	28.6	57.1	7.1	7.1	0.0	100.0(14)		18.50	
사무종사자	18.2	18.2	27.3	27.3	9.1	100.0(11)		36.18	
서비스종사자	26.3	36.8	15.8	10.5	10.5	100.0(19)	24.305	26.53	1.484
판매종사자	33.3	0.0	33.3	11.1	22.2	100.0(9)		35.56	
농·임·어업	40.0	20.0	10.0	10.0	20.0	100.0(10)		31.30	
기능원·기계 조작원	0.0	25.0	50.0	25.0	0.0	100.0(4)		38.50	
단순노무종사자·기타	25.0	39.3	14.3	10.7	10.7	100.0(28)		25.18	
한국인배우자	13.1	19.8	18.0	24.3	24.8	100.0(666)		39.68	
관리자·전문가	9.1	18.2	31.8	31.8	9.1	100.0(22)		37.91	
기술공·준전문가	15.5	20.0	13.6	30.9	20.0	100.0(110)		37.69	
사무종사자	16.4	18.0	36.1	23.0	6.6	100.0(61)		33.74	
서비스종사자	12.3	24.7	11.1	13.6	38.3	100.0(81)	65.947	42.70	2.513**
판매종사자	6.7	33.3	6.7	20.0	33.3	100.0(30)	***	40.27	
농·임·어업	21.7	21.7	20.5	19.3	16.9	100.0(83)		33.67	
기능원·기계 조작원	7.7	16.2	19.0	27.5	29.6	100.0(142)		43.76	
단순노무종사자·기타	12.4	17.5	15.3	25.5	29.2	100.0(137)		41.64	

주: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5)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및 만족도

결혼이민자 중 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보면, 전체 약 80만원 정도이었으나 50~99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200만원 이상은 4.9%에 불과하였다. 직종별 평균 임금수준을 보면,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이 11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

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종별 평균 임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59〉 결혼이민자의 현 직종별 월 평균 임금 분포

(단위: %, 명, 만원)

구분	50만원 미만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계(수)	%	평균 임금	F값
전체	14.6	59.2	19.4	1.9	4.9	100.0(103)		79.91	
관리자·전문가	25.0	50.0	15.0	0.0	10.0	100.0(20)		76.95	
기술공·준전문가	23.1	69.2	7.7	0.0	0.0	100.0(13)		61.08	
사무종사자	7.7	53.8	30.8	7.7	0.0	100.0(13)		90.15	
서비스종사자	0.0	75.0	18.8	6.3	0.0	100.0(16)	23.032	80.81	1.470
판매종사자	14.3	42.9	28.6	0.0	14.3	100.0(7)		109.43	
농·임·어업	0.0	75.0	25.0	0.0	0.0	100.0(4)		65.00	
기능원·기계 조작원	0.0	60.0	20.0	0.0	20.0	100.0(5)		118.00	
단순노무종사자·기타	20.0	56.0	20.0	0.0	4.0	100.0(25)		72.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월평균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100~199만원이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월 평균임금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199만원 이하의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지역의 비율이 높은 반면, 200만원 이상은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199만원 이하의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종사자, 농·임·어업, 단순노무종사자는 199만원 이하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농·임·어업, 단순노무종사자는 70% 이상이 199만원 이하이었다.

평균 임금은 전체 189만원으로 결혼이민자의 79.9만원 보다 약 11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임금수준은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관리자·전문가가 224.3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임·어업(143.18만원)이 가장 적었다.

〈표 5-60〉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월 평균 임금 분포

(단위: %, 명, 만원)

구분	99만원 이하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χ^2	평균 임금	F값 (t값)
전체	7.3	48.2	30.5	14.0	100.0(681)		189.00	
지역								
도시	5.5	45.2	34.1	15.2	100.0(434)	13.908	197.69	(3.338
농·어촌	10.5	53.4	24.3	11.7	100.0(247)	*	173.11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2	58.6	17.2	6.9	100.0(58)	27.908	152.67	
고등학교	4.2	54.0	26.8	14.9	100.0(261)	***	189.92	7.250**
대학교 이상	6.8	37.9	38.6	16.7	100.0(132)		203.16	
직종								
관리자·전문가	4.3	43.5	39.1	13.0	100.0(23)		224.35	
기술공·준전문가	2.7	44.6	36.6	16.1	100.0(112)		201.31	
사무종사자	3.3	39.3	27.9	29.5	100.0(61)		218.36	
서비스종사자	8.4	50.6	28.9	12.0	100.0(83)	69.541	181.04	4.976
판매종사자	14.8	29.6	33.3	22.2	100.0(27)	***	203.33	***
농·임·어업	19.4	51.6	22.6	6.5	100.0(62)		143.18	
기능원·기계 조작원	2.8	43.1	43.1	11.1	100.0(144)		196.87	
단순노무종사자·기타	8.6	62.1	17.9	11.4	100.0(140)		174.51	

주: ***p <.001, **p <.01,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의 임금수준이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비슷한 모국 출신 친구와 비교한 경우, 전체적으로 약 40% 이상이 매우 또는 약간 낮은 편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한국인배우자의 경우에도 39.2%가 (매우)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5-6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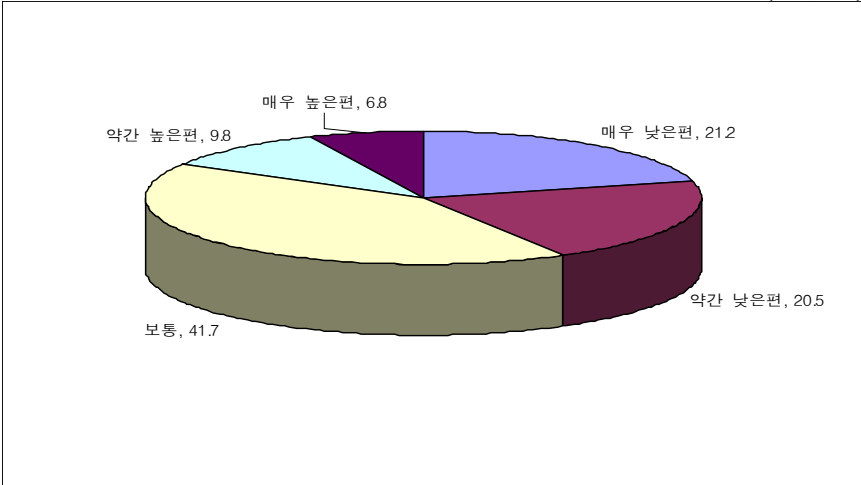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매우 낮은 편	약간 낮은 편	보통	약간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수)
결혼이민자	21.2	20.5	41.7	9.8	6.8	100.0(132)
한국인배우자	20.3	18.9	44.1	10.5	6.3	100.0(1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5-11] 결혼이민자 모국출신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비슷한 모국 출신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37.8%가 경력이 비슷한 모국의 친구와 비교하여 월 평균 임금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48.0%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농·어촌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경력이 비슷한 모국의 친구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도 고학력층이 경력이 비슷한 모국의 친구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62〉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비슷한 모국 출신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낮은 편	약간 낮은 편	보통	약간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수)	χ^2
전체	21.2	20.5	41.7	9.8	6.8	100.0(132)	
지역 ¹⁾							
도시	20.7	17.1	45.1	8.5	8.5	100.0(82)	3.170
농·어촌	22.0	26.0	36.0	12.0	4.0	100.0(50)	
연령 ¹⁾							
29세 이하	27.0	27.0	40.5	2.7	2.7	100.0(37)	11.993
30~39세	16.0	12.0	52.0	16.0	4.0	100.0(50)	
40세 이상	26.9	19.2	34.6	7.7	11.5	100.0(26)	
교육수준 ¹⁾							
중학교 이하	20.0	10.0	60.0	10.0	0.0	100.0(10)	10.090
고등학교	9.1	27.3	54.5	6.1	3.0	100.0(33)	
대학교이상	27.7	12.8	38.3	12.8	8.5	100.0(47)	

주: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통계분석을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친구와의 비교에서 매우 또는 약간 낮은 편이라는 비율이 42.0%이었으나 농·어촌지역에서는 44.4%로 도시지역보다 약간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친구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63〉 한국인배우자의 일한 경력이 비슷한 친구와의 월 평균 임금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낮은 편	약간 낮은 편	보통	약간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수)	χ^2
전체 ¹⁾	18.8	24.2	49.1	7.0	0.9	100.0(757)	
지역							
도시	17.4	24.6	48.8	8.3	0.8	100.0(471)	4.328
농·어촌	21.0	23.4	49.7	4.9	1.0	100.0(286)	
연령							
29세 이하	25.0	25.0	50.0	0.0	0.0	100.0(12)	5.024
30~39세	16.9	22.3	50.4	8.8	1.5	100.0(260)	
40세 이상	21.6	24.7	44.8	8.0	0.9	100.0(34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6	23.6	37.5	8.3	0.0	100.0(72)	10.941
고등학교	18.0	27.7	46.0	7.6	0.7	100.0(289)	
대학교이상	20.3	20.3	49.7	7.7	2.1	100.0(143)	

주: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통계분석을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월평균 임금에 대해 결혼이민자는 34.1%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었으며, 한국인배우자는 53.6%가 불만족하다는 비율을 나타내 결혼이민자 보다 한국인배우자가 불만족 비율이 19.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6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수)
결혼이민자	14.6	19.5	46.3	12.2	7.3	100.0(123)
한국인배우자	19.8	33.8	37.6	7.8	1.0	100.0(7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월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약간) 만족한다는 비율은 농·어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

족한다는 비율 역시 농·어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저 연령층일수록 임금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65〉 결혼이민자 특성별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名)	χ^2
전체	14.6	19.5	46.3	12.2	7.3	100.0(123)	
지역							
도시	14.7	21.3	42.7	13.3	8.0	100.0(75)	1.214
농·어촌	14.6	16.7	52.1	10.4	6.3	100.0(48)	
연령 ¹⁾							
29세 이하	22.2	22.2	41.7	8.3	5.6	100.0(36)	3.832
30~39세	10.9	23.9	45.7	10.9	8.7	100.0(46)	
40세 이상	15.4	15.4	50.0	15.4	3.8	100.0(26)	
교육수준 ¹⁾							
중학교 이하	25.0	12.5	62.5	0.0	0.0	100.0(8)	5.749
고등학교	18.8	21.9	46.9	6.3	6.3	100.0(32)	
대학교 이상	10.9	19.6	43.5	15.2	10.9	100.0(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월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약간) 만족한다는 비율은 농·어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 역시 농·어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저 연령층일수록 임금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66〉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¹⁾	19.8	33.8	37.6	7.8	1.0	100.0(707)	
지역							
도시	19.8	33.4	37.0	8.6	1.1	100.0(440)	1.150
농·어촌	19.9	34.5	38.6	6.4	0.7	100.0(267)	
연령							
29세 이하	25.0	33.3	41.7	0.0	0.0	100.0(12)	4.995
30~39세	17.6	32.2	39.2	9.8	1.2	100.0(245)	
40세 이상	21.9	35.5	33.6	8.0	0.9	100.0(3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3	33.8	26.2	7.7	0.0	100.0(65)	9.181
고등학교	20.7	34.9	35.3	8.4	0.7	100.0(275)	
대학교이상	16.3	34.1	40.3	7.8	1.6	100.0(1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6)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

결혼이민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에 대해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에게 각각 질문한 결과, 모두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인배우자가 응답한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찬성비율과 결혼이민자가 응답한 한국인배우자의 찬성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67〉 결혼이민자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적극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대체로 찬성	적극적으로 찬성	계(수)
결혼이민자	4.7	5.3	22.0	39.3	28.7	100.0(150)
한국인배우자	5.2	10.9	16.1	42.0	25.9	100.0(1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은 결혼이민자의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를 결혼이민자가 응답한 결과이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볼 때, 지역별로는 찬성은 농·어촌지역이, 그리고 반대는 도시지역에서 높았고, 연령별로는 찬성은 40대 이상에서, 반대는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68〉 결혼이민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 결혼이민자 응답
(단위: %, 명)

구분	적극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대체로 찬성	적극적 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4.7	5.3	22.0	39.3	28.7	100.0(150)	
지역							
도시	5.3	6.3	22.1	40.0	26.3	100.0(95)	1.197
농·어촌	3.6	3.6	21.8	38.2	32.7	100.0(55)	
연령							
29세 이하	2.2	6.7	13.3	42.2	35.6	100.0(45)	6.154
30~39세	7.5	5.7	18.9	41.5	26.4	100.0(53)	
40세 이상	3.2	0.0	9.7	51.6	35.5	100.0(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음 <표 5-69>은 결혼이민자의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를 한국인배우자가 응답한 결과이다. 지역별로는 찬성과 반대 모두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서 높은 비율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찬성은 20대에서, 반대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69〉 결혼이민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 한국인 배우자 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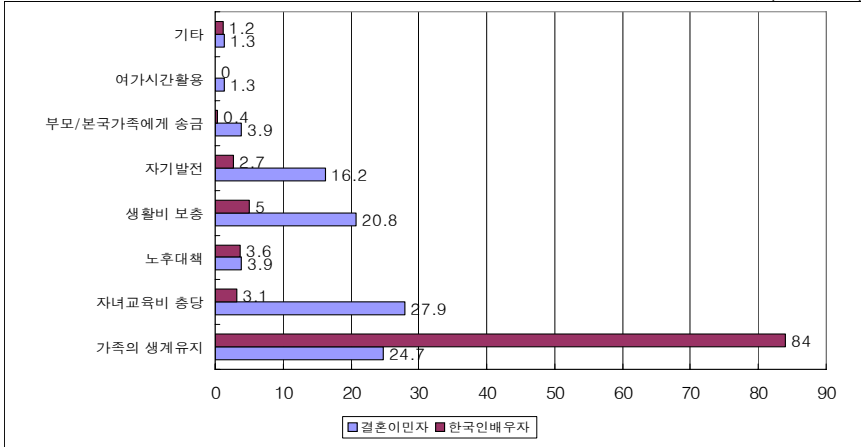
구분	적극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대체로 찬성	적극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5.2	10.9	16.1	42.0	25.9	100.0(174)	
지역							
도시	4.1	10.3	19.6	38.1	27.8	100.0(97)	3.294
농·어촌	6.5	11.7	11.7	46.8	23.4	100.0(77)	
연령 ¹⁾							
29세 이하	0.0	0.0	0.0	33.3	66.7	100.0(3)	6.093
30~39세	2.1	12.5	18.8	37.5	29.2	100.0(48)	
40세 이상	4.5	6.8	17.0	48.9	22.7	100.0(8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7) 결혼이민자의 취업이유 및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반대하는 배우자가 많음에도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비 충당이 27.9%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생계유지(24.7%), 생활비 보충(20.8%) 등 생계와 관련된 이유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한국인배우자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가족의 생계유지로 84.0%이었으며, 생활비 보충까지 포함할 경우 89.0%가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54), 한국인배우자(n=8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자녀교육비 충당이, 40대 이상은 가족의 생계유지가 취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었다.

〈표 5-7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가족의 생계유지	자녀 교육비 충당	노후 대책	생활비 보충	자기 발전	본국 가족에게 송금	여가 시간 활용	기타	계(수)	χ^2
전체 ¹⁾	24.7	27.9	3.9	20.8	16.2	3.9	1.3	1.3	100.0(154)	
지역										
도시	24.7	29.9	3.1	23.7	11.3	3.1	2.1	2.1	100.0(97)	8.535
농·어촌	24.6	24.6	5.3	15.8	24.6	5.3	0.0	0.0	100.0(57)	
연령										
29세 이하	22.2	26.7	4.4	24.4	13.3	4.4	2.2	2.2	100.0(45)	15.280
30~39세	21.8	29.1	0.0	21.8	23.6	0.0	1.8	1.8	100.0(55)	
40세 이상	36.7	26.7	6.7	20.0	3.3	6.7	0.0	0.0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자녀교육비 충당,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의 순이었으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비 충당, 자기발전이 동일한 비율(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보다 노후 대책과 본국 가족 송금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가 취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가족의 생계유지가 주를 이루나 특히 도시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체 연령층에서 가족의 생계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30대에서 높은 비율이었다. 이외에 자녀교육비 충당은 고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생활비 보충과 자기발전은 저 연령층일수록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71〉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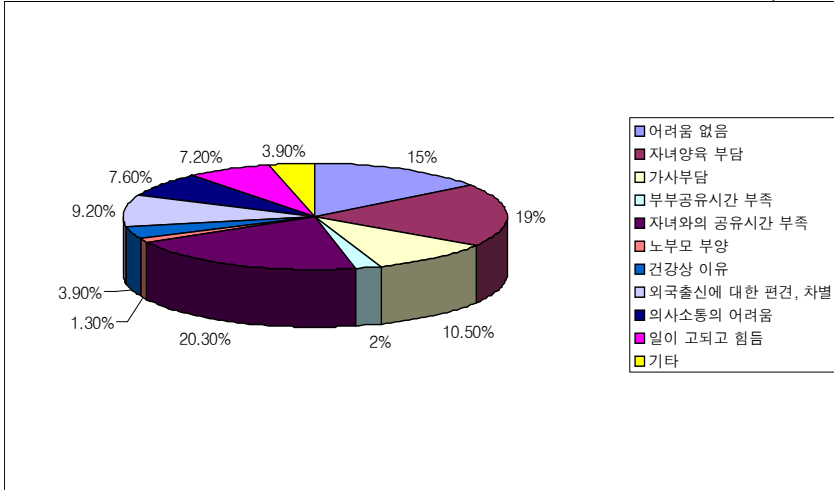
구분	가족의 생계 유지	자녀 교육비 충당	노후 대책	생활비 보충	자기 발전	부모/본국 가족에게 송금	여가 시간 활용	기타	계(名)	χ^2
전체	84.0	3.1	3.6	5.0	2.7	0.4	-	1.2	100.0(838)	
지역										
도시	87.1	3.4	2.8	3.6	2.2	0.6	-	0.4	100.0(505)	19.619
농·어촌	79.3	2.7	4.8	7.2	3.6	0.0	-	2.4	100.0(333)	
연령										
29세 이하	76.9	0.0	0.0	15.4	7.7	0.0	-	0.0	100.0(13)	13.895
30~39세	86.3	1.1	4.0	4.7	2.0	0.4	-	0.7	100.0(278)	
40세 이상	83.9	4.7	3.6	4.4	1.8	0.5	-	1.0	100.0(3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와의 공유 시간 부족과 자녀양육 부담, 가사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배우자는 낮은 임금수준, 일이 고되고 힘들, 자녀양육 부담, 장시간의 노동 시간 등의 순이었다.

[그림 5-13]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7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구분	한국인배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어려움 없음	23	15.0	어려움 없음	151	18.6
자녀양육 부담	29	19.0	자녀양육 부담	128	15.8
가사부담	16	10.5	가사부담	27	3.3
부부공유시간 부족	3	2.0	장시간의 노동시간	91	11.3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31	20.3	일이 고되고 힘들	140	17.3
노부모 부양	2	1.3	낮은 임금수준	163	20.1
건강상 이유	6	3.9	직장상사, 동료와의 갈등	23	2.8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 차별	14	9.2	임금채불	12	1.5
의사소통의 어려움	12	7.6	작업환경 열악	43	5.3
일이 고되고 힘들	11	7.2	기타	33	4.1
기타	6	3.9	-	-	-
계	153	100.0	계	811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 도시지역에서는 자녀양육 부담,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차별, 가사부담을,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가사부담, 일이 고되고 힘든 것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자녀양육 부담,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이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차별과 일이 고되고 힘들다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30대는 자녀양육 부담,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가사부담,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고, 40대 이상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가사부담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표 5-73〉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연령		
		도시	농·어촌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결혼이민자 ¹⁾						
어려움 없음	15.0	14.3	16.4	15.9	14.5	19.4
자녀양육 부담	19.0	21.4	14.5	18.2	20.0	19.4
가사부담	10.5	9.2	12.7	6.8	10.9	9.7
부부공유시간 부족	2.0	3.1	0.0	6.8	3.6	3.2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20.3	19.4	21.8	18.2	12.7	29.0
노부모 부양	1.3	2.0	0.0	-	-	-
건강상 이유	3.9	6.1	0.0	2.3	3.6	6.5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 차별	9.2	10.2	7.3	11.4	10.9	6.5
의사소통의 어려움	7.6	6.1	10.9	9.1	10.9	6.5
일이 고되고 힘들	7.2	4.1	12.7	11.4	3.6	0.0
기타	3.9	4.1	3.6	0.0	9.1	0.0
계(수)	100.0(153)	100.0(98)	100.0(55)	100.0(44)	100.0(55)	100.0(31)
χ^2		12.721		17.8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73〉 계속

구분	전체	지역		연령		
		도시	농·어촌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한국인배우자						
어려움 없음	18.6	16.5	21.9	15.4	21.8	16.2
자녀양육 부담	15.8	16.5	14.7	7.7	12.9	19.2
가사부담	3.3	3.5	3.1	7.7	3.0	3.2
장시간의 노동시간	11.3	13.6	7.5	15.4	13.7	8.6
일이 고되고 힘들	17.3	17.3	17.2	30.8	16.2	18.9
낮은 임금수준	20.1	19.6	20.9	23.1	19.6	20.5
직장상사, 동료와의 갈등	2.8	2.4	3.4	0.0	2.6	2.2
임금채불	1.5	1.8	0.9	0.0	1.5	1.6
작업환경 열악	5.3	4.7	6.3	0.0	5.2	5.7
기타	4.1	4.1	4.1	0.0	3.7	3.8
계(수)	100.0(811)	100.0(491)	100.0(320)	100.0(13)	100.0(271)	100.0(370)
χ^2		12.806		15.6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시지역에서는 낮은 임금수준, 일이 고되고 힘들, 자녀양육 부담, 장시간 노동 등을 지적하였고, 농·어촌지역에서도 동일한 항목을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제1순위에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병, 낮은 임금수준 등을, 그리고 제2순위로 는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차별대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 5-74〉 결혼이민자가 직장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단위: 명)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심각한 문제없음	3	2
장시간 노동	1	1
열악한 작업환경	1	-
직업병	1	-
임금체불	-	-
낮은 임금수준	1	1
한국인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	-
사업장에서의 욕설, 폭행, 몸수색	-	-
여권압류	-	-
성희롱, 성폭행	-	-
차별대우	-	1
기타	1	1
계	8	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8) 결혼이민자의 전직의향, 전직 희망 이유 및 희망 직종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경우 전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32.9%는 전직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59.6%는 대체로 옮기고 싶다거나 반드시 옮긴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옮길 의향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농·어촌지역은 대체로 옮기고 싶다거나 반드시 옮긴다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직종별로는 기술공·준전문가, 농·임·어업 등은 대체로 옮기고 싶거나 반드시 옮긴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전직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7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경우 전직 의향
(단위: %, 명)

구분	옮길 의향 전혀 없음	대체로 옮기고 싶음	반드시 옮김	기타	계(수)	χ^2
전체	32.9	40.4	19.2	7.5	100.0(146)	
지역						
도시	34.1	40.9	18.2	6.8	100.0(88)	0.378
농·어촌	31.0	39.7	20.7	8.6	100.0(58)	
직종 ¹⁾						
관리자·전문가	41.4	37.9	20.7	0.0	100.0(29)	30.522
기술공·준전문가	16.7	75.0	8.3	0.0	100.0(12)	
사무종사자	15.4	38.5	30.8	15.4	100.0(13)	
서비스종사자	43.5	21.7	21.7	13.0	100.0(23)	
판매종사자	23.1	46.2	23.1	7.7	100.0(13)	
농·임·어업	16.7	50.0	33.3	0.0	100.0(12)	
기능원·기계조작원	50.0	0.0	0.0	50.0	100.0(2)	
단순노무종사자·기타	47.4	31.6	10.5	10.5	100.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전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 일이 너무 힘들어, 전 직장에서의 임금체불,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등이었다.

〈표 5-76〉 결혼이민자의 전직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65.9	62.0	71.4
이전 직장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12.9	12.0	14.3
이전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3.5	4.0	2.9
이전 직장에서 계약상의 기준보다 적게 주었기 때문에	-	-	-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였기 때문에	4.7	2.0	8.6
기타	12.9	20.0	2.9
계(수)	100.0(85)	100.0(50)	100.0(55)
χ^2		7.002*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이전 직장에서의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애가 약간 높은 비율이었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전 직장에서의 임금체불 등의 비율이 더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직의향이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관리자·전문가 직종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의 순으로 희망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은 농·어촌지역보다 희망하는 직종이 많았으며,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판매종사자, 농·임·어업,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관리자·전문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종사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희망직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77〉 결혼이민자의 전직의향이 있을 경우 희망 직종

(단위: %, 명)

구분	희망직종								계(수)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임· 어업	기능원· 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¹⁾	35.2	4.2	12.7	12.7	5.6	2.8	2.8	23.9	100.0(71)
지역									
도시	37.2	4.7	14.0	18.6	4.7	0.0	4.7	16.3	100.0(43)
농·어촌	32.1	3.6	10.7	3.6	7.1	7.1	0.0	35.7	100.0(28)
χ^2	10.942								
연령									
29세 이하	30.8	0.0	3.8	15.4	11.5	7.7	3.8	26.9	100.0(26)
30~39세	33.3	9.5	23.8	9.5	0.0	0.0	4.8	19.0	100.0(21)
40세 이상	42.9	4.8	14.3	9.5	4.8	0.0	0.0	23.8	100.0(21)
χ^2	13.9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9) 비취업자의 향후 취업의향 및 희망직종

결혼이민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66.5%가 향후 취업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인배우자 중 비취업자의 78.3%가 향후 취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결혼이민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78〉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중 현 비취업자의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구분	향후 취업의향		
	취업	비취업	계(수)
결혼이민자	66.5	33.5	100.0(843)
한국인배우자	78.3	21.7	100.0(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비취업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희망여부를 살펴본 결과, 도시, 농·어촌 모두 66~67% 이상이 취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저 연령층일수록 향후 취업의향이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79〉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현 비취업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구분	향후 취업의향			χ^2
	취업	비취업	계(수)	
결혼이민자	66.5	33.5	100.0(843)	.166
지역 ¹⁾				
도시	66.0	34.0	100.0(518)	
농·어촌	67.4	32.6	100.0(325)	6.270*
연령				
29세 이하	69.1	30.9	100.0(349)	
30~39세	68.4	31.6	100.0(206)	
40세 이상	54.5	45.5	100.0(77)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79〉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현 비취업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구분	향후 취업의향			χ^2
	취업	비취업	계(수)	
한국인배우자	78.3	21.7	100.0(83)	1.635
지역				
도시	74.1	25.9	100.0(54)	
농·어촌	86.2	13.8	100.0(29)	5.236
연령 ¹⁾				
29세 이하	0.0	100.0	100.0(1)	
30~39세	76.2	23.8	100.0(21)	
40세 이상	85.7	14.3	100.0(42)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비취업중인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취업의향이 더 높았으며,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취업의향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향후 취업의향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등을 희망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관리자·전문직,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기계조작원 등에서 높은 비율이었고 농·어촌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희망직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는 단순노무종사자 및 기타 직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한국인배우자는 농·어촌지역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기타 등이 높은 비율이었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기술공·준전문가, 판매종사자, 농·임·어업,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는 40대보다 관리자·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기

능원 및 기계조작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향후 희망직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80〉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희망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 준 전문가	사무 종사 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임 · 어업	기능원 및 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 종사자 · 기타	계(수)	χ^2
결혼이민자 지역	14.0	5.1	20.1	13.0	8.9	2.0	10.8	26.2	100.0(493)	
도시	18.4	5.7	20.7	10.4	7.4	2.0	11.0	24.4	100.0(299)	18.273*
농·어촌	7.2	4.1	19.1	17.0	11.3	2.1	10.3	28.9	100.0(194)	
연령 ¹⁾										
29세 이하	7.8	5.5	23.0	13.8	11.1	0.0	11.5	27.2	100.0(217)	45.298
30~39세	18.3	8.3	15.8	12.5	5.8	3.3	13.3	22.5	100.0(120)	***
40세 이상	34.4	3.1	9.4	18.8	3.1	9.4	9.4	12.5	100.0(32)	
한국인배우자 지역	13.3	15.0	13.3	13.3	5.0	6.7	13.3	20.0	100.0(60)	
도시	15.8	13.2	18.4	18.4	2.6	-	10.5	21.1	100.0(38)	13.379
농·어촌	9.5	14.3	4.8	4.8	9.5	19.0	19.0	19.0	100.0(21)	
연령										
29세 이하	-	-	-	-	-	-	-	-	-	
30~39세	33.3	20.0	13.3	6.7	-	-	13.3	13.3	100.0(15)	11.854
40세 이상	6.3	6.3	9.4	21.9	9.4	9.4	12.5	25.0	100.0(32)	

주: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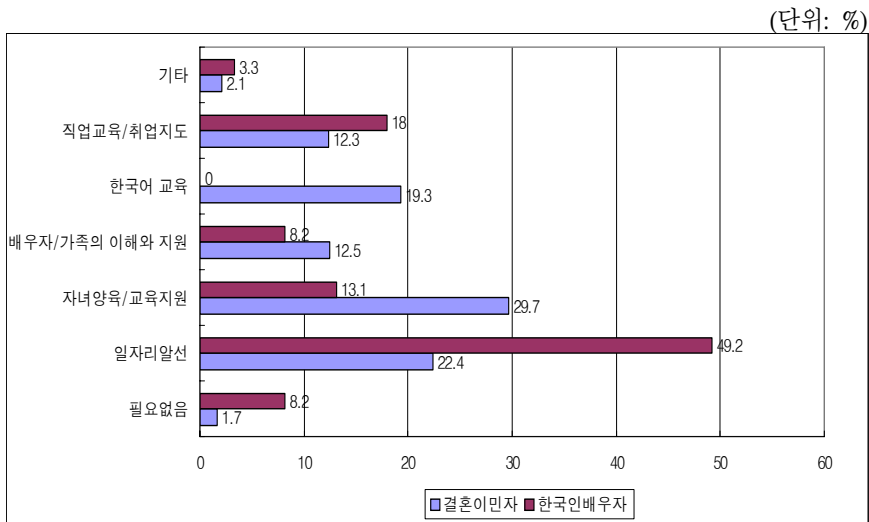
10)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결혼이민자 중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자녀양육·교육지원, 일자리 알선,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취업지도 등의 순으로 희망하였다²⁶⁾. 한국인배우자 중 향후 취업의향이

26) 설동훈 외(2006)에서는 향후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 마땅한 일자리 찾아주기(39.9%), 자녀양육·교육지원(24.5%), 한국어 교육(13.4%), 배우자나 그 가족의 이해와 지원(12.2%) 등이었음.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일자리 알선(49.2%), 직업교육·취업지도(18.0%), 자녀양육·교육지원(13.1%) 등의 순으로 희망하여 결혼이민자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림 5-1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비교



주: 결혼이민자(n=535), 한국인배우자(n=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는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기혼여성으로 취업에 따르는 자녀양육·교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배우자는 대부분 남성으로서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과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지도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자녀양육·교육지원, 일자리 알선, 한국어교육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지역은 직업교육·취업지도를, 농·어촌지역은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자녀양육·교육지원을, 40대 이상은 한국어교육을 필요한 도움으로 지정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배우자 특성별로는 지역별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일자리 알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었으나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교육·취업지도로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자녀양육·교육지원을, 40대 이상은 일자리 알선을 지정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81〉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구분	도움 필요 없음	일자리 알선	자녀양육 교육지원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취업지도	기타	계(수)	χ^2
결혼이민자 지역	1.7	22.4	29.7	12.5	19.3	12.3	2.1	100.0(535)	
도시	1.9	22.7	30.2	11.2	19.3	13.4	1.2	100.0(321)	4.658
농·어촌	1.4	22.0	29.0	14.5	19.2	10.7	3.3	100.0(214)	
연령									
29세 이하	0.9	2.29	30.8	16.7	16.7	11.0	0.9	100.0(227)	23.143*
30~39세	3.0	21.5	37.0	5.2	17.0	12.6	3.7	100.0(135)	
40세 이상	0.0	20.0	17.5	15.0	27.5	17.5	2.5	100.0(40)	
한국인배우자 지역 ¹⁾	8.2	49.2	13.1	8.2	-	18.0	3.3	100.0(61)	
도시	7.7	41.0	17.9	7.7	-	20.5	5.1	100.0(39)	4.953
농·어촌	9.1	63.6	4.5	9.1	-	13.6	0.0	100.0(22)	
연령									
29세 이하	-	-	-	-	-	-	-	-	17.692* *
30~39세	0.0	20.0	40.0	6.7	-	26.7	6.7	100.0(15)	
40세 이상	6.1	66.7	3.0	12.1	-	9.1	3.0	100.0(33)	

주: * p <.05, ** p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11) 취업의향 있으나 현재 비취업 이유

취업의향이 있으나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자녀양육 때문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외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말이 서툴러서 등이 지적되었다²⁷⁾. 따라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함께 직업교육을 병행하고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비취업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비취업중인 결혼이민자의 비취업 이유를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지역은 한국말 서툴러서, 농·어촌지역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특히 20대 이하에서 높은 비율이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비취업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배우자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모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이었고, 연령별로도 모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30대에서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7) 설동훈 외(2006) 연구에서도 현재 미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미취업이유 중 자녀양육 때문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18.6%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임.

〈표 5-82〉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취업의향이 있으나 현재 비취업인 이유

(단위: %, 명)

구분	마땅한 일자리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	집안일 돌볼사람 없어서	배우자· 기타식구 반대로	한국말 서툴러 서	몸이 이파서	기타	계(수)	χ^2
결혼이민자 지역	14.6	51.4	5.0	6.9	14.6	2.5	5.0	100.0(521)	
도시	12.5	55.9	4.8	4.2	15.0	2.6	5.1	100.0(313)	14.295*
농·어촌	17.8	44.7	5.3	11.1	13.9	2.4	4.8	100.0(208)	
연령 ¹⁾									
29세 이하	11.3	54.5	3.6	9.9	17.1	0.5	3.2	100.0(222)	33.227**
30~39세	17.7	47.7	47.3	6.2	3.1	3.8	8.5	100.0(130)	
40세 이상	26.3	34.2	5.3	5.3	13.2	7.9	7.9	100.0(38)	
한국인배우자 지역 ¹⁾	55.0	11.7	8.3	-	1.7	13.3	10.0	100.0(60)	
도시	56.4	12.8	5.1	-	2.6	15.4	7.7	100.0(39)	3.025
농·어촌	52.4	9.5	14.3	-	0.0	9.5	14.3	100.0(21)	
연령									
29세 이하	-	-	-	-	-	-	-	-	9.198
30~39세	53.3	33.3	0.0	-	-	6.7	6.7	100.0(15)	
40세 이상	45.5	6.1	15.2	-	-	14.6	12.5	100.0(33)	

주: * p < .05,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나. 경제생활

1) 본국 거주시 생계책임자 및 생활수준

본국에 있을 때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부모인 경우가 68.0%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로도 대부분 부모가 생계책임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일본은 86.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부모와 본인이 각각 40.0%로 다른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83〉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계책임자

(단위: %, 명)

구분	본인	부모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친척	기타	계(수)	χ^2
전체	20.6	68.0	6.6	0.4	4.4	100.0(1,062)	
지역							
도시	21.3	67.8	6.5	0.5	4.0	100.0(640)	1.367
농·어촌	19.6	68.3	6.8	0.2	5.1	100.0(413)	
국적							
중국	26.4	62.7	5.2	0.0	5.7	100.0(212)	
중국(한민족)	21.8	59.4	11.9	0.0	6.9	100.0(101)	
베트남	15.1	72.5	8.2	0.0	4.3	100.0(305)	117.251
필리핀	23.1	62.1	10.7	1.8	2.4	100.0(169)	***
일본	12.8	86.5	0.0	0.0	0.6	100.0(156)	
태국	40.0	40.0	5.7	0.0	14.3	100.0(70)	
몽골	27.0	60.3	4.8	3.2	4.8	100.0(63)	
기타	8.6	85.7	2.9	2.9	0.0	100.0(35)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은 아주 어렵거나(5.7%) 어려운 편(13.2%)인 경우가 18.9%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어렵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도시: 17.0%, 농·어촌: 22.0%)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국 국적별로는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이 (아주) 어려운 편인 경우는 베트남이 3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국(한민족) 19.8%, 몽골 18.7% 등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84〉 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활수준

(단위: %, 명)

구분	아주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 사는 편	아주 잘 사는 편	계(수)	χ^2
전체	5.7	13.2	63.9	14.9	2.3	100.0(1,074)	
지역							
도시	5.2	11.8	66.4	14.8	1.8	100.0(660)	219.345 ***
농·어촌	6.5	15.5	59.9	15.0	3.1	100.0(414)	
국적							
중국	3.3	5.6	61.7	27.1	2.3	100.0(214)	
중국(한민족)	2.0	17.8	50.5	26.7	3.0	100.0(101)	
베트남	13.2	24.8	56.5	5.5	0.0	100.0(310)	219.345 ***
필리핀	1.2	8.3	79.9	7.7	3.0	100.0(169)	
일본	0.7	3.3	80.4	15.0	0.7	100.0(153)	
태국	4.0	10.7	52.0	24.0	9.3	100.0(75)	
몽골	7.8	10.9	57.8	17.2	6.3	100.0(64)	
기타	5.7	8.6	71.4	11.4	2.9	100.0(35)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2) 주택유형 및 주택소유 여부

가족구성원의 쾌적하고 안정된 삶의 영위에 있어 가장 주요한 조건의 하나는 안정된 주거이다. 따라서 주거형태와 주택소유여부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주택유형과 주택소유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들의 주택유형은 일반단독 주택이 41.9%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9.6%이었고, 다세대 주택이 15.3%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농·어촌지역은 일반단독주택이 65.2%로 도시지역의 2.4배정도 되었다. 가구소득별 주택유형은 200만원 미만은 일반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200만원 이상은 일반단

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300만원 이상은 아파트가 일반단독주택보다 20.0% 포인트 더 높았다.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택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2006년 전국의 14,482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김승권 외, 2006)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데 비해 일반가구는 아파트가 가장 많아 일반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아파트가,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적을 수록 단독주택 비율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은 점 등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²⁸⁾.

〈표 5-85〉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택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복합용도 주택	기타	계(수)	χ^2
전체	41.9	15.3	6.0	29.6	2.6	4.7	100.0(1,075)	
지역								
도시	27.0	20.9	8.1	36.7	2.6	4.7	100.0(656)	14.295
농·어촌	65.2	6.7	2.6	18.4	2.6	4.5	100.0(419)	***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0.4	15.4	3.3	16.5	2.2	2.2	100.0(91)	55.545 ***
100~199만원	42.5	17.9	8.5	24.6	2.4	4.1	100.0(414)	
200~299만원	34.0	16.8	5.2	37.8	1.4	4.8	100.0(291)	
300만원 이상	28.1	11.9	5.2	48.1	2.2	4.4	100.0(135)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²⁸⁾ 김승권 외(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43.3%, 단독주택 40.6%, 다세대주택 9.7%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동부)은 아파트가 48.2%로 가장 많았으나 농·어촌지역(읍·면부)는 단독주택이 69.8%이었음.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99만원 이하는 단독주택 비율이 65.9%이었고, 아파트가 22.2%인데 비해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단독주택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아파트 비율은 점점 높아져 300만원 이상은 단독주택은 21.2%, 아파트가 63.3%이었음.

주택소유 형태는 전체 54.2%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세 21.9%, 전·월세 15.3%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 농·어촌 모두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농·어촌의 자가소유율이 높았다(70.4%).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나 전·월세 등의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각각 15.4%포인트와 12.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을 제외할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소유율이 높았다. 지역 및 가구소득별로 주택소유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 연구결과는 2006년 표본조사(김승권 외, 2006)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주택소유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일반가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표 5-86〉 지역 및 가구소득별 주택소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전·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계(수)	χ^2
전체	54.2	21.9	15.3	4.2	4.4	100.0(1,071)	
지역							
도시	43.9	27.9	20.1	4.0	4.1	100.0(656)	86.299***
농·어촌	70.4	12.5	7.7	4.6	4.8	100.0(41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1.1	11.1	15.6	10.0	2.2	100.0(90)	
100~199만원	47.1	24.0	18.4	5.6	4.9	100.0(412)	37.292***
200~299만원	57.0	19.2	17.5	1.7	4.5	100.0(291)	
300만원 이상	59.7	26.1	9.7	0.7	3.7	100.0(134)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²⁹⁾ 김승권 외(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가 56.7%, 전세 19.7%, 전·월세 14.6% 월세 3.8%, 기타 5.2%이었음. 또한 지역별 자가소유율은 도시(53.1%)보다 농·어촌(71.3%)의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가소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99만원 이하 54.2%, 100~199만원 45.1%, 200~299만원 54.1%, 300만원 이상 66.7%).

3) 가구소득 및 소비

결혼이민자들의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100~199만원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0~299만원이 31.2%이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도 9.8%나 되어 10가구 중 1가구는 가구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권 외(2006) 연구와 비교할 경우 99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상은 결혼이민자 가구보다 일반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100만원~299만원은 일반가구보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99만원 이하의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낮은 비율이나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비율도 일반가구 보다 낮아 결혼이민자 가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5-87〉 지역 및 가구규모별 가구소득 분포

(단위: %, 명)

구분	99만원 이하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χ^2
전체	9.8	44.7	31.2	14.3	100.0(892)	
지역						
도시	7.0	41.1	35.6	16.3	100.0(559)	29.468***
농·어촌	14.4	50.8	23.7	11.1	100.0(333)	
가구원수						
2명 이하	7.3	40.0	36.4	16.4	100.0(110)	7.667
3명	9.4	44.7	34.9	11.0	100.0(255)	
4명 이상	10.4	45.1	28.7	15.7	100.0(567)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200만원 이상은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200만원 미만은 농·어촌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100만원 미만은 도시지역은 7.0%인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14.4%로 도시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원이 많을수록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비율이 높아져 2명 이하 일 때 7.3%이었으나 3명 9.4%, 4명 이상은 10.4%로 점차 높아졌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비율은 낮아져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저소득가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가구소비에 있어서도 100~199만원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은 22.3%이었으나 100만원 미만도 25.6%나 되었다. 김승권 외(2006) 연구에서는 199만원 이하가 52.7%인데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는 77.7%로 상당수의 가구가 199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만원 이상은 일반 가구는 47.3%인데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는 22.3%에 불과해 가구소비에 있어서도 일반가구에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의 소비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88〉 지역 및 가구규모별 가구소비 분포

(단위: %, 명)

구분	99만원 이하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χ^2
전체	25.6	52.1	16.5	5.8	100.0(879)	
지역						
도시	19.3	53.9	20.6	6.1	100.0(553)	39.294***
농·어촌	36.2	49.1	9.5	5.2	100.0(326)	
가구원수						
2명 이하	25.5	57.5	11.3	5.7	100.0(106)	7.522
3명	26.5	53.4	16.9	3.2	100.0(249)	
4명 이상	24.3	51.0	17.7	7.0	100.0(559)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의 소비가 더 많았다. 즉, 100만원 이상의 가구소비는 도시지역에서 비율이 높았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에서 비율이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가구원수별 가구소비는 모두 100~199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의 소비는 가구원이 3명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원수별 가구소비 또한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가구부채 규모 및 부채원인

가구부채에 있어서는 부채가 없다는 가구는 54.7%이었으며³⁰⁾, 부채가 있는 45.3%의 가구 중 3,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가 16.4%로 가장 많았다.

〈표 5-89〉 가구특성별 가구부채 규모

(단위: %, 명)

구분	없음	300만원 미만	300~999만원	1000~1999만원	2000~2999만원	3000만원 이상	계(수)	χ^2
전체	54.7	4.9	7.5	8.9	7.5	16.4	100.0(797)	
지역								
도시	54.3	4.6	8.7	8.5	7.6	16.3	100.0(503)	3.240
농·어촌	55.4	5.4	5.4	9.5	7.5	16.7	100.0(294)	
가구원수								
2명 이하	59.4	5.0	11.9	6.9	7.9	8.9	100.0(101)	
3명	56.4	5.8	6.2	7.1	7.6	16.9	100.0(225)	11.499
4명 이상	51.6	4.8	7.2	10.6	8.0	17.7	100.0(49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5.8	13.0	6.5	3.9	7.8	13.0	100.0(77)	
100~199만원	50.3	7.1	9.5	11.3	8.0	13.8	100.0(326)	31.346**
200~299만원	55.3	2.9	7.0	8.2	7.8	18.9	100.0(244)	
300만원 이상	52.7	0.9	4.5	8.9	11.6	21.4	100.0(112)	

주: * p < .05,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³⁰⁾ 김승권 외(2006) 연구에서 가구 부채가 없는 가구는 53.1%로 결혼이민자 가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부채규모에 있어서는 일반가구의 부채규모가 결혼이민자가구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가구특성별 가구부채규모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부채규모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거비 주택마련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비, 사업자금, 교육비 등의 순으로 가구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된 부채원인은 주거비·주택마련, 사업자금, 생계비, 교육비 순으로 결혼이민자와 일반가구 모두 주거비·주택마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 다음 순으로 일반가구는 사업자금 인데 비해 결혼이민자는 생계비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 일반가구에 비해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지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이나 주거비나 주택마련에 의한 부채는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생계비나 사업자금에 의한 부채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원수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살펴보면,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부채의 주된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4명 이상의 가구원인 경우 가장 높은 비율(41.0%)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원인은 생계비였으며, 특히 2명 이하의 가구원인 경우 가장 높은 비율(27.8%)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생계비가 주된 부채의 원인인 경우의 비율이 높았으며, 99만원 이하를 제외할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부채의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업자금에 의한 부채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으며, 의료비의

31) 일반가구의 경우(김승권 외, 2006),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주거비/주택마련 50.1%, 사업자금 27.5%, 생계비 8.4%, 교육비 4.0% 등으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주거비/주택마련은 12.0%포인트, 사업자금은 9.9%포인트 높았고, 생계비는 15.3%포인트 낮았음.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 가구소득별로 부채원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구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에 의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90〉 가구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단위: %, 명)

구분	생계비	주거비· 주택마련	교육비	사업 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계(수)	χ^2
전체	23.7	38.1	3.5	17.6	3.2	1.6	12.2	100.0(312)	
지역									
도시	21.6	41.7	3.5	15.6	3.0	1.5	13.1	100.0(199)	4.622
농·어촌	27.4	31.9	3.5	21.2	3.5	1.8	10.6	100.0(113)	
가구원수									
2명 이하	27.8	36.1	2.8	19.4	2.8	2.8	8.3	100.0(36)	
3명	20.2	34.5	3.6	14.3	6.0	2.4	19.0	100.0(84)	9.480
4명 이상	23.3	41.0	3.3	18.1	1.9	1.4	11.0	100.0(21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6.7	36.7	0.0	6.7	10.0	3.3	6.7	100.0(30)	46.290
100~199만원	33.1	31.6	4.4	16.2	2.9	1.5	10.3	100.0(136)	***
200~299만원	9.2	44.9	3.1	19.4	1.0	3.1	19.4	100.0(98)	
300만원 이상	8.5	53.2	4.3	21.3	0.0	0.0	12.8	100.0(47)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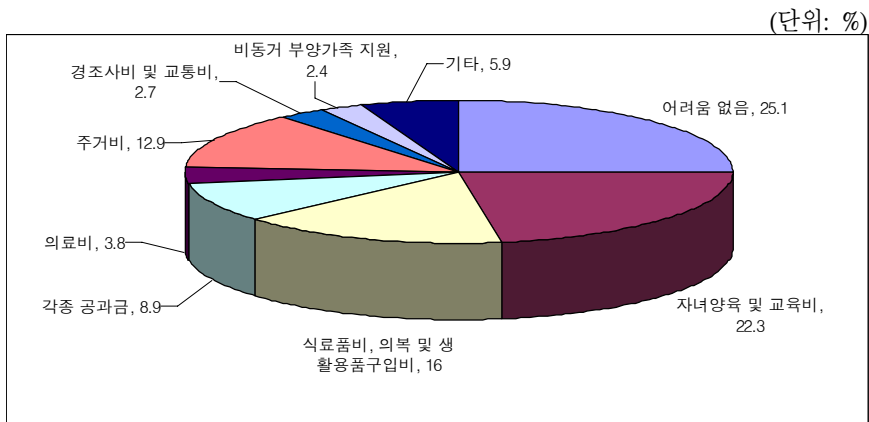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5)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해 결혼이민자의 경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25%정도 되었으나 나머지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22.3%), 식료품비(16.0%), 주거비(12.9%), 각종 공과금(8.9%)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일반가족과 비교해 볼 때 자녀양육 및 교육비, 주거비, 각종 공과금 등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식료품비,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

자가 기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³²⁾. 한국인배우자는 결혼이민자 보다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20.9%)이 낮아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자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머지 항목 중 자녀양육 및 교육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은 결혼이민자의 비율보다 낮았다. 그 외 주거비, 각종 공과금 등은 결혼이민자의 비율보다 높아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가 인식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5] 결혼이민자가 인식하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주: 결혼이민자(n=9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역시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주요 항목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를 지적하였다. 이

³²⁾ 일반가족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24.8%), 주거비(12.6%), 각종 공과금(8.7%), 식료품비,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5.1%) 순으로 나타남(김승권 외, 2006).

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식료품비, 소득세, 보험료, 세금 등이 포함된 각종 공과금의 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을 지적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비교에 있어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자녀양육 및 교육비와 주거비의 부담이 어려운 항목이었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식료품비, 각종 공과금, 의료비, 경조사비 및 교통비,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등이 어려운 항목이었다.

〈표 5-9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가구소득			
		도시	농·어촌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어려움 없음	25.1	24.1	26.7	13.9	19.1	28.9	37.6
자녀양육 및 교육비	22.3	25.0	18.2	21.5	25.7	21.3	17.9
식료품비,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16.0	15.1	17.4	25.3	17.7	9.1	10.3
각종 공과금	8.9	8.4	9.6	6.3	12.2	7.5	4.3
의료비	3.8	3.1	5.0	3.8	3.3	4.7	3.4
주거비	12.9	15.8	8.5	15.2	11.9	17.8	15.4
경조사비 및 교통비	2.7	1.4	4.7	5.1	3.3	2.4	2.6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2.4	1.8	3.3	3.8	2.2	2.0	2.6
기타	5.9	5.4	6.6	5.1	4.7	6.3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20)	(557)	(363)	(79)	(362)	(253)	(117)
χ^2		28.454***		52.363**			

주: ***p <.001, **p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가구소득별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경우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99만원 이하는 주식, 부식비 등의 식료품비, 수업료, 등록금,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및 교육비, 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융자금 상환 등의 주거비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100만원~199만원의 가구소득인 경우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식료품비,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각종 공과금 등의 순으로, 그리고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인 경우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주거비, 식료품비,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가구소득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주거비, 식료품비, 각종 공과금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식료품비, 각종 공과금, 주거비 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이라는 지적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비교에 있어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자녀양육 및 교육비와 주거비 등의 부담이 어려운 항목이었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각종 공과금, 경조사비 및 교통비,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등이 어려운 항목으로 지적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운 항목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5-92〉 한국인배우자가 인식하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가구소득 ¹⁾			
		도시	농·어촌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어려움 없음	20.9	19.7	22.8	11.6	14.9	25.6	32.5
자녀양육 및 교육비	21.6	23.1	19.4	20.9	26.6	18.4	19.0
식료품비,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15.2	15.3	15.0	19.8	19.4	10.4	7.9
각종 공과금	13.5	13.0	14.2	10.5	15.2	12.4	7.1
의료비	3.4	3.4	3.3	2.3	2.4	2.8	6.3
주거비	16.5	18.9	13.1	23.3	12.5	22.4	13.5
경조사비 및 교통비	3.4	1.5	6.1	3.5	3.6	3.6	4.8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2.1	1.9	2.5	3.5	2.4	2.0	2.4
기타	3.4	3.2	3.6	4.7	3.0	2.4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89)	(529)	(360)	(86)	(335)	(250)	(126)
χ^2		20.840**		64.565***			

주: ***p < .001,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가구소득별로는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경우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99만원 이하와 200~299만원 이하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및 교육비 순으로, 100만원~199만원과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 다음 순으로는 각각 차이를 보여 100만원~199만원 이하는 식료품비를, 그리고 300만원 이상은 주거비를 지적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은 가구소득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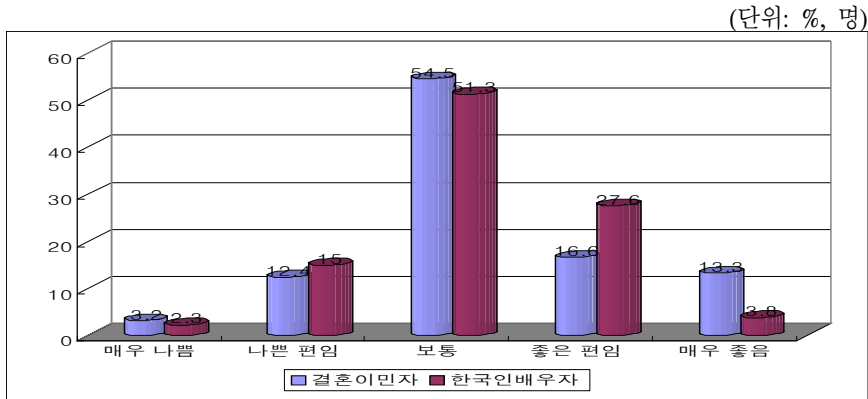
4.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생활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각종 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다문화 가족의 신체적 건강은 빈곤예방과 가족기능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수준 및 질병 등을 분석하고 보건의료기관 이용실태, 건강보험제도의 접근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가. 건강상태

다문화가족 부부의 건강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29.9%, 한국인배우자는 31.4%이었고 나쁘다는 비율은 각각 15.6%, 18.3%로 부부의 건강상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5-1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상태 비교



주: 결혼이민자(n=1,097), 한국인배우자(n=9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23.0%, 한국인배우자는 27.3%로 결혼이민자보다 4.3% 포인트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5분의 1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임을 말해준다.

〈표 5-9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질병 유무 비교

(단위: %, 명)

구분	질병 있음	질병 없음	계(수)
결혼이민자	23.0	77.0	100.0(1,098)
한국인배우자	27.3	72.7	100.0(9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은 결혼이민자는 빈혈이 14.9%로 가장 많았는데 반해, 한국인배우자는 고혈압이 1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위·십이지궤양이 12.9%의 분포를 보였다.

〈표 5-9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질병명 비교¹⁾

(단위: %, 명)

구분	고혈압	류마 티스	알레 르기	위· 십이지 궤양	빈혈	우울 증	자궁 근종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6.4	5.1	8.1	7.7	14.9	4.7	5.7	48.1	100.0(235)
한국인배우자	19.7	4.7	3.4	12.9	1.7	3.9		53.6	100.0(233)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결혼이민자는 38.0%, 한국인배우자는 37.2%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5년 이상 장기간 질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각각 37.3%, 39.9%로 한국인배우자가 약간 많았다. 장기간의 질병은 가족에게는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사회적으로는 의료비용을 증대시킨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여건에서 장기간 질환자가 주는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

〈표 5-9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상병기간 비교¹⁾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계(수)
결혼이민자	17.6	20.4	24.6	37.3	100.0(1,015)
한국인배우자	22.3	14.9	22.9	39.9	100.0(188)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일상생활수행정도

다문화 가족의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방해된다는 비율이 결혼이민자는 63.6%, 한국인배우자는 70%로 질병이 기본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의 방해정도 비교¹⁾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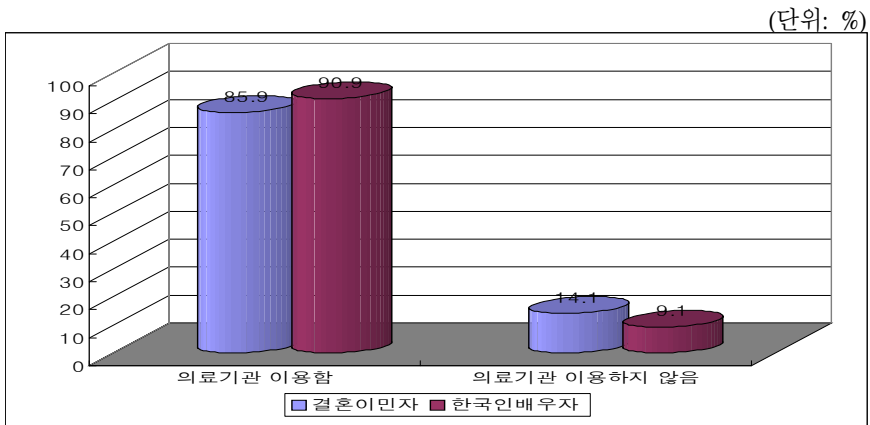
구분	상당히 방해됨	약간 방해됨	전혀 방해되지 않음	계(수)
결혼이민자	12.7	50.9	36.3	100.0(212)
한국인배우자	17.6	52.7	29.7	100.0(239)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 의료기관 이용 실태

부부가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85.9%, 한국인배우자는 90.9%로 질환자의 다수가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질환자의 10% 내외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충임에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소지가 많아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5-1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기관 이용여부 비교



주: 분석대상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로 결혼이민자 227명, 한국인배우자 242명이 해당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의료서비스기관의 이용실태를 보면 지역 및 상병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편이어서 저소득층 결혼이민자의 경우 전문 의료서비스의 중단으로 건강을 위해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표 5-9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의료기관이용 여부¹⁾

(단위: %, 명)				
구분	의료기관 이용함	의료기관 이용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85.9	14.1	100.0(227)	
지역				
도시	85.6	14.4	100.0(139)	.273
농·어촌	88.2	11.8	100.0(7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1.8	18.2	100.0(22)	11.945**
100~199만원	77.4	22.6	100.0(84)	
200~299만원	94.8	5.2	100.0(58)	
300만원 이상	96.6	3.4	100.0(29)	
상병기간				
1년 미만	75.0	25.0	100.0(24)	2.779
1~2년 미만	88.9	11.1	100.0(27)	
2~5년 미만	82.9	17.1	100.0(35)	
5년 이상	88.5	11.5	100.0(52)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농·어촌이 높았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상병기간별로는 동 비율은 5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병

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았다.

〈표 5-98〉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의료기관이용 여부¹⁾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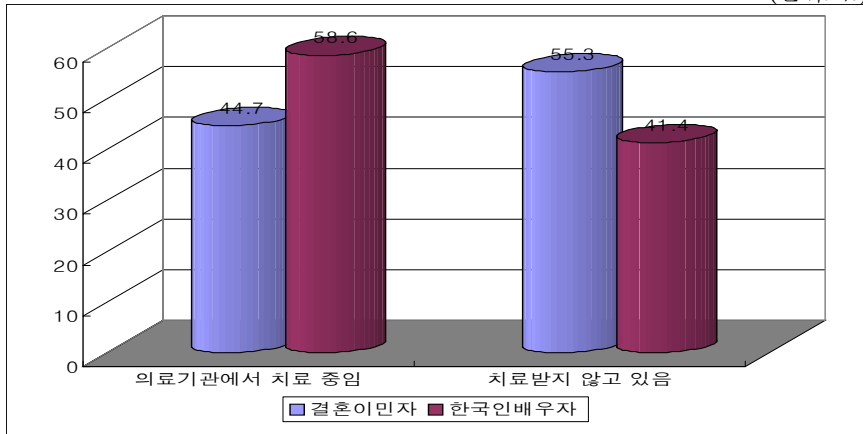
구분	의료기관 이용함	의료기관 이용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90.9	9.1	100.0(242)	
지역				
도시	87.9	12.1	100.0(132)	2.340
농·어촌	93.9	6.1	100.0(9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92.1	7.9	100.0(38)	.687
100~199만원	91.2	8.8	100.0(91)	
200~299만원	87.5	12.5	100.0(48)	
300만원 이상	91.3	8.7	100.0(23)	
상병기간				
1년 미만	90.5	9.5	100.0(42)	2.506
1~2년 미만	96.4	3.6	100.0(28)	
2~5년 미만	97.7	2.3	100.0(43)	
5년 이상	92.3	7.7	100.0(78)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질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44.7%, 한국인배우자는 58.6%로 질환자 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5-1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속적인 치료여부 비교¹⁾

(단위: %)



주: 1) 분석대상은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로 결혼이민자 152명, 한국인배우자 191명이 해당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질병의 지속적인 치료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이 높았고,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농·어촌이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상병기간은 1~2년 미만을 제외하고 상병기간이 오래될수록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비율이 높았고, 상병기간이 짧은 경우는 치료를 중단한 비율이 높았다.

〈표 5-99〉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지속적인 치료여부¹⁾

(단위: %, 명)

구분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	치료받지 않고 있음	계(수)	χ^2
전체	44.7	55.3	100.0(152)	
지역				
도시	45.7	54.3	100.0(94)	.091
농어촌	43.1	56.9	100.0(5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6.3	43.8	100.0(16)	1.275
100~199만원	49.0	51.0	100.0(51)	
200~299만원	42.5	57.5	100.0(40)	
300만원 이상	40.9	59.1	100.0(22)	
상병기간				
1년 미만	31.3	68.8	100.0(16)	5.050
1~2년 미만	64.7	35.3	100.0(17)	
2~5년 미만	38.1	61.9	100.0(21)	
5년 이상	53.8	46.2	100.0(39)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질병의 지속적인 치료여부를 보면 지역 및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병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병기간이 오래될수록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상병기간이 짧을수록 치료를 중단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질병발생 초기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아서 심각한 질병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 전문 의료서비스의 중단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위해와 함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가족해체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표 5-100〉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지속적인 치료여부¹⁾

(단위: %, 명)

구분	치료 중임	치료받지 않고 있음	계(수)	χ^2
전체	58.6	41.4	100.0(152)	
지역				
도시	58.7	41.3	100.0(104)	.010
농어촌	57.9	42.1	100.0(7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8.1	41.9	100.0(31)	3.378
100~199만원	52.1	47.9	100.0(73)	
200~299만원	69.4	30.6	100.0(36)	
300만원 이상	65.0	35.0	100.0(20)	
상병기간				
1년 미만	46.9	53.1	100.0(32)	9.627*
1~2년 미만	54.2	45.8	100.0(24)	
2~5년 미만	66.7	33.3	100.0(36)	
5년 이상	76.6	23.4	100.0(64)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14.3%, 한국인배우자가 12.9%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약간 많았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 의료보장 및 사회적 지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표 5-10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병원에 못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치료를 포기한 적 있음	치료를 포기한 적 없음	계(수)
결혼이민자	14.3	85.7	100.0(982)
한국인배우자	12.9	87.1	100.0(8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지난 1년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도시지역과 상병기간이 짧은 경우가 높았다.

〈표 5-10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지난 1년간 병원에 못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

구분	치료를		계(수)	χ^2
	포기한 적	있음 포기한 적 없음		
전체	14.3	85.7	100.0(982)	
지역				
도시	15.6	84.4	100.0(577)	3.050
농·어촌	11.5	88.5	100.0(36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7.7	82.3	100.0(79)	3.378
100~199만원	15.7	84.3	100.0(356)	
200~299만원	11.5	88.5	100.0(260)	
300만원 이상	12.3	87.7	100.0(122)	
상병기간				
1년 미만	30.4	69.6	100.0(23)	1.235
1~2년 미만	33.3	66.7	100.0(27)	
2~5년 미만	21.2	78.8	100.0(33)	
5년 이상	29.4	70.6	100.0(5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1순위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공통적으로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었고 이외에 일을 중단할 경우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든지, 가족을 돌봄 사람이 없는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배우자의 10% 정도는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하여 보건의료서비스제도를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동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2순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을

중단할 경우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들이 지적되었다.

〈표 5-10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치료비가 없어서	42.9	5.0	35.1	8.9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9.2	10.0	19.1	19.6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서	2.5	10.0	8.5	3.6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8.4	13.3	6.4	16.1
식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10.9	8.3	1.1	7.1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5.9	11.7	13.8	14.3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서	2.5	1.7	2.1	-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1.7	3.3	-	5.4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8.4	25.0	8.5	21.4
기타	7.6	11.7	5.3	3.6
계(수)	100.0(119)	100.0(60)	100.0(94)	100.0(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89.4%, 한국인배우자가 92.7%로 대다수가 전문치료기관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표 5-10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기관 비교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병원·의원		기타	계(수)
	병원·의원 무료진료소	노동자 보건의료	보건소	처방 없이 약국에 감			
결혼이민자	89.4	1.5	4.8	3.4	0.9	100.0(1,045)	
한국인배우자	92.7	0.6	3.9	2.6	0.2	100.0(9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도시지역은 병원·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농·어촌보다 높았고 대체의료기관으로 도시 지역은 약국에 가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농·어촌은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상병기간 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5-10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병원· 의원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보건소	병·의원 처방없이 약국에 감	기타	계(수)	χ^2
전체	89.4	1.5	4.8	3.4	0.9	100.0(1,045)	
지역							
도시	90.2	1.8	2.9	4.2	0.8	100.0(614)	14.433**
농·어촌	87.7	1.0	7.7	2.6	1.0	100.0(389)	
상병기간							
1년 미만	87.5	4.2	4.2	4.2	-	100.0(24)	8.876
1~2년 미만	100.0	-	-	-	-	100.0(28)	
2~5년 미만	94.3	-	5.7	-	-	100.0(35)	
5년 이상	92.3	-	5.8	1.9	-	100.0(52)	

주: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을 보면 1순위는 언어 소통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통의 접근성, 진료비 부담, 병원 갈 시간 부족 등이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2순위는 결혼이민자의 과반수이상인 55.8%가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4.8%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 힘든 점이 11.3%이었고, 언어소통, 절차가 복잡함 등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데 힘든 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는 1순위로 병원 갈 시간부족, 교통이 좋지 않음, 언어소통, 진료비 부담 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2순위는 한국인배우자의 59.5%가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0.5%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받기 힘든 것, 언어소통의 어려움, 병원 갈 시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데 힘든 점으로 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 교통, 진료비, 정보·상담 등으로 나타났고, 한국인배우자는 이외에도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한 것도 치료받는 데 힘든 점으로 응답하였다. 의료기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언어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교통편의서비스, 진료비부담 해소, 정보 및 상담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0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힘든 점 없음	32.4	55.8	33.6	59.5
교통이 좋지 않아 문제 있음	13.4	4.2	15.6	4.1
병원갈 시간이 부족함	7.7	4.0	17.6	7.7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움	12.2	5.6	11.7	5.0
언어소통을 하지 못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22.7	10.8	13.4	8.6
절차가 복잡함	3.6	6.8	2.8	4.4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 힘들	4.5	11.3	3.7	9.8
기타	3.5	1.6	1.6	0.9
계(수)	100.0(973)	100.0(947)	100.0(921)	100.0(9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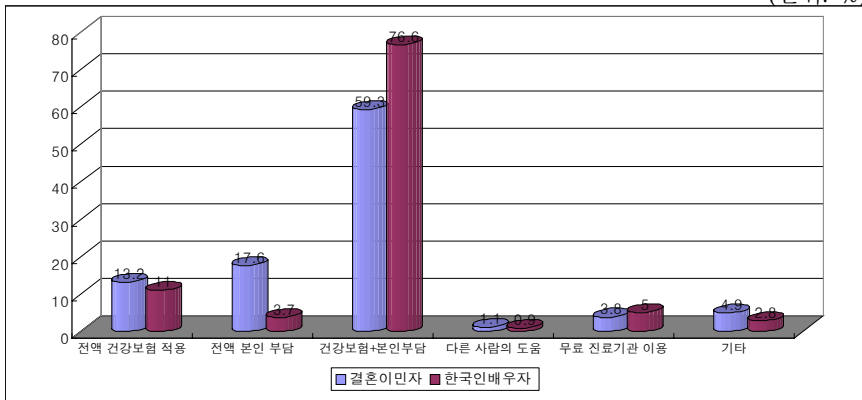
라. 건강보험 실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동안 의료비 부담형태를 보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는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을 혼합한 비율이 각각 59.3%, 76.6%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17.6%로 높아서 국민의 건강위해 차원에서 의료보장 제도권에 결혼이민자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그림 5-1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의료비부담 형태 비교¹⁾

(단위: %)



주: 1) 분석대상은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로 결혼 이민자 182명, 한국인배우자 218명이 해당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동안 의료비부담 형태를 보면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병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상병기간이 길어지면서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치료중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표 5-10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의료비부담 형태¹⁾

(단위: %, 명)

구분	전액 건강보 험 적용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 험+본인 부담	다른 사람의 도움	무료 진료기 관 이용	기타	계(수)	χ^2
전체	13.2	17.6	59.3	1.1	3.8	4.9	100.0(182)	
지역								
도시	13.0	17.6	58.3	1.9	2.8	6.5	100.0(108)	2.692
농어촌	15.4	18.5	58.5	-	4.6	3.1	100.0(65)	
상병기간								
1년 미만	-	11.8	70.6	11.8	11.8	5.9	100.0(17)	15.353
1~2년 미만	-	14.3	81.0	4.8	4.8	-	100.0(21)	
2~5년 미만	7.1	10.7	78.6	-	-	3.6	100.0(28)	
5년 이상	13.3	22.2	51.1	4.4	4.4	8.9	100.0(45)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건강보험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75.1%이었고, 한국인배우자는 92.1%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외에 결혼이민자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13.5%로 미미하였고, 11.4%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표 5-10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유형 비교

(단위: %, 명)

구분	직장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가입되어 있지 않음	계(수)
결혼이민자	33.3	41.8	8.5	5.0	11.4	100.0(949)
한국인배우자	41.8	50.3	3.0	3.8	1.2	100.0(9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는 건강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4%, 45.5%로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의 미가입으로 외국인은 가

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 등 다양한 이유들을 응답하였다. 한국인배우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3%로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제도의 건전성 강화 등도 필요하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가 선행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0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은 가입 되지 않는 것으로 알음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음	건강보험료 가 비싸기 때문임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25.8	14.0	34.4	25.8	100.0(93)
한국인배우자	9.1	27.3	45.5	18.2	100.0(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13.0%, 한국인배우자는 18.3%이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 제도권 대상이 적지 않은 여건 하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제도권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차원에서 본인분담 경감을 대체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1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체납한 적 있음	체납한 적 없음	계(수)
결혼이민자	13.0	87.0	100.0(942)
한국인배우자	18.3	81.7	100.0(9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건강보험료의 체납여부는 지역 및 결혼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비율은 도시지역이 높았고 체납하지 않은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높았다.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저소득층 결혼이민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제도권 탈락과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으로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5-11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단위: %, 명)

구분	체납한 적 있음	체납한 적 없음	계(수)	χ^2
전체	13.0	87.0	100.0(942)	
지역				
도시	14.3	85.7	100.0(565)	4.711*
농어촌	9.4	90.6	100.0(34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9	85.1	100.0(74)	5.570
100~199만원	14.8	85.2	100.0(345)	
200~299만원	12.1	87.9	100.0(256)	
300만원 이상	6.7	93.3	100.0(119)	
결혼기간				
2년 미만	10.1	89.9	100.0(257)	9.537*
2~4년 미만	16.0	84.0	100.0(262)	
4~6년 미만	6.3	93.8	100.0(112)	
6년 이상	15.0	85.0	100.0(246)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공통적으로 보험료의 부담 때문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과 국민건강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표 5-1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가 너무 많아 지불하지 못함	국민건강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함	국민건강 보험료 내는 방법을 모름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54.7	10.4	12.3	22.6	100.0(106)
한국인배우자	62.1	7.3	2.4	28.2	100.0(1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마. 건강검진 수검 여부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45.1%, 한국인배우자는 57.4%로 결혼이민자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과반수 내외만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1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건강검진 받았음	건강검진 받은 적 없음	계(수)
결혼이민자	45.1	50.9	100.0(1,000)
한국인배우자	57.4	42.6	100.0(8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결혼이민자는 경제적 이유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 27.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부부가 공통적으로 응답한 이유는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 과거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검진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이유 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결혼이민자 39.4%, 한국인배우자 51.8%로 높은 비율을 보여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표 5-11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건강검진 받지 않은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과거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16.7	13.3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23.4	18.5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6	27.3
경제적 이유 때문에	26.8	24.5
진단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2	2.4
진단결과가 두려워서	3.9	5.1
발견해도 적당한 치료방법이 없어서	1.2	1.4
기타	14.0	7.3
계(수)	100.0(406)	1000(2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5. 자녀출산 및 양육

가. 자녀임신·출산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출산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그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비율은 22.2%이었고 나머지 77.8%는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의 어려움으로는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출산비용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후에는 산후조리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대응하여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단계별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79.3%로 도시지역의 76.8%에 비해서 2.5%포인트가 많았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산후조리 등이 높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출산비용부담,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 부족 등이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115〉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어려움이 없었음	22.2	23.2	20.7
어려움이 있음	77.8	(76.8)	(79.3)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13.9)	(12.8)	(14.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5.6)	(17.5)	(12.0)
(출산비용부담)	(10.8)	(11.1)	(11.7)
(건강문제)	(4.6)	(4.2)	(4.7)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부족함)	(4.1)	(1.8)	(8.0)
(산후조리)	(24.2)	(25.0)	(23.4)
(기타)	(4.6)	(4.4)	(5.0)
계(누)	100.0(751)	100.0(452)	100.0(299)
χ^2		21.315**	

주: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임신·출산할 경우 가장 필요한 도움은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욕구가 2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산후조리, 경제적 지원, 아이의 건강 상담 등 시기별 단계별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산후조리,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본국가족이 돌보아주는 것 등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아이의 건강 상담, 경제적 지원, 본국음식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116〉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아무런 도움 필요 없음	9.4	9.8	8.2
출산 후 본인의 건강 상담	4.3	4.7	4.2
아이의 건강 상담	10.9	10.8	11.8
산후조리	14.0	15.5	11.8
경제적 지원	12.1	11.5	13.4
출산 돌보미 지원	8.9	8.4	9.5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24.4	24.9	22.9
본국음식	6.1	4.9	8.25
본국가족이 돌보아주는 것	7.6	8.4	5.8
기타	2.4	1.2	4.2
계	100.0(954)	100.0(574)	100.0(380)
χ^2		19.089*	

주: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자녀양육실태

결혼이민자 중에서 자녀 1명을 가진 비율이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무자녀 순으로 많았고 평균은 1.2명이었다. 연령과 결혼기간별로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06년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 부인을 기준으로 현존자녀수를 살펴보면 평균은 1.7명이었고 자녀가 없는 비율은 8.2%, 1명 19.2%, 2명 60.6%, 3명 이상 12.0%의 분포를 보였다(김승권 외, 2006).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균 현존자녀수와 비교할 때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는 평균 0.5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2명의 분포는 35.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표 5-11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인배우자와의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χ^2	평균
전체	22.2	44.3	25.4	8.0	100.0(1,097)		1.2
연령							
15~29	26.8	55.47	16.8	1.0	100.0(410)		0.9
30~39	15.8	34.8	38.4	11.1	100.0(279)	193.647	1.5
40~49	13.0	20.4	30.6	36.1	100.0(108)	***	2.1
50대 이상	25.0	62.5	12.5	-	100.0(8)		0.9
결혼기간							
2년 미만	58.36	39.6	2.2	-	100.0(321)		0.34
2~4년 미만	8.4	73.7	17.2	0.7	100.0(297)	705.346	1.1
4~6년 미만	4.0	40.5	50.8	4.8	100.0(126)	***	1.6
6년 이상	4.9	18.4	49.4	27.3	100.0(267)		2.1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는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등으로 동 비율은 48.9%이었고, 다음은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기관이 37.4%이었으며,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6.4%로 나타났다. 서문희 외(2005)의 연구결과, 일반 가정에서의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기관이용이 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개인교육이 29.7%, 혈연 20.9%, 비혈연 1.7%, 기타 0.2%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기관이용률이 낮은 데 비해 혈연이용률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다른 경향을 보였다.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은 결혼이민자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등이 양육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비율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1.4%포인트 많아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의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18〉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

구분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어촌
돌보는 사람 없음	6.5	6.2	7.6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48.9	46.8	50.8
친구	3.5	3.8	3.1
위탁모·파출부·도우미	0.6	0.5	0.8
보육시설	22.6	23.6	21.4
유치원	14.8	16.0	13.4
사설학원	0.6	0.7	0.4
한글교실	0.8	1.2	-
기타	1.7	1.2	2.7
계(수)	100.0(681)	100.0(419)	100.0(262)
χ^2		8.0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 아동의 기관이용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한글교실 등이 포함된다. 1주일 단위로 평균 이용일수는 5.03일로 파악되었고 1일 아동이 이용한 시간은 평균 9.9시간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이 도시보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과 일수가 더 많았다. 이는 농·어촌이 도시지역보다 양육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5-119〉 지역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기관이용실태

구분	(단위: 일, 시간, 명)			
	전체	도시	농·어촌	(분석대상수)
1주일 평균이용일수	5.03	4.99	5.08	(239)
1일 평균이용시간	9.9	9.6	10.5	(358)

주: 기관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한글교실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 아동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2세 미만의 영아이기 때문이 3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가 돌보기 때문, 비용부담 등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일반가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문희 외(2005)의 연구결과, 일반가족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어려서가 4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24.8%, 비용부담 15.0%, 보호 서비스는 6.4%이었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이유는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비용부담 때문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부모가 돌보면 되므로,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비용부담 등의 이유가 많았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부모가 돌보면 되므로, 비용부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20〉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남보다는 가족 또는 친구가 더 잘 돌볼 것 같아서	7.4	6.9	7.3
가까운 곳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6.1	5.7	7.3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31.2	24.7	38.2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1.9	2.9	0.8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5.1	7.5	2.4
비용부담 때문에	14.1	16.7	12.2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으므로	1.6	1.1	2.4
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 없어서	0.3	0.6	-
장애보육이 필요하나 시설이 없어서	0.6	0.6	0.8
내가 돌보면 되므로	26.0	28.7	22.0
기타	5.5	4.6	6.5
계(수)	100.0(297)	100.0(174)	100.0(123)
χ^2		13.7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는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이 돌보는 형태가 6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설 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18.8%로 많았다. 이외에도 사설학원, 파출부·도우미 등을 활용하나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8.5%로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은 방과 후 돌봄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가족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취업한 경우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아동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16.7%로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을 위한 효과 높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121〉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

(단위: %, 명)

구분	아이 혼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사설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설 학원	파출 부·도우미	본인 모국 인 친구	기타	계(수)	χ^2
전체	8.5	56.3	6.7	9.4	9.4	6.7	0.4	-	2.7	100.0(224)	
지역											
도시	8.7	55.6	4.8	11.1	9.5	5.6	0.8	-	4.0	100.0(126)	8.087
농·어촌	7.2	56.6	10.8	7.2	9.6	8.4	-	-	-	100.0(83)	
취업여부											
취업	16.7	29.2	8.3	14.6	16.7	10.4	-	-	4.2	100.0(48)	16.819*
비취업	4.6	60.2	8.3	6.5	8.3	8.3	-	-	3.7	100.0(108)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 아동을 방과 후의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생업에 바빠서가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습지도를 못해서 27.6%,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10.5%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성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

향을 보였으며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수준이 낮기 때문인 비율이 높았고, 농·어촌은 학습지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취업한 결혼이민자는 생업에 바쁘기 때문, 미취업은 학습지도를 못해서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122〉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생업에 바빠서	학습지도 못해서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계(수)	χ^2
전체	52.6	27.6	10.5	1.3	7.9	100.0(76)	
지역							
도시	51.1	25.5	12.8	2.1	8.5	100.0(47)	1.986
농·어촌	50.0	37.5	8.3	-	4.2	100.0(24)	
취업여부							
취업	76.7	16.7	3.3	-	3.3	100.0(30)	12.142**
미취업	33.3	39.4	15.2	-	12.1	100.0(33)	

주: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월 평균양육비용은 32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330천원, 농·어촌이 310천원으로 도시가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양육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2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월 평균 양육비용¹⁾

(단위: 천원, 명)		
구분	평균 양육비용	(분석대상수)
전체	322.24	(635)
지역		
도시	329.61	(390)
농·어촌	309.55	(21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84.55	(60)
100~199만원	311.17	(256)
200~299만원	350.95	(164)
300만원 이상	350.13	(80)

주: 1) 미취학,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한 것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든 점, 자녀양육을 둘러싼 배우자와 그 가족 등과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으로는 한국어소통능력 미흡이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양육비·교육비 지출,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아이 돌봐줄 사람·보육시설이 없음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배우자는 아이를 돌보아줄 보육시설이 없는 것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 자녀양육 방식을 둘러싼 갈등 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 능력 미흡, 양육비·교육비 지출, 자녀양육자·보육시설의 부재, 자녀양육 방식의 갈등 등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경제적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2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아무런 어려움 없음	10.3	21.8
어려움 있음	89.7	78.2
자녀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14.4)	(11.1)
한국어소통능력이 미흡함	(30.2)	(15.3)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	(6.7)	(26.3)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17.1)	(3.4)
아이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함	(3.3)	(8.7)
아이의 건강문제	(4.9)	(0.1)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	(0.9)	(4.3)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1.7)	(0.3)
자녀와의 갈등	(1.5)	(5.6)
학업지도	(7.1)	(1.9)
정서·행동상의 어려움	(0.9)	(1.2)
기타	(0.9)	-
계(수)	100.0(777)	100.0(67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도시지역이 90.7%로 농·어촌보다 1.9%포인트 많았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또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응답과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한국어소통능력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지역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2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지역		취업여부		전체
	도시	농·어촌	취업	비취업	
아무런 어려움 없음	9.3	11.2	10.1	10.2	10.3
어려움 있음	90.7	88.8	89.9	89.8	89.7
자녀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13.0)	(16.8)	(16.5)	(14.1)	(14.4)
한국어소통능력이 미흡함	(30.2)	(31.2)	(15.2)	(34.5)	(30.2)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 없음	(7.2)	(5.3)	(9.5)	(5.9)	(6.7)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17.8)	(16.5)	(23.3)	(15.4)	(17.1)
아이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 생활 부적응이 심함	(3.0)	(3.5)	(4.4)	(3.0)	(3.3)
아이의 건강문제	(5.2)	(4.2)	(6.3)	(4.3)	(4.9)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	(1.1)	(0.4)	(-)	(1.1)	(0.9)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1.7)	(1.4)	(3.2)	(1.3)	(1.7)
자녀와의 갈등	(2.0)	(1.1)	(1.9)	(1.5)	(1.5)
학업지도	(7.0)	(7.4)	(7.0)	(7.2)	(7.1)
정서·행동상의 어려움	(1.3)	(0.4)	(1.3)	(0.8)	(0.9)
기타	(1.1)	(0.7)	(1.3)	(0.7)	(0.9)
계(수)	100.0(460)	100.0(285)	100.0(158)	100.0(609)	100.0(767)
χ^2	8.316		30.220**		

주: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별로는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취업한 결혼이민자가 89.9%, 비취업은 89.8%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보면 취업한 경우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2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한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이 34.5%로 가장 많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자녀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여부별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취업한 결혼이민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양육자 또는 시설이 필요하며, 비취업자는 자녀양육부터 학습지도에 이르기까지 자녀 관리를 위하여 한국어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친구 및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19.6% 이었고 그 이유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서가 40.4%로 가장 높았고, 아동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고 이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도 높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5.3%로 본 연구결과가 14.3%포인트 높았다. 이재분 외의 연구(2008)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차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9.6%로 나타나서 결혼이민자가 응답한 비율보다 10.0%포인트 높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에서 아동이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가 26.5%, 다른 아이와 다른 외모 20.6%,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출신 20.6%,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달라서 14.7% 등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부모가 외국인인 점, 아동의 외모가 다른 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정리된다.

지역별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과 그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도시지역이 21.0%로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4.3%포인트 높았다.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비율이 농·어촌지역이 22.9%로 도시지역보다 5.3%포인트 높았다. 이외에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 보다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르기 때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등이 이유가 높았으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르기 때문,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 출신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표 5-126〉 다문화가족 아동의 집단 따돌림 여부 및 이유¹⁾

(단위: 명, %)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집단따돌림 여부			
경험한 적 있음	19.6	21.0	16.7
경험한 적 없음	80.4	79.0	83.3
계(수)	100.0(553)	100.0(343)	100.0(210)
χ^2	1.561		
집단따돌림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	21.1	17.6	22.9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12.8	13.2	14.3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8.3	8.8	8.6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11.9	14.7	8.6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어서	40.4	39.7	42.9
기타	5.5	5.9	2.9
계(수)	100.0(103)	100.0(68)	100.0(35)
χ^2	1.524		

주: 1) 미취학,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어린이·유치원·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를 합친 비율은 80.8%이었고, 전혀 적응 못하고 있다와 별로 적응 못하고 있다를 합친 비율은 19.2%이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대다수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편이나 5분의 1 정도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를 합친 비율은 도시지역이 80.0%이었고, 농·어촌은 80.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취업모 아동은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27〉 결혼이민자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¹⁾

구분	(단위: 명, %)				계(수)	χ^2
	전혀 적응 못하고 있음	별로 적응 못하고 있음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음	매우 잘 적응하고 있음		
전체	7.3	11.9	31.0	49.8	100.0(506)	
지역						
도시	6.9	13.1	35.4	44.6	100.0(305)	8.089*
농·어촌	9.0	10.7	24.7	55.6	100.0(178)	
취업여부						
취업	5.3	12.8	28.7	53.2	100.0(94)	1.357
비취업	7.4	11.2	33.1	48.3	100.0(269)	

주: 1) 미취학,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어린이·유치원·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2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사소통, 교육방식, 교사와의 관계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는 기타를 제외할 경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모두 또래친구와의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아동은 또래친구와의 관계, 교육방식에, 미취업모의 아동은 또래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28〉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적응 못하는 부분¹⁾

(단위: %, 명)

구분	교사와의 관계	또래 친구와의 관계	교육 방식	학업 내용	많은 준비물	교육기관 규칙과 지시	의사 소통	기타	계(수)	χ^2
전체	11.4	22.8	12.7	5.1	2.5	6.3	13.9	25.3	100.0(79)	
지역										
도시	12.8	21.3	17.0	4.3	2.1	6.4	8.5	27.7	100.0(47)	4.870
농·어촌	9.7	22.6	6.5	6.5	3.2	6.5	22.6	22.6	100.0(31)	
취업여부										
취업	13.3	26.7	20.0	-	-	13.3	13.3	13.3	100.0(15)	5.699
미취업	14.6	22.0	9.8	2.4	4.9	2.4			100.0(41)	

주: 1) 미취학,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라. 자녀만족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만족도는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친밀함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7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자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74.7%), 자녀와의 대화·의사소통 정도(71.8%) 순으로 높았으나, 자녀들이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61.1%),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55.6%)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도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결혼이민자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자녀들이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72.9%)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자녀만족도의 평균점수는 한국인배우자 4.29점으로 결혼이민자의 4.19점 보다 높았다.

〈표 5-12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만족도 분포 및 평균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친밀함	대화·의사 소통정도	믿고 이해하는 정도	부모의견· 기대 충족 정도	여가 및 문화생활	전반적 만족도
결혼이민자						
매우 불만족	1.2	0.8	0.7	1.1	2.3	0.7
대체로 불만족	1.2	4.9	2.7	4.0	9.0	2.8
그저그럼	18.3	22.5	22.0	33.8	33.0	19.4
대체로 만족하는 편	26.1	35.5	34.8	29.8	30.3	31.1
매우 만족	53.2	36.3	39.9	31.3	25.3	46.0
계(수)	100.0(761)	100.0(738)	100.0(710)	100.0(645)	100.0(663)	100.0(726)
평균	4.29	4.02	4.10	3.86	3.67	4.19
한국인배우자						
매우 불만족	1.0	0.6	0.8	1.1	2.2	0.9
대체로 불만족	1.0	3.1	1.7	3.4	7.7	2.0
그저그럼	10.8	17.1	13.9	22.5	31.3	12.6
대체로 만족하는 편	28.8	36.8	38.5	37.6	32.8	35.5
매우 만족	58.3	42.3	45.1	35.3	26.0	48.9
계(수)	100.0(676)	100.0(619)	100.0(603)	100.0(529)	100.0(549)	100.0(636)
평균	4.42	4.17	4.25	4.03	3.73	4.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6. 가족부양 및 돌봄

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다문화가족 중 본인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는 71.6%이었으며, 아버지만 생존해 계신 경우는 6.3%인데 비해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 경우는 18.4%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3.8%이었다. 배우자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41.5%, 모만 생존한 경우 37.8% 순이었으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3.4%이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생존한 비율이 배우자의 부모 모두 생존한 비율보다 30.1%포인트 높는데, 이는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한국인배우자 보다 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그만큼 부모의 연령도 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³⁾.

〈표 5-130〉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생존여부

(단위: %, 명)

구분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부모 모두 생존	부만 생존	모만 생존	부모 모두 사망	계(수)	부모 모두 생존	부만 생존	모만 생존	부모 모두 사망	계(수)
전체	71.6	6.3	18.4	3.8	100.0(1,119)	41.5	7.3	37.8	13.4	100.0(1,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들 생존해 계신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들은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함께 비동거하는 경우는 56.1%이었으며,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18.8%이었고,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 하고만 동거하는 경우는 22.1%, 시아버지 또는 장인만 동거하는 경우는 2.9%로 상당수 결혼이민자들이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8%).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비동거하는 경우가 73.8%로 26.2%만이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배우자 어머니와 동거하는 비율이 13.8%이었다.

〈표 5-13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동거	시아버지 (장인)만 동거	시어머니 (장모)만 동거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비동거	계(수)
결혼이민자	18.8	2.9	22.1	56.1	100.0(918)
한국인배우자	10.8	1.6	13.8	73.8	100.0(8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33)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0.74세이며, 한국인배우자는 41.36세임.

나. 부양상 어려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부양상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양상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29.5%이었고, 나머지 70.5%는 부모님 부양 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양상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농·어촌보다 3.2%포인트가 높았고, 취업한 결혼이민자의 경우가 비취업 보다 8.8%포인트 높았다. 한편,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부양상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45.9%,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55.1%로 동 비율은 결혼이민자보다 15.4%포인트 낮았다. 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취업한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높아서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32〉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부양상 어려움 유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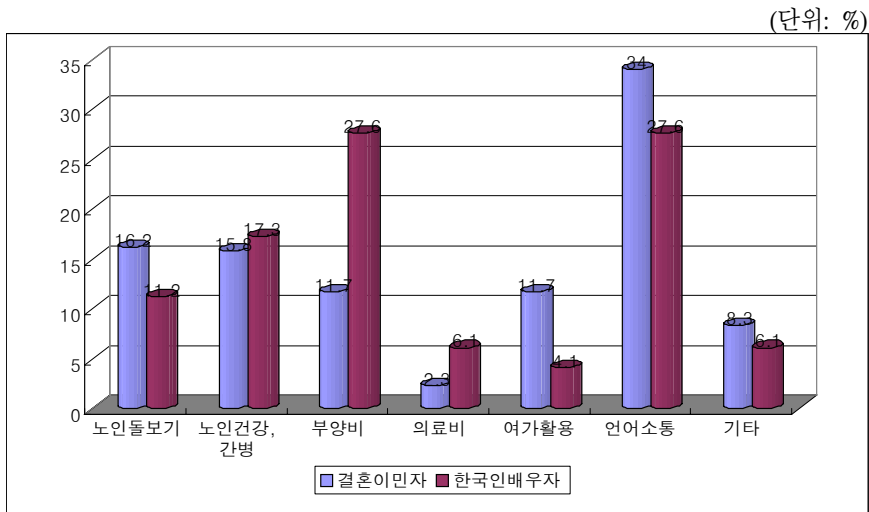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지역		취업여부	
		도시	농·어촌	취업	비취업
결혼이민자					
어려움 없음	29.5	27.8	31.0	20.6	29.4
어려움 있음	70.5	72.2	69.0	79.4	70.6
계(수)	100.0(376)	100.0(176)	100.0(200)	100.0(63)	100.0(323)
χ^2		.449		2.015	
한국인배우자					
어려움 없음	45.9	49.4	42.9	44.1	47.6
어려움 있음	55.1	50.6	57.1	55.9	52.4
계(수)	100.0(181)	100.0(83)	100.0(98)	(170)	100.0(21)
χ^2		.774		.093	

주: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상의 어려움 유무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34.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노인 돌보기로 즉, 식사, 세탁, 청소 등 일반적인 어른수발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6.2%). 그 외 노인건강이나 간병 문제(15.8%), 노인부양비 문제(11.7%), 본인의 여가활동 상의 제약(11.7%)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배우자는 언어소통 어려움과 부양비 문제가 각각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노인건강·간병문제(17.3%), 노인돌보기 문제(11.2%) 순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5-20]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상 어려움 비교



주: 결혼이민자(n=265), 한국인배우자(n=9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부모님 부양상의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이민자는 지역별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언어소통 어려움이 부양상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았

다. 취업여부별로도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취업자 보다 비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는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부양비를, 농·어촌지역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비취업자는 부양비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133〉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상 어려움¹⁾

(단위: %, 명)

구분	노인 돌보기	노인 건강, 간병	부양비	의료비	여가 활용	언어 소통	기타	계(수)	χ^2
결혼이민자 지역	16.2	15.8	11.7	2.3	11.7	34.0	8.3	100.0(265)	
도시	18.9	15.7	14.2	3.1	11.0	31.5	5.5	100.0(127)	6.014
농·어촌	13.8	15.9	9.4	1.4	12.3	36.2	10.9	100.0(128)	
취업여부									
취업	18.0	16.0	12.0	6.0	10.0	32.0	6.0	100.0(50)	3.636
비취업	15.4	15.8	11.8	1.8	11.8	35.1	8.3	100.0(228)	
한국인배우자 지역	11.2	17.3	27.6	6.1	4.1	27.6	6.1	100.0(98)	
도시	4.8	21.4	28.6	7.1	7.1	26.2	4.8	100.0(42)	2.306
농·어촌	16.1	14.3	26.8	5.4	1.8	28.6	7.1	100.0(56)	
취업여부									
취업	11.6	17.9	26.3	5.3	5.3	28.4	5.3	100.0(95)	3.771
비취업	18.2	18.2	36.4	9.1	0.0	9.1	9.1	100.0(11)	

주: 1) 부양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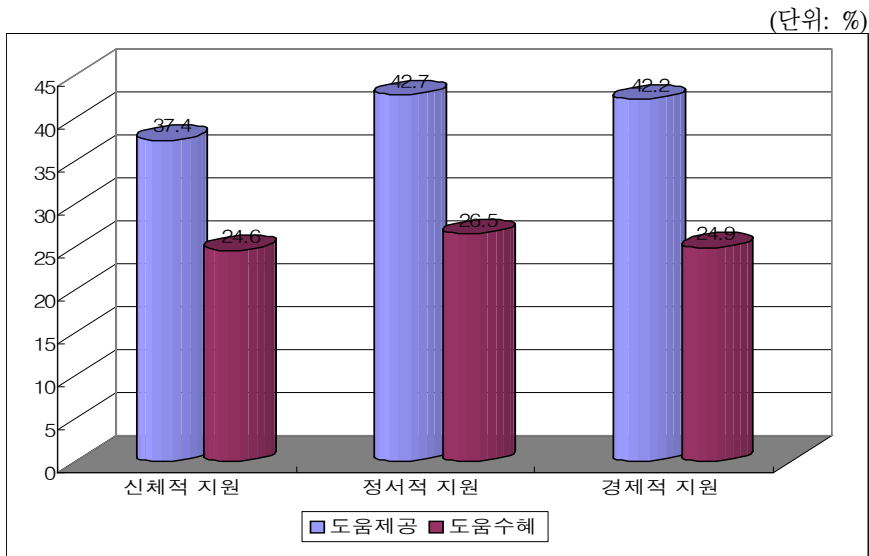
다. 부양의 교환

다음의 <표 5-134>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가족이나 배우자 가족 중 신체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여기서 신체적 지원은 간병, 수발, 집안청소, 세탁,

시장 보기, 식사준비, 손자녀 돌보기 등이며, 정서적 지원은 대화상대(말벗 되어주기), 중대 결정시 의논상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조언 등을 해주는 경우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은 생계비 지원, 일시적으로 큰 지출에의 지원, 용돈, 기타 물품 지원 등을 의미한다.

본 조사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결혼이민자에게 신체적 지원을 해준 경우는 37.4%, 정서적 지원 42.7%,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우 42.2%이었다. 반대로 결혼이민자가 도움을 주어 배우자 가족이 도움을 받은 경우는 신체적 지원 24.6%, 정서적 지원 26.5%, 경제적 지원 24.9%로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1] 결혼이민자의 도움제공 비율과 도움수혜 비율



주: 신체적 도움제공(n=1,051), 신체적 도움수혜(n=1,036), 정서적 도움제공(n=1,056), 정서적 도움수혜(n=1,035), 경제적 도움제공(n=1,050), 경제적 도움수혜(n=1,0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신체적 지원을 해준 경우는 24.5%, 정서적 지원 35.3%,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우 36.8%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반대로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주어 배우자 가족이 도움을 받은 경우는 신체적 지원 17.2%, 정서적 지원 22.3%, 경제적 지원 31.5%로 신체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결혼이민자가 본인가족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은 한국인배우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도움제공 비율과 도움 수혜 비율 비교

(단위: %, 명)

구분	도움제공 ¹⁾	(분석대상수)	도움수혜 ²⁾	(분석대상수)
결혼이민자				
신체적 지원	37.4	(1,051)	24.6	(1,036)
정서적 지원	42.7	(1,056)	26.5	(1,035)
경제적 지원	42.2	(1,050)	24.9	(1,036)
한국인배우자				
신체적 지원	24.5	(780)	17.2	(756)
정서적 지원	35.3	(774)	22.3	(757)
경제적 지원	36.8	(783)	31.5	(764)

주: 1)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받은 경우

2)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준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수혜자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움을 제공해준 사람으로는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정서적 지원은 기타를 제외할 경우 배우자와 응답자의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경제적 지원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도움을 베풀어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는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 부모 35.1%와 배우자 27.7%를 나타냈다. 정서적 지원도 배우자가 가장 높은 비율(35.2%)을 보였고, 경제적 지원은 응답자의 부모(25.1%)와 배우자의 부모(24.7%)가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인배우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준 사람으로는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48.1%)와 응답자 본인의 부모(23.8%)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정서적 지원은 배우자(32.2%)와 응답자 본인의 형제·자매(2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경제적 지원은 응답자 본인의 부모(36.7%)와 형제·자매(25.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베풀어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는 신체적 지원은 응답자 본인의 부모(36.2%)와 배우자(30.0%)이었다. 정서적 지원은 배우자(37.8%)와 응답자 본인의 부모(23.2%) 순이었고, 경제적 지원은 배우자의 부모(32.8%), 응답자의 부모(22.3%) 순이었다.

〈표 5-13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도움 제공자 및 도움 받은 수혜자 비율 비교

(단위: %, 명)

구분	도움 제공자 ¹⁾			도움 수혜자 ²⁾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결혼이민자						
배우자	46.3	40.2	40.4	27.7	35.2	18.6
배우자의 부모	23.8	9.8	19.6	35.1	11.1	24.7
배우자의 형제·자매	10.0	9.6	13.6	12.4	10.0	15.0
나의 부모	8.1	15.2	12.0	7.0	14.6	25.1
나의 형제·자매	4.3	8.4	7.4	3.3	7.3	5.7
자녀	0.8	2.6	0.7	7.0	8.0	3.6
기타	6.5	14.3	6.2	7.4	13.8	7.3
계(수)	100.0(369)	100.0(429)	100.0(418)	100.0(242)	100.0(261)	100.0(247)

주: 1)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받은 경우

2)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준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135〉 계속

구분	도움 제공자 ¹⁾			도움 수혜자 ²⁾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한국인배우자						
배우자	48.1	32.2	12.0	30.0	37.8	14.3
배우자의 부모	10.1	7.9	1.27	10.0	6.7	32.8
배우자의 형제·자매	4.2	3.0	4.9	6.2	4.3	8.8
나의 부모	23.8	18.0	36.7	36.2	23.2	22.3
나의 형제·자매	10.1	24.3	25.1	7.7	15.2	13.0
자녀	-	1.9	0.4	1.5	1.8	0.8
기타	3.7	12.7	8.1	8.5	11.0	8.0
계(수)	100.0(189)	100.0(267)	100.0(283)	100.0(130)	100.0(164)	100.0(238)

주: 1)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받은 경우

2)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배우자가 도움을 준 경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라. 가족의 접촉 및 연락 빈도

다음은 결혼이민자와 한국배우자의 본국 또는 본인 가족과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 또는 연락빈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자는 본국가족을 1년에 1회 이하(36.1%) 만나거나 또는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경우(32.7%)가 많았으며, 배우자 가족과는 거의 매일 만나는 경우가 17.6%이었으며, 주2~3회 8.3%, 주 1회 정도 12.7%로 주 1회 이상 만나는 경우는 모두 38.6%나 되었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의 연락빈도를 보면, 주 1회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23.1%), 그 다음은 주 2~3회(19.6%)이었으며,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8.5%)까지 포함할 경우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51.2%로 만남에 비해 연락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본국 가족과 배우자 가족의 만남 및 연락 빈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본국가족		배우자가족	
	만남	연락	만남	연락
결혼이민자				
거의 매일	6.1	8.5	17.6	17.8
주 2~3회	2.7	19.6	8.3	19.6
주 1회 정도	2.6	23.1	12.7	16.5
2주에 1회	2.5	11.1	6.0	9.1
월 1회 정도	4.6	17.8	14.1	13.3
2~3개월에 1회	5.5	8.0	15.4	8.9
6개월에 1회	7.3	2.7	7.9	3.9
1년에 1회 이하	36.1	4.3	8.9	2.1
전혀 만나지(연락하지) 않음	32.7	4.7	8.9	8.7
계(수)	100.0(890)	100.0(948)	100.0(629)	100.0(562)
한국인배우자				
거의 매일	19.5	20.0	2.9	3.3
주 2~3회	8.1	17.3	1.7	15.0
주 1회 정도	9.0	17.8	1.3	12.9
2주에 1회	6.3	9.9	1.7	7.7
월 1회 정도	11.4	11.9	3.1	14.1
2~3개월에 1회	11.8	7.3	4.8	9.1
6개월에 1회	10.8	4.4	8.2	8.5
1년에 1회 이하	11.6	3.5	33.5	9.8
전혀 만나지(연락하지) 않음	11.4	7.8	42.7	19.6
계(수)	100.0(804)	100.0(791)	100.0(747)	100.0(7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가족과의 연락빈도는 주 2~3회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거의 매일 17.8%, 주 1회 정도가 16.5%로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는 53.9%로 본국가족과 배우자가족과의 연락빈도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는 본인가족은 거의 매일 만나는 비율이 19.5%이었으며, 주 2~3회 8.1%, 주 1회 정도 9.0%로 36.6%가 본인의 가족을 주 1회 이상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가 본인의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빈도를 보면, 주 1회 이상이 5.9%에 불과하였고, 연락빈도에 있어서도 본인가족과는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빈도가 55.1% 정도이나 배우자가족과 주 1회 이상 연락빈도는 31.2%에 불과해 차이를 보였다.

마. 생활비 송금여부 및 송금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는 41.5%³⁴⁾이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39.0%, 농·어촌은 45.4%로 도시보다는 농·어촌의 결혼이민자들이 송금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거주지역 분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매우) 어렵다는 비율이 높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이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137〉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여부

구분	송금여부		계(수)	χ^2
	예	아니오		
결혼이민자 지역	41.5	58.5	100.0(1,059)	
도시	39.0	61.0	100.0(410)	4.218*
농·어촌	45.4	54.6	100.0(1,059)	
취업여부				
취업	38.8	61.2	100.0(214)	0.711
비취업	42.0	58.0	100.0(870)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34)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는 45.7%가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7〉 계속

(단위: %, 명)

구분	송금여부		계(수)	χ^2
	예	아니오		
한국인배우자	40.1	59.9	100.0(900)	
지역				
도시	38.0	61.1	100.0(537)	0.786
농·어촌	41.9	58.1	100.0(363)	
취업여부				
취업	42.4	57.6	100.0(847)	16.600***
비취업	19.8	80.2	100.0(86)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38.8%) 보다 비취업자(42.0%)의 송금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인배우자는 40.1%가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 비율은 도시지역은 38.0%, 농·어촌은 41.9%로 도시보다 농·어촌이 더 높아서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송금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64.5%가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그 다음은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 62.2%,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43.1%, 몽골 국적의 결혼이민자 37.5% 등이었다. 일본국적의 결혼이민자는 5.7%만이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표 5-138〉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여부
(단위: %, 명)

구분	송금함	송금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41.4	58.6	100.0(1,102)	
중국	30.8	69.2	100.0(208)	
중국(한민족)	15.8	84.2	100.0(101)	
베트남	64.5	35.5	100.0(299)	
필리핀	62.2	37.8	100.0(164)	215.316***
일본	5.7	94.3	100.0(157)	
태국	43.1	56.9	100.0(72)	
몽골	37.5	62.5	100.0(64)	
기타	45.9	54.1	100.0(37)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은 연간 558.4만원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송금액이 더 많았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송금액이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표 5-139〉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499만원	5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t값
결혼이민자 지역	5.9	20.1	31.6	20.1	22.3	100.0(354) 558.64
도시	5.7	21.8	33.2	20.4	19.0	100.0(211) 531.68
농·어촌	6.3	17.5	29.4	19.6	27.3	100.0(143) 598.42
χ^2			3.903			
취업여부						
취업	7.8	23.4	29.7	15.6	23.4	100.0(64) 491.50 -1.125
비취업	5.3	18.9	31.6	21.9	22.3	100.0(301) 588.68
χ^2			2.212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13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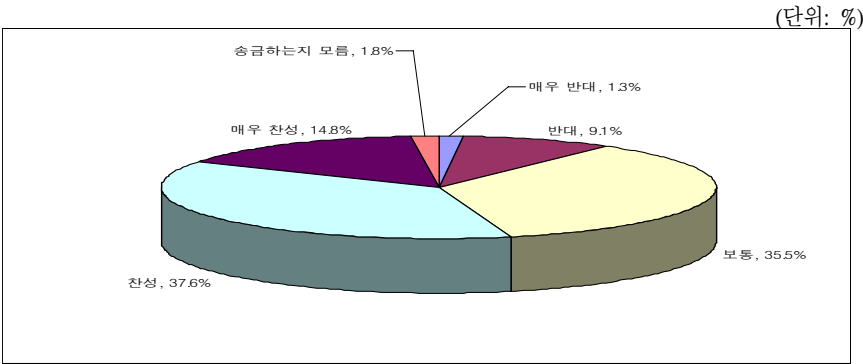
(단위: %,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499 만원	500~999 만원	10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t값
한국인배우자 지역								
도시	41.3	29.9	24.5	4.4	-	100.0(298)	406.34	
농·어촌	39.8	29.0	25.6	5.7	-	100.0(176)	393.82	-.729
χ^2			2.266					
취업여부								
취업	40.6	30.7	24.2	4.4	-	100.0(293)	385.85	.222
비취업	58.8	17.6	23.5	0.0	-	100.0(17)	366.79	
χ^2			2.9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편, 한국인배우자의 송금액은 평균 406.34만원이었으며,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그리고 취업자 보다 비취업자의 송금액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는 51.4%가 그리고 한국인배우자는 50.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2] 결혼이민자의 생활비 송금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주: 결혼이민자(n=3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은 연간 558.4만원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송금액이 더 많았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송금액이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배우자의 송금액은 평균 406.34만원이었으며,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그리고 취업자 보다 비취업자의 송금액이 더 많았다.

〈표 5-140〉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특성별 결혼이민자의 생활비 송금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송금하는 지 모름	계(수)	χ^2
결혼이민자 지역	1.3	9.1	35.5	37.6	14.8	1.8	100.0(386)	
도시	1.8	9.3	34.7	37.3	15.6	1.3	100.0(225)	2.612
농·어촌	0.7	9.3	38.4	36.4	12.6	2.6	100.0(151)	
취업여부 ¹⁾								
취업	2.7	9.6	37.0	37.0	11.0	2.7	100.0(73)	2.852
비취업	1.0	8.9	35.1	37.7	15.7	1.6	100.0(313)	
한국인배우자 지역	2.4	6.8	40.7	42.1	8.0	-	100.0(337)	
도시	1.5	7.2	39.5	42.6	9.2	-	100.0(195)	2.605
농·어촌	3.5	6.3	42.3	41.5	6.3	-	100.0(142)	
취업여부								
취업	2.1	6.5	41.4	41.7	8.3	-	100.0(336)	3.268
비취업	6.3	12.5	37.5	43.8	0.0	-	100.0(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바. 가족돌봄 실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 돌봄공백이 증대되면서 신 사회의 사회위험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가족의 부양기능은 가족전담에서 사회와 가족의 분담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족돌봄 실태는 돌

봄대상자의 특성, 돌봄자의 특성 및 생활변화, 돌봄시간, 이용시설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돌봄대상자의 특성

다문화가족 내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13.3%이었고 결혼이민자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의 관계는 배우자의 어머니인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의 어머니 순이었다. 장혜경 외의 연구(2006)에서는 일반가정의 돌봄자와 돌봄대상자의 관계는 배우자가 37.0%, 다음은 며느리 33.8%, 자녀가 25.0%로 배우자와 며느리가 많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141〉 다문화가족의 돌봄가족 유무 및 관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돌봄대상 가족 유무		
있음	146	13.3
없음	951	86.7
계	1,097	100.0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본인의 아버지	11	8.0
본인의 어머니	13	9.4
본인	4	2.9
본인의 배우자	22	15.9
배우자의 아버지	13	9.4
배우자의 어머니	39	28.3
형제·자매	2	1.4
조부모	8	5.8
자녀	11	8.0
기타	15	10.9
계	138	100.0

주: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연령을 보면 대상자의 63.3%가 60세 이상이었고, 40~59세, 39세 이하 연령층은 각각 19.5%, 17.2%의 분포를 보였다. 돌봄대상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율은 50.8%인 반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비율도 49.2%에 해당되었다. 한편 돌봄기간은 1~5년 미만이 28.8%이었고, 1년 미만은 26.3%, 5~10년 미만이 25.0%, 10년 이상은 20.0%에 해당되었다.

〈표 5-142〉 다문화가족의 돌봄대상자의 특성¹⁾

구분	빈도	(단위: 명, %)
		비율
돌봄대상자의 연령		
39세 이하	22	17.2
40~59세	25	19.5
60세 이상	81	63.3
계	128	100.0
돌봄대상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		
모든 생활을 혼자 함	23	18.9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음	37	30.3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38	31.1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음	24	19.7
계	122	100.0
돌봄 기간		
1년 미만	21	26.3
1~5년 미만	23	28.8
5~10년 미만	20	25.0
10년 이상	16	20.0
계	80	100.0

주: 1)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2) 돌봄자의 특성 및 변화

가족 내에 돌봄대상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원과 결혼이민자의 관계를 보면 결혼이민자 본인인 비율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그 배우자가 11.2%이었고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어머니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5-143〉 결혼이민자와 주 돌봄자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본인	56	44.8
배우자	14	11.2
자녀	4	3.2
본인 아버지	8	6.4
본인 어머니	5	4.0
형제·자매	11	8.8
조부모	-	-
배우자의 아버지	2	1.6
배우자의 어머니	9	7.2
기타 가족원	4	3.2
파출부 또는 간병인	6	4.8
기타	6	4.8
계	125	100.0

주: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가족의 돌봄으로 인하여 직장 및 취업활동에 변화여부를 보면 가족돌봄자의 36.7%에서 변화가 있었다. 변화 부분은 재택근무로 변경이 44.4%이었고, 휴직, 조퇴 또는 결근을 하는 비율이 각각 11.1%에 해당되었다. 장혜경 외의 연구(2006)에서는 일반가족의 돌봄자가 근로변화가 있는 비율은 47.3%이었고 구체적인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5.7%, 집에서 가까운 직장으로 이동이 12.2%로 많은 편이었고, 이외에 직종 변경, 잦은 조퇴와 결근 등은 5%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일반가족에 비해 다문화가족 돌

봄자의 직장 및 취업활동의 변화는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근로변화 형태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144〉 돌봄자의 직장 및 취업활동 변화 여부 및 변화부분

구분	빈도	(단위: 명, %)
		비율
직장 및 취업활동 변화 여부		
변화 있음	11	36.7
변화 없음	19	63.3
계	30	100.0
직장 및 취업활동 변화 부분		
근무시간 단축	-	-
조퇴 또는 결근	1	11.1
전직	-	-
휴직	1	11.1
퇴직	-	-
재택근무로 변경	4	44.4
기타	6	33.3
계	9	100.0

주: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3) 돌봄시간, 이용시설 및 비용

돌봄대상자를 돌보는 시간은 1주일을 기준으로 88.64시간으로 1일 평균 12.66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대상자의 연령별 또는 돌봄기간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장혜경 외의 연구(2006)에서는 일반가족 돌봄자의 1일 평균 돌봄시간은 12시간 54분으로 거의 13시간에 이르며 다문화가족 돌봄자의 1일 평균 돌봄시간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5-145〉 돌봄대상자의 평균 1주일간 돌보는 총시간

(단위: 시간)

구분	1주일 평균 돌보는 시간	(분석대상수)
전체	88.64	(205)
돌봄대상자 연령		
39세 이하	95.14	(22)
40~59세	91.44	(25)
60세 이상	78.16	(81)
돌봄 기간		
1년 미만	80.14	(21)
1~5년 미만	79.65	(23)
5~10년 미만	84.70	(20)
10년 이상	73.06	(16)

주: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돌봄대상자 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45.7%이었고 나머지 54.3%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하는 기관 중에 병원이 1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간·단기보호시설이 7.8%이었고 이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대상자의 특성별로 이용시설 유무 및 시설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돌봄대상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43.1%로 가장 높았고, 40~59세는 42.9%, 39세 이하 38.9%로 돌봄대상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하는 시설유형은 돌봄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 연령층과 60세 이상은 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40~59세 연령층은 기타 시설과 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39세 이하 연령층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40세 이상 연령층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였다.

돌봄기간별로 시설이용비율은 돌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5년 미만인 경우 동 비율은 45.5%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돌봄기간이 오래된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이용하는 시설유형은 공통적으로 병원이 높았고 이외에 돌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5~10년 미만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0년 이상인 경우는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6〉 돌봄대상자의 특성별 이용 시설 유무 및 시설 유형
(단위: 명, %)

구분	돌봄대상자 연령			돌봄기간				전체
	39세 이하	40~59세	60세 이상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용하는 시설 유무								
이용하는 시설 없음	61.1	57.1	56.9	42.1	54.5	58.8	56.3	54.3
이용하는 시설 있음	38.9	42.9	43.1	57.9	45.5	41.2	43.7	45.7
(주간보호시설)	(-)	(4.8)	(4.6)	(5.3)	(4.5)	(5.9)	(12.5)	(5.2)
(단기보호시설)	(-)	(-)	(1.5)	(5.3)	(-)	(-)	(-)	(2.6)
(병원)	(22.2)	(14.3)	(23.1)	(26.3)	(27.3)	(17.6)	(12.5)	(19.8)
(노인복지관)	(-)	(-)	(1.5)	(-)	(-)	(-)	(6.3)	(0.9)
(장애인복지관)	(-)	(4.8)	(6.2)	(10.5)	(4.5)	(-)	(-)	(4.3)
(종합사회복지관)	(5.6)	(-)	(1.5)	(5.3)	(4.5)	(-)	(-)	(1.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5.6)	(-)	(4.6)	(5.3)	(-)	(11.8)	(12.5)	(6.0)
(기타)	(5.6)	(19.0)	(-)	(-)	(4.5)	(5.9)	(-)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	(21)	(65)	(19)	(22)	(17)	(16)	(104)
χ^2	18.521			19.142				

주: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돌봄대상자의 이용시설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47.5%로 도시지역보다 5.2%포인트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한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46.5%로 취업한 경우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이는 돌봄대상자의 시설이용 유무가 지역 및 결혼이민자의 취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며 돌봄 환경 및 돌봄자의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4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돌봄대상자의 이용 시설 유무

(단위: 명, %)

구분	지역		취업여부		전체
	도시	농·어촌	취업	비취업	
이용하는 시설 없음	57.7	52.5	55.2	53.5	54.3
이용하는 시설 있음	42.3	47.5	44.8	46.5	45.7
계(수)	100.0(52)	100.0(61)	100.0(29)	100.0(86)	100.0(116)
χ^2	.310		.025		

주: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돌봄대상자의 시설이용 실태는 1주일 단위로 평균이용일수가 4.28일, 1일 평균이용시간은 18.05시간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1일 평균 이용일수는 많았으나 평균이용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실수가 적은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돌봄대상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이용일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고 1일 이용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8〉 돌봄대상자의 시설이용실태

구분	(단위: 일, 시간)	
	1주일 평균 이용일수	1일 평균 이용시간
전체	4.28	18.05
지역		
도시	4.43	10.00
농·어촌	3.90	10.38
돌봄대상자 연령		
39세 이하	2.00	3.00
40~59세	5.00	5.00
60세 이상	4.82	16.44
(분석대상수)	(18)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월 평균 243천원이었고 비용 부담 정도는 61.0%로 과반수이상이 해당되었다. 장혜경 외의 연구(2006)에서는 일반가정의 돌봄 관련 비용의 가정경제 부담정도는 64.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정의 돌봄 관련 비용의 부담정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돌봄대상자의 연령별로는 월 평균비용은 60세인 경우 264천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많았고 다음은 39세 이하 연령층이 258천원이었다. 비용 부담정도는 39세 이하 연령층은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60세 이상이 60.0%의 비율을 보였다.

돌봄기간별로 월 평균비용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5~10년 미만인 경우 31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인 경우도 312천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월평균 비용의 부담정도는 돌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비용에 비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8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년 미만이 61.6%, 5~10년 미만이 60.0% 순으로 높았다.

시설이용유무별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평균비용은 323천원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1.8배 높았다. 그러나 비용부담 정도는 시

설을 이용안하는 경우가 61.1%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8%포인트 높았다.

〈표 5-149〉 특성별 돌봄 관련 평균 비용 및 부담정도

(단위: 천원, %, 명)

구분	월 평균 비용		부담정도					전혀 부담안 됨	계(수)	χ^2
	비용	(분석 대상수)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 안됨				
전체	242.86	(58)	21.9	39.1	25.0	7.8	6.3	100.0(64)		
돌봄대상자 연령										
39세 이하	257.50	(8)	37.5	37.5	12.5	12.5	-	100.0(8)		
40~59세	135.00	(8)	11.1	33.3	33.3	-	22.2	100.0(9)	7.885	
60세 이상	264.02	(42)	17.8	42.2	26.7	8.9	4.4	100.0(45)		
돌봄기간										
1년 미만	311.82	(11)	23.1	38.5	23.1	7.7	7.7	100.0(13)		
1~5년 미만	253.57	(14)	21.4	35.7	35.7	7.1	-	100.0(14)	10.244	
5~10년 미만	317.50	(12)	40.0	20.0	20.0	10.0	10.0	100.0(10)		
10년 이상	148.64	(11)	9.1	72.7	9.1	-	9.1	100.0(11)		
시설이용유무										
시설이용함	322.61	(23)	37.5	20.8	33.3	4.2	4.2	100.0(24)	10.143*	
시설이용안함	183.94	(33)	11.1	50.0	19.4	11.1	8.3	100.0(36)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7.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

가. 가족관계

다음 <표 5-150>은 결혼이민자들이 본인의 가족이나 배우자 가족 중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결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힘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배우자는 64.4%이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어머니로 14.4%이었고, 그 다음은 배우자가 10.2%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은 배우자의 어머니였다. 동 연

구결과는 지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150〉 지역별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의 가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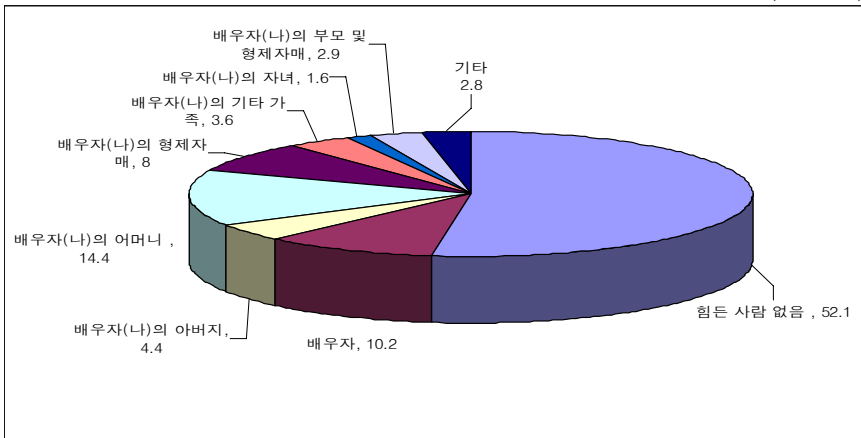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힘든 사람 없음	52.1	53.2	50.3	64.6	66.8	61.4
배우자	10.2	9.7	10.6	9.8	9.6	10.1
배우자(나)의 아버지	4.4	3.8	5.3	3.9	3.7	4.1
배우자(나)의 어머니	14.4	11.6	18.4	6.1	4.4	8.5
배우자(나)의 형제·자매	8.0	9.2	6.1	5.4	5.4	5.5
배우자(나)의 기타 가족	3.6	3.0	4.8	2.4	3.3	1.1
배우자(나)의 자녀	1.6	2.2	0.8	0.7	0.4	1.1
배우자(나)의 부모 및 형제·자매	2.9	4.5	0.8	4.1	4.2	3.8
기타	2.8	2.7	3.0	3.1	2.2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24)	(628)	(396)	(907)	(542)	(365)
χ^2	29.066***			16.716*		

주: *** $p < .0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5-23] 결혼이민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의 가족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배우자의 부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이 다름, 사고방식, 가치관 차이를 지적하였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관계에서도 한국어로 의사소통 어려움, 사고방식,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 생활방식 다름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표 5-15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¹⁾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별 다른 어려움 없음	39.7	45.4	47.5	46.3
한국어로 의사소통 어려움	27.1	22.9	38.2	35.0
사고방식, 가치관 다름	13.2	13.2	5.8	7.6
생활습관, 생활방식 다름	14.1	10.4	5.6	8.2
종교가 다름	1.2	1.8	0.9	1.0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음	2.6	4.3	0.2	0.4
기타	2.0	2.1	1.8	1.4
계(수)	100.0(997)	100.0(1,014)	100.0(844)	100.0(77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과 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이를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움은 한국인배우자가 지적한 비율이 높았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과 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이 다른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외 결혼이민자들은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이 한국인배우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함께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한국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한국인배우자와 그 부모,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 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도 요구된다.

나. 폭력경험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난 1년간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폭력 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26.1%가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는 14.2%가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이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폭력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폭력경험을 보면, 결혼이민자는 도시지역은 24.5%가 폭력을 경험한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28.7%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결혼이민자들이 폭력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는 도시지역은 14.6%, 농·어촌지역은 13.7%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폭력경험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 보다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152〉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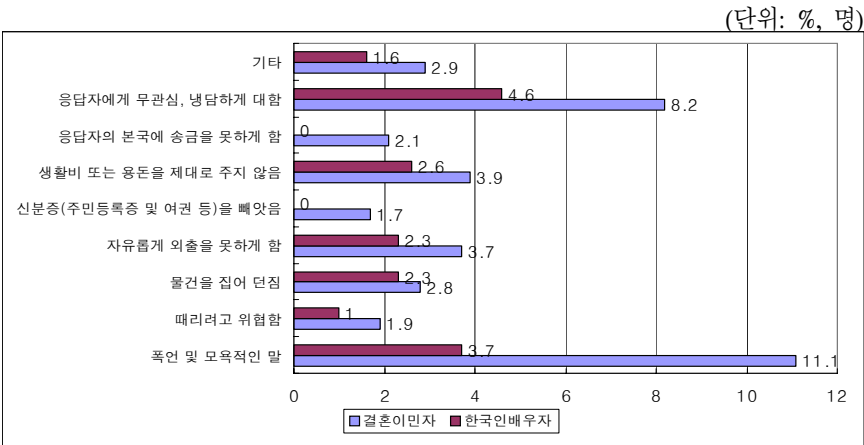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폭력경험			χ^2
	있음	없음	계(수)	
결혼이민자	26.1	73.9	100.0(1,046)	2.303
도시	24.5	75.5	100.0(638)	
농·어촌	28.7	71.3	100.0(408)	
한국인배우자	14.2	85.8	100.0(894)	0.132
도시	14.6	85.4	100.0(536)	
농·어촌	13.7	86.3	100.0(3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각 폭력유형별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폭언 및 모욕적인 말 11.1%,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함 8.2% 등이었고, 한국인배우자는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함(4.6%),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 (3.7%) 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률



주: 결혼이민자(n=1,090), 한국인배우자(n=8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 폭력유형별 경험률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모든 폭력유형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 예방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한국인배우자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정서적 학대의 하나인 때리려고 위협함, 신체적 학대인 물건을 집어던짐, 방임에 속하는 응답자에게 무관심, 냉담하게 대함 등이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었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정서적 학대 중 폭언 및 모욕적인 말과, 신체적 학대 중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 경제적 학대인 생활비 또는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음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53〉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유형별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도시	농·어 촌	(분석 대상자)	도시	농·어 촌	(분석 대상자)
폭언 및 모욕적인 말	9.9	13.2	(1,046)	3.0	4.7	(894)
때리려고 위협함	1.7	2.5	(1,045)	1.1	0.8	(894)
물건을 집어 던짐	2.2	3.9	(1,045)	3.0	1.4	(894)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	2.8	5.2	(1,045)	1.9	3.1	(894)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음	0.9	2.5	(1,045)	-	-	-
생활비 또는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음	3.8	4.4	(1,045)	1.9	3.6	(894)
응답자의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함	1.7	2.5	(1,045)	-	-	-
응답자에게 무관심, 냉담하게 대함	7.8	8.4	(1,045)	5.6	3.1	(894)
기타	2.5	3.7	(1,045)	1.3	2.0	(8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년 1~2회가 2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월 1~2회 23.9%, 6개월에 1~2회 22.9%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년 1~2회(29.7%), 그 다음은 6개월에 1~2회(25.4%), 월 1~2회(20.3%) 등의 순이었다. 농·어·

촌은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년 1~2회 순이었다. 주 1~2회 이상은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여 농어촌에 폭력 발생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인배우자는 월 1~2회가 33.3%로 가장 많았고, 년 1~2회 23.8%, 주 1~2회 14.3%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년 1~2회 경험한 비율이 28.3%, 그 다음은 월 1~2회 경험한 경우로 26.3%이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년 1~2회 31.6%, 6개월에 1~2회 24.6%, 월 1~2회 21.1% 등이었다. 주 1~2회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도시지역은 47.5%인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38.6%로 도시지역의 폭력경험 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54〉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 빈도

(단위: %, 명)

구분	폭력경험 빈도						계(수)	χ^2
	거의 매일	주 1~2회	월 1~2회	6개월에 1~2회	년 1~2회	기타		
결혼이민자	8.0	10.9	23.9	22.9	26.9	7.5	100.0(201)	5.162
도시	5.9	10.2	20.3	25.4	29.7	8.5	100.0(118)	
농·어촌	10.8	12.0	28.9	19.3	22.9	6.0	100.0(83)	
한국인배우자	11.9	14.3	33.3	11.9	23.8	5.1	100.0(99)	4.853
도시	9.1	12.1	26.3	19.2	28.3	5.3	100.0(57)	
농·어촌	7.0	10.5	21.1	24.6	31.6	4.8	100.0(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에게 폭력행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는 기타를 제외할 경우 배우자 어머니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지적되었다. 한국인배우자에게 폭력행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는 어머니(31.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18.3%)이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

인배우자 모두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어머니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결혼이민자의 폭력행위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한국인배우자의 폭력행위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55〉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에게 폭력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단위: %, 명)

구분	폭력행위자					계(수)	χ^2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결혼이민자	9.6	39.4	16.0	6.9	28.2	100.0(188)	15.281*
도시	4.5	34.8	18.8	9.8	32.1	100.0(112)	
농·어촌	17.1	46.1	11.8	2.6	22.4	100.0(70)	
한국인배우자	11.5	31.7	18.3	9.6	28.8	100.0(104)	7.169
도시	4.9	31.1	21.3	9.8	32.0	100.0(61)	
농·어촌	20.9	32.6	14.0	9.3	23.3	100.0(43)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폭력행위를 한 주요이유로 결혼이민자는 생활방식의 차이, 성격차이, 경제문제를 지적하였다. 지역별로도 도시, 농·어촌 모두 생활방식의 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학대·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인배우자는 주요 폭력이유로 생활방식에 의한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경제문제이었다. 지역별로도 도시와 농·어촌 모두 생활방식에 의한 이유와 경제문제 순이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생활방식 차이로 인한 폭력이 41.5%나 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56〉 지역별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배우자 가족으로부터 폭력이유
(단위: %, 명)

구분	폭력이유						계(수)	%
	이유 없음	성격 차이	생활방 식 차이	경제 문제	부모와 의 불화	기타		
결혼이민자	5.3	20.8	35.3	12.1	4.3	22.2	100.0(207)	
도시	4.8	19.0	38.1	11.9	3.2	23.0	100.0(126)	2.496
농·어촌	6.2	23.5	30.9	12.3	6.2	21.0	100.0(81)	
한국인배우자	11.6	16.3	32.6	20.9	7.0	11.6	100.0(108)	
도시	9.3	13.0	38.0	21.3	9.3	9.3	100.0(65)	2.428
농·어촌	7.7	10.8	41.5	21.5	10.8	7.7	100.0(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결혼이민자는 말로 설득한다 32.1%, 그냥 참음 17.3%, 일단 피함 15.4% 등이었고, 싸워서 고친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9.0%)도 나타났다. 이외 이혼·별거를 요청하거나 상담전화나 상담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인배우자는 말로 설득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고, 그냥 참음 33.1%, 일단 피하는 경우도 15.5%로 결혼이민자 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외 싸워서 고침, 별거·이혼요청 등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담전화 및 상담소 이용도 한국인배우자보다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5-15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가족원으로부터의 폭
력에 대한 대응 비교

구분	(단위: %, 명)							
	말로 설득	싸워서 고침	일단 피함	그냥 참음	본국 으로 가려함	별거· 이혼 요청	상담전화 ·상담소 이용	기타
결혼이민자	32.1	9.0	15.4	17.3	4.5	5.8	5.8	10.3
한국인배우자	40.4	4.9	15.5	33.1	-	1.6	0.4	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폭력상담을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결혼이민자는 79.4%가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었으며, 이주여성 상담소를 방문한 경우가 17.5%, 상담전화 이용한 경우가 2.4% 등이었다. 한국인배우자는 상담소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70.3%이었으며, 이주여성 상담소를 방문한 경우가 25.3%,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가 4.4% 등이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폭력상담을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한국인배우자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함께 상담소나 상담전화 등의 안내, 홍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표 5-15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폭력상담을 위한 이주여성 상담소 방문 및 상담전화 이용 여부¹⁾ 비교

(단위: %, 명)

구분	이주여성 상담소 방문	상담전화 이용	상담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17.5	2.4	79.4	0.8	100.0(126)
한국인배우자	25.3	4.4	70.3	-	100.0(158)

주: 1) 가족원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주여성 상담소나 상담전화 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25%이었으나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5%나 되었다. 상담전화 이용에 관해서는 28.6%가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었으며, 동일한 비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었다. 따라서 이들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 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5-159〉 이주여성 상담소 및 상담전화 이용 상의 도움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결혼이민자						
이주여성상담소	7.5	7.5	35.0	25.0	25.0	100.0(40)
상담전화 이용	28.6	-	42.9	28.6	-	100.0(14)
한국인배우자						
이주여성상담소	24.0	4.0	40.0	20.0	12.0	100.0(25)
상담전화 이용	-	11.1	11.1	55.6	22.2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 사회심리적 상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에서 긍정하는 의견은 53.8%이었고,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는 48.9%로 과반수 수준이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65.0%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는 58.0%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나는 때때로 장점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부정하는 의견도 55.6%로 높아서 결혼이민자의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에서 긍정하는 의견은 60.7%이었고,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는 53.2%로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73.8%로 자신에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는 63.1%, ‘나는 때때로 장점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에 대하

여 부정하는 의견은 60.9%로 상당히 높아서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자존감과 자부심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사회심리적 상태 비교

(단위: %, 명)

구분	1=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2=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3=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할 수 있음 4=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함 5=나는 때때로 장점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함 6= 전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함					
	1	2	3	4	5	6
결혼이민자						
전혀 그렇지 않음	2.4	2.0	2.3	30.1	27.4	3.4
그렇지 않은 편임	3.0	4.1	5.0	27.9	28.2	7.0
그저 그럼	40.8	45.0	27.6	28.9	31.7	39.2
그런 편임	35.2	35.2	43.8	10.1	9.9	34.1
매우 그럼	18.6	13.7	21.2	2.9	2.8	1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95)	(1,002)	(995)	(988)	(987)	(1,002)
한국인배우자						
전혀 그렇지 않음	1.8	1.7	1.9	31.6	28.4	2.3
그렇지 않은 편임	3.7	7.0	4.3	31.5	32.5	7.7
그저 그럼	33.8	38.2	20.0	25.6	29.7	33.6
그런 편임	46.7	41.2	51.1	9.3	7.6	43.7
매우 그럼	14.0	12.0	22.7	2.0	1.8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04)	(906)	(904)	(895)	(893)	(9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50.4%이었고, 한국인배우자는 56.5%로 결혼이민자보다 6.1포인트 높았다.

다문화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문제는 자녀일로 인한 고민이 4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제적 문제(44.6%), 내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39.7%), 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37.9%), 배우자일로 인한 고민(37.5%), 가족 내에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32.7%), 직장과 가정생활의 어려움(29.9%), 본인의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29.3%), 직장에서 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21.2%), 직장 및 업무상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14.8%) 등의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는 자녀일, 경제문제, 가족관계, 배우자 등에 대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정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1=경제적 문제 2=자녀일로 인한 고민 3=배우자 일로 인한 고민 4=내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 5=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 6=본인의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7=가족 내에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8=직장에서 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9=직장 및 업무상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10=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결혼이민자										
전혀 경험하지 않음	16.2	17.7	17.3	21.5	23.7	31.8	27.6	46.1	54.0	39.2
적게 경험한 편임	39.1	33.8	45.1	38.7	38.4	38.9	39.7	32.6	31.2	31.0
많이 경험한 편임	28.6	30.4	24.7	26.5	26.7	20.4	22.2	16.2	10.7	19.6
매우 많이 경험한 편임	16.0	18.0	12.8	13.2	11.2	8.9	10.5	5.0	4.1	1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74)	(913)	(958)	(942)	(932)	(915)	(887)	(616)	(587)	(623)
한국인배우자										
전혀 경험하지 않음	8.2	22.8	23.5	21.7	29.8	34.8	23.4	21.5	29.1	27.1
적게 경험한 편임	34.4	44.2	48.0	47.1	47.8	44.5	37.4	44.3	47.4	44.3
많이 경험한 편임	37.9	24.4	19.7	23.7	16.7	14.4	27.7	25.7	18.0	21.2
매우 많이 경험한 편임	19.4	8.6	8.8	7.5	5.6	6.3	11.5	8.5	5.5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86)	(769)	(848)	(840)	(836)	(821)	(820)	(750)	(726)	(7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57.3%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내에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39.2%), 직장에서 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34.2%), 자녀일로 인한 고민(33.0%), 내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31.2%) 등도 높았다. 그리고 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28.6%), 배우자 일로 고민(28.5%), 직장 및 업무상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23.5%), 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22.3%), 본인의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20.7%)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배우자가 주로 경제적 문제와 가족을 책임진다는 부담감, 직장부담감 등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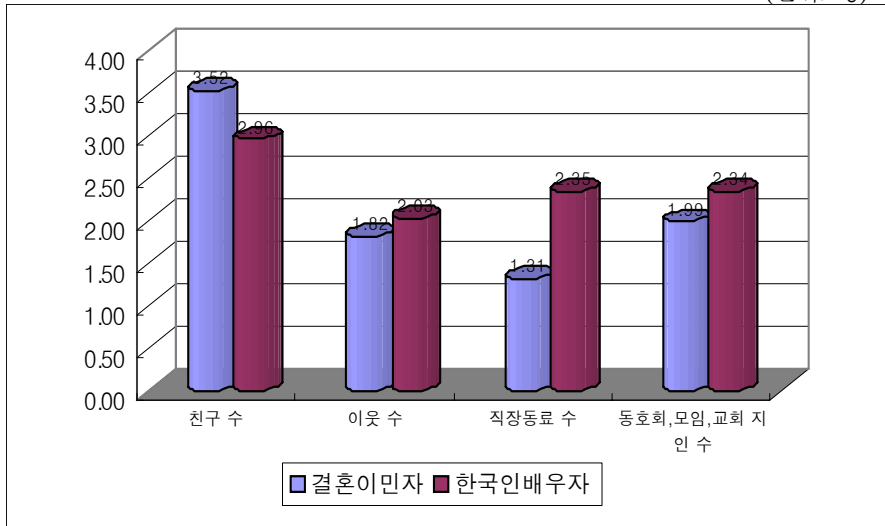
8. 사회적 지지

가. 친척·이웃·동료·기타 인원수 및 연락빈도

사회적 지지망인 친구·이웃·동료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는 친구수가 3.52명, 이웃 수는 1.82명, 직장 동료 수는 1.31명, 동호회·모임·교회 지인 수는 1.99명이었다.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친구 수 2.96명, 이웃 수 2.03명, 직장동료 수 2.35명, 동호회·모임·교회 지인 수는 2.34명으로 친구수는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오히려 적었으나 이웃 수, 직장동료 수, 동호회·모임·교회 지인 수는 결혼이민자보다 많았다.

[그림 5-2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평균 친구·이웃·동료·기타 수 비교

(단위: 명)



주: 결혼이민자(n=1,157), 한국인배우자(n=1,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친구·이웃·동료들과의 연락빈도를 보면 결혼이민자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비율이 13.6%로 낮았고, 월 1회 이하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비율은 72.2%로 3분의 2가 해당되었으며, 전혀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 비율은 3.5%로 극히 미미하였다. 한국인배우자는 매일 연락하거나 월 1회 이하 정도로 만나는 비율이 83.9%로 결혼이민자보다 1.9%포인트 낮았고 전혀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 비율은 1.4%이었다. 따라서 친구·이웃·동료들과의 연락빈도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높았으나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 비율 또한 결혼이민자가 높았다.

〈표 5-16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연락빈도 비교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 2~3 회	주 1회 정도	2주에 1회	월 1회 정도	2~3 개월에 1회	6개월 에 1회	년 1회 이하	전혀 연락 또는 만나지 않음	계(수)
결혼이민자	13.6	31.5	21.8	8.1	10.8	6.2	2.1	2.5	3.5	100.0(972)
한국인배우자	10.7	23.9	24.8	8.7	15.8	8.4	4.1	2.1	1.4	100.0(77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친구·이웃·동료들과의 연락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및 체류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적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신국가가 태국인 경우 주 1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8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국(한민족), 중국, 필리핀, 몽골, 기타 국가, 베트남 등의 순으로 62.1~68.9%의 범위를 보였다. 반면 전혀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는 비율은 기타 국가가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베트남, 중국, 몽골 등이 비교적 높았다.

〈표 5-16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연락빈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주 2~3 회	주 1회 정도	2주에 1회	월 1회 정도	2~3 개월에 1회	6개월 에 1회	년 1회 이하	전혀 연락 또는 만나지 않음	계(수)
지역										
도시	13.3	31.5	21.7	8.8	10.0	7.2	1.5	2.4	3.6	100.0(581)
농·어촌	13.1	31.3	22.5	7.4	11.7	4.6	3.1	2.8	3.4	100.0(351)
χ^2	6.420									
체류기간										
2년 미만	12.3	34.4	21.4	9.1	10.9	2.5	1.8	2.9	4.7	100.0(276)
2~4년 미만	14.2	27.7	24.3	8.8	10.8	6.1	0.7	2.0	5.4	100.0(148)
4~6년 미만	11.3	35.7	19.0	8.3	8.3	11.3	1.8	2.4	1.8	100.0(168)
6년 이상	15.9	28.4	22.3	6.4	12.2	7.3	3.4	2.1	2.1	100.0(328)
χ^2	33.409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표 5-163〉 계속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주 2~3 회	주 1회 정도	2주에 1회	월 1회 정도	2~3 개월에 1회	6개월 에 1회	년 1회 이하	전혀 연락 또는 만나지 않음	계(수)
국적										
중국	15.9	31.3	21.4	9.3	7.7	6.6	2.2	1.1	4.4	100.0(182)
중국(한민족)	14.9	26.4	27.6	8.0	10.3	3.4	3.4	4.6	1.1	100.0(87)
베트남	11.8	28.3	22.0	10.2	10.2	7.1	1.6	2.8	5.9	100.0(254)
필리핀	14.9	29.2	22.1	5.2	13.0	7.1	1.3	5.8	1.3	100.0(154)
일본	8.6	33.1	27.2	8.6	11.3	7.9	2.0	-	1.3	100.0(151)
태국	20.0	51.7	8.3	3.3	11.7	1.7	1.7	-	1.7	100.0(60)
몽골	20.0	34.0	10.0	8.0	18.0	2.0	2.0	2.0	4.0	100.0(50)
기타 ¹⁾	6.3	34.4	21.9	6.3	9.4	6.3	6.3	3.1	6.3	100.0(32)
χ^2	77.849*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모임 참여정도 및 도움여부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는 비율은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이 60.9%, 본인의 가족·친척모임이 53.6%로 높았으나,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배우자 친구·단체모임 그리고 본국 친구·단체모임 등에 참석한 비율은 62.7~80.3%로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주로 배우자와 관련된 모임과 본국 친구·단체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학교모임이나 본인의 가족·친척 모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모임유형별로 참석하는 비율은 본인의 가족·친척모임과 친구·단체 모임이 각각 88.0%와 85.5%로 높았으나, 배우자의 친구·단체 모임,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에 참석한 비율은 24.6~48.6%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중심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본인 중심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동훈 외의 연구

(2006)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은 배우자의 가족·친척 모임이 5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본국인 친구·단체 모임, 나의 가족·친척모임,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16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지난 1년간 모임에 참여빈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나의 가족 친척모임	배우자의 가족 친척모임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본국인 친구·단체 모임	배우자 친구·단체 모임
결혼이민자					
참석한 적 없음	53.6	19.7	60.9	32.6	37.3
년 1~2회	27.4	26.2	19.5	16.0	24.7
년 3~4회	8.5	28.0	8.5	9.8	10.4
2개월에 1회	3.4	9.6	3.7	9.4	8.6
매월	4.0	9.9	4.2	18.4	15.4
매주 또는 그 이상	3.2	6.5	3.2	13.8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50)	(957)	(862)	(941)	(935)
한국인배우자					
참석한 적 없음	12.0	65.5	75.4	14.5	51.4
년 1~2회	35.0	23.0	14.2	23.9	20.5
년 3~4회	27.9	5.0	4.1	18.4	9.1
2개월에 1회	10.2	2.9	2.1	14.2	9.1
매월	8.3	2.3	3.4	25.3	8.2
매주 또는 그 이상	6.7	1.3	0.7	3.8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72)	(825)	(725)	(876)	(8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도움이 되는 모임을 보면 결혼이민자는 본국인의 친구·단체 모임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본국인 친구·단체모임과 가족·친척모임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도움이 되는 모임·단체 비교
(단위: %, 명)

구분	나의 가족·친척 모임	배우자의 가족·친척 모임	자녀학교 의 학부모 모임	본국인 친구·단체 모임	배우자 친구·단체 모임	계(수)
결혼이민자	14.1	17.7	15.1	40.8	12.3	100.0(644)
한국인배우자	35.7	2.7	4.0	46.9	10.8	100.0(67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사건발생유형별로 가장 중요한 도움요청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는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 일을 부탁할 경우 중요한 도움요청자로 과반수 이상인 55.7%가 배우자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친정부모를 응답한 비율이 10.9%,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7.6%이었고, 도움요청자가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6%이었다. 갑자기 돈을 빌릴 일이 생긴 경우는 42.6%가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19.3%로 높았다. 부부간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24.2%, 배우자는 13.2%이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21.3%로 5분의 1이 해당되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이 29.0%,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는 12.2%이었으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39.2%로 3분의 1 이상이 해당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로 배우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경우도 높아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6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사건발생유형별 가장 중요한 도움요청자 비교

구분	(단위: %, 명)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부부간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결혼이민자				
없음	11.6	19.3	21.3	39.2
배우자	55.7	42.6	13.2	29.0
나의 부모	10.9	8.7	6.6	2.7
나의 형제자매·친척	3.3	4.9	6.3	1.6
자녀	5.1	7.6	8.4	2.3
친구	1.8	3.9	6.3	2.3
배우자의 부모	0.9	0.8	0.3	0.2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	7.6	8.0	24.2	12.2
이웃·직장동료	1.7	1.5	1.8	1.3
기타	1.4	2.6	11.7	9.1
계(수)	100.0(934)	100.0(920)	100.0(912)	100.0(875)
한국인배우자				
없음	9.0	15.2	16.6	22.5
배우자	49.8	8.5	4.9	13.6
나의 부모	21.9	32.9	17.3	10.4
나의 형제자매·친척	12.1	27.0	17.8	9.3
자녀	0.1	0.1	0.5	0.1
친구	2.0	9.6	24.5	24.3
배우자의 부모	0.9	1.1	0.8	0.5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	1.0	0.9	2.2	0.7
이웃·직장동료	1.5	1.5	1.9	13.5
기타	1.6	3.2	13.4	5.2
계(수)	100.0(867)	100.0(856)	100.0(849)	100.0(8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는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 일을 부탁할 경우 중요한 도움요청자로 과반수인 49.8%가 배우자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친부모를 응답한 비율은 21.9%, 친형제자매·친척은 12.1%이었으며, 도움요청자가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9.0%로 미미하였다. 갑자기 돈을 빌릴 일이 생긴

경우는 32.9%가 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27.0%는 친형제자매·친척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5.2%이었다. 부부간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24.5%, 친부모와 형제자매·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각각 17.3%와 17.8%로 높았으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16.6%에 해당되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 13.6%, 친부모 10.4%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2.5%로 5분의 1 이상이 해당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배우자는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일을 부탁할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주로 친부모나 형제자매·친척, 친구 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제2절 해체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실태

1. 해체 다문화가족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가. 해체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본 조사결과, 해체 다문화가족은 지역별로는 도시에 48.6%가 분포되어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81.8%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거주 비율은 해체 다문화가족이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높은 편이었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69.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3.57세로 일반 결혼이민자(30.74세) 보다 2.83세 더 많았다. 교육수준은 결혼해체 이민자는 고등학교 이상이 58.8%인데 비해 일반 결혼이민자는 78.1%로 일

반 결혼이민자 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은 낮고, 중학교 이하의 비율은 높아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낮았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우 취업자는 14.3%로 일반 결혼이민자의 현 취업자 비율인 19.4% 보다 5.1%포인트 낮았다.

〈표 5-167〉 결혼해체 이민자의 특성

(단위: 명, %, 세)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도시	18	48.6
농촌	19	51.4
성		
남자	6	18.2
여자	27	81.8
연령		
15~39세	16	69.6
40세 이상	7	30.4
(평균 연령)	-	(33.5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	41.2
고등학교이상	10	58.8
취업여부		
취업	4	14.3
비취업	24	85.7
장애유무		
있음	-	-
없음	25	100.0
외국인본인(배우자)의 본국국적		
중국	6	15.8
중국(한민족)	4	10.5
베트남	14	36.8
필리핀	5	13.2
일본	2	5.3
태국	3	7.9
몽골	1	2.6
기타 ¹⁾	3	7.9
계(수)	38	100.0

주: 1) 기타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비해 일반 결혼이민자는 1.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 국적별 분포를 보면, 결혼해체 이민자와 일반 결혼이민자 모두 베트남 국적 소유자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결혼해체 이민자(36.8%)가 일반 결혼이민자(27.8%) 보다 높았다. 그 다음은 결혼해체 이민자는 중국, 필리핀, 중국(한민족), 태국 등의 순으로, 일반 결혼이민자는 중국, 필리핀, 일본, 중국(한민족) 순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나. 입국목적 및 한국국적 취득여부

결혼해체 이민자의 혼전 입국 목적을 살펴보면, 결혼을 위한 입국은 87.2%로 일반가족의 결혼을 위한 입국목적(92.3%)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취업·경제활동을 위한 입국은 해체가족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일반가족: 3.1%, 해체가족: 7.7%).

〈표 5-168〉 결혼해체 이민자의 혼전 입국목적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경제활동	친척방문 ·유학	기타	계(수)
전체	87.2	7.7	-	5.1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적별 결혼 목적의 입국을 살펴본 결과, 중국, 필리핀을 제외한 타 국적 이주자의 입국 목적은 모두 결혼이 목적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 중에서는 베트남이 결혼목적의 입국 비율이 97.6%로 가장 높았고, 몽골 결혼이민자가 81.7%로 가장 낮았다.

〈표 5-169〉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결혼 목적의 입국비율
(단위: %, 명)

구분	중국	중국 (한민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기타	전체
결혼목적 (분석대상수)	66.7 (6)	100.0 (4)	100.0 (14)	40.0 (5)	100.0 (2)	100.0 (3)	100.0 (1)	100.0 (3)	86.8 (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들이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향후 취득계획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 중 15.4%로 일반 결혼이민자(22.1%)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중 향후 취득계획이 있는 비율 역시 일반 결혼이민자의 취득계획(75.4%)보다 결혼해체 이민자(74.2%)가 더 낮았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향후 취득계획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해체 이민자는 중국(한민족)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태국과 일본, 몽골 등이 한국국적 취득률이 낮았다.

〈표 5-170〉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 및 향후 취득계획
(단위: %, 명)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향후 취득계획 여부 ¹⁾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15.8	84.2	100.0(38)	74.2	25.8	100.0(31)
중국	16.7	83.3	100.0(6)	100.0	0.0	100.0(4)
중국(한민족)	75.0	25.0	100.0(4)	100.0	0.0	100.0(1)
베트남	7.1	92.9	100.0(14)	76.9	23.1	100.0(13)
필리핀	20.0	80.0	100.0(5)	75.0	25.0	100.0(4)
일본	0.0	100.0	100.0(2)	0.0	100.0	100.0(2)
태국	0.0	100.0	100.0(3)	66.7	33.3	100.0(3)
몽골	0.0	100.0	100.0(1)	100.0	0.0	100.0(1)
기타	0.0	100.0	100.0(3)	66.7	33.3	100.0(3)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해체 이민자 중 향후 취득하겠다는 경우는 일본 국적의 결혼해체 이민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적의 결혼해체 이민자가 한국 국적 취득의향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일본국적의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계획 비율이 가장 낮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방문횟수별 한국 국적 취득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방문횟수가 적을수록 한국국적 취득 비율이 낮아 1회 방문한 경우에 4.3%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회 방문한 경우에는 25.0%,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33.3%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방문횟수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71〉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방문횟수별 한국국적 취득여부

(단위: %, 명)

구분	취득	미취득	계(수)
전체	12.1	87.9	100.0(33)
1회	4.3	95.7	100.0(23)
2회	25.0	75.0	100.0(4)
3회 이상	33.3	66.7	100.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 한국 첫 입국년도 및 거주기간

본 조사의 결혼해체 이민자들의 한국 첫 입국년도는 1989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2.6%이었으며, 1995~1999년 13.2%, 2000~2004년 84.2%가 입국하여 대부분 2000년대 초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인 2005~2008년에 입국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55.1%).

〈표 5-172〉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첫 입국년도

(단위: %, 명)

구분	1979~'89	1990~'94	1995~'99	2000~'04	2005~'08	계(수)
전체	2.6	-	13.2	84.2.	-	100.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에서의 총 거주기간은 1~3년 미만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5년으로 20.0%이었다. 평균 거주기간은 43.61개월로 3.6년 정도 된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총 거주기간은 평균 9.4년 정도로 결혼해체 이민자에 비해 약 6년 정도 긴 편으로 최근에 결혼한 이민자들의 경우 혼인해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는 것과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상대 배우자의 국가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73〉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총 거주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4.3	45.7	20.0	11.4	8.6	100.0(35)	43.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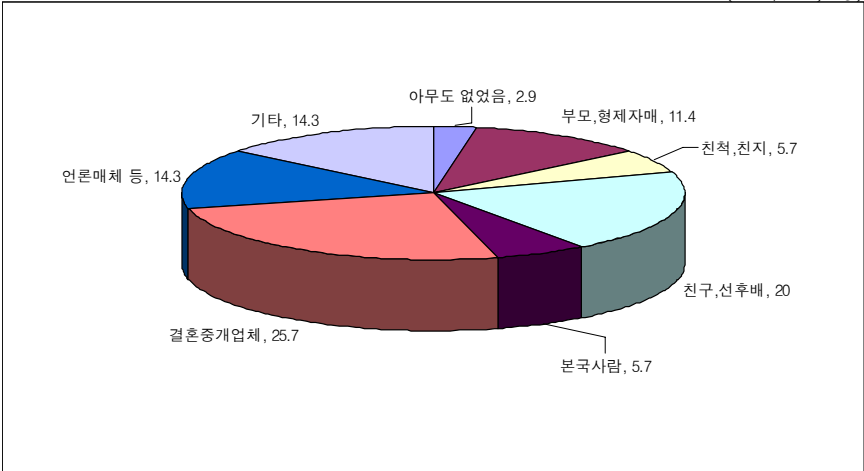
라. 한국에 대한 정보제공자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체가 제일 높은 비율(25.7%)이었으며, 그 다음은 친구 또는 선·후배(20.0%), 언론매체(14.3%), 부모·형제·자매(11.4%) 등의 순으로 일반 결혼이민자는 친구 또는 선·후배에 의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비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들과 결혼해체 이민

자 모두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³⁵⁾ 한국에 관한 정보도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제공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26]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도착 전 한국에 관한 정보제공자

(단위: %, 명)



주: 결혼이민자(n=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2.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현재 한국인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는 결혼중개업이 4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단체, 친척소개 순으로 많았으며 부부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비율은 5.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결혼해체 이민자의 2분의 1 정도는 결혼중개업자에 의해서 국제결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결혼중개업에 의한 결혼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17.7%

³⁵⁾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은 비율이 31.0%이었으며, 결혼해체 이민자는 48.7%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는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포인트가 많았고 부부 당사자가 직접만나는 비율은 일반 결혼이민자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5-174〉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의 소개받은 경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타인소개	37	94.9
부모·형제자매 소개	2	5.1
친척소개	4	10.3
친구·선후배소개	2	5.1
행정기관주선	1	2.6
종교단체	6	15.4
결혼중개업체	19	48.7
기타	3	7.7
직접만남	2	5.1
계	3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하여 소개료를 지불한 경우는 58.8%가 해당되었다. 특히 한국인배우자만 소개료를 지불한 비율은 38.2%로 높았으며 부부 쌍방 모두 지불한 경우도 20.6%로 적지 않았다. 소개료를 지불한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5.3%포인트 많았고 부부 모두 지불한 경우도 1%포인트 많았다.

〈표 5-175〉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의 소개료 지불 비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어느 누구도 지불하지 않음	9	26.5
배우자만 지불함	13	38.2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함	7	20.6
모르겠음	5	14.7
계	34	100.0

주: 배우자를 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만을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 전에 배우자를 소개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들었던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한다는 비율은 37.9%로 3분의 1에 불과하였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1.0%로 많았다. 배우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7.6%포인트 많아서 결혼해체의 원인으로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사기결혼이 발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짐작된다.

〈표 5-176〉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 정보의 진위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일치하지 않음	3	10.3
별로 일치하지 않음	6	20.7
보통	9	31.0
대체로 일치함	1	3.4
모두 일치함	10	34.5
계	29	100.0

주: 배우자를 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만을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허위 정보 부분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이 실제와 가장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직업, 성격, 술·담배 습관, 결혼경험과 관련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허위 정보 부분이 경제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 허위 정보부분은 배우자의 성격, 배우자의 직업,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건강 또는 장애로 나타났다.

〈표 5-177〉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의 허위 정보 부분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비율
배우자의 결혼경험	(15)	20.0
배우자의 직업	(15)	26.7
배우자의 학력	(15)	13.3
배우자의 소득	(15)	40.0
배우자의 술·담배 습관	(15)	26.7
배우자의 성격	(15)	26.7
배우자의 자녀수 또는 동거여부	(15)	6.7
배우자의 부모 동거여부	(15)	6.7
기타	(15)	13.3

주: 배우자를 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 중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들은 경우만을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결혼회수를 보면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가 68.4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된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라도 재혼인 경우는 23.7%로 나타나서 국제결혼의 범위가 점차 재혼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결혼해체 이민자는 둘다 초혼인 비율이 15.4%포인트 낮았으며, 재혼인 경우는 일반결혼이민자의 3배 높았다.

〈표 5-178〉 결혼해체 이민자의 결혼회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둘다 초혼	26	68.4
결혼이민자-초혼/한국인배우자-재혼	6	15.8
결혼이민자-재혼/한국인배우자-초혼	3	7.9
둘다 재혼	3	7.9
계	3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3. 취업 및 경제생활

가. 취업

1) 한국 오기 전 및 현 취업

결혼해체 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취업여부를 보면 전체 68.6%가 취업 중이었으며,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에 오기 전 취업률(72.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 비취업 상태이었을 때는 대부분 전업주부이었으나 비취업 중인 일반 결혼이민자들은 전업주부(35.4%)와 학생(28.1%)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179〉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

(단위: %, 명)

구분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계(수)
전체	68.6	31.4	100.0(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5-180〉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비취업시 상태

(단위: 명)

구분	학생	전업주부	군인	실업자	기타	계
전체	-	7	-	2	1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에 오기 전 취업여부별 현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전에 취업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현재도 취업중인 경우는 33.3%이었고, 전에 비취업 중이었으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9.1%이었다. 이 외 과거에 취업하다가 현재 비취업중인 경우는 66.7%에 이른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경우 한국에 오기 전과 현재 모두 취업중인 경우는 결혼해체 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전에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비취업인

경우는 일반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에 오기 전 취업경험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취업률은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우 결혼해체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현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181〉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취업여부별 현 취업여부
(단위: %, 명)

구분	현 취업 여부			χ^2
	취업	비취업	계(수)	
전체	25.7	74.3	100.0(35)	2.321*
취업	33.3	66.7	100.0(24)	
비취업	9.1	90.9	100.0(11)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임.

〈사례 1〉 고등학교 학력의 만 46세로 남편과 사별한 지 10여년 된 일본 여성이다. 한국에 오기 전 고국에서 옷수선 전문점점을 수련하여 옷수선점을 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할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으나 남편 사별이후 생활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옷수선점을 자영하고 있다.

〈사례 2〉 만 38세의 전문대학교를 나온 여성으로 결혼한 지 4년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결혼해체 이민자이다. 결혼 전 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험이 있다. 남편이 생존 시에는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남편이 사망한 이후 고향을 통해서 간호사 보조일을 하고 있다.

〈사례 3〉 34세의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이며, 2000년 입국한 몽골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경우이다. 본국에서는 친오빠가 운

영하는 약사탕 만드는 공장에서 회계사로 1년 4개월 정도 일한 경력이 있다. 결혼당시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사례 4〉 24세의 남편과 별거 중인 캄보디아 여성은 한국에 오기 전 미싱자수 경력이 있으며, 재단사로 일한 경력도 있다. 결혼할 당시에도 미싱자수로 취업한 경험과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결혼해체 이민자들 중 한국에 오기 전 취업경험자들의 취업직종을 살펴본 결과, 기술공·준전문가와 사무종사자를 제외한 직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일반 결혼이민자는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직종분포 상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182〉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 오기 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임· 어업	기능원· 기계 조작원	단순노무 종사자 및 기타	계(수)
전체	18.2	-	-	18.2	18.2	9.1	18.2	18.2	100.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 중 현 취업자의 직종은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임·어업 종사자 등이었고, 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이었다.

〈표 5-183〉 결혼해체 이민자의 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명)

현 직종	빈도	종사상 지위	빈도
관리자·전문가	3	고용주	-
기술공·준전문가	-	상용근로자	2
사무종사자	3	임시근로자	3
서비스종사자	-	일용근로자	-
판매종사자	1	자영업자	1
농·임·어업	1	무급가족종사자	1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	-	기타	-
단순노무직 및 기타	-		
계	8	계	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2) 취업경로 및 평균 근무기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현 직장의 취업경로는 연고자의 소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소개, 구인광고, 기타 등에 의해 취업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응답자 수가 적어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분포 상 연고자의 소개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5-184〉 결혼해체 이민자의 현 직장의 취업경로

(단위: 명)

구분	공개 채용	비공식 브로커의 알선	한국 내 사설 직업소개소	연고자의 소개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소개	구인 광고	기타	계
전체	-	-	-	2	1	1	3	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사례 5〉 만20세의 캄보디아 여성으로 2007년 6월 입국하여 7개월 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경우이다. 본국에서는 의류회사의 미싱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결혼당시에는 취업하지 않았

다. 남편과 이혼한 후 중국에서 온 친구의 소개로 핸드폰 조립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사례 6〉 남편과 사별한 34세의 몽골여성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일자리를 찾았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사회복지사의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다.

결혼해체 이민자 중 현재 취업중인 경우 현재의 직장에 근무한 기간은 최고 104개월에서 최소 1개월까지 총 6명으로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1.40개월이었다. 이는 일반가구의 결혼이민자의 평균 근무기간(24.59개월)에 비하면 짧은 편이다.

〈표 5-185〉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평균 근무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5년 이상	계	평균
전체	3	2	-	-	1	6	11.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에서 많게는 6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무도 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6〉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구분	10시간	16시간	40시간	62시간	계
전체	1	1	2	1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3) 결혼해체 이민자의 월평균 임금 및 만족도

결혼해체 이민자 중 전직 경험이 있어 현재의 직장이 세 번째 직장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직이유를 확인한 결과, 전에 다니던 직장의 임금이 낮아서 현재의 직장으로 옮겨와 일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현재의 임금은 70~150만원의 범위에 있으며, 임금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임금수준은 72만원~118만원 수준으로 평균 79.91만원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 간의 임금수준에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5-187〉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평균 임금분포 및 만족도
(단위: 명)

평균 임금	빈도	임금만족도	빈도
70만원	1	매우 불만족	1
80만원	2	약간 불만족	-
130만원	1	보통	4
150만원	1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계	5	계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임금수준은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비슷한 모국친구와 비교할 경우 보통이거나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높은 편은 7.9%에 불과하고, 보통이거나 매우 또는 약간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92.1%)이었다.

〈표 5-188〉 현 취업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월 평균 임금의 모국 친구와의 비교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은 편	약간 낮은 편	보통	약간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계
전체	2	-	3	-	-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사례 7〉 옷수선점을 자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현 소득은 50~60만원 정도이고, 핸드폰 조립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120만원 정도 이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34세의 몽골여성의 월소득은 100만원 정도이다.

〈사례 8〉 30세의 이혼한 베트남 여성으로 일용직으로 프레스일을 하고 있으며, 월 4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4)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이유 및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 자녀교육비 충당,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 부담과 노부모 부양, 건강상의 이유,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의 반대 등이 지적되었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비 충당,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으로 나타나 생계유지 보다는 자녀교육비 충당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도 일반 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 부담보다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더 높아 결혼해체 이민자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5-189〉 결혼해체 이민자의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명)

구분	가족의 생계유지	자녀 교육비 충당	노후 대책	생활비 보충	자기 발전	부모/본국 가족에게 송금	여가시간 활용	기타	계
전체	3	2	-	-	1	-	-	-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외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1순위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그리고 2순위에는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였다.

〈사례 8〉 20세의 캄보디아 여성의 취업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해서이며,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주야교대근무로 힘들고, 저임금과 신분 불안정 등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례 9〉 30세의 베트남 여성은 아이 양육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 문제를 들고 있다.

〈표 5-190〉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노부 모 부양	건강 상 이유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 차별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이 고되고 힘들	배우자 및 다른 식구 반대	기타	계
전체	-	2	-	-	-	1	1	-	-	-	1	-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5) 현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향후 취업의향 및 희망직종

현재 취업자인 경우 향후 취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한 결과, 계속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87.5%이었고, 현재 비취업자인 경우 향후 취업의향을 확인한 결과 74.1%가 취업을 희망하였다. 현재 비취업중인 일반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의향은 66.5%로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의향이 더 높은 비율이었으며,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1〉 결혼해체 이민자 중 현 비취업자의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구분	현 취업자 취업지속 의향			향후 취업의향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7.5	12.5	100.0(8)	74.1	25.9	100.0(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또한 이들 향후 취업의사를 밝힌 현 비취업자들이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기능원·기계조작원과 단순노무 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으로 선호하였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와 사무종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공통적이었다.

〈표 5-192〉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직의향이 있을 경우 향후 희망 직종

(단위: %, 명)

구분	희망직종								계(수)
	관리자·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임·어업	기능원·기계조작원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	5.9	23.5	5.9	5.9	-	29.4	29.4	100.0(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6)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일자리 알선을 우선으로 지적하였고, 그 외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취업지도, 자녀양육·교육지원과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도 지적하였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교육지원을 우선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알선, 한국어 교육,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직업교육·취업지도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5-193〉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구분	도움 필요 없음	일자리 알선	자녀양육 교육지원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취업지도	기타	계(수)
전체	5.6	38.9	11.1	11.1	16.7	16.7	16.7	100.0(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사례 10〉 24세의 캄보디아 여성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술이나 전문직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례 11〉 28세의 중국인 여성은 2007년 3월에 결혼한 후 1년 5개월 만에 이혼한 경우이다.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외국인 차별대우 철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 취업의향 있으나 현재 비취업 이유

취업의향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녀양육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서 등이 지적되었고, 그 외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 및 기타 식구의 반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51.4%)을 차지하여 결혼해체 이민자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5-194〉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의향이 있으나 현재 비취업인 이유
(단위: %, 명)

구분	마땅한 일자리 없어서	자녀양육 때문	집안일 돌볼사람 없어서	배우자 및 기타식구 반대로	한국말 서툴러 서	몸이 아파서	기타	계(수)
전체	20.0	20.0	13.3	13.3	20.0	-	13.3	10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사례 12〉 현재 41세 된 베트남 여성으로 2008년 6월에 입국하여 결혼하였으나 한 달 만에 별거에 들어간 결혼해체 이민자이다. 봉제기숙이 있고 일을 하고는 싶으나 한국말이 서툴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 13〉 24세의 캄보디아 여성으로 자녀를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다. 현재 비취업중인 이유로는 9개월 된 자녀의 육아문제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나. 경제생활

1) 본국 거주시 생계책임자 및 생활수준

본국 거주시 결혼해체 이민자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부모(51.4%)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29.7%),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16.2%)이었다. 또한 본국 거주시 생활수준은 보통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아주 어렵거나(16.2%) 어려운 편(5.4%)인 경우가 21.6%, 잘 사는 편(27.0%)과 아주 잘 사는 편(2.7%)은 29.7%로 생활이 어려운 편 보다는 잘 사는 편이 더 많았다. 이를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해 보면, 부모가 생계책임자인 경우는 일반 결혼이민자가 결혼해체 이민자 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본인이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는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보통인 경우는 일반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아주) 어려운 경우와 (아주) 잘 사는 경우는 모두 결혼해체 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아 본국 거주시 생활수준의 차이는 결혼해체 이민자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5-195〉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에서의 생계책임자 및 생활수준

(단위: 명, %)

구분	생계책임자		구분	생활수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11	29.7	아주 어려움	6	16.2
부모	19	51.4	어려운 편	2	5.4
형제·자매/그 배우자	6	16.2	보통	18	48.6
친척	-	-	잘 사는 편	10	27.0
기타	1	2.7	아주 잘 사는 편	1	2.7
계(수)	37	100.0	계(수)	3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2) 주택유형 및 주택소유 여부

해체 다문화가족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단독주택이 51.4%로 아파트(17.1%)나 연립주택(1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반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율은 일반 다문화가족 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96〉 해체 다문화가족의 주택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복합용도 주택	기타	계(수)
전체	51.4	8.6	11.4	17.1	-	11.4	100.0(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임.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를 소유한 경우가 69.4%로 상당수의 해체 다문화가족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다문화가족의 자가소유율(54.2%) 보다도 높았다. 그 다음은 해체 다문화가족은 전·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일반 다문화가족은 전세, 전·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의 순으로 주택소유 형태의 차이를 보였다³⁶⁾.

³⁶⁾ 주택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는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전세는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함. 전·월세(보증부 월세)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고,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는 미리 몇 개월 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이외 무상 관사 또는 사택이나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등도 있음.

〈표 5-197〉 해체 다문화가족의 주택소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전·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	계(수)
전체	69.4	2.8	11.1	8.3	8.3	100.0(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임.

3) 가구소득 및 소비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을 보면, 100~199만원이 4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200~299만원으로 24%를 보여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40%이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의 가구도 20%나 되고 있어 전체적인 가구소득은 많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비는 100만원 미만이 약 42%나 되고 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45.8%나 되어 전체 가구의 87.5%가 200만원 이하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소비를 일반 다문화가족과 비교해 보면, 가구소득은 100~199만원과 200만원 이상은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 다문화가족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99만원 이하의 일반 다문화가족이 9.8%인데 비해 해체 다문화가족은 20.0%로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비 지출에 있어서도 99만원 이하의 일반 다문화가족(25.6%) 보다는 해체 다문화가족(41.7%)의 비율이 높았으며, 200만원 이상 소비 가구는 해체 다문화가족(12.5%) 보다는 일반 다문화가족(22.3%)의 비율이 더 높아 해체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5-198〉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 및 가구소비 분포

(단위: %, 명)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가구소득	20.0	40.0	24.0	16.0	100.0(25)
가구소비	41.7	45.8	8.3	4.2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임.

4) 가구부채 규모 및 부채원인

해체 다문화가족의 부채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다는 비율은 56.0%이었으며, 나머지 부채가 있는 44.0% 중에서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4.0%나 되었다. 일반 다문화가족과 비교할 경우, 부채가 없다는 비율은 54.7%로 일반 다문화가족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부채가 있는 경우 중 3,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비율은 16.4%로 해체 다문화가족이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높았다.

〈표 5-199〉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구부채 분포

(단위: %, 명)

구분	없음	300만원 미만	300~999 만원	1000~1999 만원	2000~2999 만원	30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56.0	4.0	12.0	4.0	-	24.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해체 다문화가족의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는 사업자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교육비, 생계비, 주거비·주택마련 등이었다. 일반 다문화가족의 주된 부채원인은 주거비·주택마련(38.1%), 생계비(23.7%), 사업자금(17.6%) 등으로 해체 다문화가족과 차이를 보였다.

〈표 5-200〉 해체 다문화가족의 부채의 주된 원인

(단위: 명)

구분	생계비	주거비· 주택마련	교육비	사업 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계
전체	1	1	2	3	-	-	2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5)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해체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은 약 76%나 되었으며, 이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으로는 수업료, 등록금, 학원, 과외와 같은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27.6%). 그 다음은 주·부식비 등의 식료품비, 의복, 생활용품 구입비(13.8%),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비(10.3%)와 그 외 각종 공과금(6.9%)과 주거비(6.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일반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약 75%로 해체 다문화가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22.3%), 식료품비, 의복, 생활용품 구입비(16.0%), 주거비(12.9%), 각종 공과금(8.9%), 의료비(3.8%),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비(2.4%)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 다문화가족 모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은 식료품비, 의복, 생활용품 구입비가 지적되어 이들 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201〉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어려움 없음	7	24.1
자녀양육 및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	8	27.6
식료품비(주식 부식비 등),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4	13.8
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 세금)	2	6.9
의료비	1	3.4
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임대금 상환)	2	6.9
경조사비(축의금, 조위금 등) 및 교통비(자동차유지비 등)	-	-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3	10.3
기타	2	6.9
계	2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4.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

가.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정도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상태가 좋다는 비율은 50.0%, 나쁘다는 비율은 13.9%로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다는 비율이 86.1% 수준이었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20.1%포인트가 높았으며, 나쁘다는 비율은 일반 결혼이민자가 1.7%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상태는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2〉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상태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매우 나쁨	2	5.6
나쁜 편임	3	8.3
보통	13	36.1
좋은 편임	10	27.8
매우 좋음	8	22.2
계	36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6.0%이어서, 결혼해체 이민자의 5분의 1 이상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임을 말해준다. 질병이 있는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3.0%포인트 높았다.

〈표 5-203〉 결혼해체 이민자의 질병 유무¹⁾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질병 있음	7	20.6
질병 없음	27	79.4
계	34	100.0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50.0%, 2년 이상인 경우도 50.0%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질병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족내 돌봄인력의 필요성 증대와 의료비용 부담으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병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일반 결혼이민자가 11.9%포인트 높아서 결혼해체 이민자보다 장기질환자가 많았다.

〈표 5-204〉 결혼해체 이민자의 상병기간¹⁾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2년 미만	6	50.0
2년 이상	6	50.0
계	12	100.0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가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에 방해되는 경우는 결혼해체 이민자 7명 중 5명으로 이들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음이 짐작된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동 비율이 63.6%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되었다.

〈표 5-205〉 결혼해체 이민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의 방해정도¹⁾

(단위: 명)

구분	빈도
상당히 방해됨	1
약간 방해됨	4
전혀 방해되지 않음	2
계	7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의료기관 이용 실태

결혼해체 이민자가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대상자 7명 중에서 전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결혼이민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85.9%로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다.

〈표 5-206〉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여부¹⁾

(단위: 명)

구분	빈도
의료기관 이용함	7
의료기관 이용하지 않음	0
계	7

주: 1)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경우는 5명 중에서 2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서 신속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비율은 44.7%이고 나머지 55.3%는 치료를 중단하였다.

〈표 5-207〉 결혼해체 이민자의 지속적인 치료여부¹⁾

(단위: 명)

구분	빈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임	2
치료받지 않고 있음	3
계	5

주: 1)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비율은 19.4%로 결혼해체 이민자의 5분의 1 정도가 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의 건강을 위해할 위험요인으로 대두된다.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 이민자보다 5.1%포인트 높았다.

〈표 5-208〉 결혼해체 이민자의 지난 1년간 병원에 못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치료를 포기한 적 있음	6	19.4
치료를 포기한 적 없음	25	80.6
계	31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는 대체로 근로능력이 저조하고 한국 인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경제적 지원이 단절되어서 경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어도 병원에 못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4〉 31세의 항법체류자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현재 남편과 별거 중으로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진료비가 없어서

의사도움이 필요한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 전체 6명 중에서 4명이었고, 이외에 일을 중단할 경우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든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등도 응답하였다. 일반 결혼이민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 약구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등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표 5-209〉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빈도
치료비가 없어서	4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1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1
계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례 15〉 남편과 별거 중으로 약간의 질병이 있으나 남편이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고 의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사례 16〉 남편과 사별 중인 38세의 결혼이민자로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없으며 교통편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해체 이민자가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원·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83.3%로 다수가 전문치료기관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는 약국 등 비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병원·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89.4%, 처방 없이 약국에 가는 경우는 3.4%로 결혼해체 이민자에 비해 0.6%포인트 높았다.

〈표 5-210〉 결혼해체 이민자의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기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병원·의원	30	83.3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	2	5.6
보건소	2	5.6
병원·의원 처방 없이 약국에 감	1	2.8
기타	1	2.8
계	36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플 때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무료진료기관, 보건소, 의원원, 병원 등도 이용하나 약국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는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 17〉 현재 남편과 사별중인 46세 결혼이민자로 아플 경우 무료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18〉 남편과 병거 중인 24세의 결혼이민자로 보건소, 의원원을 이용하고 있다.

〈사례 19〉 현재 남편과 사별 중인 35세의 결혼이민자로 본인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사례 20〉 만 29세인 장애인체류자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사람으로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는다.

결혼해체 이민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은 언어소통 때문이 2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통의 접근성, 진료비 부담 등이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힘든 점이 없다는 비율은 일반 결혼이민자는 32.4%로 결혼해체 이민자보다 3%포인트 높았으며, 또한 주요한 어려움은 언어소통, 교통편, 진료비 부담 등으로 나타나서 결혼해체 이민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5-211〉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힘든 점 없음	10	29.4
교통이 좋지 않아 문제 있음	5	14.7
병원갈 시간이 부족함	2	5.9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움	6	17.6
언어소통을 하지 못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9	26.5
절차가 복잡함	1	2.9
기타	1	2.9
계	34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 건강보험 실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동안 의료비 부담은 결혼해체 이민자 7명 중에서 3명은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을 혼합한 형태로 활용하였으나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결혼해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의료비부담 형태는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의 혼합형태는 59.3%, 전액 본인부담 17.6%, 전액 건강보험 적용이 13.2%로 결혼해체 이민자와 비슷한 의료비부담 형태를 보였다.

〈표 5-212〉 결혼해체 이민자의 의료비부담 형태¹⁾

(단위: 명)

구분	빈도
전액 건강보험 적용	2
전액 본인부담	2
건강보험+본인부담	3
계	7

주: 1)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는 국적취득자일 경우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국적 미취득자이어서 한국배우자와 결혼이 해체된 후에는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 본인부담으로 비싼 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21〉 남편과 이혼한 28세 결혼이민자로 남편폭력에 의한 타박상치료를 본인부담으로 받고 있다.

〈사례 22〉 42세의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갓기 등 아플 때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유형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67.9%이었고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17.8%로 미미하였으며, 14.3%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

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75.1%이었고, 의료급여혜택은 13.5%,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율이 11.4%로 결혼해체 이민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5-213〉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유형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직장가입 건강보험	7	25.0
지역가입 건강보험	12	42.9
의료급여 1종	3	10.7
의료급여 2종	2	7.1
가입되어 있지 않음	4	14.3
계	2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 전체 5명 중에서 3명이 해당되었고 다음은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 기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 34.4%,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25.8%,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14.0%이었다.

〈표 5-214〉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음	1
건강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임	3
기타	1
계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7.9%이었다. 동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4.9%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동 보험료의 체납은 제도권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차원에서 본인분담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15〉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비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체납한 적 있음	5	17.9
체납한 적 없음	23	82.1
계	2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는 5명 중 3명은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지불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명은 기타 이유들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가 54.7%이었고, 이외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모르거나 일부는 국민건강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표 5-216〉 결혼해체 이민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지불하지 못함	3
기타	2
계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5. 자녀출산 및 양육

가. 자녀임신·출산

결혼해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산전에는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출산비용 부담 등을 응답하였다. 그리고 산후에는 산후조리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녀 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일반 결혼이민자(22.2%)가 결혼해체 이민자보다 11.7%포인트 높았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으로는 산후조리,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교육 및 홍보부족, 출산비용부담 등으로 결혼해체 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217〉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어려움이 없었음	2	10.5
어려움이 있음	17	89.5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3)	(15.8)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3)	(15.8)
출산비용부담	(3)	(15.8)
건강문제	(2)	(10.5)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부족함	(2)	(10.5)
산후조리	(4)	(21.1)
계	1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13.8%는 자녀의 임신·출산과정에서 도움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대상 중에서 특히 경제적 지원, 출산돌보미 지원,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자녀 임신·출산과정에서 도움이 필요 없다는 비율은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4.4%포인트 높았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도움은 교육, 산후조리, 경제적 지원, 아이의 건강상담 등이 높았고 해체 결혼이민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218〉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아무런 도움 필요 없음	4	13.8
출산 후 본인의 건강 상담	2	6.9
아이의 건강 상담	2	6.9
산후조리	1	3.4
경제적 지원	5	17.2
출산 돌보미 지원	3	10.3
산후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7	24.1
본국음식	1	3.4
본국가족이 돌보아주는 것	2	6.9
기타	2	6.9
계	2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자녀양육실태

결혼해체 이민자 중에서 무자녀인 비율은 51.5%로 가장 높았고, 자녀를 가진 결혼이민자 중에서는 자녀가 1명인 비율이 27.3%로 많았으며, 다음은 자녀 2명, 3명 순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무자녀인 비율이 22.2%로 자녀 1명이 44.3%, 2명 이상이 33.4%로 일반 결혼이민자가 결혼해체 이민자보다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9〉 결혼해체 이민자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7	51.5
1명	9	27.3
2명	5	15.2
3명 이상	1	6.0
계	2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기관이 25.1%이었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2.5%로 나타났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해체 다문화가족이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6.0%포인트 높았고, 일반 다문화가족의 주된 양육자는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보육시설, 유치원 등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에 비하여 기관에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5-220〉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돌보는 사람 없음	2	12.5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8	50.0
친구	2	12.5
보육시설	3	18.8
유치원	1	6.3
계	16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돌봄 형태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전체 6명 중에서 2명이 해당되었고 기타 가족,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 활용하였다. 일반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은 본인 또는 배우자

가 56.3%이었고, 다음은 사설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기타 가족, 사설학원 등 다양하였다. 따라서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 해체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방과 후에 방임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221〉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

(단위: 명)

구분	빈도
아이 혼자 지냄	2
기타 가족	1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1
기타	2
계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체 5명 중에서 3명이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2명은 생업에 바빠서로 응답하였다. 일반 다문화가족은 생업에 바빠서가 52.6%이었고, 학습지도를 못해서,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표 5-222〉 해체 다문화가족의 방과 후 아동을 돌보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
생업에 바빠서	2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3
계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한 것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녀양육을 둘러싼 배우자와 그 가족 등과의 갈등, 아이를 돌보아줄 보육시설이 없는 것,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일반 다문화가

족은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자녀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해체 다문화가족과 차이를 보였다.

〈표 5-223〉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녀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3	17.6
한국어소통능력이 미흡함	8	47.1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	2	11.8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1	5.9
아이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부적응이 심함	1	5.9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2	11.8
계	1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상 어려움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학습지도를 잘 못한다는 점 등이었고 가족이 해체된 후에는 아버지 부재로 인하여 결혼이민자가 양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사례 10〉 현재 남편과 별거 중으로 아들 두명이 있으나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한국어를 잘 몰라서 자녀학습지도를 할 수가 없다. 남편과 별거 후에는 자녀를 혼자서 돌보는데 자녀들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다. 친구 및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해체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70.0%이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경우가 전체 7명 중에서 2명이 해당

되었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서가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일반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19.6%이었고, 주요한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경우가 21.1%,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이 40.4%,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등으로 해체 다문화가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224〉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집단 따돌림 여부 및 이유¹⁾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집단따돌림 여부		
경험한 적 있음	7	70.0
경험한 적 없음	3	30.0
계	10	100.0
집단따돌림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	2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1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1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어서	3	
계	7	

주: 1) 미취학,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의 적응도는 어느 정도 적응과 매우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9명 중에서 8명이었고 1명은 별로 적응을 못하였다. 일반 다문화가족 아동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비율이 80.8%로 3분 2 이상이 해당되었고, 19.2%만 부적응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수준은 가족의 해체와는 커다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5〉 해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적응정도¹⁾
(단위: 명)

구분	빈도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음	-
별로 적응을 못하고 있음	1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음	4
매우 잘 적응하고 있음	4
계	9

주: 1) 미취학,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라. 자녀만족도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만족도는 자녀와의 친밀함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7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자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68.7%), 자녀들이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62.6%), 자녀와의 대화·의사소통 정도(62.5%) 순으로 높았으나,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40.0%)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녀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88점으로 낮았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자녀만족도 평균은 4.19점으로 결혼해체 이민자에 비해 0.31점이 높았다. 모든 영역에서 자녀만족도 평균은 일반 결혼이민자가 결혼해체 이민자에 비해서 높았다.

〈표 5-226〉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만족비율 및 평균
(단위: 명, %, 점)

구분	(분석대상수)	만족비율	평균
자녀와의 친밀함	(18)	77.8	4.28
자녀와의 대화·의사소통정도	(16)	62.5	3.81
부모-자녀간 믿고 이해하는 정도	(15)	68.7	3.87
자녀들이 귀하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16)	62.6	3.81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	(15)	40.0	3.53
자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6)	62.5	3.8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6. 가족부양 및 돌봄

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결혼해체 이민자 중 본인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는 57.9%이었으며, 아버지만 생존해 계신 경우는 2.6%인데 비해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 경우는 28.9%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10.5%이었다. 배우자 부모의 경우에는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가 64.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으며,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는 24.3%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경우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모두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 경우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이 결혼해체 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5-227〉 결혼해체 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생존여부

(단위: %, 명)

구분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부모 모두 생존	부만 생존	모만 생존	부모 모두 사망	계(수)	부모 모두 생존	부만 생존	모만 생존	부모 모두 사망	계(수)
전체	57.9	2.6	28.9	10.5	100.0(38)	24.3	2.7	64.9	8.1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들 생존해 계신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28.1%이었고,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 하고만 동거하는 경우는 56.3%로 상당수 결혼해체 이민자들이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시부모님을 한분도 모시지 않는 경우가 56.1%인데 비해 결혼해체 이민자는 15.6%에 불과해 나머지 결혼해체 이민자(84.4%)는 시부모님 모두 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등 한쪽만 모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8〉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단위: %, 명)

구분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동거	시아버지 (장인)만 동거	시어머니 (장모)만 동거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비동거	계(수)
전체	28.1	-	56.3	15.6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와 같이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혼해체 이민자가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할 유배우자 결혼이민자 보다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서적 차원에서의 지원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나. 부양상 어려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결혼해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경우는 17.4%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2.6%는 나름대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노인 돌보기로 즉, 식사, 세탁, 청소 등 일반적인 어른수발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1.7%). 그 외 노인부양비 문제, 노인건강이나 간병 문제, 본인의 여가활동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부양상 어려움이 없다는 경우가 29.5%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부모님 부양 상 따르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 모두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229〉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부양상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노인 돌보기	노인 건강, 간병	부양비	의료비	여가 활용	언어 소통	기타	계(수)
전체	17.4	21.7	4.3	8.7	-	4.3	39.1	4.3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 부양의 교환

다음의 <표 5-230>은 지난 1년간 본인의 가족이나 배우자 가족 중 신체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본 조사결과 배우자 가족 중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신체적 지원을 해준 경우는 30.3%, 정서적 지원 42.4%,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우 31.3%이었다. 반대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도움을 주어 배우자 가족이 도움을 받은 경우는 신체적 지원 18.8%, 정서적 지원 21.9%, 경제적 지원 21.9%로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가족이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그리고 결혼해체 이민자가 배우자 가족에게 지원을 해준 경우 모두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원유형별로는 신체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보다는 정서적 지원을 서로 주고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230〉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 중 도움제공 비율과 도움수혜 비율

(단위: %, 명)				
구분	도움제공	(분석대상수)	도움수혜	(분석대상수)
신체적 지원	30.3	(33)	18.8	(32)
정서적 지원	42.4	(33)	21.9	(32)
경제적 지원	31.3	(33)	21.9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도움을 제공해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수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움을 제공해준 사람으로는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정서적 지원은 기타를 제외할 경우 배우자와 응답자의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경제적 지원은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도움을 제공해준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이었고, 정서적 지원은 배우자와 응답자의 부모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해체 이민자가 도움을 베풀어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는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정서적 지원도 배우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지원은 배우자와 응답자의 형제·자매가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신체적 지원은 배우자의 부모가, 정서적 지원은 배우자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응답자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5-231〉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도움 제공자 및 도움 받은 수혜자 비율
(단위: %, 명)

구분	도움 제공자			도움 수혜자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신체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배우자	50.0	15.4	44.4	50.0	83.3	42.9
배우자의 부모	40.0	7.7	11.1	50.0	-	14.3
배우자의 형제·자매	-	7.7	22.2	-	-	-
나의 부모	-	15.4	11.1	-	16.7	-
나의 형제·자매	-	7.7	11.1	-	-	42.9
자녀	-	-	-	-	-	-
기타	10.0	46.2	-	-	-	-
계(수)	100.0(10)	100.0(13)	100.0(9)	100.0(6)	100.0(6)	100.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라. 가족의 접촉 및 연락 빈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 또는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본국가족은 1년에 1회 이하 또는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가족과는 거의 매일 만나거나 주 2~3회, 또는 2~3개월에 1회 정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본국가족은 1년에 1회 이하 또는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가족과는 거의 매일 만나거나 주 1회 정도 만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표 5-232〉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배우자 가족의 만남 및 연락 빈도

(단위: %, 명)

구분	만남		연락	
	본국 가족	배우자 가족	본국 가족	배우자 가족
거의 매일	4.3	18.8	10.7	14.3
주 2~3회	8.7	18.8	28.6	7.1
주 1회 정도	-	-	10.7	28.6
2주에 1회	-	6.3	3.6	-
월 1회 정도	4.3	12.5	14.3	-
2~3개월에 1회	13.0	18.8	17.9	7.1
6개월에 1회	-	6.3	-	7.1
1년에 1회 이하	39.1	-	3.6	-
전혀 만나지(연락하지) 않음	30.4	18.8	10.7	35.7
계(수)	100.0(23)	100.0(16)	100.0(28)	10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가족과의 연락빈도를 보면, 주 2~3회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28.6%), 그 다음은 2~3개월에 1회(17.9%), 월 1회 정도(14.3%) 등으로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가족과의 연락빈도는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 1회 정도(28.6%)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의 연

락빈도는 주 1회가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가족과의 연락빈도는 주 2~3회가 가장 많아 결혼해체 이민자 보다 본국 가족이나 배우자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생활비 송금여부 및 송금액

결혼해체 이민자가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는 42.9%로 일반 결혼이민자(41.5%)보다 송금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 47.1%, 농·어촌 38.9%로 농·어촌보다는 도시의 결혼해체 이민자들의 송금비율이 더 높았고,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보다 취업자의 송금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일반 결혼이민자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송금비율이 더 높았고, 취업자 보다 비취업자의 송금비율이 더 높아 결혼해체 이민자와 차이를 보였다.

〈표 5-233〉 결혼해체 이민자의 특성별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 여부
(단위: %, 명)

구분	송금여부			χ^2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2.9	57.1	100.0(35)	
지역				
도시	47.1	52.9	100.0(17)	.238
농·어촌	38.9	61.1	100.0(18)	
취업여부				
취업	50.0	50.0	100.0(4)	.115
비취업	40.9	59.1	100.0(22)	

주: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 분포는 100~199만원과 200~499만원이 각각 3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간 송금액은 479.23만원으로 일반 결혼이민자의 송금액(558.64만원)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200~499만원이 37.5%로 가장 많았으나 농·어촌지역은 100~199만원이 40.0%로 가장 많았고 연간 평균 송금액은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송금액이 더 많았다(도시: 487.50만원, 농·어촌: 466.00만원). 이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송금액이 더 많은 일반 결혼이민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표 5-234〉 지역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499만원	5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t값
전체 ¹⁾	-	30.8	30.8	23.1	15.4	100.0(13)	479.23	
도시	-	25.0	37.5	25.0	12.5	100.0(8)	487.50	
농·어촌	-	40.0	20.0	20.0	20.0	100.0(5)	466.00	.095
χ^2	.67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바. 가족돌봄 실태

결혼해체 이민자의 5.3%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돌봄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돌봄대상자와의 관계는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어머니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돌봄가족이 있는 비율은 13.3%로 결혼해체 이민자 보다 2.5배 높았다. 돌봄대상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어머니,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님 등으로 다양하였다.

〈표 5-235〉 결혼해체 이민자의 돌봄가족 유무¹⁾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음	2	5.3
없음	36	94.7
계	38	100.0

주: 1)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7.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

가. 가족관계

다음 <표 5-236>는 결혼해체 이민자들이 본인의 가족이나 배우자 가족관계에 있어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결과, 힘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48.6%이었고, 일반 결혼이민자는 52.1%이었다. 이는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힘든 관계에 있는 가족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어머니로 21.6%이었고, 그 다음은 배우자가 16.2%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가장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어머니(14.4%)였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결혼해체 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236〉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의 가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힘든 사람 없음	18	48.6
배우자	6	16.2
배우자(나)의 아버지	-	-
배우자(나)의 어머니	8	21.6
배우자(나)의 형제·자매	2	5.4
배우자(나)의 기타 가족	-	-
나의 자녀	-	-
나의 부모 및 형제·자매	1	2.7
기타	2	5.4
계	3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들이 배우자 부모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그 외 사

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것도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문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고방식,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 생활방식이 다른 것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여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 모두의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5-237〉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별 다른 어려움 없음	36.4	48.6
한국어로 의사소통 어려움	36.4	25.7
사고방식, 가치관 다름	12.1	8.6
생활습관, 생활방식 다름	6.1	8.6
종교가 다름	3.0	2.9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음	3.0	2.9
기타	3.0	2.9
계(수)	100.0(33)	100(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나. 폭력경험

지난 1년간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폭언 및 모욕적인 말 등의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14.3%나 되었으며, 생활비 또는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와 응답자에게 무관심, 냉담하게 대함도 각각 14.3%이었다. 이 외 때리려고 위협한 경우 11.4% 등이었다. 이러한 폭력유형별 경험률은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

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폭력경험률이 결혼해체의 사유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5-238〉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률

(단위: %, 명)

구분	경험률	(분석대상자)
폭언 및 모욕적인 말	14.3	(35)
때리려고 위협함	11.4	(35)
물건을 집어 던짐	2.9	(35)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	5.7	(35)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음	-	(35)
생활비 또는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음	14.3	(35)
응답자의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함	2.9	(35)
응답자에게 무관심, 냉담하게 대함	14.3	(35)
기타	8.6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한 결혼해체 이민자의 폭력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33.3%, 주 1~2회 22.2%, 6개월에 1~2회 22.2%, 월 1~2회 11.1% 등의 순이었다. 폭력경험 빈도 역시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5-239〉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으로부터 폭력경험 빈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주 1~2회	월 1~2회	6개월에 1~2회	년 1~2회	기타	계(수)
전체	33.3	22.2	11.1	22.2	-	11.1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폭력행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어머니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지

적되었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폭력행위를 한 이유로는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문제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표 5-240〉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유 없음	성격 차이	생활방식 차이	경제 문제	부모와의 불화	기타	계(수)
전체	-	37.5	25.0	25.0	-	12.5	100.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결혼해체 이민자는 그냥 참음 41.2%, 말로 설득함 17.6%, 별거·이혼 요청 11.8% 등이었고, 싸워서 고친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일단 피함, 본국으로 가려고 함 등이 각각 5.9%이었다.

〈표 5-241〉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대응¹⁾

(단위: %, 명)

구분	말로 설득	싸워서 고침	일단 피함	그냥 참음	본국 으로 가려함	별거· 이혼 요청	상담전화 ·상담소 이용	기타	계(수)
전체	17.6	5.9	5.9	41.2	5.9	11.8	-	11.8	100.0(17)

주: 1) 결혼해체 이민자 중 배우자의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 사회심리적 상태

결혼해체 이민자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58.1%이었고,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43.8%,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일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61.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는 66.6%이었으며, ‘나는 때때로 장점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55.1%로 과반수 이상에 해당되어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결혼해체 이민자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70.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자신에 만족하는 비율은 일반 결혼이민자가 50.4%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20.5%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해체 이민자는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고, ‘쓸모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만큼 일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낮았으며, ‘장점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결혼해체 이민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표 5-242〉 결혼해체 이민자의 사회심리적 상태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그저 그럼	그런 편임	매우 그럼	계(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	3.2	38.7	32.3	25.8	100.0(31)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3	6.3	43.8	21.9	21.9	100.0(32)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일할 수 있다	-	3.2	35.5	38.7	22.6	100.0(31)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23.3	43.3	30.0	3.3	-	100.0(30)
나는 때때로 장점이 전혀 없는 존재 라고 생각한다	24.1	31.0	34.5	6.9	3.4	100.0(29)
전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	6.5	22.6	41.9	29.0	100.0(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문제는 자녀일로 인한 고민이

69.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경제적 문제(55.5%), 배우자일로 고민(52.0%), 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42.3%), 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40.9%), 내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37.0%), 본인의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32.0%), 가족 내에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29.1%), 직장에서 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18.2%), 직장 및 업무상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15.8%)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결혼해체 이민자는 자녀 및 전 배우자일, 경제문제, 가족관계, 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 등에 대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체 이민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문제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결혼해체 이민자가 높았다. 특히 결혼해체 이민자는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훨씬 높아서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및 가족 돌봄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243〉 결혼해체 이민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경험 하지 않음	작게 경험한 편임	많이 경험한 편임	매우 많이 경험한 편임	계(수)
경제적 문제	14.8	29.6	33.3	22.2	100.0(27)
자녀일로 인한 고민	21.7	8.7	39.1	30.4	100.0(23)
배우자일로 고민	20.0	28.0	24.0	28.0	100.0(25)
내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	25.9	37.0	29.6	7.4	100.0(27)
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	26.9	30.8	38.5	3.8	100.0(26)
본인의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32.0	36.0	20.0	12.0	100.0(25)
가족내에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20.8	50.0	20.8	8.3	100.0(24)
직장에서 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40.9	40.9	9.1	9.1	100.0(22)
직장 및 업무상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47.4	36.8	10.5	5.3	100.0(19)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27.3	31.8	31.8	9.1	100.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는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인한 사건으로 경제문제, 자녀양육, 한국사회 적응 등으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 마음 졸임, 죽고 싶은 마음, 의욕상실, 불신 등을 경험하고 있다.

〈사례 17〉 만 34세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현재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로서 남편과 사별한 후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사례 18〉 만 41세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현재 서비스종사자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이혼한 후 수면이 부족하고 항상 불안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사례 19〉 만 34세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현재 전업주부로 자녀 두 명과 살고 있으며 남편과 사별한 후 죽고 싶었는데 자녀들 때문에 참았다.

〈사례 20〉 만 28세의 합법체류자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단순노무직에 종사자로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혼 후에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사냥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8. 사회적 지지

가. 친척·이웃·동료·기타 인원수 및 연락빈도

사회적 지지망인 친구·이웃·동료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해체 이민자는 친구수가 평균 2.58명, 이웃 수는 2.46명, 직장 동료 수는 1.69명, 동호회·모임·교회 지인 수는 평균 2.23명이었다. 한편 일반 결혼이민자는 친구수가 평균 3.52명, 이웃 수는 1.82명, 직장동료 수는 1.31명, 동호회·모임·교회 지인 수는 1.99명이었다. 따라서 결혼해체 이민자는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이웃, 직장동료, 그리고 동호회·모임·교회 지인 수는 많은 편이었으나 친구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244〉 결혼해체 이민자의 평균 친구·이웃·동료·기타 수

(단위: 명)		
구분	평균수	(분석대상수)
친구	2.58	(31)
이웃	2.46	(39)
직장동료	1.69	(39)
동호회·모임·교회 지인	2.23	(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친구·이웃·동료들과의 연락빈도를 보면 결혼해체 이민자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비율이 29.6%이었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40.7%로 나타나서 결혼해체 이민자의 70.3%는 거의 매일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친구·이웃·동료들과 연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일반 결혼이민자는 66.9%가 거의 매일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결혼 이민자에 비해서 주기적으로 활발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5〉 결혼해체 이민자의 친구·이웃·동료·기타와의 연락빈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거의 매일	8	29.6
일주일에 2~3회	7	25.9
주1회 정도	4	14.8
2주에 1회	3	11.1
월 1회	2	7.4
2~3개월에 1회	2	7.4
6개월에 1회	1	3.7
계	2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는 해체 후 마음을 터놓고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친구가 많았고 대다수가 본국인이었다. 연락빈도도

비교적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해체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에게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준다.

〈사례 21〉 현재 남편과 별거 중으로 마음을 터놓고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는 본국 친구 두 명으로 매일 통화하고 있다.

〈사례 22〉 남편과 이혼 중으로 마음을 터놓고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는 본국 친구 세 명으로 가끔 만나고 있다.

〈사례 23〉 만 34세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현재 전업주부로 자녀 두명과 살고 있으며 남편과 사별한 후 아는 사람들,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사례 24〉 만 40세의 국적취득자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남편과 이혼하였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마음을 터놓고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는 펄리핀 10명, 한국인 친구 1명이 있으며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

나. 모임 참여정도 및 도움여부

지난 1년간 결혼해체 이민자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는 비율은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이 76.2%, 나의 가족·친척모임이 60.9%, 본국인 친구·단체 모임이 52.0%로 높았다. 반면,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에 참석한 비율은 72.0%이었고, 배우자의 친구·단체 모임에는 56.0%가 참석하였다.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다수는 가족이 해체된 후에도 자녀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배우자의 친구·단체 등과도 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6〉 결혼해체 이민자의 지난 1년간 모임에 참여빈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2개월 에 1회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계(수)
나의 가족·친척모임	60.9	34.8	4.3	-	-	-	100.0(23)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28.0	32.0	24.0	-	12.0	4.0	100.0(25)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76.2	14.3	-	4.8	-	4.8	100.0(21)
본국인 친구·단체 모임	52.0	4.0	-	12.0	16.0	16.0	100.0(25)
배우자 친구·단체 모임	44.0	16.0	8.0	-	32.0	-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는 한국인배우자와의 가정이 해체 된 후에는 배우자 당사자와는 단절상태임에도 자녀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체 후 처음에는 배우자의 가족이 관심을 보이고 관계를 유지하나 점차 관계가 두절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사례 25〉 남편과 이혼 중으로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과는 연락두절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나 시댁과는 이혼 후에도 변화가 없다.

〈사례 26〉 46세로 불법체류자이고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혼 후에 시댁과의 관계와 친·인척과의 관계가 두절되었다.

〈사례 27〉 42세로 합법체류자이고 현재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별 후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하더니 최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도움이 되는 모임을 보면 본인의 친구·단체 모임을

가장 선호하였고, 배우자와 이혼·사별 한 후에도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등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247〉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장 도움이 되는 모임·단체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나의 가족·친척모임	3	20.0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4	26.7
나의 친구·단체모임	6	40.0
배우자의 친구·단체모임	2	13.3
계	15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는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 일을 부탁할 경우 중요한 도움요청자로 42.9%가 배우자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를 응답한 비율이 14.3%, 기타가 14.3%이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29.6%가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22.25%로 많았다. 이외에 친정부모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각각 11.1%이었다. 부부간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각각 18.5%이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22.2%로 5분의 1이 해당되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25.9%이었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22.2%로 높았으나 25.9%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해체 이민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로 배우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부·가족불화나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8〉 결혼해체 이민자의 사건발생유형별 가장 중요한 도움요청자
(단위: %, 명)

구분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부부간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없음	3.6	7.4	22.2	25.9
배우자	42.9	29.6	18.5	25.9
나의 부모	7.1	11.1	3.7	-
나의 형제자매·친척	7.1	3.7	7.4	3.7
자녀	7.1	-	3.7	3.7
친구	3.6	11.1	3.7	-
배우자의 부모	-	-	-	-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	14.3	22.2	18.5	22.2
이웃·직장동료	-	7.4	-	7.4
기타	14.3	7.4	22.2	11.1
계(수)	100.0(28)	100.0(27)	100.0(27)	100.0(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제3절 다문화가족유형별 특성 및 실태의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실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3분의 1은 결혼중개업자에 의해서 국제결혼이 성립되고 있으며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하여 소개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부부 쌍방 모두 지불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인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아서 결혼이민자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 받은 경우 허위정보로 피해를 보고 있음이 짐작된다. 또한 허위 정보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직업, 소득 등 경제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잘 못된 정보를 얻어서 결혼

후 갈등과 부부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결혼의 양상은 종교단체 및 결혼중개업체의 소개에서 가족 및 친구의 소개로 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결혼중개업체의 폐단이 남아 있어서 결혼형성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결혼해서 적응하는 데까지 가장 힘든 시기는 1년 미만으로 나타나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적응력제고 프로그램이 조기에 투입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결혼초기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다가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감, 자녀문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경제문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언어소통, 문화차이 등으로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서 동일 민족끼리 사는 가족보다 부부싸움이 발생할 요인이 많고 가족해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로 부부 2쌍 중 한쌍은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결혼이민자 폭력 발생이 높았다. 그럼에도 결혼이민자의 부부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냥 참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중언어 상담인력 확보,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높고, 종사상 지위도 임시근로자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우에는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종사상 지위는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임금수준은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 모두 열악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비

충당과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이었고,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유지, 자녀교육비 충당 순이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 모두 자녀양육 부담으로 나타났고, 현재 비취업 중인 결혼이민자 중 상당수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아울러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기술 교육 등의 지원 확대와 함께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이 질병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10% 내외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충임에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소지가 많아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질환자 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액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여건 하에서 의료보장 및 사회적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안정망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 13.0%, 한국인배우자 18.3%이었는데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제도권 대상이 적지 않은 여건 하에서 동 보험료의 체납은 제도권에서 탈락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차원에서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족부양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배우자보다 더 많은 부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부양의 어려움으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호소하였고, 이외에 노인들의 일상적인 수발, 간병, 부양비 등도 부양상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회의 제공과 함께 부모를 부양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부양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1년간 배우자의 가족 등으로

부터 폭력경험을 한 경우가 26.0%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처 내지 예방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일곱째,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는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보육시설, 유치원 등 다양하였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6.5%로 나타났다. 동 비율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1.4%포인트 많아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의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방과 후 돌봄형태는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이 돌보는 형태가 많았고, 사설 또는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으나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8.5%로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생업에 바빠서, 부모가 학습지도를 못해서, 한국어수준이 낮아서 등이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양육 환경제고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단위의 한국어교육 및 학습지도 서비스가 요구된다.

제 6 장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제 1 절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1.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인식

본 절에서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가치관 및 인식을 혼인가치관 및 인식,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인식, 사회적가치관 및 인식 그리고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의 인권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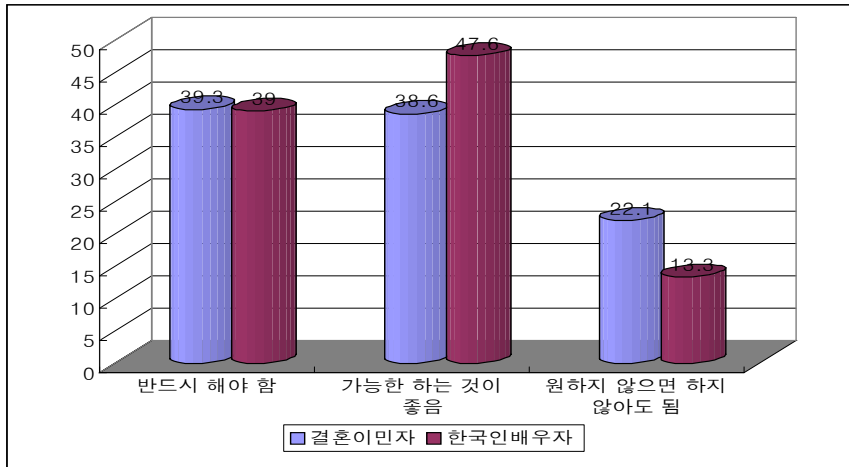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치관 문항 중 국내 선행연구의 일반가구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이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고유한 가치성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혼인가치관 및 인식

혼인가치관 및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혼필요성에 대한 견해,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 결혼에 대한 입장, 이혼에 대한 입장 및 이유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의견 등 5가지 항목에 의거하여 파악하였다. 우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결혼이민자의 39.3%, 한국인배우자의 39.0%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이민자의 22.1%는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인배우자는 13.3%만이 동일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견해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54), 한국인배우자(n=9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를 김승권 외(2006)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함’ 및 ‘하는 편이 좋음’)을 보인 경우가 57.7%이어서,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77.9%(‘반드시 해야 함’ 및 ‘가능한 하는 것이 좋음’)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기혼여성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결혼이민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히 연령별, 본국국적별 그리고 결혼기간별로 유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가능한 하는 것이 좋음’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50대 이상이 71.4%로 가장 높았다. 30대와 40대는 ‘반드시 해야함’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특히 40대는 6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40대까지 증가하다

가 50대 이상에서 감소하는 추세이었으며, 특히 40대에서는 62.7%나 되었다.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는 30대까지 증가하다가 40대 이상에서 감소하였다.

〈표 6-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함	가능한 하는것이 좋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됨	계(수)	χ^2
전체	39.3	38.6	22.1	100.0(1,054)	
연령					
15~29세	33.6	44.0	22.4	100.0(348)	7.799***
30~39세	39.4	34.3	26.3	100.0(251)	
40~49세	62.7	25.5	11.8	100.0(102)	
50대 이상	28.6	71.4	-	100.0(7)	
본국 국적					
중국	36.7	28.4	34.9	100.0(169)	16.943***
중국(한민족)	24.4	33.3	42.2	100.0(90)	
베트남	33.8	55.2	11.0	100.0(210)	
필리핀	36.4	47.3	16.3	100.0(129)	
일본	72.9	18.8	8.3	100.0(144)	
태국	19.0	37.9	43.1	100.0(58)	
몽골	42.6	46.8	10.6	100.0(47)	
기타	64.3	28.6	7.1	100.0(14)	
결혼기간					
2년 미만	28.8	44.5	26.6	100.0(229)	9.051***
2~4년 미만	39.2	41.4	19.4	100.0(232)	
4~6년 미만	38.0	38.9	23.1	100.0(108)	
6년 이상	55.4	27.9	16.7	100.0(222)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국적의 결혼이민자에게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일본은 72.9%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은 ‘가능한 하는 것이 좋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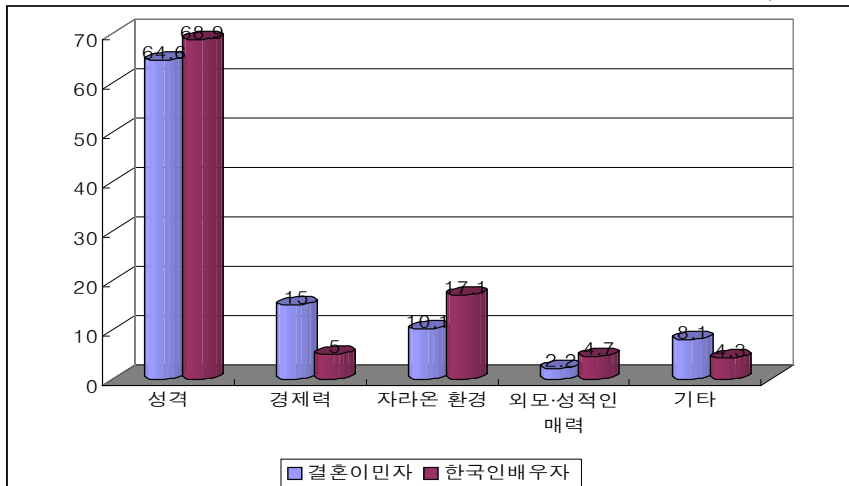
그리고 중국(한민족)과 태국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됨’을 지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국국적이 일본, 몽골, 필리핀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 별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함’과 ‘가능한 하는 것이 좋음’이라는 의견이 많은 경향이 있다.

‘배우자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 각각 68.9%, 64.6%가 성격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는 경제력(15.0%)이라고 한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경제력이라는 응답은 5.0%에 그쳤으며, 자라온 환경(17.1%)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따라서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 간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선택의 기준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67), 한국인배우자(n=9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배우자선택의 기준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성격’, ‘경제력’, ‘자라온 환경’ 순이었으나, 30대는 ‘성격’, ‘자라온 환경’, ‘경제력’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6-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배우자선택의 기준

(단위: %, 명)

구분	성격	경제력	자라온 환경	외모·성 적인 매력	기타	계(수)	χ^2
전체	64.6	15.0	10.1	2.2	8.1	100.0(1,067)	
연령							
15~29세	69.0	16.6	7.9	1.4	5.1	100.0(355)	5.470**
30~39세	60.6	12.7	15.1	1.6	10.0	100.0(251)	
40~49세	59.2	15.5	8.7	-	16.5	100.0(103)	
50대 이상	85.7	14.3	-	-	-	100.0(7)	
본국 국적							
중국	59.4	20.0	10.0	1.2	9.4	100.0(170)	2.368*
중국(한민족)	50.0	23.9	19.3	3.4	3.4	100.0(88)	
베트남	75.2	11.5	7.8	0.9	4.6	100.0(218)	
필리핀	59.8	16.7	11.4	2.3	9.8	100.0(132)	
일본	67.4	6.9	10.4	-	15.3	100.0(144)	
태국	69.0	15.5	6.9	-	8.6	100.0(58)	
몽골	61.7	19.1	8.5	6.4	4.3	100.0(47)	
기타	50.0	21.4	7.1	7.1	14.3	100.0(14)	
결혼기간							
2년 미만	65.0	15.4	9.0	3.4	7.3	100.0(234)	3.206*
2~4년 미만	68.9	16.2	10.2	0.9	3.8	100.0(235)	
4~6년 미만	62.0	22.2	6.5	-	9.3	100.0(108)	
6년 이상	63.4	10.3	12.5	1.3	12.5	100.0(224)	

주: ** p < .0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본국국적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은 ‘성격’, ‘경제력’, ‘자라온 환경’, ‘외모·성적인 매력’ 순이었다. 일본국적의 경우에는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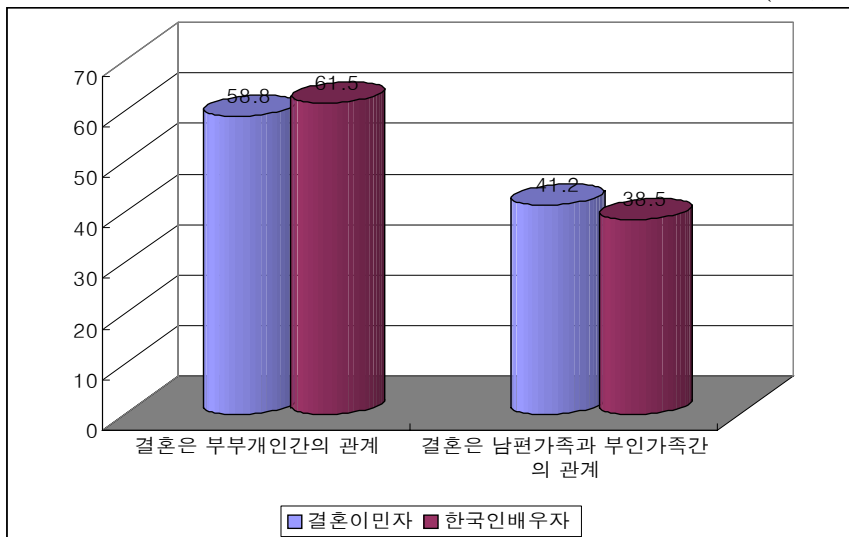
‘자라온 환경’, ‘경제력’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다른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기간별로는 6년 미만까지는 ‘성격’, ‘경제력’, ‘자라온 환경’, ‘외모·성적인 매력’ 순이었으나, 6년 이상의 경우만이 ‘성격’ 외에 ‘자라온 환경’을 ‘경제력’ 보다 높은 비율로 지적하여 차이를 보였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결혼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결과, ‘결혼은 부부개인간의 관계’라는 응답이 각각 58.8%, 61.5%로 나타났다. ‘결혼은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라고 답한 비율은 결혼이민자 41.2%, 한국인배우자 38.5%로 비슷한 수준으로 오히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2.7%정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6-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입장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35), 한국인배우자(n=9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로 결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몽골이 ‘결혼은 부부개인간의 관계’라는 응답이 93.5%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태국 69.5%, 베트남 57.1%, 중국 56.0% 등의 순이었다. 또한 ‘결혼은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라는 응답률은 중국(한민족)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몽골은 6.5%로 가장 낮았다.

〈표 6-3〉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 결혼에 대한 입장

(단위: %, 명)

구분	결혼은 부부개인간의 관계	결혼은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	계(수)	χ^2
전체	58.8	41.2	100.0(1,035)	
중국	56.0	44.0	100.0(166)	4.323***
중국(한민족)	53.4	46.6	100.0(88)	
베트남	57.1	42.9	100.0(198)	
필리핀	55.3	44.7	100.0(132)	
일본	53.8	46.2	100.0(143)	
태국	69.5	30.5	100.0(59)	
몽골	93.5	6.5	100.0(46)	
기타	57.1	42.9	100.0(14)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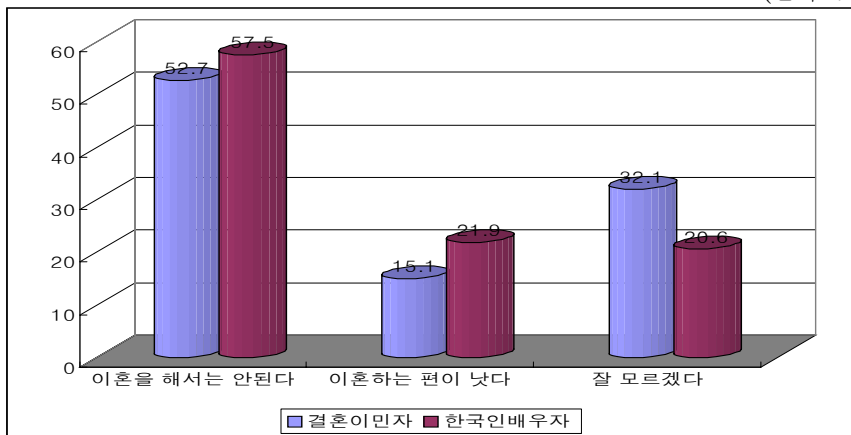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결혼이민자 54.3%, 한국인배우자 57.5%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혼하는 편이 낫다’는 각각 15.1%, 21.9%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1%로 상당히 많았으며 한국인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의견 모두 결혼이민자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이혼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본 문항에 대한 결과를 김승권 외(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 기혼여성의 경우,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가급적 해서는 안

됨’ 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됨’)은 50.8%인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의 결혼 이민자(54.3%)보다 낮았다. 따라서 한국인 기혼여성이 결혼이민자보다 이혼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혼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11), 한국인배우자(n=9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이혼에 대한 가치관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본 국국적별과 결혼기간별로 유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선 본국국적별로는 이혼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가치경향을 보인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은 태국(35.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중국(한민족), 몽골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일본(6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도 60.3%로 높았다.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결혼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응

답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이혼에 대한 의견은 점차 분명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4〉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이혼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이혼하는 편이 낫다	잘 모르겠다	계(수)	χ^2
전체	52.7	15.1	32.1	100.0(1,011)	
본국 국적					
중국	58.3	12.2	29.5	100.0(156)	5.644***
중국(한민족)	59.3	19.8	21.0	100.0(81)	
베트남	44.8	14.8	40.5	100.0(210)	
필리핀	60.3	8.7	31.0	100.0(126)	
일본	69.2	14.4	16.4	100.0(146)	
태국	37.7	35.8	26.4	100.0(53)	
몽골	34.1	18.2	47.7	100.0(44)	
기타	53.3	-	46.7	100.0(15)	
결혼기간					
2년 미만	42.7	15.5	41.8	100.0(220)	8.904***
2~4년 미만	54.3	11.2	34.5	100.0(223)	
4~6년 미만	62.9	16.2	21.0	100.0(105)	
6년 이상	61.4	16.8	21.8	100.0(220)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공히 ‘자녀가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대다수인 76.1%가 이같이 대답하여 자녀의 유무가 결혼이민자의 이혼에 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8.8%), 경제적 자립불가(3.7%), 체류자격 상실(2.2%), 본국가족 부양염려(1.6%)등도 지적되었다.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9%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가족 및 사회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인적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있으므로	경제적 자립 불가	체류자격 상실 ¹⁾	본국가족 부양 의무 ¹⁾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76.1	3.7	2.2	1.6	8.8	7.6	100.0(476)
한국인배우자	68.8	1.8	-	-	19.9	9.5	100.0(400)

주: 1)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체류자격상실' 및 '본국가족부양의무'는 해당없음.

2) 본 항목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결혼이민자 476명, 한국인배우자 400명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자녀가 있으므로’(84.2%), 체류자격 상실(4.7%),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4.7%) 순이었으며, 30대 이상은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순이었다. 특히 ‘자녀가 있으므로’라는 응답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국국적별은 모두 ‘자녀가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한민족), 태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높았다. 태국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몽골과 베트남 등은 체류자격 상실을 지적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6-6〉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있으 므로	경제적 자립 불가	체류 자격 상실	본국가족 부양 염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기타	계(수)	χ^2
전체 연령	76.1	3.7	2.2	1.6	8.8	7.6	100.0(476)	
15~29세	84.2	2.9	4.7	0.6	4.7	2.9	100.0(171)	4.352**
30~39세	75.0	2.3	0.8	2.3	10.2	9.4	100.0(128)	
40~49세	73.2	1.8	-	-	7.1	17.9	100.0(56)	
50대 이상	50.0	-	-	-	50.0	-	100.0(2)	
본국 국적								
중국	70.1	4.6	2.3	3.4	17.2	2.3	100.0(87)	2.901**
중국(한민족)	93.5	2.2	-	-	-	4.3	100.0(46)	
베트남	81.3	2.2	4.4	4.4	4.4	3.3	100.0(91)	
필리핀	77.8	4.2	4.2	-	8.3	5.6	100.0(72)	
일본	67.7	2.1	1.0	1.0	8.3	19.8	100.0(96)	
태국	84.2	-	-	-	5.3	10.5	100.0(19)	
몽골	71.4	-	7.1	-	7.1	14.3	100.0(14)	
기타	75.0	-	-	-	12.5	12.5	100.0(8)	
결혼기간								
2년 미만	65.2	3.4	3.4	3.4	16.9	7.9	100.0(89)	3.243*
2~4년 미만	78.0	2.5	5.1	4.2	5.9	4.2	100.0(118)	
4~6년 미만	83.6	6.6	1.6	-	3.3	4.9	100.0(61)	
6년 이상	78.6	1.5	-	-	6.9	13.0	100.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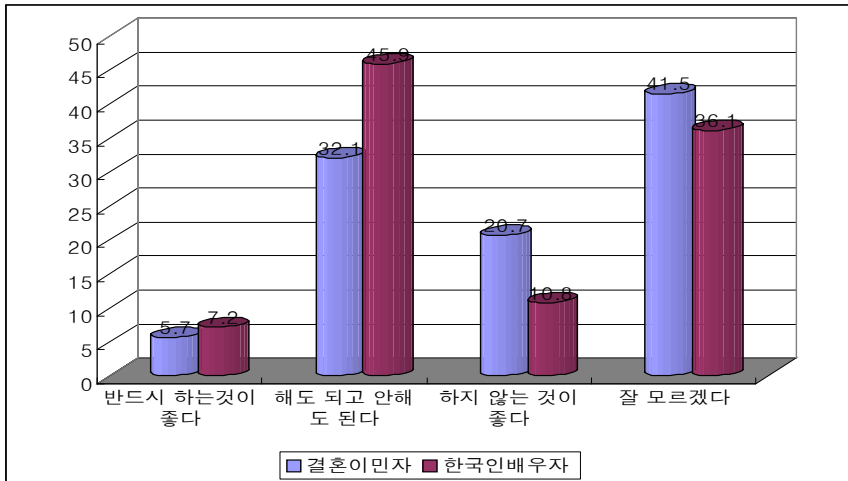
주: 1) ** p < .01, * p < .05

2) 본 항목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결혼이민자 476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각각 재혼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32.1%,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20.7%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45.9%이었으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10.8%로 결혼이민자보다 재혼에 대하여 더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림 6-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재혼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945), 한국인배우자(n=87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본 문항에 대한 결과를 김승권 외(2006)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 기혼여성의 경우,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과 ‘하는 것이 좋음’)이 18.3%이었으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가 52.1%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하지 않는 것이 좋음’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이 26.2%이었다(김승권 외 2006). 따라서 한국인 기혼여성은 결혼이민자보다 재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나.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 부분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자식과 아내보다 높으며 딸보다

는 아들을 더 중시하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반면에 양성평등적 가치관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의 동등한 책임 및 권리를 중시하는 가치지향으로 가사일 분담, 자녀양육책임 분담, 노부모 부양책임 분담 및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아버지의 권위는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친정보다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등의 4가지 질문으로 살펴보았다. 양성평등적 가치관은 ‘부부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좋다’, ‘남편도 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녀를 돌볼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등의 4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권위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결혼이민자(58.8%)보다 한국인배우자(66.4%)가 더 긍정적인 태도(‘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경우 한국인배우자(8.4%)보다 결혼이민자(13.8%)가 많아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가부장적인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에는 결혼이민자의 22.1%가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이와 같은 응답의 비율이 39.3%로 17%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도 한국인배우자의 42.0%가 ‘그렇다’라고 답해 결혼이민자(22.3%)보다 19.7% 포인트나 높았다. 또한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보다 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부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좋다’와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다소 많았다. 또한 ‘남편도 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와 ‘자녀돌봄의 책임이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문항에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가 상당히 많아 결혼이민자는 특히 돌봄 및 가사노동에 있어서 한국인배우자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양성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가치관 비교

(단위: %, 명)

구분	아버지 권위 존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남편은 직장 아내는 가사일	아내 친정보다 시집 우선시	부부재산 각자 분명히	남편도 가사노동 책임	자녀돌봄 책임 남편·아내 동일	노부모 부양책임 아들·딸 동일
결혼이민자								
전혀 그렇지 않다	3.7	8.2	6.7	7.1	9.7	2.0	0.8	3.2
그렇지 않다	10.1	24.7	23.4	23.7	26.9	7.8	2.2	5.2
보통	27.4	39.9	32.5	39.1	36.6	30.0	12.3	26.5
그렇다	42.2	22.1	28.3	23.8	22.3	48.3	51.4	46.8
매우 그렇다	16.6	5.2	9.1	6.2	4.6	11.9	33.3	18.3
계(수)	1000(1,010)	1000(1,029)	1000(1,034)	1000(1,015)	1000(1,015)	1000(1,025)	1000(1,036)	1000(998)
한국인배우자								
전혀 그렇지 않다	2.6	2.2	2.3	5.0	7.2	1.8	0.9	2.2
그렇지 않다	5.8	14.6	14.6	26.2	29.8	9.3	4.5	7.7
보통	25.1	38.4	30.8	40.2	39.5	44.6	25.5	28.1
그렇다	51.6	39.3	42.0	24.8	19.3	38.0	53.1	52.0
매우 그렇다	14.8	5.5	10.3	3.9	4.1	6.4	16.0	9.9
계(수)	1000(916)	1000(924)	1000(922)	1000(908)	1000(916)	1000(913)	1000(917)	1000(9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문화가 각각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는지를 5가지 문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외국인배우자를 맞이한 한국인은 외국인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한국인배우자의 긍정적 답변(‘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은 42.1%에 그쳤으나 결혼이민자는 53.4%가 긍정적 태도를 보여 11.3% 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외국인가족원의 모국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에는 과반수의(54.4%) 결혼이민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한국인배우자의 긍정적 응답은 40.8%에 그쳤다. 결혼이민자는 본인의 모국어를 가족원들이 습득하고 모국풍습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의 문화존중에 대한 상호 기대수준이 상이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가 본국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인배우자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가족문화에 대한 가치관 중 가장 공감하고 있는 항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이민자모국어 습득’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11.9% 포인트나 많아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혼이민자가 한국요리를 잘해야 한다’에 관해서는 오히려 결혼이민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부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6-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가치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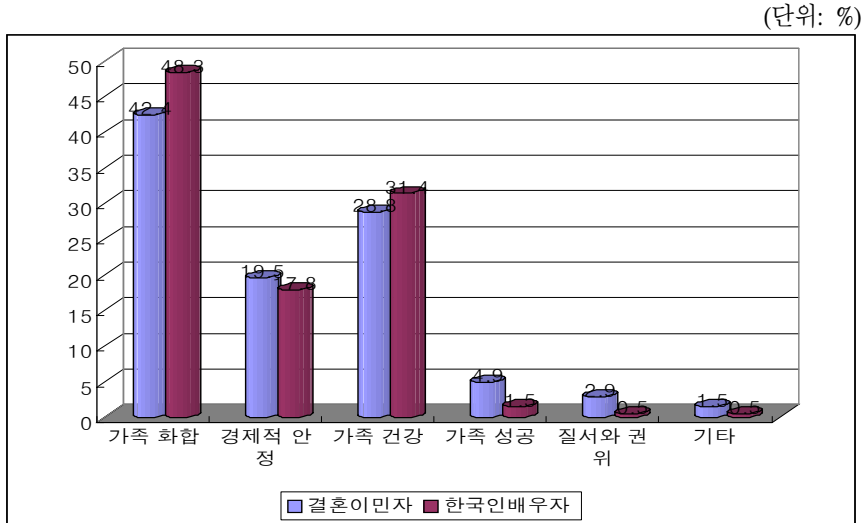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습득해야	외국인 가족원의 모국명절풍습 도 챙겨야	결혼이민자가 본국가족 챙기는 것도 중요	자녀는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도 습득해야	결혼이민자는 한국요리 잘해야 함
결혼이민자					
전혀 그렇지 않다	4.2	3.0	2.3	2.2	2.3
그렇지 않다	11.3	12.8	7.4	5.6	7.4
보통	31.1	29.7	28.9	26.2	28.9
그렇다	40.4	43.6	46.1	49.5	46.1
매우 그렇다	13.0	10.8	15.3	16.7	15.3
계(수)	100.0(1,021)	100.0(1,029)	100.0(1,033)	100.0(1,021)	100.0(1,033)
한국인배우자					
전혀 그렇지 않다	1.8	2.3	0.7	1.2	1.9
그렇지 않다	16.0	16.2	4.6	10.3	13.4
보통	40.1	40.6	30.4	34.1	39.1
그렇다	36.0	37.3	56.5	45.5	40.4
매우 그렇다	6.1	3.5	7.8	8.8	5.3
계(수)	100.0(913)	100.0(911)	100.0(911)	100.0(909)	100.0(9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가족화합’, ‘가족건강’, ‘경제적 안녕’, ‘가족성공’ 그리고 ‘질서와 권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배우자는 가족화합과 가족건강에서 결혼이민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결혼이민자는 경제적 안녕과 가족성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성향과 가족의 안녕과 화합을 더욱 중요시 하는 한국인배우자의 가치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6-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비교



주: 결혼이민자(n=1,046), 한국인배우자(n=9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로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중국, 중국(한민족), 일본, 몽골은 ‘가족화합’, ‘가족건강’, ‘경제적 안정’ 순으로, 베트남과 태국은 ‘경제적 안정’, ‘가족건강’, ‘가족화합’ 순으로, 필리핀은 ‘가족건강’을 우선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화합’, ‘가족성공’, ‘경제적 안정’ 순으로 지적하여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로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경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9〉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가족 화합	경제적 안정	가족 건강	가족 성공	질서와 권위	기타	계(수)	χ^2
전체	42.4	19.5	28.8	4.9	2.9	1.5	1000(1046)	
중국	61.0	15.2	20.1	1.2	1.2	1.2	100.0(164)	
중국(한민족)	47.1	12.6	36.8	-	2.3	1.1	100.0(87)	
베트남	17.9	39.1	33.3	3.9	4.8	1.0	100.0(207)	
필리핀	21.7	17.8	35.7	18.6	3.9	2.3	100.0(129)	
일본	76.6	4.8	16.6	0.7	-	1.4	100.0(145)	20.749***
태국	21.1	31.6	22.8	15.8	5.3	3.5	100.0(57)	
몽골	46.0	20.0	30.0	-	4.0	-	100.0(50)	
기타	41.7	8.3	50.0	-	-	-	100.0(12)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본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정홍보처(2007)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문화가족은 ‘가족화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 한국인은 남녀 모두 ‘가족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족이 인종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가족구성원과의 화합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일반한국여성보다 경제적 안정, 가족성공 및 질서와 권위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경제·사회적 지위 상승을 추구하려는 결혼이민자의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10〉 다문화가족과 일반한국인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명)

구분	가족 화합	경제적 안정	가족 건강	가족 성공	질서와 권위	기타	계(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42.4	19.5	28.8	4.9	2.9	1.5	1000(1,046)
한국인배우자	48.3	17.8	31.4	1.5	0.5	0.5	1000(934)
일반한국인 ¹⁾							
여성	35.7	14.3	47.8	0.9	0.5	0.9 ²⁾	1000(1,316)
남성	39.0	16.6	40.7	1.7	0.8	1.2 ²⁾	1000(1,265)

주: 1) 일반한국인에 대한 자료는 국정홍보처의「200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중 p.65 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2) 원자료의 기타(여성: 0.4, 남성: 0.3)와 모름/무응답(여성:0.5, 남성: 0.9)을 합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 자녀가치관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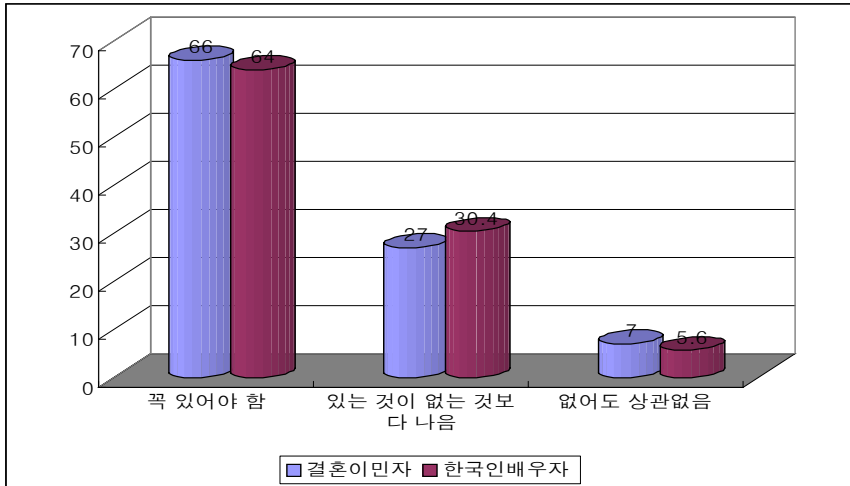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의 자녀가치관 및 인식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이상 자녀 수, 남아선호가치관 여부, 남아선호가치관의 이유, 독립적 자녀가치관, 그리고 자녀양육 책임기간 등의 항목에 의거하여 파악하였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의 66.0%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인배우자(64.0%)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응답은 한국인배우자가 오히려 많았다.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꼭 있어야 함’과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각각 93.0%, 94.4%로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한 결과를 김승권 외(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53.8%이었으며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4.1%, ‘없어도 무관하다’가 12.1%를 차지하여, 한국인 기혼여성보다는 결혼이민자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6-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57), 한국인배우자(n=9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또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 국적별로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를 포함할 경우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베트남(99.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필리핀(94.4%), 몽골(91.6%) 등의 순이었다. ‘없어도 상관 없다’는 응답은 중국(한민족)이 1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국이 11.8%, 태국이 8.6% 등의 순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로 응답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6-11〉 결혼이민자의 본국 국적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옴	없어도 상관없음	계(수)	χ^2
전체	66.0	27.0	7.0	100.0(1,057)	7.291***
중국	58.2	30.0	11.8	100.0(170)	
중국(한민족)	53.3	30.0	16.7	100.0(90)	
베트남	75.0	24.5	0.5	100.0(212)	
필리핀	59.1	38.6	2.3	100.0(132)	
일본	83.1	11.3	5.6	100.0(142)	
태국	65.5	25.9	8.6	100.0(58)	
몽골	83.3	8.3	8.3	100.0(48)	
기타	64.3	28.6	7.1	100.0(14)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 공히 1~2명 정도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1.1% 정도가 자녀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1~2명이라는 응답도 한국인배우자 보다 더 많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보다 자녀를 갖지 않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이상자녀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없음	1~2명	3~4명	6명 이상	계(수)
결혼이민자	1.1	77.1	21.7	0.1	100.0(995)
한국인배우자	0.3	74.4	25.1	0.2	100.0(9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본 문항에 대한 결과를 김승권 외(2006)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 기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3명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

타난 결혼이민자의 평균 이상자녀수인 2.14명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자는 농·어촌지역보다 자녀를 희망하지 않거나, 1~2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3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6-13〉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계(수)	χ^2
전체	1.1	77.1	21.7	0.1	100.0(995)	
지역						
도시	1.3	78.3	19.7	0.8	100.0(525)	6.041*
농·어촌	0.7	72.0	26.6	0.7	100.0(275)	
연령						
15~29세	0.6	91.3	7.5	0.6	100.0(333)	28.879***
30~39세	2.0	67.8	29.8	0.4	100.0(245)	
40~49세	2.2	37.6	57.0	3.3	100.0(93)	
50대 이상	-	83.3	16.7	-	100.0(6)	
교육수준						
초등학교	-	86.7	13.3	-	100.0(30)	11.107***
중학교	2.4	90.6	7.1	-	100.0(85)	
고등학교	1.3	73.8	23.7	1.3	100.0(232)	
대학교 이상	0.5	63.2	34.9	1.5	100.0(201)	
본국 국적						
중국	1.9	91.2	6.9	-	100.0(159)	39.278***
중국(한민족)	2.4	84.5	13.1	-	100.0(84)	
베트남	0.5	95.0	4.0	0.5	100.0(199)	
필리핀	0.8	76.6	20.1	2.4	100.0(124)	
일본	1.5	20.4	76.7	1.5	100.0(137)	
태국	-	82.5	17.6	-	100.0(57)	
몽골	-	74.5	25.5	-	100.0(47)	
기타	-	61.6	38.5	-	100.0(13)	
결혼기간						
2년 미만	0.9	90.2	8.4	0.5	100.0(214)	45.373***
2~4년 미만	0.9	89.1	9.9	-	100.0(221)	
4~6년 미만	0.9	76.7	22.4	-	100.0(107)	
6년 이상	1.4	47.2	49.5	1.9	100.0(216)	

주: *** p < .001, * p < 0.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연령별로는 20대까지의 경우 1~2명을 이상적 자녀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1.3%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 이후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3~4명이 이상적이라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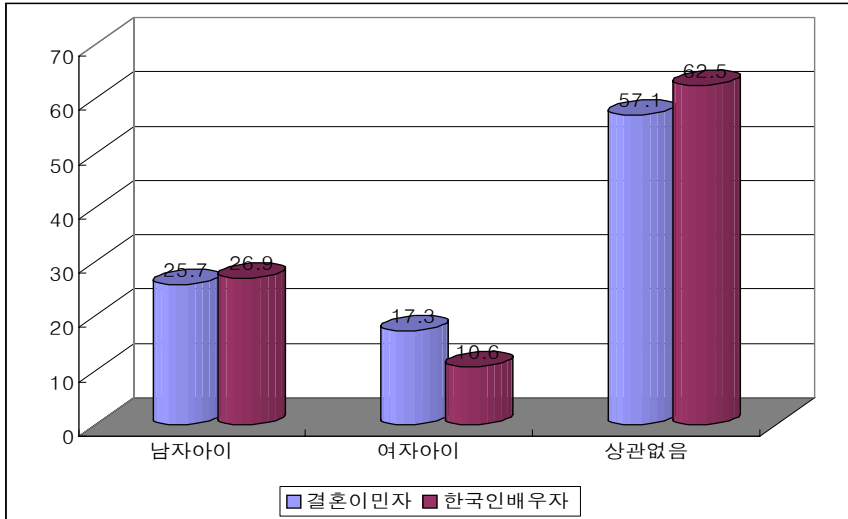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 1~2명, 86.7%, 3~4명, 13.3%이었으나, 중학교 학력 이후부터는 고학력일수록 1~2명라는 응답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3~4명이라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본국국적별로는 이상자녀수가 없다는 응답은 중국(한민족)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순이었으며, 1~2명은 베트남, 중국, 중국(한민족) 등의 순이었으며, 3~4명은 일본, 몽골, 필리핀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결혼기간별로는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1~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이상자녀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약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약 26%정도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남자아이라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족에서도 남아선호가치관이 잔존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비율(17.3%)이 한국인배우자(10.6%)보다 더 높아 양측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림 6-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의 성별 선호도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13), 한국인배우자(n=9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에 한하여 남아선호의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응답자 모두 ‘가문을 잇기 위해’라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노후생활을 위해’라는 응답과 ‘배우자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14.3%와 13.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든든해서)’라는 대답이 33.5%나 되었고 ‘노후생활을 위해’와 ‘배우자가 원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가 원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은 한국인배우자의 남아선호가치관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1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남아선호이유 비교¹⁾

(단위: %, 명)

구분	가문을 잇기 위해	노후생활 을 위해	배우자가 원해서	심리적 만족 위해	기타	계(수)
결혼이민자	50.8	14.3	13.9	13.9	7.0	100.0(244)
한국인배우자	53.7	5.4	2.1	33.5	5.4	100.0(242)

주: 1) 본 항목은 ‘남자아이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 244명과 한국인배우자 242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번에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가치관 중 독립적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자녀가치관에 반대되는 경향으로 ‘자녀와 부모의 삶은 별개’, ‘자식의 진로는 자식 스스로 결정’ 그리고 ‘자식의 결혼상대는 자식 스스로 결정’ 등의 3개 문항과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임’이라는 1개의 역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라는 문항에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견해차이가 가장 컸는데, 결혼이민자보다 한국인배우자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자식의 진로는 자식 스스로 결정’ 등의 문항에서는 한국인배우자보다 결혼이민자가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6-1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가치관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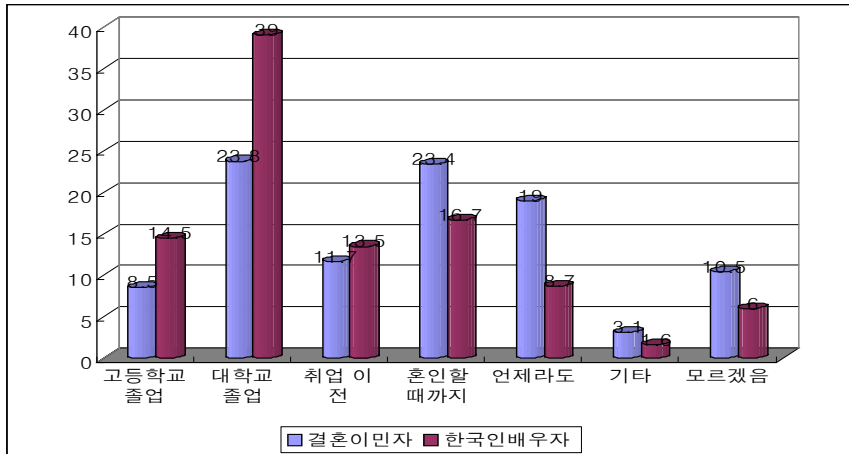
구분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임	자식과 부모의 삶은 별개	자식의 진로는 자식 스스로 결정	자식의 결혼상대는 자식 스스로 결정
결혼이민자				
전혀 그렇지 않다	5.0	3.4	2.5	4.2
그렇지 않다	19.0	7.1	9.4	12.4
보통	28.8	21.0	23.7	23.2
그렇다	32.4	54.1	48.8	41.3
매우 그렇다	14.8	14.4	15.6	18.8
계(수)	100.0(982)	100.0(976)	100.0(977)	100.0(982)
한국인배우자				
전혀 그렇지 않다	8.1	1.9	1.3	1.6
그렇지 않다	30.9	6.2	12.8	10.0
보통	25.4	23.1	28.0	27.5
그렇다	29.4	60.4	50.6	50.7
매우 그렇다	6.1	8.3	7.3	10.1
계(수)	100.0(897)	100.0(900)	100.0(896)	100.0(89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자식양육(교육, 정서, 경제)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결혼이민자는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까지가 32.3%로 대학졸업 이후부터 언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던 반면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53.5%가 고등학교졸업 혹은 대학교졸업까지라고 응답하여 한국인배우자보다 결혼이민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양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6-9]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자식양육한계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03), 한국인배우자(n=9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본 문항에 대한 결과를 김승권 외(2006)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 기혼여성의 경우, 고등학교졸업 혹은 대학교졸업까지가 54.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한국인 기혼여성보다 결혼이민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양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기혼여성의 자식양육한계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명)

구분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취업 이전	혼인할 때까지	언제 라도	기타	모르 겠음	계(수)
결혼이민자	8.5	23.8	11.7	23.4	19.0	3.1	10.5	1000(1,003)
한국인기혼여성 ¹⁾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주: 1) 한국인기혼여성에 대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p.348 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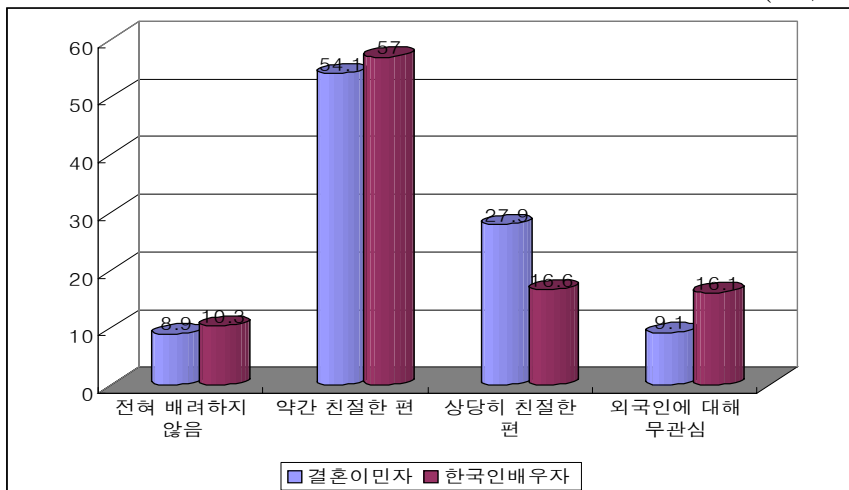
라. 사회적 가치관 및 인식

사회적가치관 및 인식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 혹은 차별정도와 이들의 국가적 및 민족적 정체성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절친한 친구의 국제결혼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사회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친절함)가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모두 ‘약간 친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국인배우자(26.4%)가 결혼이민자(18.0%)보다 ‘전혀 배려하지 않음’과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의외로 한국인배우자가 한국사회의 외국인 배려 수준에 대하여 더 낮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0]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한국인의 외국인 배려수준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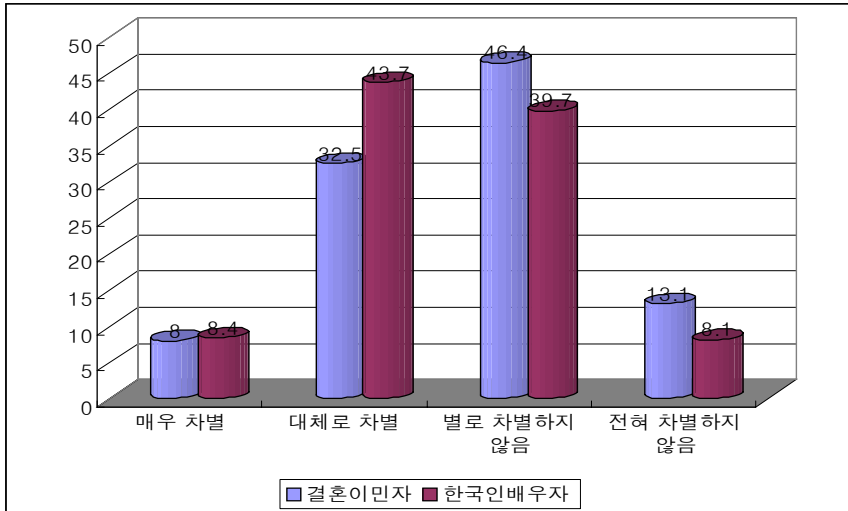
주: 결혼이민자(n=1,044), 한국인배우자(n=9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결혼이민자)을 차별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차별한다’는 응답이 공히 40~50% 수준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도 한국인배우자의 ‘차별한다’라는 응답(‘매우 차별’과 ‘대체로 차별’)이 결혼이민자의 응답보다 많아 한국인배우자가 느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1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한국인의 외국인차별 경험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63), 한국인배우자(n=9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자녀를 학교 및 보육시설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시설에서 자녀를 차별대우한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한국인배우자보다는 결혼이민자가 자녀의 차별(‘매우 차별’ 및 ‘대체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6-17〉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자녀차별대우 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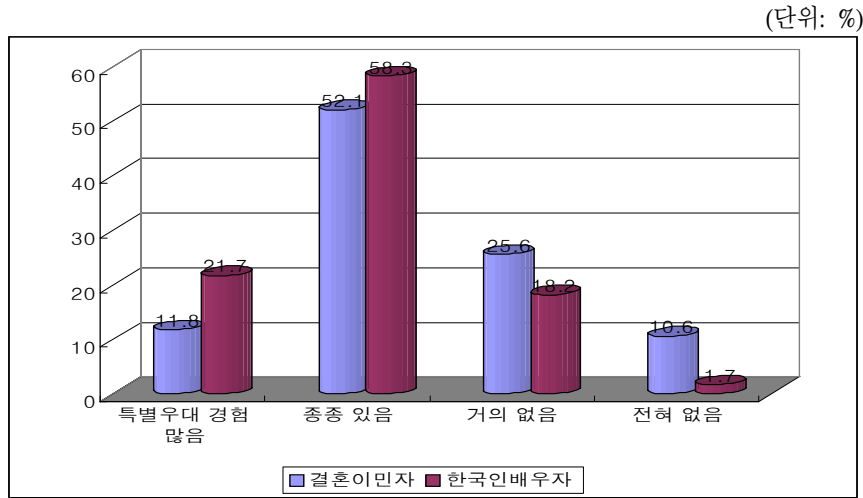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매우 차별	대체로 차별	별로 차별하지 않음	전혀 차별하지 않음	계(수)
결혼이민자	3.7	18.7	48.3	29.3	100.0(694)
한국인배우자	3.2	13.0	42.7	41.1	100.0(531)

주: 본 항목은 자녀를 학교 및 보육시설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694명과 한국인배우자 531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우대를 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질문한 결과, ‘종종 있다’고 답한 경우가 과반수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특별우대경험이 있는 경우(‘많음’과 ‘종종 있음’)가 63.9%로 한국인배우자의 80.0%보다 적었다.

[그림 6-1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특별우대 경험 비교



주: 결혼이민자(n=1,037), 한국인배우자(n=9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국가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느끼는 비율은 18.7%로 한국인배우자가 자신의 외국인배우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35.4%)보다 낮았다. 비슷한 현상은 자녀의 경우에도 나타났는데,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57.3%)이 한국인배우자가 자신의 자녀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73.4%)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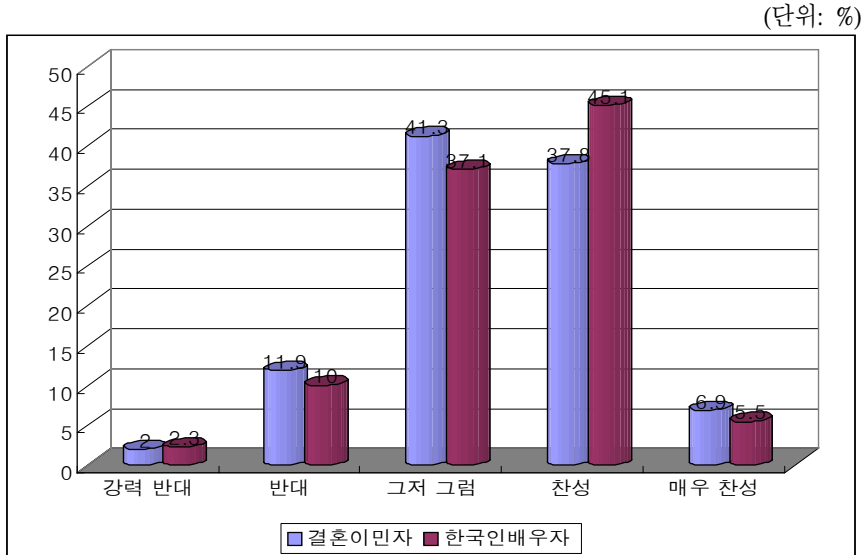
〈표 6-1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국가 및 민족 정체성 비교
(단위: %, 명)

구분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본국 국민	양국 모두	계(수)	같은 민족	다른 민족	양측 모두	계(수)
결혼이민자								
본인	18.7	26.0	55.3	100.0(1,051)	33.4	33.7	32.9	100.0(1,050)
자녀	57.3	2.8	39.9	100.0(1,040)	66.4	4.7	28.9	100.0(1,012)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35.4	22.6	42.1	100.0(944)	35.2	34.4	30.4	100.0(945)
자녀	73.4	4.2	22.4	100.0(909)	80.1	2.4	17.4	100.0(9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에게 ‘귀하의 절친한 친구가 한국인(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혼이민자보다는 한국인배우자가 찬성(‘매우 찬성’ 및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하는 입장(‘강력반대’ 및 ‘반대’)은 결혼이민자가 약간 많았다.

[그림 6-1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친구가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취할 태도 비교



주: 결혼이민자(n=883), 한국인배우자(n=9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마. 인권의식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인권상황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인권문제의 심각성, 인권상황의 개선정도, 결혼이민자의 자유 및 권리보장 등 3가지의 주제로 10개의 질문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6%가 ‘심각하다’(‘대체로 심각’과 ‘매우 심각’)고 응답하였으며, ‘심각하지 않다’(‘별로 심각하지 않음’과 ‘전혀 심각하지 않음’)는 응답은 28.6%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한국인배우자의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
심각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심각하지 않음	84	8.9
별로 심각하지 않음	185	19.7
그저 그렇	333	35.4
대체로 심각	286	30.4
매우 심각	53	5.6
계	941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번에는 한국인배우자에게 1년 전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권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나아졌다’ (많이 나아짐과 조금 나아짐)는 응답이 40.4%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내 인권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 한국인배우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6-20〉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이민자 인권상황 개선정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많이 나아짐	153	16.3
조금 나아짐	226	24.1
마찬가지임	119	12.7
앞으로 나아질 것임	270	28.8
잘 모름	168	17.9
계	936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번에는 결혼이민자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8가지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결혼이민자는 한국인배우자와 가족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결혼이민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결정권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다’, ‘결혼형편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믿지

못하는 경우 국적취득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4개 항목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가 20% 수준으로 나타나 특히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의 의사결정권 및 이혼에 대한 동등한 권리의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6-21〉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이민자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배우자와 가족에 순종해야 함	8.0	31.0	38.1	20.5	2.4	100.0(936)
이혼의 결정권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음	11.8	42.0	24.9	19.3	2.0	100.0(927)
결혼이민자에게 구타 또는 폭언할 수 있음	46.3	37.1	11.8	4.1	0.7	100.0(903)
결혼이민자의 자유로운 외출 및 본국친구 만남 금지	41.2	39.9	13.9	3.1	1.8	100.0(929)
한국인배우자가 금전관리하도록 함	32.1	40.2	19.1	6.9	1.7	100.0(928)
한국인배우자의 성관계요구에 언제라도 응해야함	31.7	46.5	17.1	4.0	0.7	100.0(923)
집안형편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가 돈을 벌어야 함	15.0	28.2	35.4	19.8	1.6	100.0(925)
결혼이민자를 믿지 못할 경우 국적취득 신청 협조 안할 수도 있음	25.8	30.1	24.1	17.7	2.2	100.0(9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2.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가. 가족기능수행도 개념 및 측정방법

가족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 및 존속,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개별가족원은 사회변화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가족기능은 이를 수행하는 개별가족원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 가족원 규모의 변화에 의하여 한국가족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비정형적인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가족의 기능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의 수행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7개 영역의 2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기능영역은 양질의 노동력과 균형적 소비라는 두 지표에 의하여, 경제적 부양기능영역은 의생활 제공, 식생활 해결, 주거생활 적절 수준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정서적 부양기능은 가족간 대화소통, 가족 일에 대한 관심정도, 개인문제 공동해결 등에 의하여, 신체적 부양기능은 신체적 보호의 적절성, 적절한 의료보장, 불편한 가족 돌봄 등에 의하였다.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은 교육의 적절한 배분, 부모의 꿈 대리성취, 사회화 교육 정도에 의하여 측정되었으며, 여가휴식기능은 가족외식, 가족운동, 집안 가꿈, 재충전을 잘하는 정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능은 이웃을 도움, 친인척 도움, 축의금 적절부담 등에 의하여 그 수준이 파악되었다.

가족기능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각 지표는 1~5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가장 낮은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은 1점, 가장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은 5점이 되며, 총점은 0~105점에 분포하게 된다.

나. 측정결과

측정결과는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64.56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66.03점으로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가족기능수행보다 1.47점이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각 영역 및 세부지표별 가족기능수행도의 평균점수는 <표 6-22>에 제시되고 있다. 전체 7개 영역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가족기능수행도를 보였다. 즉 신체적 부양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10.51점, 지표평균은 3.503점으로 7개 영역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정서적 부양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10.27점, 지표평균은 3.423점이었다.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10.07점으로 지표평균은 3.356점이었고, 사회보장기능은 15점 만점에 9.95점, 지표평균은 3.316점이었다. 또한 경제적 기능 영역은 10점 만점에 6.29점으로 지표평균은 3.145점이었고, 경제적 부양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9.22점으로 지표평균은 3.073점이었다. 그리고 여가휴식기능 영역은 20점 만점에 11.48점, 지표평균은 2.87점으로 7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신체적 부양기능, 정서적 부양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사회보장 기능은 잘 수행되는 편이나 경제적 기능, 경제적 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등은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다.

〈표 6-2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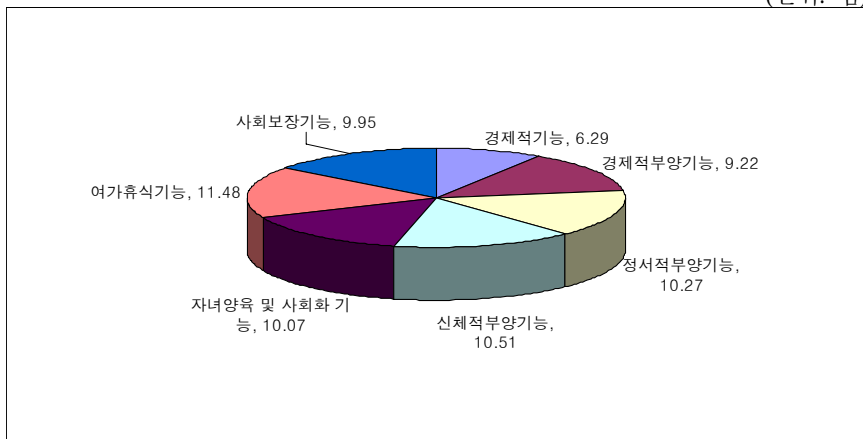
영역	지표	기능수행도	영역	
			영역 합계(만점)	영역별 지표 평균
경제적 기능	양질의 노동력	3.12	6.29	3.145
	균형적 소비	3.17	(10)	
경제적 부양기능	의생활 제공	2.90	9.22	3.073
	식생활 해결	3.15	(15)	
	주거생활 적절	3.17		
정서적 부양기능	가족간 대화소통	3.33	10.27	3.423
	가족일 관심 많음	3.45	(15)	
	개인문제 공동해결	3.49		
신체적 부양기능	신체적보호 적절	3.52	10.51	3.503
	적절한 의료보장	3.61	(15)	
	불편한 가족 돌봄	3.38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교육의 적절한 배분	3.46	10.07	3.356
	부모꿈 대리성취	3.24	(15)	
	사회화 교육실시	3.37		
여가휴식기능	가족외식	3.06	11.48 (20)	2.87
	가족운동	2.73		
	집안가꿈	2.79		
	재충전됨	2.90		
사회보장기능	이웃을 도움	3.29	9.95	3.316
	친·인척 도움	3.37	(15)	
	경조사 분담	3.29		
계(100점 환산)		67.79(64.56)		
(분석대상수)		(9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가 생각하는 각 영역 및 세부지표별 가족기능수행도의 평균 점수는 <표 6-23>에 제시되고 있다. 전체 7개 영역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가족기능수행도를 보였다. 즉 신체적 부양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10.56점, 지표평균은 3.52점으로 7개 영역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정서적 부양기

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10.46점, 지표평균은 3.486점이었다. 사회보장 기능은 15점 만점에 10.20점, 지표평균은 3.40점이었고,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9.82점으로 지표평균은 3.273점이었다. 또한 경제적 부양 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9.790점으로 지표평균은 3.263점이었고, 경제적 기능 영역은 10점 만점에 6.510점으로 지표평균은 3.255점이었다. 그리고 여가휴식기능 영역은 20점 만점에 11.99점, 지표평균은 2.997점으로 7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신체적 부양기능, 정서적 부양기능, 사회보장 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높은 편이나 경제적 부양기능, 경제적 기능, 여가휴식기능 등은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다.

[그림 6-14]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단위: 점)



주: 결혼이민자(n=9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가 생각하는 가족기능수행도를 비교하면 결혼 이민자는 7개 영역 중에서 자녀양육 및 사회화 영역의 가족기능수행도만 한

국인배우자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개 영역은 낮았다. 반대로 한국인배우자는 7개 영역 중에서 경제적 기능, 경제적 부양기능, 정서적 부양기능, 신체적 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사회보장기능 등 6개영역의 가족기능수행도를 결혼이민자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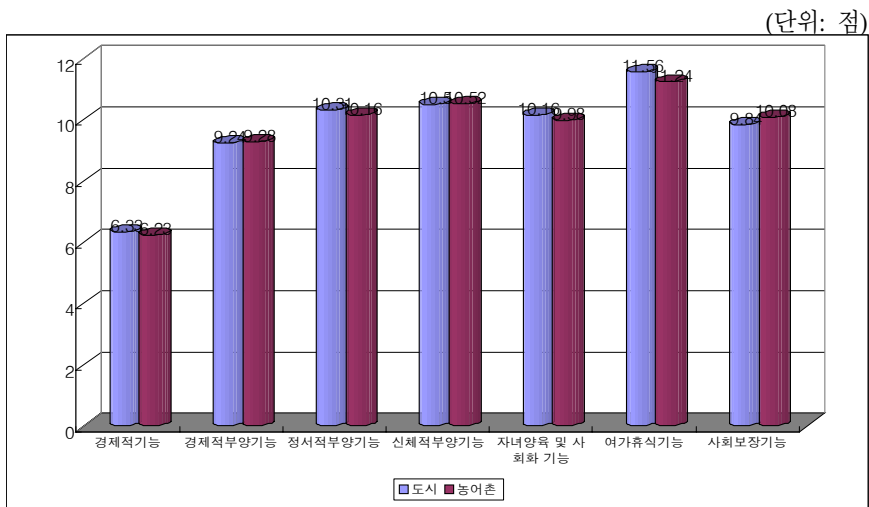
〈표 6-23〉 한국인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단위: 점, 명)

영역	지표	기능수행도	영역	
			영역 합계(만점)	영역별 지표 평균
경제적 기능	양질의 노동력	3.18	6.510 (10)	3.255
	균형적 소비	3.33		
경제적 부양기능	의생활 제공	3.20	9.790 (15)	3.263
	식생활 해결	3.34		
	주거생활 적절	3.25		
정서적 부양기능	가족간 대화소통	3.42	10.46 (15)	3.486
	가족일 관심 많음	3.50		
	개인문제 공동해결	3.54		
신체적 부양기능	신체적 보호적절	3.59	10.56 (15)	3.52
	적절한 의료보장	3.53		
	불편한 가족 돌봄	3.44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교육의 적절한 배분	3.45	9.82 (15)	3.273
	부모꿈 대리성취	3.09		
	사회화 교육실시	3.28		
여가휴식기능	가족외식	3.25	11.99 (20)	2.997
	가족운동	2.94		
	집안가꿈	2.98		
	재충전됨	2.92		
사회보장기능	이웃을 도움	3.29	10.20 (15)	3.400
	친·인척 도움	3.39		
	경조사 분담	3.52		
계(100점 만점)		69.33(66.03)		
(분석대상수)		(8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지역별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은 100점 만점에 64.70점이었고, 농·어촌지역은 100점 만점에 64.28점으로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0.42점이 높았다.

[그림 6-15] 지역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 수행도



주: 도시(n=557), 농어촌(n=3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 각 영역 및 세부지표별 가족기능수행도의 평균점수는 <표 6-24>에 제시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영역별 지표평균을 보면 신체적 부양기능 영역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서적 부양기능 영역 3.44점,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영역 3.39점, 사회보장기능 영역 3.28점, 경제적 기능 영역 3.17점, 경제적 부양기능 영역 3.08점, 여가휴식기능 영역은 2.89점 순으로 높았다. 농·어촌지역의 영역별 지표평균은 신체적 부양기능 영역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서적 부양기능 영역 3.39점, 사회보장기능 영역 3.36점,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영역 3.33점, 경제적 부양기능 영역 3.09점,

경제적 기능 영역 3.12점, 여가휴식기능 영역은 2.81점 순이었다.

도시와 농·어촌의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를 비교하면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 경제적 기능, 정서적 부양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여가휴식기능 영역의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도시보다 경제적 부양기능, 신체적 부양기능, 사회보장기능 영역의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표 6-24〉 지역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 수행도

(단위: 점, 명)				
영역	지표	전체	도시	농·어촌
경제적 기능	양질의 노동력	3.12	3.15	3.06
	균형적 소비	3.17	3.18	3.17
경제적 부양기능	의생활 제공	2.90	2.91	2.91
	식생활 해결	3.15	3.17	3.15
	주거생활 적절	3.17	3.16	3.22
정서적 부양기능	가족간 대화소통	3.33	3.34	3.30
	가족일 관심 많음	3.45	3.47	3.39
	개인문제 공동해결	3.49	3.50	3.47
신체적 부양기능	신체적보호 적절	3.52	3.53	3.50
	적절한 의료보장	3.61	3.60	3.62
	불편한 가족 돌봄	3.38	3.37	3.40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교육의 적절한 배분	3.46	3.49	3.42
	부모꿈 대리성취	3.24	3.26	3.23
	사회화 교육실시	3.37	3.41	3.33
여가휴식기능	가족외식	3.06	3.08	3.01
	가족운동	2.73	2.75	2.66
	집안가꿈	2.79	2.81	2.73
	재충전됨	2.90	2.92	2.84
사회보장기능	이웃을 도움	3.29	3.23	3.37
	친·인척 도움	3.37	3.35	3.39
	경조사 분담	3.29	3.26	3.32
계(100점 만점)		67.79(64.56)	67.94(64.70)	67.49(64.28)
(분석대상수)		(933)	(557)	(3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국적별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다음과 같다. 태국출신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68.1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몽골출신 가족이 67.52점, 중국(한국동포)출신이 66.50점, 중국출신이 66.17점, 베트남출신이 65.69점, 필리핀이 61.10점, 일본출신의 다문화가족이 60.70점으로 가족기능수행도가 가장 낮았다.

국적별로 각 영역 및 세부지표별 가족기능수행도의 평균점수는 <표 6-25>에 제시되고 있다. 국적별로 가족기능수행도를 살펴보면, 중국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여가휴식기능, 사회보장기능 등의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중국(한국동포)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정서적 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사회보장기능 등의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그리고 베트남은 전체보다 정서적 부양기능, 신체적 부양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등의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으며 나머지 6개 영역은 가족기능수행도의 점수가 낮았다. 그리고 일본국적의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7개 영역 모두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다. 반면 태국국적의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경제적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으며, 몽골국적의 결혼이민자 또한 전체보다 신체적 부양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국적별로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경제적기능 영역과 경제적 부양기능 영역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부양기능 영역, 사회보장기능 영역이 낮았다. 반면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영역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서적 부양기능 영역, 여가휴식기능 영역도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출신국가별로 가족기능수행도는 차이를 보여서 결혼이민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출신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25〉 본국 국적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단위: 점, 명)

영역	지표	전체	중국	중국 (한국 동포)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경제적 기능	양질의 노동력	3.12	3.19	3.36	3.00	2.79	3.26	3.37	3.38
	균형적 소비	3.17	3.20	3.29	3.39	2.88	2.91	2.95	3.48
	경제적 부양기능								
	의생활 해결	2.90	2.94	3.14	2.72	2.84	2.72	3.36	3.34
	식생활 해결	3.15	3.18	3.33	3.15	3.08	2.83	3.44	3.55
	주거생활 적절	3.17	3.27	3.23	3.28	3.07	2.80	3.31	3.33
정서적 부양기능	가족간 대화소통	3.33	3.13	3.38	3.36	3.38	3.22	3.69	3.47
	가족일 관심 많음	3.45	3.42	3.49	3.55	3.21	3.33	3.75	3.52
	개인문제 공동해결	3.49	3.45	3.63	3.58	3.28	3.37	3.69	3.61
신체적 부양기능	신체적보호 적절	3.52	3.62	3.62	3.55	3.35	3.41	3.75	3.47
	적절한 의료보장	3.61	3.55	3.45	3.84	3.31	3.50	3.73	3.75
	불편한 가족 돌봄	3.38	3.57	3.27	3.61	3.09	3.23	3.32	3.21
자녀양육 및 사회 화 기능	교육의 적절한 배분	3.46	3.60	3.44	3.47	3.33	3.29	3.78	3.51
	부모꿈 대리성취	3.24	3.44	3.22	3.33	3.26	2.66	3.97	3.09
	사회화 교육실시	3.37	3.44	3.54	3.41	3.30	3.20	3.54	3.40
여가휴식기능	가족외식	3.06	3.22	3.19	3.06	2.93	2.81	3.05	3.46
	가족운동	2.73	2.88	2.89	2.68	2.51	2.47	2.98	3.22
	집안가꿈	2.79	3.00	2.96	2.85	2.50	2.58	2.67	3.16
	재충전됨	2.90	2.96	3.01	3.05	2.78	2.52	2.82	3.20
사회보장기능	이웃을 도움	3.29	3.29	3.36	3.64	2.96	3.02	3.42	3.08
	친·인척 도움	3.37	3.55	3.48	3.44	3.16	3.30	3.43	3.20
	경조사 분담	3.29	3.58	3.55	3.01	3.15	3.30	3.51	3.47
계(100점 만점)		67.79	69.48	69.83	68.97	64.16	63.74	71.53	70.90
(분석대상수)		(64.56)	(66.17)	(66.50)	(66.69)	(61.10)	(60.70)	(68.12)	(67.52)
		(933)	(153)	(78)	(259)	(141)	(154)	(61)	(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결혼기간별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다음과 같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족기능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67.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6년 미만이 65.31점, 2~4년 미만이 64.98점이었고, 6년 이상이 61.48점으로 가족기능수행도가 가장 낮았다.

결혼기간별로 각 영역 및 세부지표별 가족기능수행도의 평균점수는 <표 6-26>에 제시되고 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모든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결혼기간이 2~4년 미만과 4~6년 미만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사회보장 기능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고,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전체보다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6년 이상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모든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고, 결혼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가족기능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역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오래된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결혼기간별로 가족기능수행도는 차이를 보여서 다문화가족 단위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기간별로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26〉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 기능수행도

(단위: 점, 명)

영역	지표	전체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경제적 기능	양질의 노동력	3.12	3.18	3.02	3.16	3.17
	균형적 소비	3.17	3.29	3.34	3.19	2.88
경제적 부양기능	의생활 제공	2.90	2.99	2.86	2.99	2.82
	식생활 해결	3.15	3.27	3.21	3.27	2.94
	주거생활 적절	3.17	3.36	3.29	3.14	2.86
정서적 부양기능	가족간 대화소통	3.33	3.39	3.28	3.51	3.24
	가족일 관심 많음	3.45	3.53	3.49	3.47	3.33
	개인문제 공동해결	3.49	3.61	3.51	3.55	3.36
신체적 부양기능	신체적보호 적절	3.52	3.62	3.53	3.59	3.39
	적절한 의료보장	3.61	3.72	3.68	3.59	3.43
	불편한 가족 돌봄	3.38	3.54	3.46	3.39	3.18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교육의 적절한 배분	3.46	3.64	3.53	3.47	3.28
	부모꿈 대리성취	3.24	3.38	3.27	3.32	3.03
	사회화 교육실시	3.37	3.49	3.34	3.41	3.30
여가휴식기능	가족외식	3.06	3.20	3.08	3.19	2.85
	가족운동	2.73	2.90	2.72	2.81	2.55
	집안가꿈	2.79	2.93	2.82	2.91	2.63
	재충전됨	2.90	3.13	2.96	2.82	2.66
사회보장 기능	이웃을 도움	3.29	3.55	3.31	3.20	3.10
	친·인척 도움	3.37	3.59	3.31	3.27	3.29
	경조사 분담	3.29	3.36	3.22	3.33	3.26
계(100점 만점)		67.79(64.56)	70.67(67.30)	68.23(64.98)	68.58(65.31)	64.55(61.48)
(분석대상수)		(933)	(249)	(257)	(111)	(2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제2절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1.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인식

본 절에서는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가치관 및 인식을 혼인가치관 및 인식,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인식, 사회적가치관 및 인식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인권 등 5개 영역으로 일반 다문화가족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되는 항목별로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심층면접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여 이들의 가치관 및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혼인가치관 및 인식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는데, ‘반드시 해야 함’이 48.6%로 오히려 일반 결혼이민자(39.3%)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7〉 결혼해체 이민자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반드시 해야 함	18	48.6
가능한 하는 것이 좋음	11	29.7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됨	8	21.6
계	3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배우자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 경제력, 자라온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경제력’이라는 응답이 6.1% 포인트 정도 더 많았다.

〈표 6-28〉 결혼해체 이민자의 배우자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성격	23	60.5
경제력	8	21.1
자라온 환경	4	10.5
외모·성적인 매력	-	-
기타	3	7.9
계	3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는 결혼에 대하여 ‘가족 간의 관계’보다는 ‘부부 개인 간의 관계’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차이는 약 11% 포인트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결혼해체 이민자는 ‘결혼은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라는 응답이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3.5%포인트 정도 많아, 결혼을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6-29〉 결혼해체 이민자의 결혼에 대한 입장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결혼은 부부개인간의 관계	21	55.3
결혼은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	17	44.7
계	3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이혼가치관 및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8.4%로 ‘이혼하는 편이 낫다’(16.1%)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35.5%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 결혼이민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2.7%로 결혼해체 이민자보다 높아

서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이혼에 대하여 더 자유로운 가치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0〉 결혼해체 이민자의 이혼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비율 (단위: %, 명)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15	48.4
이혼하는 편이 낫다	5	16.1
잘 모르겠다	11	35.5
계	31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힌 15명에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거의 대부분(93.5%)이 ‘자녀가 있으므로’라고 답하였다. 이는 일반가족의 결혼이민자가 ‘자녀가 있으므로’라고 응답한 비율(76.1%)보다 17.4% 포인트 높은 것으로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있어서 자녀의 유무가 이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6-31〉 결혼해체 이민자의 이혼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단위: %, 명)
자녀가 있으므로	12	93.5
경제적 자립 불가	-	-
체류자격 상실	-	-
본국가족 부양 염려	-	-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	7.7
기타	-	-
계	13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재혼가치관을 살펴보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25.0%), ‘하지 않는 것

이 좋다’(21.9%),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6.3%)의 순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여 결혼해체 이민자는 재혼에 대한 태도를 유보한 경우가 더 많았고,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32〉 결혼해체 이민자의 재혼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2	6.3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8	25.0
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21.9
잘 모르겠다	15	46.9
계	32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 결과, 결혼해체 이민자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전)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시 받은 심리적 상처, 결혼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재혼을 미루거나 재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28세의 이혼한 결혼이민자로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여 국적취득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하지 않는 태도로 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천만원을 어렵게 마련해 주었더니 데리고 볼 때 든 돈을 빼고 주겠다고 다시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이혼 후에는 빚만 지고 힘들어 컴퓨터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고 하였고, 앞으로 재혼계획은 있으나 당장 말고 먼 훗날 좋은 남자 만나고 싶은 희망이 아직 있다고 하였다.

〈사례 2〉 34세의 결혼이민자로 남편이 병으로 사망한 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으나, 아들을 두 명씩이나 데리고 재혼할 자신이 없으며, 한국사람들은 아들을 좋아하지 않

남의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재혼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사례 3〉 28세의 별거한 결혼이민자로 남편이 학대할 폭력을 하여 폭력을 피해 나왔으며 현재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하기는 하나 그래도 남편이 가스백트를 열고 죽자고 했던 것 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안정된 상태라고 하였다. 앞으로 남편과 이혼할 것이며 재혼은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나. 가족가치관

이번에는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가족가치관과 양성평등적 가치관에 대한 문항을 동시에 질문하였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은 71.4%로 상당히 많았다. 또한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가사일을 한다’는 전통적인 부부역할분담 방식에도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64.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이 26.4%로 나타나 가부장적 가치관 문항 중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를 앞서 제시한 일반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아버지 권위 존중 항목에 대해서는 결혼해체이민자의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일반결혼이민자보다 높았으나, 기타 가부장적 가치관 항목에 대해서는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더욱 가부장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자녀의 돌봄책임에 있어서 결혼해체 이민자 85.3%가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한 반면에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64.7%만이 ‘남편에

게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사노동보다는 자녀돌봄에 있어서 남편의 책임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 부양책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적 가치경향이 68.5%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 결혼이민자의 의견과 비교하면, 결혼해체이민자가 양성평등적 가치경향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33〉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가치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아버지 권위 존중	2.9	17.1	8.6	40.0	31.4	100.0(35)
남편에게 순종	2.9	23.5	32.4	32.4	8.8	100.0(34)
남편은 직장 아내는 가사일	2.9	11.8	20.6	50.0	14.7	100.0(34)
아내 친절보다 시집 우선시	6.1	15.2	18.2	39.4	21.2	100.0(33)
부부재산 각자 분명히	14.7	17.6	35.3	23.5	8.8	100.0(34)
남편도 가사노동 책임	-	8.8	26.5	58.8	5.9	100.0(34)
자녀돌봄책임 남편·아내 동일	-	2.9	11.8	41.2	44.1	100.0(34)
노부모 부양책임 아들·딸 동일	3.1	3.1	25.0	43.8	25.0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 결과, 결혼해체 이민자는 한국인배우자의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4〉 28세의 이혼한 결혼이민자로서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아 많을 어렵게 꺼내면 한국남자는 다 그런다면서 그런 남자랑 살고 싶으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해결은 못하고 참는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사례5〉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한 34세 결혼이민자로 이혼 전 남편은

자기 가족보다 형을 우선시 하여 자녀돌보는 것에도 소홀히 하고 가사일도 도맡아 하지 않았으며 아이 낳은 후에 힘들 때에도 아내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전혀 도맡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례6〉 결혼한 지 1년 9개월 만에 별거중인 결혼이민자로 남편은 퇴근 말하면 배상이 곧바로 차려져 대령해야 한다고 하여 많이 힘들었으며, 그런 남편과의 삶이 불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문화가치관을 살펴보았다. 가족문화가치관 문항 중 결혼해체 이민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도 습득해야 한다’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으며, ‘결혼이민자의 모국명절풍습을 챙기는 것’과 ‘본국가족을 챙기는 것’,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습득’ 등에서 60~70% 수준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6-34〉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가치관

구분	(단위: %, 명)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습득해야	2.9	8.8	23.5	47.1	17.6	100.0(34)
결혼이민자의 모국명절풍습도 챙겨야	-	17.6	23.5	35.3	23.5	100.0(34)
결혼이민자는 한국요리 잘해야 함	2.9	2.9	20.6	44.1	29.4	100.0(34)
결혼이민자가 본국가족 챙기는 것도 중요	3.0	3.0	30.3	39.4	24.2	100.0(33)
자녀는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도 습득해야	-	9.4	15.6	46.9	28.1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결과를 일반 결혼이민자의 의견과 비교해 보면, 일반 결혼이민자는 각 항목별로 50~65%의 수준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여,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본국의 언어 및 문화를 가족원들이 습득하

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조사 결과, 결혼해체 이민자에게서 본국의 출신국 문화를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7〉 결혼생활 1년 7개월 만에 이혼한 23세 베트남출신 결혼이민자로 남편과 시누이가 베트남의 옷차림을 이해 못하고 너무 야하다고 나무랐으며 의상을 시누가 시킨 대로 입어야 했다고 하였다.

〈사례8〉 결혼생활 4년 9개월 만에 이혼한 39세 결혼이민자로 빵이 먹고 싶은데 (전 배우자는) 빵과 매운 김치만 먹게 했으며 시어머니가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신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밖으로 나갔다 온 적이 있었다. 본국인 카자흐스탄라는 풍습이 달라 많이 놀랐다고 하였다.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있어서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화합’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안정’(23.5%), ‘가족건강’(20.6%)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였을 때 결혼해체 이민자가 가족화합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5〉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가족 화합	14	41.2
경제적 안정	8	23.5
가족 건강	7	20.6
가족 성공	1	2.9
질서와 권위	2	5.9
기타	2	5.9
계	34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다. 자녀가치관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자녀는 있는 것이 좋다’(‘꼭 있어야 함’과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는 견해가 대다수(각 57.1%,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꼭 있어야 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적었다.

〈표 6-36〉 결혼해체 이민자의 반드시 자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꼭 있어야 함	20	57.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12	34.3
없어도 상관없음	3	8.6
계	35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를 질문한 결과, 1~2명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이상자녀수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7〉 결혼해체 이민자의 이상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자녀를 희망하지 않음	-	-
1~2명	32	91.4
3~5명	3	8.6
6명 이상	-	-
계	35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성별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남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으며, ‘여아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4.7%이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은 일반 결혼이민자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8〉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의 성별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남자아이	9	26.5
여자아이	5	14.7
상관없음	20	58.8
계	34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남자아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남아선호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문을 잇기 위해’라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원해서’, ‘심리적 만족을 위해’가 각각 1명씩을 차지했다.

〈표 6-39〉 결혼해체 이민자의 남자아이 선호에 대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가문을 잇기 위해	4	44.4
노후생활을 위해	-	-
배우자가 원해서	1	11.1
심리적 만족 위해	1	11.1
기타	3	33.3
계	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가치관을 살펴보면 자식과 부모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과 자녀의 진로결정 및 결혼상대 결정 시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비율(34.4%)도 높게 나타나 결혼해체 이민자는 자녀의 의사결정 및 존재에 있어서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된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의견과 비교해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임'과 '자식의 결혼상대는 자식 스스로 결정'의 항목에서 결혼해체이민자가 더욱 독립적인 자녀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자식과 부모의 삶은 별개'와 '자식의 진로는 자식 스스로 결정'의 항목에 있어서는 결혼해체 이민자 보다 일반 결혼이민자가 더욱 독립적인 자녀가치관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6-40〉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녀가치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임	9.4	25.0	25.0	28.1	12.5	100.0(32)
자식과 부모의 삶은 별개	3.1	12.5	18.8	50.0	15.6	100.0(32)
자식의 진로는 자식 스 스로 결정	6.1	15.2	21.2	42.4	15.2	100.0(33)
자식의 결혼상대는 자식 스스로 결정	6.1	15.2	6.1	57.6	15.2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자식양육한계에 대해서는 '대학교 졸업까지'가 35.5%로 가장 높았으나, '언제라도'라는 응답도 29.0%나 되었으며, '취업이전', '혼인할 때까지'라는 응답도 각각 5명, 4명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결혼해체 이민자는 '대학교졸업까지'와 '취업이전', 그리고 '언제라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 결혼해체 이민자의 자식양육 한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고등학교 졸업	2	6.5
대학교 졸업	9	29.0
취업 이전	5	16.1
혼인할 때까지	4	12.9
언제라도	9	29.0
기타	1	3.2
모르겠음	1	3.2
계	31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라. 사회적 가치관 및 인식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한국인의 외국인배려수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친절한 편’(약간 친절한 편’과 ‘상당히 친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70.6%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에 대한 응답률(82.0%) 보다는 낮은 것으로 일반 결혼이민자 보다는 결혼해체 이민자가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배려수준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42〉 결혼해체 이민자가 본 한국인의 외국인 배려수준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배려하지 않음	3	8.8
약간 친절한 편	12	35.3
상당히 친절한 편	12	35.3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	7	20.6
계	34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체 이민자는 한국인배우자의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좋지 않게 인식되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9〉 43세 별거중인 결혼이민자로 한국사람들, 특히 시댁식구와 이웃들은 자신이 중국사람이라고 하니, 중국여자는 남편과 잘 살려고 결혼하였는데도 색안경을 끼고, 도망가거나 돈 벌러 가려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사례10〉 결혼생활 1개월 만에 별거중인 41세 결혼이민자로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한을 잘 내며 성격이 급하고 ‘빠띠빠띠’를 외쳤으며 자신의 행동이 느리다며 당당하다고 소리쳐 힘든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결혼해체 이민자에게서 한국인이 외국인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차별하지 않는다’(‘별로 차별하지 않음’과 ‘전혀 차별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표 6-43 참조). 그리고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도 ‘차별하지 않는다’가 86.7%로 높게 나타났다(표 6-44 참조).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높은 응답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결혼해체 이민자에게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6-43〉 결혼해체 이민자의 한국인의 외국인차별 경험

구분	빈도	(단위: %, 명)
		비율
매우 차별	4	11.8
대체로 차별	8	23.5
별로 차별하지 않음	17	50.0
전혀 차별하지 않음	5	14.7
계	34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표 6-44〉 결혼해체 이민자의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자녀차별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차별	1	6.7
대체로 차별	1	6.7
별로 차별하지 않음	10	66.7
전혀 차별하지 않음	3	20.0
계	15	100.0

주: 본 항목은 자녀를 학교 및 보육시설에 보낸 경험이 있는 외국인 15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또한 외국인이라서 특별우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특별우대 경험이 있다’(‘많음’과 ‘종종 있음’)는 응답이 78.1%로 ‘없다’는 응답의 약 4배에 해당하였다. 이는 일반 결혼이민자의 ‘특별우대 경험’ 비율(63.9%)보다 높은 것으로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특별우대경험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5〉 결혼해체 이민자의 특별우대 경험 비교

구분	빈도	비율
특별우대 경험 많음	9	28.1
종종 있음	16	50.0
거의 없음	4	12.5
전혀 없음	3	9.4
계	32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본인과 자녀의 국가정체성을 질문한 결과, 본인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응답률과 결혼이민자 본국국민이라는 응답률은 같았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정체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한국인배우자와 같은 민족이

라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녀에 대해서도 81.3%가 (전)한국인배우자와 같은 민족이라고 느낀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6-46〉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가 및 민족 정체성

(단위: %, 명)

구분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본국 국민	양국 모두	계(名)	같은 민족	다른 민족	양측 모두	계(名)
결혼이민자								
본인	27.3	27.3	45.5	100.0(33)	41.9	29.0	29.0	100.0(31)
자녀	87.9	3.0	9.1	100.0(33)	81.3	6.3	12.5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이러한 결과를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결혼해체 이민자가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본인과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47〉 결혼해체 이민자의 친구가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취할 태도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강력 반대	-	-
반대	3	8.1
그저 그렇다	14	37.8
찬성	13	35.1
매우 찬성	7	18.9
계	3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절친한 친구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는 경우 찬성(‘찬성’과 ‘매우 찬성’)이 54.0%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7.8%, 그리고 ‘반대’가 8.1%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의 찬성의견이 44.7%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결혼해체 이민자의 찬성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62.96점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에 비해서 1.6~3.1점이 낮았다.

결혼해체 이민자가 생각하는 각 영역 및 세부지표별 가족기능수행도의 평균점수는 <표 6-48>에 제시되고 있다. 전체 7개 영역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가족기능수행도를 보였다. 즉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10.56점, 지표평균은 3.520점으로 7개 영역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신체적 부양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10.11점이었고, 지표평균은 3.370점이었다. 사회보장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9.96점으로 지표평균은 3.32점이었고, 정서적 부양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9.64점, 지표평균은 3.213점이었다. 또한 경제적 기능 영역은 10점 만점에 6.39점이고 지표평균은 3.195점이었고, 경제적 부양기능 영역은 15점 만점에 9.04점으로 지표평균은 3.013점이었다. 그리고 여가휴식기능 영역은 20점 만점에 10.41점이었고, 지표평균은 2.602점으로 7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신체적부양기능, 사회보장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으나 정서적부양기능, 경제적 기능, 경제적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등은 수행도가 낮았다.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다문화가족은 7개 영역 중에서 경제적 부양기능, 정서적 부양기능, 신체적 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등 4개 영역에서 해체 다문화가족보다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으며, 나머지 3개 영역은 낮았다. 반대로 해체 다문화가족은 7개 영역 중에서 경제적 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사회보장기능 등 3개 영역에서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았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가족은 일반 다문화가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양기능, 정서적 부양기능, 신체적 부양기능 그리고 여가휴식기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약화된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48〉 결혼해체 이민자가 생각하는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 수행도

(단위: 점, 명)				
영역	지표	기능수행도	영역	
			영역 합계(만점)	영역별 지표 평균
경제적 기능	양질의 노동력	3.13	6.39	3.195
	균형적 소비	3.26	(10)	
경제적 부양기능	의생활 제공	2.69	9.04 (15)	3.013
	식생활 해결	3.20		
	주거생활 적절	3.15		
정서적 부양기능	가족간 대화소통	3.26	9.64 (15)	3.213
	가족일 관심 많음	3.19		
	개인문제 공동해결	3.19		
신체적 부양기능	신체적보호 적절	3.49	10.11 (15)	3.370
	적절한 의료보장	3.45		
	불편한 가족 돌봄	3.17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교육의 적절한 배분	3.58	10.56 (15)	3.520
	부모꿈 대리성취	3.71		
	사회화 교육실시	3.27		
여가휴식기능	가족외식	2.69	10.41 (20)	2.602
	가족운동	2.54		
	집안가꿈	2.47		
	재충전됨	2.71		
사회보장기능	이웃을 도움	3.36	9.96 (15)	3.32
	친·인척 도움	3.49		
	경조사 분담	3.11		
계(100점환산)		66.11(62.96)		
(분석대상수)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임.

제3절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가치관 및 가족기능수행도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간에 혼인, 가족, 자녀양육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가치경향을 비교한 결과 여러 영역에 걸쳐서 양측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는 부부갈등 혹은 가족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경험은 40~50% 수준으로 나타나서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을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족함을 말해준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인과 동등한 차원에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의사결정, 외출, 정보습득, 국적취득 등과 관련하여 상위권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이민자의 인권존중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불평등한 부부관계는 결혼생활에서 결혼이민자의 소외를 비롯하여 부부폭력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결혼해체 이민자는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소극적이었으며, 사회에서 차별 또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체 이민자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그 가치관 및 인식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 및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가치관은 대체로 출신국별로 특성이 두드러진 점을 볼 때에 개인적인 차이와 함께 출신국별 차이를 존중

하려는 노력이 가족, 이웃, 사회, 학교 등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100점 만점에 64.56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경제적 기능, 경제적 부양기능 그리고 여가휴식기능은 수행도가 낮아서 이들 영역의 가족기능수행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기능수행도는 지역, 국적 및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도시지역보다 낮았으며, 영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출신의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가 71.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63.74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역별로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기능, 경제적 부양기능, 신체적 부양기능, 사회보장기능 수행도가 낮았다. 한편, 대체로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가족기능수행도가 높은 편이었고, 오래된 경우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으며, 영역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지역, 출신국가 및 결혼기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62.96점으로 일반 다문화가족보다 낮았으며, 특히 정서적부양기능, 경제적기능, 경제적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등은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해체 다문화가족은 가족기능수행도가 낮아서 사회적 지원이 없을 경우 가족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말해준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여가휴식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7 장 다문화가족 유형별 복지욕구

제 1 절 다문화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

1. 다문화가족의 복지실태 및 만족도

가.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19.0~79.5% 사이의 범위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이용수준을 보였다. 특히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53.1~79.5%로 과반수이상의 이용비율을 보였으나,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은 이용비율이 각각 21.8%, 19.0%로 저조하였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이민자의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7개종에 참여한 비율은 7.2~23.3%이었고,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서비스 이용실태는 18.2~23.3%,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의 이용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본 조사를 위한 표집대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동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컴퓨터·정보화교육 등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0~80.7%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은 동 비율이 각각 45.5%, 48.5%로 낮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

(2006)와 비교하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55.6%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결과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이 5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훈련 순으로 동 비율은 21.4~31.6% 범위이었고, 가족관계상담, 가정폭력상담은 각각 8.6%, 2.9%로 상당히 저조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와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등이 높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는 가정폭력상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표 7-1〉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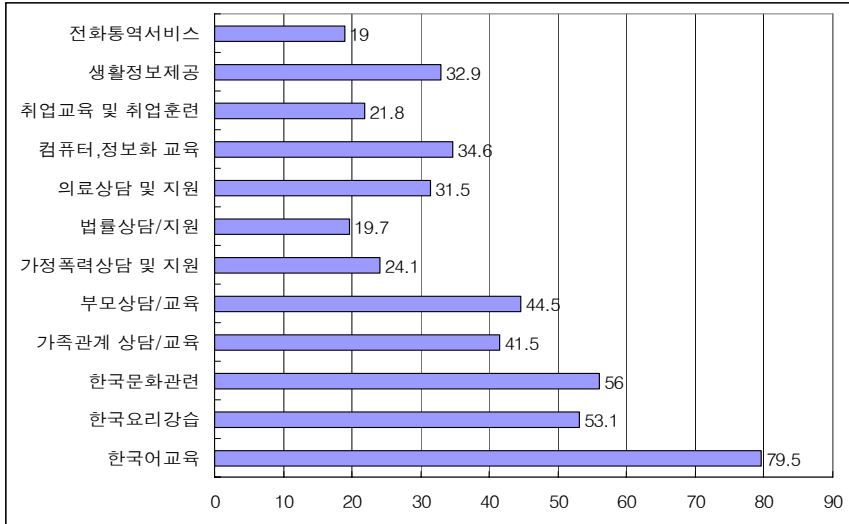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이용여부		도움정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그저 그럼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한국어교육	20.5	79.5	0.8	2.7	15.7	31.1	49.6
한국요리강습	46.9	53.1	2.5	3.0	27.5	33.5	33.5
한국문화관련	44.0	56.0	3.0	3.0	27.5	37.4	29.0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58.5	41.5	2.1	3.5	34.9	29.6	29.9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55.5	44.5	0.6	1.6	24.3	34.6	38.8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75.9	24.1	5.8	5.4	40.3	20.9	24.6
법률상담 및 지원	80.3	19.7	7.5	4.5	39.6	20.1	28.4
의료상담 및 지원	68.5	31.5	2.7	3.2	31.1	26.1	36.9
컴퓨터·정보화 교육	65.4	34.6	1.3	1.8	30.0	34.4	32.6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78.2	21.8	4.0	5.4	30.9	26.8	32.9
생활정보제공	67.1	32.9	2.8	3.3	35.4	31.3	27.2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 제공	81.0	19.0	6.5	4.8	26.6	29.0	3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7-1]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도시지역은 19.7~79.9% 범위이었고, 농·어촌은 16.9~79.4% 범위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높지 않은 이용수준을 보였다.

지역 및 서비스프로그램별로 이용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은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52.1~79.9%로 과반수이상의 이용비율을 보였으나,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의 이용비율은 19.7~23.8% 범위로 저조하였다. 농·어촌지역도 도시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타 프로그램보다 높아서 55.7~79.4% 범위를 보였고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으로 16.9~28.9% 범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서비스프로그램의 이용실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동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도시지역은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 관련,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 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0~81.5%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생활정보제공 등은 동 비율이 47.3~58.1%로 낮았다. 농·어촌은 도시지역과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 관련,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컴퓨터·정보화 교육 등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3~79.5%로 높았다. 반면,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은 동 비율이 45.9~59.3%로 낮았다. 대체로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도시지역은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이었고, 농·어촌지역은 의료상담 및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7-2〉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도움 받은 비율
(단위: %)

구분	이용률			도움 받은 비율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한국어교육	79.5	79.9	79.4	80.7	81.5	79.5
한국요리강습	53.1	52.1	55.7	67.0	65.0	70.7
한국문화관련	56.0	55.1	57.6	66.4	66.1	68.0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41.5	42.8	39.0	59.5	58.1	64.0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44.5	46.1	41.0	73.4	71.0	78.2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24.1	23.8	24.6	45.5	47.3	45.9
법률상담 및 지원	19.7	20.8	17.3	48.5	50.0	47.7
의료상담 및 지원	31.5	32.4	28.9	63.0	67.1	56.9
컴퓨터·정보화 교육	34.6	36.6	30.9	67.0	70.5	60.3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21.8	20.5	22.1	59.7	64.0	56.6
생활정보제공	32.9	33.3	30.4	58.5	58.1	59.3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19.0	19.7	16.9	62.1	65.0	57.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기간별로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높은 이용률을 보인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관련, 한국요리강습으로 이용비율은 52.7~87.1% 범위이었다.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한국요리 강습, 한국문화 관련 순으로, 4년 이상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관련,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외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인 프로그램은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을, 2~4년 미만은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과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을, 그리고 4년 이상은 한국요리 강습,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이었다.

이외 결혼기간과 관련 없이 비슷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인 프로그램은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등이었다. 이와 같이 결혼기간

별로 서비스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차이를 보인 것은 결혼이민자의 복지욕구가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은 결혼기간별로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표 7-3〉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한국어교육	79.5	87.1	79.6	81.4	69.6
한국요리강습	53.1	52.7	55.8	58.3	47.6
한국문화관련	56.0	57.4	54.7	61.0	51.4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41.5	40.3	42.2	53.0	35.1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44.5	36.2	42.2	59.0	50.2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24.1	26.3	25.5	27.2	16.0
법률상담 및 지원	19.7	20.5	17.5	26.4	16.1
의료상담 및 지원	31.5	33.3	29.0	35.3	28.2
컴퓨터·정보화 교육	34.6	34.3	34.9	31.4	34.1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21.8	20.9	17.9	28.8	21.1
생활정보제공	32.9	29.4	34.4	40.5	27.5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19.0	19.6	20.6	27.6	1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8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9.8~27.2% 사이의 범위로 상당히 낮은 이용수준을 보였다.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생활정보제공,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19.2~27.2%로 약 5분의 1 이상의 이용비율을 보였으며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은 이용비율이 15.7%로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고려할 때 저조하였다.

동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의료상담

및 지원,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컴퓨터·정보화교육, 생활정보제공,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77.5%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은 동 비율이 각각 58.9%, 55.0%로 낮았다.

〈표 7-4〉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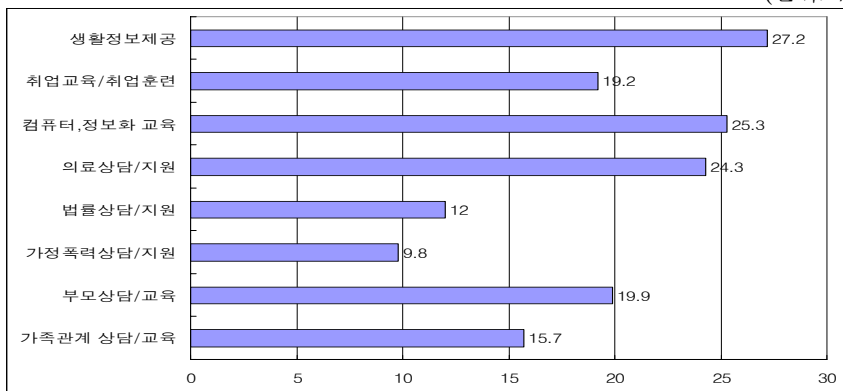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이용여부		도움정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그저 그럼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84.3	15.7	3.1	4.1	22.7	46.4	23.7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80.1	19.9	0.8	2.3	19.4	34.9	42.6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90.2	9.8	5.8	4.3	34.8	36.2	18.8
법률상담 및 지원	88.0	12.0	3.5	9.4	25.9	36.5	24.7
의료상담 및 지원	75.7	24.3	2.5	5.0	22.4	41.6	28.6
컴퓨터·정보화 교육	74.7	25.3	2.5	5.0	23.0	41.6	28.0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80.8	19.2	6.5	7.3	27.4	33.1	25.8
생활정보제공	72.8	27.2	2.8	7.9	21.9	38.8	2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7-2]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8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도시지역은 9.1~26.4% 범위이었고, 농·어촌은 10.7~30.5% 범위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이용수준을 보였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비교하면 동 비율은 도시지역은 20.5~46.1%, 농·어촌은 17.3~41.0%로 도시지역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결혼이민자가 6.6~10.5%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한국인배우자의 서비스 이용수준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결혼이민자보다 낮았으며 그 차이는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컸다.

지역 및 서비스별 이용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은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생활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21.5~26.4%로 타 서비스에 비해서 높은 반면,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은 각각 9.1%, 11.0%로 타 서비스에 비해서 낮았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 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타 서비스보다 높아서 21.1~30.5%의 범위를 보였고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는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등으로 도시지역과 동일하였다. 이들 서비스는 가정폭력 및 이혼 등 가족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타 서비스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타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서비스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두 지역 모두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이외에 농·어촌은 법

를상담 및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낮았다.

〈표 7-5〉 지역별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도움 받은 비율
(단위: %)

구분	이용률			도움 받은 비율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79.5	15.0	16.9	70.1	70.7	66.7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53.1	21.5	17.7	77.5	75.6	84.6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56.0	9.1	10.7	55.0	54.1	56.7
법률상담 및 지원	41.5	11.0	13.2	61.2	64.4	54.1
의료상담 및 지원	44.5	22.4	27.3	70.2	74.4	65.7
컴퓨터·정보화 교육	24.1	22.0	30.5	69.6	67.5	70.1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19.7	17.6	21.1	58.9	63.1	52.7
생활정보제공	31.5	26.4	27.9	67.5	67.6	6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기간별로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8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는 대체로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며,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등은 결혼기간에 관련 없이 비슷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욕구도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여서 한국인배우자를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은 결혼시기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7-6〉 결혼기간별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전체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79.5	14.5	15.7	15.5	16.3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53.1	10.0	20.3	28.2	24.7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56.0	4.7	11.8	8.6	11.4
법률상담 및 지원	41.5	7.2	13.2	13.2	13.2
의료상담 및 지원	44.5	22.3	24.8	21.9	26.0
컴퓨터·정보화 교육	24.1	21.0	24.0	26.9	29.0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19.7	15.5	18.1	19.2	21.8
생활정보제공	31.5	24.0	29.3	30.1	2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62.8%로 높은 편이었으나 ‘빈곤층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가해자의 접근금지조치’, ‘보건소의 임신·출산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정보제공’, ‘노동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한 인지도는 34.4~54.7%로 낮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는 20.6~52.1%로 2008년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의 인지도는 3.1~25.3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서비스 및 제도별로는 ‘보건소의 임신·출산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아졌고, 다음은 ‘여성긴급전화(1366)’,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정보제공’,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 순이었다. 그러나 ‘빈곤층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노동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 알선’에 대한 인지도는 타 서비스 및 제도에 비해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에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33.9~63.2%범위이었고, 전체와 농·어촌에 비해서 ‘빈곤층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 ‘여성긴급전화(1366)’, ‘가해자의 접근금지조치’, ‘노동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보건소의 임신·출산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정보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반면 농·어촌의 동 인지도는 31.1~60.6%로 도시지역에 비해 낮았으며, ‘보건소의 임신·출산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정보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높았으나 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접근성 또는 혜택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홍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나 선행적으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표 7-7〉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분석대상수)
정부가 빈곤층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54.7	55.8	51.2	(955)
정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빈곤층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62.8	63.2	60.6	(958)
여성긴급전화(1366번)에서 가정폭력 등 위급 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한다	52.0	51.7	51.3	(947)
경찰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조치를 내린다	44.4	46.9	39.2	(943)
보건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59.5	57.9	60.6	(955)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34.4	33.9	34.3	(942)
노동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	34.6	36.0	31.1	(9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기간별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빈곤층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41.1~75.4%,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43.0~87.5%로 결혼기간별로 편차가 컸다. 다음으로는 ‘보건소의 임신·출산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정보제공’, ‘노동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한 인지도도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여성긴급전화(1366)’, ‘가해자의 접근금지조치’ 등에 대한 인지도는 결혼기간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결혼초기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는 결혼시기별로 복지욕구의 차이에서 오는 점도 있겠으나 홍보의 부족에서도 기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생활정보제공, 취업과 관련해서는 결혼시기와 관련 없이 인지도가 낮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결혼초기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7-8〉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분석 대상수)
정부가 빈곤층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54.7	41.1	44.7	62.3	75.4	(955)
정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빈곤층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62.8	43.0	55.5	72.2	87.5	(958)
여성긴급전화(1366번)에서 가정폭력 등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한다	52.0	47.9	50.6	56.6	56.5	(947)
경찰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조치를 내린다	44.4	37.9	42.3	46.9	53.6	(943)
보건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59.5	51.1	49.0	62.1	77.8	(955)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34.4	22.8	28.8	36.5	47.3	(942)
노동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	34.6	24.6	26.4	38.1	49.6	(9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실태

다문화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신청한 비율은 25.1%이었고 이 중에서 혜택을 받은 비율은 70.2%로 신청자의 3분의 2가 해당되었다. 의료보호제도를 신청한 비율은 44.2%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결과 혜택을 받은 비율은 89.5%로 신청자의 다수가 제도권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신청 및 혜택여부

구분	(단위: %, 명)					
	신청여부			혜택여부		
	신청	미신청	계(수)	혜택 받음	혜택받지 못함	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25.1	74.9	100.0(818)	70.2	29.8	100.0(744)
의료보호	44.2	55.8	100.0(805)	89.5	10.35	100.0(2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로 제도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과반수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의료보호제도는 동 비율이 63.3%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표 7-10〉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도움정도

구분	(단위: %, 명)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그저 그럼	대체로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5.7	2.9	34.3	24.3	32.9	100.0(70)
의료보호	2.5	3.8	30.4	22.2	41.1	100.0(1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84.4%로 높은 가입률을 보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33.8%로 저조하였으며, 고용보험은 23.1%, 산재보험은 22.8%로 가입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4대 보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건강보험이 5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산재보험(50.0%), 국민연금(49.2%), 고용보험(47.7%)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다문화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 및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가입여부		도움정도					계(수)
	가입	비가입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그저 그렇	대체로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건강보험	84.4	15.6	1.1	4.1	29.2	30.9	27.2	100.0(537)
국민연금	33.8	66.2	5.4	8.9	36.5	18.2	31.0	100.0(203)
고용보험	23.1	76.9	5.3	10.6	36.4	23.5	24.2	100.0(132)
산재보험	22.8	77.2	4.5	8.3	37.1	22.0	28.0	100.0(1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2.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가. 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향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34.7~63.9% 사이의 범위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특히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 이용의향은 34.7~44.7%로 이용률에 비하여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8개종의 서

비스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이용의향은 결혼이민자가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충분한 지식과 인지도가 떨어지는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되어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지역별로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도시지역은 36.8~66.1% 범위이었고, 농·어촌은 31.4~60.7% 범위로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다소 높았다. 서비스 프로그램별로는 도시지역은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의 이용의향은 36.8~55.8% 범위로 이용률에 비하여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농·어촌지역은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 7개종의 서비스가 이용률 보다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으나 도시지역보다는 낮았다.

결혼기간별로 결혼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를 위해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향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결혼기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과 2~4년 미만인 경우 이용률 보다 높은 이용의향을 보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을 제외한 총 11개종으로 동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각각 34.6~60.1%, 35.5~58.0% 범위이었다. 또한 결혼기간이 4~6년 미만과 6년 이상인 경우 이용률 보다 높은 이용의향을 보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 6개종으로 동 서비스의 이용의향은 각각 32.9~45.1%, 30.2~35.8% 범위이었다. 전반적으로 결혼기간이 4년 미만에 해당

되는 결혼이민자가 결혼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보다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다.

〈표 7-1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복지서비스의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한국어교육	63.9	66.1	60.7	75.8	71.4	66.2	42.0
한국요리강습	51.8	55.8	44.6	57.5	58.0	60.6	35.5
한국문화관련	53.2	56.6	47.2	60.1	57.5	60.9	38.1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44.7	48.0	38.1	49.1	50.8	52.9	32.7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43.3	45.8	39.1	47.5	50.3	48.6	31.1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34.7	36.8	31.4	34.6	35.5	32.9	35.8
법률상담 및 지원	35.5	38.4	32.5	36.9	37.2	37.3	33.5
의료상담 및 지원	41.2	43.6	37.2	42.0	49.2	44.4	31.5
컴퓨터·정보화 교육	42.0	44.8	38.6	49.4	46.4	40.0	32.0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38.8	42.1	34.1	42.6	41.9	45.1	30.7
생활정보제공	38.1	39.5	35.9	40.1	43.1	37.7	30.2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36.7	39.3	32.3	36.7	39.7	34.5	34.6
기타	-	-	-	-	-	-	-
(분석대상수)	(693)	(430)	(263)	(199)	(199)	(84)	(1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음은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8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향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34.3~58.8% 사이의 범위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특히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이용의향은 44.3~58.8%로 이용률에 비하여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6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인배우자는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서비스의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제공이 필요함

을 말해준다.

지역별로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8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도시지역은 37.6~62.4%, 농·어촌은 30.5~56.2% 범위로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 이용의향이 이용률보다 높았으며 이용의향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다.

결혼기간별로 한국인배우자의 복지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8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향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결혼기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과 2~4년 미만인 경우 높은 이용의향을 보인 서비스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법률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컴퓨터·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등 6개종으로 동 서비스의 이용의향은 각각 54.2~66.4%, 47.3~57.4% 범위이었다. 또한 결혼기간이 4~6년 미만과 6년 이상인 경우 높은 이용의향을 보인 서비스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총 8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으로 동 서비스의 이용의향은 각각 32.2~67.2%, 23.9~49.6% 범위이었다. 전반적으로 결혼기간이 4년 이상에 해당되는 한국인배우자가 결혼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보다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결혼이민자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결혼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결혼생활을 한 경우에 복지욕구가 높음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의 특성상 결혼초기보다는 결혼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후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을 조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7-13〉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복지서비스의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48.4	51.0	45.6	54.5	48.7	53.2	39.3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53.5	58.1	47.9	59.6	53.5	60.7	44.1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34.3	37.6	30.5	45.2	36.4	32.2	23.9
법률상담 및 지원	44.3	45.3	41.6	54.2	47.3	47.5	32.2
의료상담 및 지원	53.5	55.4	51.3	63.7	56.1	50.9	45.1
컴퓨터·정보화 교육	56.2	55.6	56.2	64.1	55.9	60.7	47.8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50.4	54.2	45.1	59.4	48.6	53.6	42.2
생활정보제공	58.8	62.4	53.3	66.4	57.4	67.2	49.6
(분석대상수)	(410)	(239)	(171)	(112)	(115)	(62)	(1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한국어교육이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이 11.6%로 높았으며, 또한 10% 미만이나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도를 보였다.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5.5%), 한국 요리강습(4.1%) 등도 희망하였다. 2순위는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이 1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이 13.2%, 일자리알선이 13.1%, 한국요리강습이 10.8%이었다.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관련, 컴퓨터·정보화교육은 10% 미만의 필요도를 보였다. 설동훈 외의 연구(2006)와 비교하면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3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교육 훈련(15.2%), 정보화교육(13.9%), 한국요리강습(12.5%), 한국문화(7.0%), 법률상담(4.2%), 의료상담(3.6%), 가족관계 상담(2.3%)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필요도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두 연구 간에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표 7-14〉 결혼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순위

구분	(단위: 명, %)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어교육	580	54.5	57	5.8
한국요리강습	44	4.1	107	10.8
한국문화관련	31	2.9	56	5.7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31	2.9	41	4.2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77	7.2	130	13.2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4	0.4	13	1.3
법률상담 및 지원	12	1.1	18	1.8
의료상담 및 지원	12	1.1	30	3.0
컴퓨터·정보화 교육	32	3.0	55	5.6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59	5.5	95	9.6
일자리 알선	36	3.4	129	13.1
생활정보제공	12	1.1	42	4.3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123	11.6	193	19.6
공공부조서비스 제공	6	0.6	8	0.8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2	0.2	9	0.9
기타	2	0.2	4	0.4
계	1,063	100.0	987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도시의 경우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농·어촌의 경우 한국요리강습에 대한 필요도가 도시보다 2배 이상이었다. 이외 농·어촌의 필요도가 도시보다 높은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컴퓨터 정보화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등이었다. 이 중 한국어교육은 필요도가 가장 높아 57.2%나 되었으며, 나머지 서비스는 10%미만이였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기간별로는 서비스의 필요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3.4%로 결혼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서비스는 5%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필요도

가 59.8%이었고, 다음은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10.7%로 높았다. 또한 4~6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필요도는 한국어교육,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등 자녀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시기로 나타났다. 10% 미만이나 한국요리강습,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필요도가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결혼이민자의 욕구도 결혼 4~6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혼주기별로 서비스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1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한국어교육	54.5	53.4	57.2	73.4	59.8	44.9	31.3
한국요리강습	4.1	3.0	6.3	2.9	2.8	7.9	6.0
한국문화관련	2.9	2.9	2.8	2.2	3.2	3.1	3.2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2.9	2.6	3.5	1.9	2.8	3.9	3.6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7.2	8.6	5.1	4.2	5.0	11.8	10.7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0.4	0.3	0.5	-	1.4	-	-
법률상담 및 지원	1.1	1.3	0.8	1.0	1.1	0.8	1.6
의료상담 및 지원	1.1	0.8	1.5	0.3	1.1	0.8	2.8
컴퓨터·정보화 교육	3.0	2.7	3.3	1.9	3.6	1.6	3.6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5.5	5.7	5.6	3.2	4.6	5.5	7.9
일자리 알선	3.4	3.3	3.3	2.6	2.5	2.4	4.8
생활정보제공	1.1	1.4	0.8	0.6	0.7	-	2.4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11.6	12.6	8.9	4.8	10.7	16.5	20.6
공공부조서비스 제공	0.6	0.8	0.3	0.3	0.4	0.8	1.2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0.2	0.2	0.3	0.3	-	-	0.4
기타	0.2	0.3	-	0.3	0.4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63)	(627)	(395)	(312)	(281)	(127)	(252)
χ^2		20.647		145.966***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1순위는 외국어교육이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이 22.1%로 높았고,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도 12.6%이었다. 또한 10% 미만이나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도 필요도를 보였다. 2순위는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이 2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이 11.8%이었다. 이외 10% 미만이나 일자리 알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컴퓨터·정보화 교육, 의료상담 및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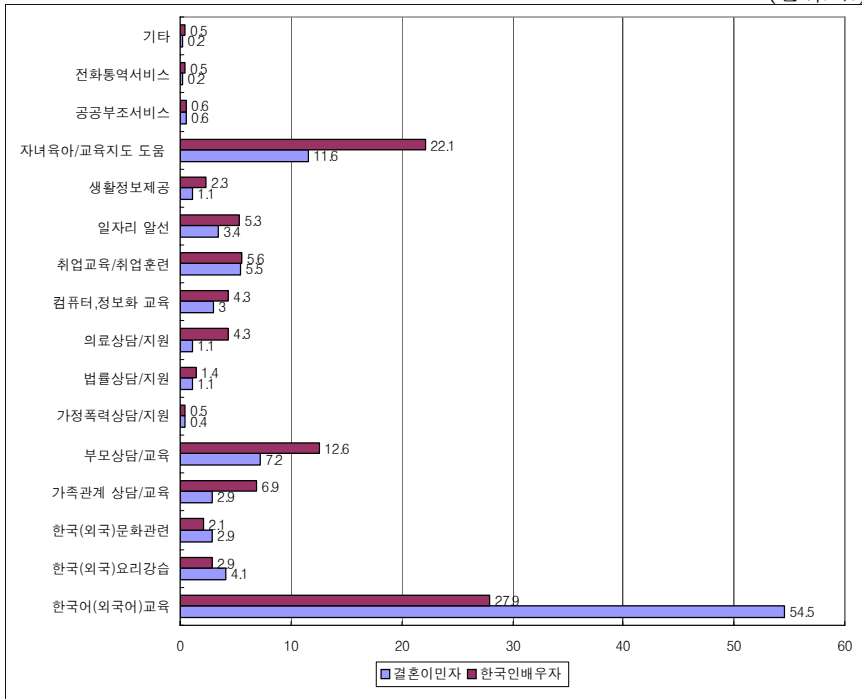
〈표 7-16〉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외국어교육	258	27.9	43	5.0
외국요리강습	27	2.9	41	4.8
외국문화관련	19	2.1	35	4.1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64	6.9	60	7.0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117	12.6	101	11.8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5	0.5	5	0.6
법률상담 및 지원	13	1.4	9	1.0
의료상담 및 지원	40	4.3	52	6.1
컴퓨터·정보화 교육	40	4.3	55	6.4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52	5.6	69	8.0
일자리 알선	49	5.3	78	9.1
생활정보제공	21	2.3	61	7.1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205	22.1	215	25.1
공공부조서비스 제공	6	0.6	11	1.3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5	0.5	18	2.1
기타	5	0.5	5	0.6
계	926	100.0	85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그림 7-3]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n=1,063), 한국인배우자(n=9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기간별로는 서비스의 필요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외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4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을 16.4%가 응답하였다. 또한 10% 미만이나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의료상담 및 지원 등도 희망하였다.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는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25.4%이었고, 다음

은 외국어교육,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일자리 알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등의 욕구도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4~6년 미만인 한국인배우자의 욕구는 2~4년 미만인 한국인배우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도 비슷한 필요도를 보였으며 이외에 컴퓨터·정보화 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따라서 한국인배우자도 결혼주기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17〉 한국인배우자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외국어교육	27.9	29.4	26.7	43.4	22.6	17.8	19.7
외국요리강습	2.9	2.8	3.1	3.3	2.4	2.5	3.9
외국문화관련	2.1	1.7	2.5	1.8	1.2	2.5	2.6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6.9	6.4	7.5	6.9	8.3	8.5	5.2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12.6	11.9	13.4	7.3	11.9	16.9	17.2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0.5	0.2	0.8	0.4	-	1.7	0.9
법률상담 및 지원	1.4	1.1	1.9	0.7	2.0	-	2.1
의료상담 및 지원	4.3	3.6	4.7	6.2	3.6	3.4	2.6
컴퓨터·정보화 교육	4.3	4.0	5.0	1.5	3.6	5.9	7.3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5.6	6.0	5.3	4.4	5.6	5.9	6.0
일자리 알선	5.3	4.3	6.4	3.3	7.5	4.2	6.0
생활정보제공	2.3	1.9	2.5	1.8	3.2	1.7	2.1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22.1	24.7	18.7	16.4	25.4	28.0	24.0
공공부조서비스 제공	0.6	0.8	0.6	0.4	1.6	0.8	-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0.5	0.4	0.6	1.1	0.4	-	0.4
기타	0.5	0.8	0.3	1.1	0.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26)	(530)	(359)	(274)	(252)	(118)	(233)
χ^2		13.269		102.405***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을 응답한 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15.7%),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13.1%),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12.2%)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결혼이민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불평등하고 비인권적인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은 농·어촌 보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보육시설,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반면, 농·어촌은 도시보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이 높았고 이외에 10% 미만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통편, 가정방문식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결혼기간이 4년 미만까지는 공통적으로 보육시설,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단계별 교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비용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또한 4~6년 미만인 경우는 보육시설,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단계별 교육서비스 제공 외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도가 높았다.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었고 다음은 보육시설, 비용제공, 단계별 교육서비스 제공, 가정방문식 교육제공,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은 결혼기간별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18〉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15.7	14.0	18.9	17.8	18.5	14.5	10.4
교통편	5.0	3.3	7.7	6.9	5.8	5.1	2.1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6.9	7.2	6.6	7.2	5.8	6.0	8.7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12.2	12.8	10.7	10.5	8.1	11.1	19.5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보육시설	21.2	23.3	18.4	19.6	27.7	23.9	17.0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	13.1	14.5	11.2	13.0	13.1	16.2	11.2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2.5	1.7	3.8	3.6	2.7	0.9	1.7
학습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 방문식 교육 서비스 제공	6.6	5.8	6.8	4.0	3.8	8.5	10.8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1.7	1.6	1.6	1.1	1.5	4.3	1.2
통역서비스 제공	4.2	4.9	3.6	5.8	3.1	3.4	2.5
비용 제공	9.4	9.3	9.6	9.1	8.5	3.4	14.1
기타	1.5	1.7	1.1	1.4	1.5	2.6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63)	(572)	(365)	(276)	(260)	(117)	(241)
χ^2		22.803*		77.121***			

주: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제공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이 17.0%이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15.8%, 가정방문식 교육서비스 제공 10.4%,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10.1%, 비용제공 9.4% 순으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한국인배우자의 서비스 필요도는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를 보인다.

〈표 7-19〉 한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52	5.8
교통편	36	4.0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90	10.1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141	15.8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	152	17.0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	169	18.9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20	2.2
학습지도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방문식 교육 서비스 제공	93	10.4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19	2.1
통역서비스 제공	19	2.1
비용 제공	84	9.4
기타	19	2.1
계	894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교육·훈련서비스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는 1순위는 한글교육, 통역 등의 언어훈련이 5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교육(11.2%), 직업교육·취업훈련(9%), 육아상식(8.1%) 등의 순으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다. 2순위는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이 2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업교육·취업훈련(19.7%), 육아상식(14.0%), 생활기능(12.9%),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교육(7.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설동훈 외의 연구결과(2006), 희망하는 교육·훈련서비스는 언어훈련, 직업교육·취업훈련, 생활기능, 자녀학습 지원방법 노하우, 육아상식, 건강위생상식, 의료간호기능, 체류·영주 관련 법률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표 7-20〉 결혼이민자의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순위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어훈련(한글교육, 통역)	595	56.6	54	5.8
건강·위생상식	28	2.7	48	5.1
육아상식	85	8.1	131	14.0
의료·간호기능	19	1.8	38	4.0
직업교육·취업훈련	95	9.0	185	19.7
생활기능(요리, 미용)	43	4.1	121	12.9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	31	2.9	66	7.0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방지 관련법규 설명	9	0.9	17	1.8
체류·영주·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리법 교육	16	1.5	49	5.2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118	11.2	220	23.4
기타	11	1.0	10	1.1
계	1,050	100.0	939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시지역은 언어훈련이 5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육아상식, 직업교육·취업훈련 등의 순이었다. 농·어촌지역도 언어훈련이 59.5%로 가장 높았고, 직업교육·취업훈련,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육아상식 등이었다.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 육아상식,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농·어촌은 도시지역 보다 언어훈련, 직업교육·취업훈련 등이 높았다.

결혼기간별로 결혼이민자의 교육·훈련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언어훈련이 7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육아상식이 7.2%이었다. 2~4년 미만은 언어훈련이 5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업교육·취업훈련, 육아상식,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등의 순으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다. 결혼

기간이 4~6년 미만은 언어훈련, 육아상식, 직업교육·취업훈련,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생활기능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6년 이상은 언어훈련,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직업교육·취업훈련, 육아상식 등의 순으로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았다.

결혼초기보다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결혼기간별로 변화하는 가족주기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언어훈련서비스의 필요도는 결혼초기에 높았고,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서비스는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데서 잘 보여준다.

〈표 7-2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언어훈련(한글교육, 통역)	56.6	55.5	59.5	71.9	59.8	45.6	42.1
건강·위생상식	2.7	2.7	2.9	1.6	3.3	5.6	2.0
육아상식	8.1	9.5	6.2	7.2	9.8	12.8	5.1
의료·간호기능	1.8	1.1	2.9	1.3	0.7	1.6	3.9
직업교육·취업훈련	9.0	8.5	9.4	4.2	10.1	11.2	11.0
생활기능(요리, 미용)	4.1	3.9	4.4	3.9	2.5	7.2	4.3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	2.9	2.6	3.4	1.6	4.0	4.0	3.1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방지 관련법 규 설명	0.9	1.0	0.8	0.3	1.8	0.8	0.8
체류·영주·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리 법 교육	1.5	1.1	1.6	2.3	1.1	-	1.2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11.2	12.7	8.6	4.9	6.2	11.2	24.0
기타	1.0	1.4	0.5	0.7	0.7	-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08)	(623)	(385)	(306)	(276)	(125)	(254)
χ^2		14.533		133.104***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편 한국인배우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는 1순위는 언어훈련이 4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교육(14.6%), 직업교육·취업훈련(14.1%), 육아상식(9.5%) 등의 순으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다. 2순위는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이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육아상식(13.1%), 직업교육·취업훈련(12.4%), 생활기능(12.2%), 건강·위생상식(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7-22〉 한국인배우자의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어훈련(한글교육, 통역)	368	41.1	57	7.0
건강·위생상식	62	6.9	83	10.2
육아상식	85	9.5	106	13.1
의료·간호기능	19	2.1	42	5.2
직업교육·취업훈련	126	14.1	101	12.4
생활기능(요리, 미용)	28	3.1	99	12.2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	20	2.2	41	5.0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방지 관련법규 설명	5	0.6	18	2.2
체류·영주·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리법 교육	42	4.7	41	5.0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131	14.6	213	26.2
기타	9	1.0	11	1.4
계	895	100.0	812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다. 보건·의료서비스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는 1순위는 국민건강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도움이 2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아건강검사 제공(18.8%),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17.1%), 건강검진서비스 제공(15.9%) 등의 순으로 높았다. 2순위는 건강검진서비스제공이 2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아건강검사 제공(21.1%), 국민건강보험료 대납(11.4%) 등이 높았다. 또한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9.9%), 출산전·후 지도(8.5%)에 대한 필요도도 나타났다. 설동훈 외의 연구결과(2006), 결혼이민자가 희망하는 의료·건강서비스는 유아건강검사 제공,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육아지식 제공, 진료 시 의사소통 도움, 전염병·질병 예방지식, 산전산후 지도, 피임방법 소개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치료시 의사소통 도움, 유아건강검사 제공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7-23〉 결혼이민자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순위

구분	(단위: 명, %)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215	21.6	42	4.8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170	17.1	87	9.9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80	8.0	59	6.7
출산전·후 지도	80	8.0	74	8.5
피임방법 소개	44	4.4	47	5.4
유아건강검사 제공	187	18.8	185	21.1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158	15.9	253	28.9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44	4.4	100	11.4
기타	17	1.7	28	3.2
계	995	100.0	875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시지역은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이 2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아건강검사 제공,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출산 전·후 지도 순으로 높았다.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이 23.0%로 가장 높았고,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유아건강

검사 제공, 출산전·후 지도,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등이었다. 정리하면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 유아건강검사 제공, 피임방법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농·어촌은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출산전·후지도,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다.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것은 농·어촌의 경우 서비스프로그램의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혼기간별로 결혼이민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유아건강검사 제공 순으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이외에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출산전·후 지도,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등도 높았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24〉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21.6	21.0	23.0	24.8	19.8	22.2	17.8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17.1	17.1	17.9	19.7	15.3	15.4	16.9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8.0	7.9	8.1	9.5	6.5	9.4	7.2
출산전·후 지도	8.0	7.0	9.8	11.6	8.0	8.5	5.1
피임방법 소개	4.4	5.3	3.3	3.7	4.2	6.8	3.4
유아건강검사 제공	18.8	20.5	16.3	17.3	28.6	21.4	8.5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15.9	14.9	16.5	9.5	12.6	10.3	29.7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4.4	4.6	3.8	3.1	3.8	4.3	7.6
기타	1.7	1.7	1.4	0.7	1.1	1.7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Σ)	(995)	(585)	(369)	(294)	(262)	(117)	(236)
χ^2		7.847		98.872***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한국인배우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는 1순위는 유아건강감사제공이 2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피임방법 소개(17.1%),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13.7%),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13.6%), 기타(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2순위 또한 유아건강감사 제공이 2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18.8%), 피임방법 소개(15.7%), 건강검진서비스 제공(12.0%),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9.0%) 등이 높았다.

〈표 7-25〉 한국인배우자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순위

구분	(단위: 명, %)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123	12.1	15	1.5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139	13.7	68	6.7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138	13.6	91	9.0
출산전·후 지도	11	1.1	24	2.4
피임방법 소개	173	17.1	158	15.7
유아건강감사 제공	216	21.3	299	29.7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57	5.6	121	12.0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19	1.9	42	4.2
기타	138	13.6	190	18.8
계	1,014	100.0	1,00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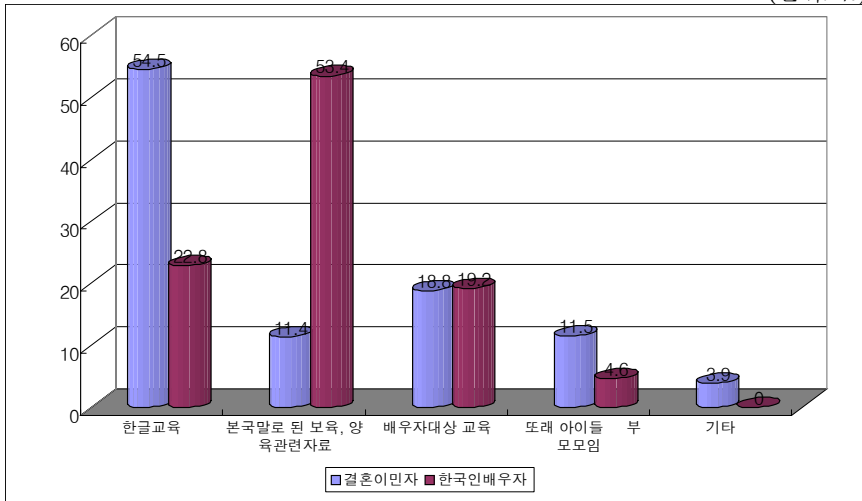
라. 자녀양육 및 노인돌봄 부담의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이 5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대상의 교육이 18.8%,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같은 또래 아이들의 부모 모임 11.5%,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관련 자료 11.4% 등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 관련 자료는 5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글교육은 22.8%, 배우자

대상의 교육은 19.2%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4]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 977명, 한국인배우자 84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 배우자 대상의 교육, 또래 아이들의 부모모임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반면 농·어촌은 도시지역 보다 한글교육,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 관련 자료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기간이 6년 미만까지는 공통적으로 한국교육, 배우자 대상 교육,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 관련 자료 등의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또한 2~4년 미만인 경우는 또래 아이들의 부모모임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는 한글교육, 배우자 대상교육, 또래 아이들의 부모모임 등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결혼기간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26〉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이 필요함	54.5	53.5	56.1	57.1	60.6	49.6	47.7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관련 자료가 필요함	11.4	10.2	12.8	12.5	11.5	15.4	6.8
배우자가 나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대상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음	18.8	20.8	16.8	17.9	15.2	22.8	23.0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같은 또래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 있으면 좋겠음	11.5	11.4	10.6	9.5	11.5	8.9	14.9
기타	3.9	4.1	3.6	2.9	1.1	3.3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77)	(581)	(358)	(273)	(269)	(123)	(235)
χ^2		3.868		35.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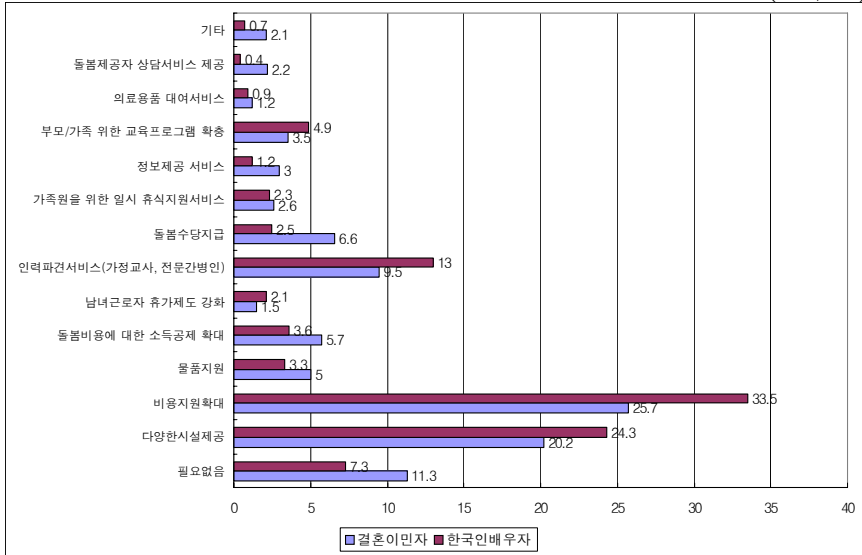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은 비용지원확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다양한 시설제공이 20.2%로 높았으며, 인력 파견서비스, 돌봄 수당지급, 돌봄비용 대한 소득공제 확대, 물품지원 등에 대하여도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였다. 한편 한국인배우자도 비용지원확대(33.5%), 다양한 시설제공(24.3%)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으며 인력파견서비스도 1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7-5]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 비교

(단위: %)



주: 결혼이민자 807명, 한국인배우자 76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가장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 다양한 시설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반면 농·어촌은 도시지역 보다 비용지원확대, 인력파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결혼기간별로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은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비용지원 확대, 다양한 시설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10% 미만이나 인력파견서비스도 필요로 하였다. 2~4년 미만인 경우는 비용지원 확대, 남녀근로자 휴가제도 강화, 다양한 시설제공 등의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결혼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는 공통적으로 비용지원확대, 다양한 시설제공, 인력파견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따라서

노인돌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서비스는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7-2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필요없음	11.3	11.5	11.3	10.4	15.1	14.3	5.3
다양한 시설제공	20.2	20.5	20.0	23.1	20.3	12.4	21.8
비용지원 확대	25.7	25.6	25.7	24.0	24.1	21.0	34.0
물품지원	5.0	4.6	4.7	6.8	4.2	6.7	2.9
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5.7	6.9	3.0	6.3	7.1	4.8	1.9
남녀근로자 휴가제도 강화	1.5	1.0	2.3	0.5	23.4	2.9	1.0
인력과견서비스(가정교사, 전문 간병인)	9.5	8.8	10.7	9.0	6.6	13.3	11.7
돌봄수당 지급	6.6	6.1	7.3	5.4	7.5	7.6	6.3
가족원을 위한 일시 휴식지원서비스	2.6	2.9	2.0	1.8	2.4	2.9	3.4
정보제공 서비스	3.0	2.5	4.0	2.7	3.3	4.8	2.4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3.5	4.4	2.3	3.2	1.9	6.7	2.9
의료용품 대여서비스	1.2	1.0	1.3	1.8	1.4	1.0	1.0
돌봄제공자 상담서비스 제공	2.2	1.9	3.0	2.7	1.4	1.0	2.9
기타	2.1	2.1	2.3	2.3	2.4	1.0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07)	(477)	(300)	(221)	(212)	(105)	(206)
χ^2		13.635		52.7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마. 인식개선 및 가정폭력정책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외국인 가족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사업을 응답한 비율이 31.7%이었고, 다음은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사업 31.4%, 외국인가족 차별 법·제도 개선 20.1%, 캠페인 등 홍보·계몽사업 13.6%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한편 한국인배우자는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사업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외국

인 가족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 32.0%, 외국인 가족 차별 법·제도 개선 17.8%, 캠페인 등 홍보·계몽사업이 14.0% 순으로 높았다.

〈표 7-28〉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구분	(단위: %, 명)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캠페인 등 홍보·계몽사업	13.6	14.0
외국인가족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	31.7	32.0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사업	31.4	33.3
외국인 가족 차별 법·제도 개선	20.1	17.8
기타	3.2	2.9
계(수)	100.0(963)	100.0(9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보면 체류기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년 미만인 경우는 외국인 가족 차별의 사회문화개선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년 이상인 경우는 다문화 시민교육의 확산사업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국 국적별로는 중국(한국동포), 베트남, 일본, 태국, 기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가족 차별의 사회문화개선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중국, 필리핀, 몽골출신의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사업을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29〉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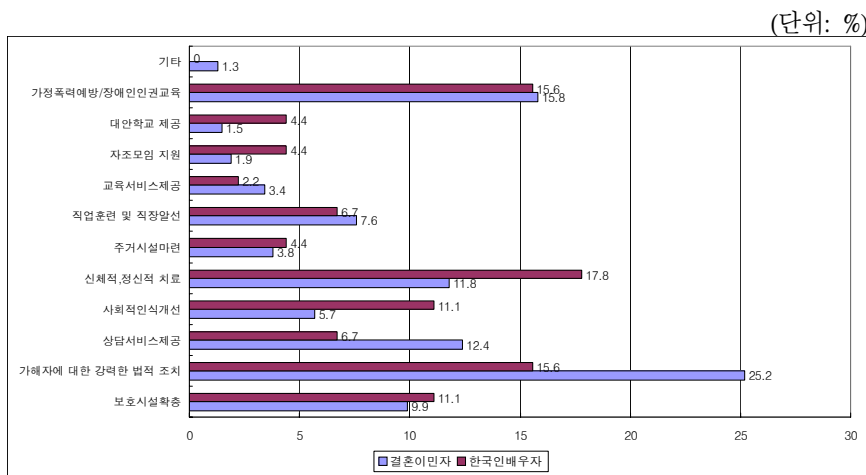
구분	캠페인 등 홍보·계몽 사업	외국인 가족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	다문화 시민교육의 확산사업	외국인가 족 차별 법·제도 개선	기타	계(수)	χ^2
체류기간							
2년 미만	13.4	31.9	30.4	20.7	3.6	100.0(276)	22.855*
2~4년 미만	12.4	28.1	28.9	28.1	2.5	100.0(242)	
4~6년 미만	11.6	31.8	38.8	17.1	0.8	100.0(129)	
6년 이상	16.1	34.1	32.2	13.8	3.8	100.0(261)	
국적							
중국	10.7	29.2	39.3	16.9	3.9	100.0(178)	58.085**
중국(한국동포)	16.9	29.2	27.0	24.7	2.2	100.0(89)	
베트남	12.5	34.0	23.4	27.0	3.1	100.0(256)	
필리핀	14.3	27.9	37.4	18.4	2.0	100.0(147)	
일본	15.4	33.6	30.8	18.2	2.1	100.0(143)	
태국	9.2	47.7	29.2	9.2	4.6	100.0(65)	
몽골	16.7	11.1	42.6	20.4	9.3	100.0(54)	
기타	23.3	43.3	23.3	10.0	-	100.0(30)	
전체	13.6	31.7	31.4	20.1	3.2	100.0(963)	

주: * $p < .05$,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사후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응답한 비율이 2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15.8%), 상담서비스 제공(12.4%),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11.8%), 보호시설확충(9.9%) 순으로 높았다. 반면 한국인배우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가 1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15.6%,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 15.6%, 보호시설확충 11.1%, 사회적인식개선 11.1%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그림 7-6]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정책



주: 분석대상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결혼이민자 476명, 한국인배우자 45명이 해당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사후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도시지역은 농·어촌보다 보호시설확충,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에 대한 서비스, 교육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반면 농·어촌은 도시지역 보다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결혼기간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정책은 공통적으로 보호시설확충,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상담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 교육 등의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다. 특히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타 결혼기간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 2~4년 미만은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의 필요도가 높았다. 결혼기간이 4~6년 미

만은 보호시설확충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6년 이상인 경우는 타 결혼 기간에 비해 상담서비스 제공,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정책은 결혼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7-3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 정책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결혼기간			
		도시	농·어촌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보호시설 확충	9.9	11.4	9.9	11.3	8.9	12.2	12.0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25.2	24.5	22.7	27.0	24.8	25.2	21.1
상담서비스 제공	12.4	9.8	13.6	7.3	8.5	13.0	19.0
사회적 인식개선	5.7	3.9	6.5	2.9	8.1	4.3	3.7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11.8	10.3	10.5	7.3	8.9	11.3	14.5
주거시설마련	3.8	4.6	4.0	4.4	4.7	5.2	2.1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7.6	7.4	6.8	10.6	9.3	5.2	1.7
교육서비스 제공	3.4	5.1	4.2	7.3	1.9	3.5	5.8
자조모임 지원	1.9	2.1	2.3	2.9	1.9	1.7	2.1
대안학교 제공	1.5	1.8	1.1	1.8	2.3	1.7	0.8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	15.8	16.6	17.3	15.3	19.4	13.9	14.9
기타	1.3	2.6	1.1	1.8	1.2	2.6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6)	(571)	(353)	(274)	(258)	(115)	(242)
χ^2		10.297		72.589***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제2절 해체 다문화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

1. 해체 다문화가족의 복지실태 및 만족도

가.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결혼해체 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이민자를 위해 지원하는 12개종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17.2~90.6% 범위의 이용수준을 보였다. 특히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는 62.1~90.6%로 과반수 이상의 이용비율을 보였으나 의료상담 및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은 17.2~27.6%로 저조하였다. 전반적으로 결혼해체 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는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서비스 이용실태는 일반 결혼이민자보다 3.3%포인트 낮았다.

동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보면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등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7~87.0%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은 16.7~25.0%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동 서비스의 도움정도는 결혼해체 이민자가 높은 편이었으나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생활정보제공,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움정도는 일반 결혼이민자가 2.5~3.5배 높았다.

〈표 7-31〉 결혼해체 이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단위: %)

구분	이용여부		도움정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그저 그럼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한국어교육	9.4	90.6	-	-	13.0	43.5	43.5
한국요리강습	37.9	62.1	-	6.7	20.0	40.0	33.3
한국문화관련	35.5	64.5	-	6.3	31.3	12.5	50.0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30.8	69.2	7.1	7.1	28.6	14.3	42.9
자녀를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55.2	44.8	-	-	36.4	36.4	27.3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56.7	43.3	-	9.1	18.2	18.2	54.5
법률상담 및 지원	57.1	42.9	-	10.0	30.0	40.0	20.0
의료상담 및 지원	72.4	27.6	-	12.5	12.5	37.5	37.5
컴퓨터·정보화 교육	57.1	42.9	-	-	41.7	33.3	25.0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81.5	18.5	-	50.0	25.30	-	25.0
생활정보제공	75.0	25.0	-	16.7	66.7	16.7	-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 제공	82.8	17.2	25.0	25.0	25.0	-	2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나.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실태

결혼해체 이민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신청한 비율은 40.9% 이었고 이중에서 혜택을 받은 비율은 66.7%로 신청자의 3분의 2가 해당되었다. 의료보호제도를 신청한 비율은 54.2%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보다 많았으며 그 결과 혜택을 받은 비율은 66.7%로 신청자의 과반수이상 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었다.

〈표 7-32〉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신청 및 혜택여부

(단위: %, 명)

구분	신청여부			혜택여부		
	신청	미신청	계(수)	혜택받음	혜택받지 못함	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40.9	59.1	100.0(22)	1 66.7	33.3	100.0(6)
의료보호	54.2	45.8	100.0(24)	66.7	33.3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가 국적미취득자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 해당되어도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는 가족해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우 빈곤가족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의미하고 가족의 빈곤화는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미래세대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례 1〉 34세의 국적미취득자로 현재 남편과 이혼 중이다. 자녀 두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단순노무자로 월평균 5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해체 이민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6%로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의료보호제도는 동 비율이 20.0%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표 7-33〉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그저 그럼	대체로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33.3	-	33.3	33.3	100.0(3)
의료보호	-	20.0	60.0	-	20.0	100.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가 국적취득자이거나 한국인배우자와 사별하여도 배우자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의료보호혜택을 받았으며,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은 다수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례 2〉 남편과 별거 중으로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료보호 등을 받고 있어 생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서 걱정스럽다.

〈사례 3〉 46세의 항법체류자로 현재 남편과 사별하고 시댁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단순노무일을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간 도움이 되고 있다.

〈사례 4〉 남편과 사별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34세의 국적취득자로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로 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의료보호혜택은 받지 않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례 5〉 만 40세의 국적취득자로 대도시에 거주하며 남편과 이혼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류비는 주로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으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

2. 해체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가.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필요지원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1순위는 한국어교육이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등에 필요도를 보였다. 2순위는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일자리 알선을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4%이었고 한국요리 강습은 16.7%가 응답하였다. 결혼해체 이민자와 일반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필요도를 비교하면 1순위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2순위에서는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우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그리고 일자리 알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표 7-34〉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어교육	21	58.3	1	2.8
한국요리강습	1	2.8	6	16.7
한국문화 관련	-	-	3	8.3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3	8.3	2	5.6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3	8.3	2	5.6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	-	2	5.6
의료상담 및 지원	1	2.8	-	-
컴퓨터·정보화 교육	2	5.6	1	2.8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	-	7	19.4
일자리 알선	1	2.8	7	19.4
생활정보제공	1	2.8	2	5.6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3	8.3	2	5.6
기타-	-	-	1	2.8
계	36	100.0	36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 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양육서비스, 일자리제공, 주택안정을 위한 서비스, 생계비 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사례 6〉 남편과 별거 중으로 아들 두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과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

〈사례 7〉 남편과 이혼 중으로 자녀 두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이 해체된 후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사례 8〉 49세로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남편과 사별을 한 후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안정지원이다.

〈사례 9〉 46세의 형법체류자로 현재 남편과 사별하고 시댁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단순 노무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사례 10〉 만 40세의 국적취득자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가정이 해체된 후 필요한 도움은 주택안정지원, 생계비 지원, 자녀양육시설제공, 일자리 알선 등으로 생각한다.

결혼해체 이민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방문 시 교육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18.1%), 비용제공(15.2%) 등의 순이었다. 또한 배우자·가족의 허

락·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을 응답한 비율은 각 12.1%로 높은 편이었다. 동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결혼해체 이민자는 가정 방문식 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표 7-35〉 결혼해체 이민자의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4	12.1
교통편	1	3.0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3	9.1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4	12.1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	6	18.1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	4	12.1
학습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방문식 교육 서비스 제공	6	18.2
비용 제공	5	15.2
계	33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가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은 취업활동과 가정방문식 교육서비스 제공, 자녀를 돌봐줄 보육시설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교통편이 필요하였으며, 언어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사례 11〉 49세이며 남편과 사별 했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은 학습지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가정방문식 교육이다.

〈사례 12〉 남편과 사별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34세의 국적취득자로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로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은 교통편이다.

〈사례 13〉 딸 34세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남편과 사별한 후 현재 전업주부로 자녀 두 명과 살고 있으며 서비스가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사례 14〉 딸 28세의 행법체류자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역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사례 15〉 딸 32세의 국적취득자로 농·어촌에 거주하며 현재 남편과 별거중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파트타임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나. 교육·훈련서비스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의 1순위는 한글교육, 통역 등의 언어훈련이 5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업교육·취업훈련(10.8%), 건강·위생상식(8.1%), 생활기능(8.1%)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2순위는 육아상식, 직업교육·취업훈련,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등을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1%이었고,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은 11.4%가 희망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반 결혼이민자는 자녀학습 지원방법, 육아상식, 생활기능 등 다양한 교육·훈련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데 반해 결혼해체 이민자는 직업교육·취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표 7-36〉 결혼해체 이민자의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 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언어훈련(한글교육, 통역)	22	59.5	2	5.7
건강·위생상식	3	8.1	1	2.9
육아상식	1	2.7	6	17.1
의료·간호기능	1	2.7	1	2.9
직업교육·취업훈련	4	10.8	6	17.1
생활기능(요리, 미용)	3	8.1	3	8.6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	-	-	4	11.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방지 관련법규	1	2.7	3	8.6
설명				
체류·영주·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리법	-	-	3	8.6
교육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1	2.7	6	17.1
기타	1	2.7	-	-
계	37	100.0	35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서비스는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취업교육,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언어훈련,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교육방법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사례 16〉 만 34세의 국적미취득자로 현재 남편과 이혼 중이며 자녀 두명과 함께 살고 있다. 단순노무자로 월평균 5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생계보장이 되는 직장을 갖고 싶다. 그래서 취업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를 원한다.

〈사례 17〉 만 31세의 합법체류자로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며 자녀 두명과 함께 살고 있는 데 자녀 등과 언어소통이 힘들어서 언어훈련이 가장 필요하다.

〈사례 18〉 만 23세의 합법체류자로 남편과 별거 중이며 임신 3개월로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살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은 한글교육, 자녀교육방법 등이 필요하다.

다. 보건·의료서비스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는 1순위는 국민건강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도움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이 19.4%,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16.1% 순이었다. 또한 출산전·후 지도와 건강검진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9.7%이었다. 2순위는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이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아건강검사 제공이 17.9%, 출산전·후지도 14.3%,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10.7%,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10.7%, 국민건강보험료 대납이 10.7%이었다.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해체 다문화가족은 국민건강보험료 대납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표 7-37〉 결혼해체 이민자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8	25.8	3	10.7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6	19.4	1	3.6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2	6.5	3	10.7
출산전·후 지도	3	9.7	4	14.3
피임방법 소개	2	6.5	-	-
유아건강검사 제공	2	6.5	5	17.9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3	9.7	9	32.1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5	16.1	3	10.7
계	31	100.0	2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사례조사와 같이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검진서비스였고,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치료시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사례 19〉 34세이며 현재 남편과 이혼 중으로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희망하는 의료서비스는 건강검진서비스이다.

〈사례 20〉 46세로 불법체류자이고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며 희망하는 의료서비스는 치료시의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라. 자녀양육 및 노인돌봄 부담의 지원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으로 응답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대상의 교육이 18.8%,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 관련 자료는 1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7-38〉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장 필요한 자녀양육지원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이 필요함	17	53.1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관련자료가 필요함	5	15.6
배우자가 나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대상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음	6	18.8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 있으면 좋겠음	2	6.3
기타	2	6.3
계	32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필요한 노인돌봄부담 경감 정책은 비용지원확대가 2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다양한 시설제공 25.0%, 돌봄수당지급 14.3%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인력파견서비스도 7.1%가 지원을 희망하였다. 노인돌봄부담 경감 정책은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는 공통적으로 비용지원확대, 다양한 시설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며 이외에 일반 결혼이민자는 인력파견서비스를, 결혼해체 이민자는 돌봄수당지급을 희망하였다.

〈표 7-39〉 결혼해체 이민자의 필요한 노인돌봄 부담 경감 정책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필요 없음	3	10.7
다양한 시설제공	7	25.0
비용지원확대	8	28.6
물품지원	2	7.1
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남녀근로자 휴가제도 강화	-	-
인력파견서비스(가정교사, 전문간병인)	2	7.1
돌봄수당 지급	4	14.3
가족원을 위한 일시 휴식지원서비스	-	-
정보제공 서비스	-	-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	-
의료용품 대여서비스	-	-
돌봄제공자 상담서비스 제공	-	-
기타	2	7.1
계	2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마. 인식개선 및 가정폭력정책

결혼해체 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외국인가족차별의 법·제도 개선을 응답한 비율이 30.3%이었고, 다음은 외국인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 27.3%,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사업 24.2%, 캠페인 등 홍보·계몽사업 15.2% 순으로 높았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외국인가족 차별의 사회문화개선,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사업 등을 지적한 반면 결혼해체 이민자는 외국인가족 차별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표 7-40〉 결혼해체 이민자의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

구분	(단위: 명, %)	
	빈도	비율
캠페인 등 홍보·계몽사업	5	15.2
외국인가족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	9	27.3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사업	8	24.2
외국인 가족 차별 법·제도 개선	10	30.3
기타	1	3.0
계	33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응답한 필요한 사후정책은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가 30.0%로 가장 높았고, 상담서비스 제공은 20.0%이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사회적인식개선,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자조모임 지원,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일반 결혼이민자와 결혼해체 이민자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일반 결혼이민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법적조치,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 등 예방측면의 정책을 응답한 데 반해 결혼해체 이민자는 피해자 중심의 치료, 상담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7-41〉 결혼해체 이민자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정책¹⁾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1	10.0
상담서비스제공	2	20.0
사회적인식개선	1	10.0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3	30.0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1	10.0
자조모임 지원	1	10.0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인권교육	1	10.0
계	10	100.0

주: 1) 가정폭력을 경한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임.

제3절 다문화가족유형별 복지욕구의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 및 복지욕구의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사회보장수혜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의 가입률은 33.3%로 저조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미가입도 15.6%나 되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23.1%, 22.8%로 저조하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의 낮은 취업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의 수혜도 44.2%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족은 노후소득보장과 질병치료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소득 및 자산에 의하여 결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생활실태를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측면도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의 저조한 복지수준은 빈곤가족으로의 노출이 예상되므로 빈곤예방 측면에서 소득보장적 측면의 정책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복지

욕구는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는 높은 편임에도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서비스 이용실태는 저조하였고 서비스의 효용성에 있어서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이질적인 언어 및 문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갈등이 잠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률은 저조하여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족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정책개발도 중요하나 선행적으로 정책 및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는 결혼주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다문화가족경우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데 반해, 결혼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 외에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또한 결혼기간이 4년 이상된 다문화가족은 한국어교육부터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책은 결혼주기별로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 8 장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1절 응답자 특성

전문가조사는 다문화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자 및 교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의 업무담당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담당 공무원 등 총 96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의 정책적 패러다임, 현행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문가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가의 거주지역은 도시가 78.1%로 농촌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자 70.8%, 남자 29.2%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40대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7.1%, 20대 24.0%, 50대 이상 11.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민간기관 업무담당자가 60.4%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과 학자는 각각 19.8%, 18.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전문가의 다문화관련 업무 혹은 연구기간은 2년 미만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2~5년 미만이 31.3%이었고 5년 이상은 16.7%이었다.

〈표 8-1〉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특성	빈도	(단위: %, 명)
		비율
지역		
도시	75	78.1
농촌	21	21.9
성		
남자	28	29.2
여자	68	70.8
연령		
20~29세	23	24.0
30~39세	26	27.1
40~49세	36	37.5
50대 이상	11	11.4
전문가유형		
학자	18	18.8
민간기관 업무담당자	58	60.4
공무원	19	19.8
기타	1	1.0
다문화관련 업무/연구기간 ¹⁾		
2년 미만	50	55.0
2~5년	36	39.6
5년 이상	5	5.5
계	96	100.0

주: 1) 무응답 5명 제외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제2절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정책적 패러다임

2008년 9월부터 실시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2조)”로 이루어진 가족과 “귀화허가를 받은 자(국적법 제4조)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2조)”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찬성(40.0%)보다는 반대(60.0%) 의견이 더 많았다.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학자에게서 83.3%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관 담당자의 61.4%도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36.8%만이 반대하여 학자 및 민간기관 담당자와는 차이를 보였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2〉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명)

구분	찬성	반대	계(수)	χ^2
전체	40.0	60.0	100.0(95)	
학자	16.7	83.3	100.0(18)	
민간기관 담당자	38.6	61.4	100.0(57)	9.876*
공무원	63.2	36.8	100.0(19)	
기타	100.0	-	100.0(1)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으로 포함시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 현재 다문화가족의 범위인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86.0%) 과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71.9%) 외에도 외국인부부로 이루어진 가족도 체류신분이 합법적이라면 다문화가족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과 ‘합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은 각각 64.9%, 68.4%로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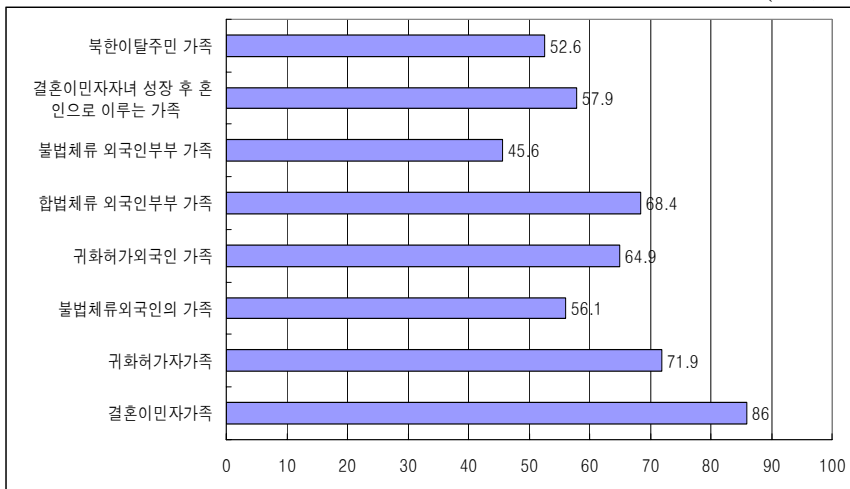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57.9%), 불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과 한국인배우자로 이루어진 가

족(56.1%)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52.6%)의 순서로 다문화가족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불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은 45.6%만이 포함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체류신분이 합법적일 경우 그리고 귀화허가자보다는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족의 대상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자녀(한국인)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도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8-1]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중복응답)

(단위: %)



주: 분석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 범위에 반대하는 경우로 전문가 57명이 해당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전문가의 특성별로 본 문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결혼이민자 가족(100.0%)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

루는 가족(93.3%), 그리고 귀화허가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8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이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민간기관담당자는 결혼이민자가족, 합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귀화허가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무원은 결혼이민자가족, 귀화허가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허가 받은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등의 순이었다.

〈표 8-3〉 전문가유형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의견(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1=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불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5=합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6=불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7=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 8=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1	2	3	4	5	6	7	8
전체	86.0	71.9	56.1	64.9	68.4	45.6	57.9	52.6
학자	100.0	86.7	66.7	73.3	80.0	53.3	93.3	60.0
민간기관 담당자	82.9	68.6	54.3	62.9	71.4	51.4	54.3	57.1
공무원	71.4	57.1	42.9	57.1	28.6	-	-	14.3
기타	-	-	-	-	-	-	-	-
(분석대상수)	(49)	(41)	(32)	(37)	(39)	(26)	(3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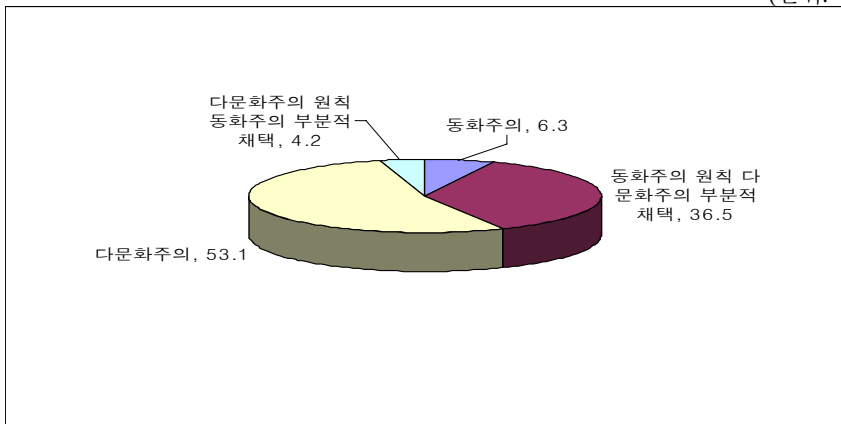
주: 본 문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 범위에 반대하는 57명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족법상에 표기된 다문화가족 이외에 전문가 유형별로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가 상이함을 보였으며, 학자집단이 가장 넓은 범위의 다문화가족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민간기관 담당자, 공무원의 순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기조가 어떠한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전문가들이 ‘다문화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53.1%)고 밝혔으며, ‘동화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문화주의를 부분적으로 채택한다’는 응답이 36.5%이었다.

[그림 8-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주: 전문가 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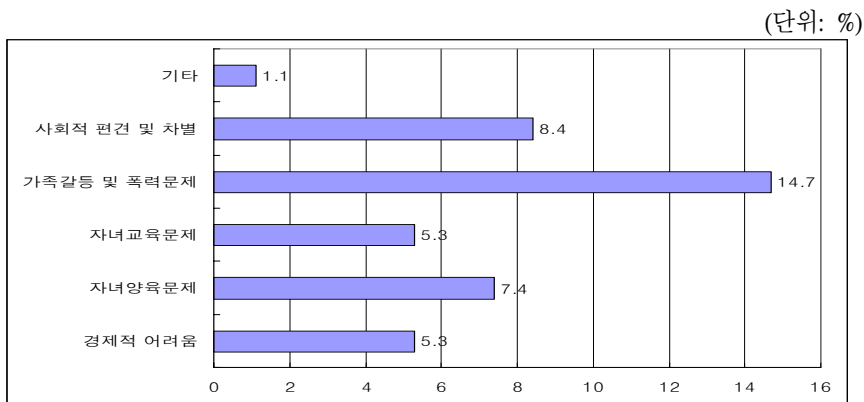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시점에서 본 문항의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3.1%가 찬성한 ‘다문화주의’의 형태와 구성요소 등은 앞으로 활발한 논의 및 연구활동을 통하

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방안도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본 절에서는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문제와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 문제’로 26.3%이라고 하였으며,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가 18.9%,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갈등 및 폭력문제’가 14.7%,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사회·문화적 소외문제’가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3] 다문화가족의 당면문제 중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주: 전문가 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전문가 유형별로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학자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문화적 소외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갈등 및 폭력문제’로 나타났다. 민간기관담당자는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혼이민자의 인권관련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여, 전문가 유형별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었다. 동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4〉 전문가유형별 다문화가족의 당면 문제 중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문가 유형			
	학자	민간기관 담당자	공무원	기타
국제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혼이민자의 인권관련 문제	16.7	26.3	-	-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문제	5.6	24.6	55.5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문화적 소외문제	27.8	8.8	11.1	-
결혼이민자의 건강문제	5.6	5.3	5.6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11.1	8.8	-	-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등 양육문제	-	5.3	11.1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문제	5.6	17.5	11.1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갈등 및 폭력문제	22.2	3.5	11.1	100.0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5.6	-	-	-
계(수)	100.0(18)	100.0(57)	100.0(19)	100.0(1)
χ^2	38.571*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이번에는 현재의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의 효과적 시행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7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67.5%)이었으며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보호’,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등의 순으로 사업 시행이 전혀 또는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8-5〉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의 효과적 시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음	보통	대체로 효과적인 편임	매우 효과적임	계(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40.6	38.5	18.8	2.1	-	100.0(96)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2.1	21.9	34.4	39.6	2.1	100.0(96)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2.1	9.5	24.2	47.4	16.8	100.0(96)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지원	4.3	26.6	38.3	26.6	4.3	100.0(96)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	14.6	37.5	32.3	12.5	3.1	100.0(96)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16.7	50.0	21.9	9.4	2.1	100.0(96)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13.5	40.6	22.9	19.8	3.1	100.0(96)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8.3	31.3	44.8	14.6	1.0	100.0(96)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방문교육사업)	8.3	16.7	24.0	32.3	18.8	100.0(96)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12.6	36.8	34.7	13.7	2.7	100.0(9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보호	8.3	39.6	29.2	19.8	3.1	100.0(96)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4.6	25.0	42.7	16.7	1.0	100.0(9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반면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지원’ 등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체류자격·시민권관련,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시키고 그 밖의 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대체’(33.0%)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단위 프로그램 제공’(26.6%)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전달인력보강 및 질적 수준제고’(18.1%)와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을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12.8%) 등 전달인력 및 전달체계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정책개선사항은 전문가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자의 경우, ‘체류자격·시민권관련,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시키고 그 밖의 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대체한다’가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었다. 민간기관 담당자는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28.1%)가 ‘체류자격·시민권관련,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시키고 그 밖의 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대체한다’(26.3%)라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으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서비스 전달인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의견도 21.1%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체류자격·시민권관련,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시키고 그 밖의 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대

체한다’(38.9%)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27.8%)이었다.

〈표 8-6〉 전문가유형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개선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단위: %, 명)

구분	학자	민간 기관 담당자	공무원	기타	전체
현재의 정책으로 충분하므로 개선될 필요가 없음	-	-	5.6	-	1.1
체류자격·시민권관련,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시키고 그 밖의 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편적복지서비스로 대체함.	50.0	26.3	38.9	-	33.0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함.	16.7	28.1	27.8	100.0	26.6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함.	11.1	5.3	11.1	-	7.4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11.1	17.5	-	-	12.8
서비스 전달인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함.	11.1	21.1	16.7	-	18.1
기타	-	1.8	-	-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	(57)	(18)	(1)	(94)
χ^2			16.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건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았던 의견은 ‘다문화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한 국민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정부, 민간기관과 지역사회 역할정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중복문제 해소’등의 순이

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었으나, ‘서비스 전달체계 조정’,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과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 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장기적 시각으로 다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입장을 대변하는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다문화가족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수행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7〉 전문가 건의사항

구분	(단위: %, 명)		
	건의 사항 1	건의 사항 2	건의 사항 3
정부, 민간기관과 지역사회 역할정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18.0	10.0	33.3
정착한 결혼이민자와 신규입국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2.0	-	-
서비스 전달체계 조정	6.0	25.0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기간 축소	4.0	-	33.3
다문화가족 자녀의 영유아교육	4.0	-	-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입장을 대변하는 의사소통채널 필요	2.0	5.0	-
다문화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한 국민인식개선	32.0	20.0	-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과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	6.0	5.0	-
다문화관련 사업이 지속적, 장기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함	4.0	-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및 부모와의 거주권이 보장되어야 함	2.0	5.0	-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지원제도 수립	6.0	20.0	33.3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중복문제 해소	14.0	10.0	-
계	100.0	100.0	100.0
(수)	(50)	(2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 결과임.

제4절 전문가조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자, 민간기관 담당자 및 공무원 등은 우선 현재 다문화가족법 상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으며,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넓혀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자녀(한국인)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 정치적 논의가 있는 후 결정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보다는 더 다양한 유형의 국제이주민과 그 가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주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정립의 방법이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보호’ 그리고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정부, 민간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중복 문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정비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 9 장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

제1절 다문화가족의 정책 방향

최근에 오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동수단의 발달 및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간에 인적이동이 대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소유한 다문화가족의 출현이 확대되었다.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가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국가 간에 정보교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리감이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시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결혼연령인구의 불균형, 여성의 고학력화 만혼화, 재혼 증가 등으로 결혼이민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주는 영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출산율을 증가시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는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 하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비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한다. 둘째,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셋째, 저출산시대에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문화 아동의 임신·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해체 다문화가족의 빈곤예방과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기능을 강화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가족구성원의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프라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열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방안의 실천은 단계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사회적응력 제고, 경제적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심리·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등을 포함하였고,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전·사후적 지원방안,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다문화가족 대상의 인프라 개선,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9-1 참조).

〈표 9-1〉 단기 및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구분		지원방안	세부 내용
단기 방안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사회적응력 제고 방안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방안	•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 제공 • 한국인배우자 및 가족대상의 언어교육서비스제공 •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안내 등 인지도 제고
		다문화가족대상의 다양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 포괄적인 정보서비스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의 정보화 증진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의 기본 생활보장	•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 비수급조건부 긴급지원제도 도입 • 빈곤가족 대상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IDA)제공
		다문화가족의 소득 보장 강화	•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강화 • 결혼이민자의 특성 고려한 직종개발 • 지역중심의 취업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가족부양 및 돌봄 부담 완화 방안	• 다양한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제공 • 부양자 및 돌봄자의 휴식 등 고용관련 지원프로그램 제공 •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양질의 산전·후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사제도 활용 결혼이민자와 신생아 종합관리 • 임신·출산관련 과정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확대	• 부모와 자녀단위의 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다문화가족의 양육비용 부담완화 방안 모색 •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사회 적응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 방안	다문화가족의 기본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2종의 적용대상 확대 • 국민건강보험료 대납제도 도입 • 다문화가정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률 제고
		다문화가족의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대 • 건강검진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적용 확대 • 결혼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통역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바람직한 가족관계상의 정립 및 홍보 계몽	• 부부관계상 정립프로그램 개발·보급 •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노부모-성인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의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의 강화	• 결혼초기에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
		사회적 지지 기반 조성	• 자조모임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 확대 • 시민단체 및 지원기관 활용 사회적 유대망 형성

〈표 9-1〉 계속

구분		지원방안	세부 내용
단기방안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전·사후적 지원방안	결혼이민자의 폭력 예방 강화	• 폭력문화제거,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 결혼예정 이민자 대상으로 폭력 관련 법률과 폭력 발생시 절차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폭력 피해 결혼이민 자의 사후적 지원 강화	•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및 생활안정 보장 • 인프라확충 및 전문상담제도 정비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강화 방안	해체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의료보장	•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시 유연한 자격기준 적용 • 긴급지원대상으로 국적미취득 무자녀 결혼해체 이 민자를 포함 • 저소득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 2종의 적용대상에 포함 • 비수급 해체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	• 취업지원 강화 • 맞춤형 주거지원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기능 강화	• 맞춤형 양육지원 • 품앗이 돌봄망 지원
	중장기방안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영주권 개선
제한외국인처우기본 법·제도의 개선			• 불법체류자의 처우 보완 •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처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 • 동 법의 이념은 다문화적 접근으로 전환
국제 결혼중개업의 법적규제 강화			•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 표준화 및 결혼당사자 의 정보 확인 장치 마련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 다문화가족범위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주민, 이민자 가족, 재외동포로 확대 적용
다문화가족 대상의 인프라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인프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차별 적 지원	• 지역별 다문화지원기관의 지원 차별화 • 농촌지역의 인력충원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 한 상담원 및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아동대상 멘토링 서비스 제공 및 학교내 전문가 배치
		효과적인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이중언어 서비스체계 구축	• 통·번역 업무 총괄의 통합기관설치 • 통·번역서비스 시스템 구축

〈표 9-1〉 계속

구분	지원방안	세부 내용
중 장 기 방 안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 부처 담당부서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 구성 -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및 기존 실무자에 대한 다문화 역량 교육 활성화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방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문화 이해증진 - 한국인 예비배우자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문화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본국 문화 이해·체험프로그램의 제공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정보제공 및 한국문화체험 기회 확대
		-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방안 -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모색 - 외국인의 인권보장 인식 고취
		- 다문화사회 수용성 강화 방안 - 다문화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다문화가족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다문화가족의 문화체험교육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 - 다문화이해교육에 상호문화이해 내용 포함
	다문화가족 지원관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의 전환	정부와 민간기관실천가, 지역주민의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입안 및 시행

제2절 단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1.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사회적응력 제고 방안

가.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방안

본 연구결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말 소통 수준은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정도가 44.8%,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가 22.9%로 3분의 2 이상이 한국어 사용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배우자도 결혼이민자 국가의 언어로 소통하는 수준이 51.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의 미숙은 부부간에 또는 고부간, 형제자매간의 갈등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응답한 비율이 결혼이민자 29.2%, 한국인배우자 27.4%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생활소통의 미숙은 병원이용, 이웃과의 교제,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 한편 다문화가족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으로 나타난데 반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79.5% 정도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언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동서비스를 이용할 여건 부족, 동서비스의 인지도 부족, 기관의 부재 등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관계 증진 및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대별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국적 및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국적별로 일상생활

에 필요한 언어교육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안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내 기관 및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다문화가족대상의 다양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 및 사회문화, 제도,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결혼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대중매체, 인터넷 등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웃·친구 등과의 교제도 미숙하여 다양한 정보 접근권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 대상의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결혼이민자가 34.4~54.7% 범위로 저조하였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제공과 컴퓨터·정보화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각각 32.9%, 34.6%로 상당히 저조하였다. 한편 생활정보제공과 컴퓨터·정보화교육서비스를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각각 38.1%, 42.0%로 이용수준보다 높은 서비스 욕구를 보였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접근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여건 및 인지도 부족,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재 등으로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기관을 중심으로 취업, 법률,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각종 정보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생활정보, 서비스 및 제도 안내를 소개하는 다국어 매거진 발간,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을 활성화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정보화를 증진한다. 기관을 중심으로 컴퓨터·정보화 교육과정을 다국어로 개설하고 원격교육, 방문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정보화교육은 한국어교육과 상호 연계하여 설계되고 보급되는

것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접근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구축된 정보이용시설을 결혼이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프로그램 지원, 통역사배치 등 부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서비스 및 제도의 홍보·안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및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제도권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내 기관 및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 활용과 홍보리플렛, 안내문의 보급을 통하여 효과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가.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보장

본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일반 다문화가족은 9.8%, 해체 다문화가족은 20.0%나 되었다. 또한 가구부채 비율은 45.3%이었고, 부채원인으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다문화가족은 23.7%이었다. 그리고 취업한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17.6%에 불과하였다. 이는 설동훈 외의 연구결과(2005)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52.9%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였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는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는 기본생활보장권에서 배제되어 빈곤여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비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빈곤예방 또한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 무자녀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를 적용·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에도 적용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비수급조건부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국적취득, 임신 및 자녀와 관련 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동 제도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지원 형태도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셋째,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ISA)을 제공한다. 금융소외 계층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저축형태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을 촉진한다. 동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저축을 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비율의 정부지원금 및 민간기부금을 지원하는 개인의 금융계좌의 성격을 가진다.

나. 다문화가족의 소득보장 강화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의 취업률은 한국인배우자는 90.6%, 결혼이민자가 19.4%로 결혼이민자는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4.5%로 과반수이상인 해당되었고 다문화가족 2가구 중 1가구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나서 저소득층인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의 취업이 요구된다. 연구결과에서도 결혼이민자의

현 취업률은 높지 않으나 비취업자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66.5%로 현 취업률의 3.4배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제고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의 욕구에 적합하고 시장성 있는 취업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즉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하고 외부기관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개발한다.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지역 및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적합직종을 개발 한다. 다문화강사로 양성하거나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보육교사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 중심의 취업인프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지역사회 내 취업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역 및 특성을 고려한 창업형 자립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다. 가족부양 및 돌봄 부담 완화 방안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의 가족유형에는 부부나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외에 한국인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비율이 43.8%로 높았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농·어촌의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 결혼한 비율이 높아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는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부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어려움과 함께 노인들의 일상적인 수발, 간병과 부양비 문제 등

도 부양 상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 다문화 가족 내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13.3%이었고 가족내 돌봄자의 44.8%가 결혼이민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대상자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월 평균 243천원이었고 돌봄비용이 가계에 부담되는 정도는 61.0%이었다. 그리고 돌봄자에게는 직장이동 및 근무시간단축, 취업형태 변화 등 직장 및 취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부양 및 장기적인 환자를 돌보는 환경은 다문화가족에게 정신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가족부양 및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경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돌봄자에 대한 케어수당을 지급하고 부양 및 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의료용품 대여서비스를 확대하고 물품 등을 지원한다.

둘째, 부양자 및 돌봄자의 휴식 등 고용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돌봄자의 건강 및 취업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가족돌봄이 필요시 휴가사용 또는 근무시간탄력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돌봄자의 시간 지원을 위한 일시휴가(respite)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셋째,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의 노 인수발 및 간병으로 배우자나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등을 해결하고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기능 강화

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지원 강화

본 연구결과,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임신·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77.8%로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출산 전의 어려움으로는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홍보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출산비용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은 저출산시대에 미래세대 인력의 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산전·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산부인과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 산전·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산부인과, 소아과를 지정하여 산전·후 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둘째, 방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와 신생아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와 신생아의 보건, 영양상태, 피임법, 예방접종에 이르기까지 출산전 후에 필요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임신·출산관련 과정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확대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322천원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이하의 가족에서는 32.2%를 차지하여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의 미흡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양육비, 교육비 지출 부담, 자녀양육을 둘러싼 배우자와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돌보는 주된 양육자는 부모 또는 가족이 48.9%, 기관이 38.8%로 전문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저조하였다. 또한 방과 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비율은 부모 또는 가족이 63.0% 이었고, 학교·기관은 25.5%이었으며, 아이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8.5%이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전문적인 교육망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보다는 비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자녀양육환경은 저출산시대에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단위의 언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다문화가족에게 강점이 될 수 있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가족단위의 언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부모와 함께하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양육비용 부담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모와 자녀간 유대 강화를 위한 자긍심 향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멘토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방하여 사회적응력을 제고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서는 다국어 상담사를 배치하고 가족단위의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관계를 증진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다국어로 된 보육·양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기관에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그리고 부모중심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한다.

4.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 방안

가. 다문화가족의 기본의료보장

본 연구결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23.0%, 한국인 배우자는 27.3%이었고, 질병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85.9%, 한국인배우자는 90.9%이었으나 질병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결혼이민자가 55.3%, 한국인배우자는 41.4%로 다문화가정의 과반수 정도가 중도에 질병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등으로 다양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의료비 부담형태는 건강보험과 본인분담이 가장 많았으나,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경우는 13.5%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 미가입율은 11.4%이었고, 이 중 25.8%는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료 체

납비율은 결혼이민자 13.0%, 한국인배우자 18.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이 낮은데다가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제도권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한 치료 중단으로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의 제고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기본의료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적용과 병행하여 무자녀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구별 재정뿐만 아니라 질병유형, 상병기간, 비용부담 등 의료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의료급여를 확대적용한다.

둘째, 비수급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비수급 저소득 다문화가정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실업가정, 급성질환 발생이 높은 가정,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단계별로 확대적용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률을 제고한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관련 없이 적용되는 동 제도의 미신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환으로 홍보 리플릿,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홍보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못하는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14.1%, 한국인배우자는 9.1%이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

이 불편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는 약국으로 대체하여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위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는 데 가장 힘든 점은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교통이 불편함, 진료비용 부담,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함 등이었다. 이외에도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받기가 힘들, 절차가 복잡함 등도 나타났다. 또한 질병의 조기에방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45.1%, 한국인배우자는 57.4%로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는 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한다.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관리서비스 대상자의 발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평가분석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동영상 제작·배포한다.

둘째, 건강검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서비스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상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문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셋째, 의료보장 사각지대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의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자녀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병원, 입원비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진

료비용은 사례별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통역인력을 배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되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수를 점차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시행예정인 통번역인력 파견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및 가족관계 강화

가. 바람직한 가족관계상의 정립 및 홍보계몽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이 결혼 후 적응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1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 60.1%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되었다.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한국생활적응부담감, 자녀문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족관의 관계, 경제적 측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은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 주택매매 및 이사 등 경제생활 및 재산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데는 한국인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경제권에서 결혼이민자는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경제문제가 30.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문제,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가사 및 육아부담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언어소통 및 문화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화될 경우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해체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적절한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부부관계상을 정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즉, 전

통사회에서처럼 제도적이고 권위적인 부부관계보다는 동반자적이고 우애적인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부부간의 평등한 권력관계, 역할공유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부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시간을 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이나 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부부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출산 전에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녀양육의 방법,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의 개념 및 예방대책, 자녀에의 과도한 기대금지, 자녀의 사회화 교육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올바른 노부모-성인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노부모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경제적 및 정서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노부모 부양의 기피, 노부모 학대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부모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어서 이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나.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의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의 강화

다문화가족은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부모-자녀간, 형제자매간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한국생활적응부담감, 자녀문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족관의 관계, 경제적 측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경제문제, 자녀문제,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관계, 가사 및 육아부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부분은 자녀일, 내부모 또는 가족일, 본인이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다는 느낌, 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일로 인한 고민 등 이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의사소통, 문화차이, 가족관

계 등으로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서 가족관계 회복 및 가족문제 치료를 위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상담의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초기에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 부부 교육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단위의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결혼 초기에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기관 중심의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개입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외상후 증후군이나 이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및 스트레스 치료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사회적 지지 기반 조성

본 연구결과, 결혼이민자의 친구·이웃·동료·동호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망은 평균 10명 정도 수준이었고, 연락빈도는 월 1회 이상이 60.9이었으나, 전혀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은 경우도 33.4%로 높았다. 또한 배우자 친구·단체 모임을 제외하고 본국 친구모임을 비롯하여 학부모 모임, 가족·친척 모임 등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언어소통,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한국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친척·이웃·친구 등과 교제도 소극적이어서 사회생활의 적응과 활동에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자리잡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간의 자조모임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간에 결혼생활의 어려움, 가족갈등 및 위기 극복 사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정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형성한다.

둘째, 시민단체나 지원기관을 통해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한다. 시민단체나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와 상담 및 결연으로 정신적인 지지를 형성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사례화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제고한다.

6.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전·사후적 지원방안

가. 결혼이민자의 폭력 예방 강화

가정폭력의 발생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은 성차별로 성에 따른 불평등의 사회화가 여성폭력을 유발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간의 양성불평등적 관계, 한국인배우자의 가부장적 가치관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은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 주택매매 및 이사 등 경제생활 및 재산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데는 한국인배우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경제권에서 결혼이민자는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가족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가부장적인 가치관은 한국인배우자가 강한 반면, 양성평등적 가치경향은 결혼이민자가 강한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허용적 가치와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혼이민자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폭력문화 제거, 양성평등의식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평등한 부부관계, 부모역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성평등의식과 태도로 부부생활을 하는 규칙과 규범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와 함께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각과 다문화수용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둘째, 결혼예정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률과 폭력 발생시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 기관에서는 결혼예정자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폭력발생원인, 대처방법, 법률, 서비스 정보 등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후적 지원 강화

본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한국인배우자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폭력발생률은 47.8%로 부부 2쌍 중 한 쌍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발생의 주요 원인은 배우자와의 생활방식, 성격차이, 생활습관 등으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냥 참고 살거나 일단 피하고 본다 등 소극적인 태도는 22.1%로 5분의 1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부부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이주여성담소 및 상담전화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7.2%에 불과하였다. 한편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는 필요한 사후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정폭력예방, 상담서비스 제공, 신체적·정신적 치료,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연구결과 같이 결혼이민자는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서 폭력의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편, 전문적인 서비스에서도 배제되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며 결과적으로 가족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국적미취득자가 많아서

폭력가해자인 한국인배우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소수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열악하다. 따라서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및 생활안정 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국적취득과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을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하여 결혼이민자가 본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자녀출산 후 한국인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이혼할 경우 자녀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 및 취업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상담제도를 정비한다.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전문적 상담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이주여성쉼터와 상담소를 확충한다. 전문기관에서는 사후적 후유증 치료, 여성의 식화작업, 심리상담을 통한 재사회화, 폭력신고와 신고 이후의 사법처리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상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동시통역시스템과 결혼이민자 전문상담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자조집단 활성화를 통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자조집단을 구성하고, 자조집단을 통한 한국어교육사업, 모성보호지원 사업, 공동체 지원 등으로 사회적응력을 제고한다. 자조집단을 통하여 학대사례 및 정보·지식 등을 공유하고 연대하여 폭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인다.

7.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강화 방안

가. 해체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의료보장

본 연구결과, 해체 다문화가족은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20.0%이었고, 가구부채 비율은 44.0%이었고, 부채원인으로 사업자금, 교육비 등이 많았고, 생계비와 주거비도 해당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또한 의식주비용,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한 경우 임시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해체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자인 여건하에서 자녀 없이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기본생활보장권에서 배제되어 빈곤여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비수급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빈곤예방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해체 다문화가족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6.0%이었고, 이 중에서 질병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전체 5명 중에 3명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의 2분의 1 이상이 중도에 질병치료를 포기하였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체 다문화가족의 의료비 부담형태는 건강보험과 본인분담이 가장 많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경우는 17.8%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해체 다문화가족의 건강보험 미가입율은 14.3%이었는데, 이 중 일부는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비율은 17.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해체 다문화가족의 일부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고 가입자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제도권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높은 의료비용 부담으

로 인한 치료 중단으로 해체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의 제고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의 기본의료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 및 의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시 유연한 자격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해체 다문화가족의 다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의 혜택을 받으나 일부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함으로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비용 즉 가사조력자 비용, 자녀양육비, 돌봄비용,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 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에도 포함하여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긴급지원제도의 적용대상에 국적미취득의 무자녀 결혼해체 이민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별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국적미취득 결혼해체 이민자를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생계, 의료, 의료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적용과 병행하여 의료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국적취득 무자녀 결혼해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계소득 외에 의료여건을 고려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비수급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비수급 해체 다문화가족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실업가정, 급성질환 발생이 높은 가정,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우선순위로 적용하고 단계별로 확대한다.

나.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

본 연구결과, 해체 다문화가족의 취업률은 25.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60.0%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 되었고 해체 다문화가족의 44.0%는 부채가 있으며 주요 원인은 사업자금, 교육비 등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의식주 비용, 비동거 부양가족원, 공과금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해체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결혼이민자의 현 취업률은 25.7%로 저조하였으며 비취업자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74.1%로 현 취업률의 2.9배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 등 경제활동이 필요함에도 가정환경, 직업능력부족, 국적미취득 등 여러 요인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해체 다문화가족은 자가인 비율이 69.4%로 나머지 30.6%는 무주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부채의 원인 및 경제적 어려움 중의 하나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을 지적하였다. 이는 해체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소득보장 및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해체 다문화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해 취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소득지원도 유용하나 그 보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직종개발 및 실시 그리고 취업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빈곤악순환’ 탈출에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훈련시 결혼해체 이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 및 기업등과 연계하여 창업자금의 저리 대출,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기간에는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혼소송 중인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 해체 다문화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비율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세자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 방식에서 장기분할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 저리제공, 주택보조금 및 수리비용 제공 등 주택마련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한다.

다.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기능 강화

본 연구결과, 일반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322천원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이하의 가족에서는 32.2%를 차지하여 해체 다문화가정은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체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한국어소통의 미흡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을 둘러싼 배우자와 가족과의 갈등,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 또는 시설 부재,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돌보는 주된 양육자는 부모 또는 가족이 50.0%, 기관이 25.1%로 전문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저조하였다. 또한 방과 후에 아동을 돌보는 형태는 가족 또는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이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다문화가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해체 다문화가정의 아동 또한 비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체 다문화가족의 열악한 자녀양육환경은 미래세대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양육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체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해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접근도 제고를 위한 보육료 지원, 야간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체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도우미, 학업지도 담당복지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품앗이 돌봄망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가족의 풀(pool)을 확보하고 상호요구가 부합하는 가족간에 연계기능을 하는 품앗이 육아망 조성 또는 지역 육아망 코치제 등을 도입하여 아동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제3절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1.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가. 영주권 개선

우리나라 영주권제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시 (간이)귀화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둘러싼 부작용을 감안하면, 영주권과 국적취득 요건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만으로도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영주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혼인이 중단된 이후 결혼이민자 자신의 안정적인 체류와 자녀양육을 위해 체류 연장 및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 제도상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는 취업이 가능한 거주(F-2)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혼을 신청할 경우 거주비자가 방문동거(F-1)비자로 전환 되며, 동 비자로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혼신청 중인 결

혼이민자의 취업을 불허하여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통합이수제’는 국적취득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도의 개선

2007년 7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의 조기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 법에서는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만 한정하여서 불법체류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국적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정책방향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를 일시적인 체류자와 동일한 재한외국인의 범주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조항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중복되므로 다문화가족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동 법에 근거가 되는 이념은 자문화중심의 동화적 접근으로 이는 다문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각 문화의 평등성과 가치에 기반한 다문화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법적규제 강화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화 등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결혼이나 취업 을 통해 이민을 희망하는 제3세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자들이 개입되면서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모집과정에서 여성비하적인 광고, 외국 현지에서 대량속성 결혼 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가 여러 형태로 야기되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이해부족 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가족해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민자의 결혼중개업에 의한 결혼은 31.0%로 약 3분의 1이 해당되었고, 결혼중개업의 소개로 결혼 경우 한국인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28.3%로 타 소개방식에 비해 가장 높았다. 정보가 불일치하는 부분은 배우자의 성격, 직업, 소득 등 경제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한 이유 중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 살기위해, 본국 가족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결혼 후에 부부나 가족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및 다문화가족의 해체예방 등을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체계적인 법적 규제와 단속이 요구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의 탈법방지를 위하여 결혼상담소, 혼인중매 기관, 취업알선업자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가 요청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수사요령’을 하달하고 정책적·지속적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존중적인 중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를 표준화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표준화하는 심사지침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결혼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선행적으로 감독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을 수행할 담당인력의 확보, 관련 부처 간 업무협력, 관련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본 연구결과, 다문화 가족범위를 확대하여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가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 북한이탈주민까지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본 방향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보다 다양한 유형의 국제이주민과 그 가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으며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혼인 및 가족재결합과 결혼이민자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가족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9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결혼이민자가족에 국한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들의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의 발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외국인근로자가족, 외국인근로자가족의 자녀, 결혼이민자 재혼가족 등을 포괄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본 태도를 규명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정의와 범위,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갖추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 대상의 인프라 개선방안

가. 다문화가족 인프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차별적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와 욕구가 파악되고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기관에 연계되었을 때 복지욕구가 높은 가족에 대해 요청되는 서비스는 복잡·다양하다. 또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 외 지원이 요청되는 등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2명 정도의 인력으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는 한국어·사회적응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을 포함하여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서비스 지원, 한국인 예비자 사전교육, 통·번역 파견서비스, 남성결혼이민자의 정보제공사업, 가족위기개입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 센터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강화가 관건으로 향후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법무부 자료(2006)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는 도시지역이 76.5%, 농촌지역이 23.5%가 분포하여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3.3배가 많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9개소 중에서 도시에 74개소, 농촌에 45개소로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1.6배가 많았다. 그러나 동 센터 1개소당 평균 결혼이민자수를 보면 도시는 859명, 농촌은 434명에 해당되어 결혼이민자수에 비해 동 센터의 규모는 도시지역이 농촌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농촌지역은 지역별 불균형적 분포와 교통편, 이용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지역보다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특성상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즉 방문서비스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도시보다 몇 배의 서비스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은 차별화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

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원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다문화가정 아동은 2008년 58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연령별로는 6세 이하의 영유아가 57.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7세 이상의 학령기 아동은 42.9%이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점차 취학연령이 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학교 시스템의 다문화화 과정이 미비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19.6%이었고, 또한 19.2%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등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못하는 부분은 또래 친구와의 관계, 의사소통, 교육방식,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자녀양육 상의 갈등, 한국어소통, 양육비·교육비 부담, 학업지도 외에도 학업 성적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미래세대의 인적 자원개발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환으로 일반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아동 대상 사회성발달프로그램, 교사대상의 다문화 아동 지도 프로그램 등 다문화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내에 전문가를 배치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결혼이민자 출신의 자원봉사자 활용 또는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교 내 다문화 상담전문가나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

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언어 서비스체계 구축

본 연구결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말 소통 수준은 3분의 2 이상이 한국어 사용에 미숙하였다. 또한 한국인배우자도 결혼이민자 국가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도가 과반수에 불과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이 지원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9.0~79.5%로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이주여성상담소와 상담전화를 이용한 비율은 각각 2.7~4.5%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통역서비스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 이용여건 때문이기도 하나 서비스가 주로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데서 오는 점도 있다. 이와 같이 언어소통이 미숙한 결혼이민자들의 상담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366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상담 및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통역사 및 상담원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이들을 양성하는 것도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조사한 결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239개 기관 중 3.3%에 불과했다(최현미, 이수연, 2008a).

따라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중언어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번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기관을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호주의 경우,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호주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61 450)로 연결가능한 통·번역라인

TSI National(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을 설치하여 1,800여명의 전문 통역자를 통해 100여개국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시민단체, 복지기관, 의회의원, 지방행정기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할 때에나 비상시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가. 부처 담당부서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6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2세들에 대한 통합과 복지차원의 접근은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교육서비스 지원, 농림부는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관광부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만남의 장 마련,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인 교육과 정착지원, 노동부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부처별로 차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부처 간 중복된 사업이 많아 서비스 수행 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편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부처별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와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처 담당부서 간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센터-지자체-기관-민간단체의 네트워킹 구성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능 및 역할은 다르다. 광역단체들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으로 실무자 양성이나 정보제공 등 인프라 구축과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직접 다문화가족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는 기관별로 특화된 사업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사업 등을 실시하여서 민간단체간의 서비스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공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하달식 지침 등 중앙센터의 과다한 관리기능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수행방식은 지역 센터 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타 기관과의 중복서비스로 인하여 지역 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 등이 요구된다. 외국사례를 보면, 호주의 경우 일단 호주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통합된 인도적 정착 전략(IHSS)을 통해 제공하는 집중적 서비스를 지원 받는다³⁷⁾.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을 구성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 관련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사업 연계·추진, 지역차원의 교육·홍보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및 기존 실무자에 대한 다문화 역량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

³⁷⁾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집중적 서비스는 공항에서 이민자 맞아들이기, 적절한 숙소 찾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공급, 이민자들을 호주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기, 소득지원관련 신청하고 일자리 찾도록 지원하기, 이민자들은 고문과 정신적 상처에 관한 상담받기 등임.

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다문화가족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는 대학에 대한 지원,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례연구와 수퍼비전의 제공, 학술교류를 통한 다학제간 연구 지원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방안

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문화 이해증진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간에 혼인가치관, 가족가치관, 그리고 자녀가치관에 차이를 보였다. 부부 간에 가치관의 차이는 일반가족 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언어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사회적 소외 등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부간의 가치관 차이는 부부갈등, 가족갈등이나 정서적·사회적 소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내 가족 구성원 간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이 우선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예비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문화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에게도 입국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국 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방안

본 연구결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이민자를 차별한 경한을 한 비율은 결혼이민자는 40.5%, 한국인배우자는 51.1%로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가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으로서 차별이나 소외 등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외국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고쳐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문화사회의 수용성 강화 방안

국내외 경제적 상황과 국제결혼을 둘러싼 제도변화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가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세계화와 국가간 정보와 거리가 좁아짐에 따라 다양성의 추구하고 함께 다문화시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폐쇄적인 국민성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국제결혼 등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시대의 급속한 도래에 대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 인종적·문화적 소수집단의 언어로 방송 및 발간되는 매체에 대한 지원, 소수민족의 명절 및 축제 등을 지원하거나 학교 및 사회 등에서 소수민족의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와 기회부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 다문화가족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본 연구결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비율은 41.5%이었고, 이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태도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본국 송금을 반대하는 비율은 10.4%이었고, 송금을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한국생활의 적응부담감, 자녀문제, 배우자의 가족관계, 경제적인 측면이 많았다.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결혼초기에 가족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은 가족생활에서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비롯하여 본국 송금 등 경제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다문화정책방향은 초기단계의 동화적 관점에서 점차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포괄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문화가족 내에서는 상호이해와 노력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상대배우자에게만 이해를 요구하여서 일반부부보다 결혼생활에 대한 부담이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관계 증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관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출신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국 문화 이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첫째,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중심의 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로 확대한다. 일례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임신·출산시기에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음식문화와 출산과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 등 각국의 문화 이해교육을 한국인 임신부와 가족들과 통합,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지원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에 상호문화이해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마.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의 전환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문화가족의 복지에 대한 논의를 기존의 복지논리, 즉 욕구와 충족, 문제와 해결,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의 구도가 아닌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한 국제인권규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제27조에는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손병돈 외, 2008).

다문화가족의 가족주기별 인권이슈에 대해 박지영(2008)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결혼준비기 및 입국단계에서는 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 광고 및 매매혼적 중개행위와 허위정보제공의 문제, 둘째, 적응기, 신혼단계에서는 한국어소통의 어려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셋째, 안정기, 양육단계에서는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사회참여와 사회지지망 확대의 제약, 마지막으로 진수기, 노년준비기에서는 연령차가 많은 배우자의 사망이후 독거기간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노년준비의 어려움,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할 때 가족주기별 인권이슈를 고려하여 차별적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식의 차이와 욕구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별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정부와 민간기관 실천가,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

적 민감성이 점차 증진되고 다문화가족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이 입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손병돈 외, 2008).

제10장 결 론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화, 정보공유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다문화사회의 촉진과 함께 혼인수급의 불균형, 국내외 이주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문제, 가족갈등, 가족해체, 사회문화의 부적응, 사회적 편견, 법적·제도적 차별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일부는 사회제도권에서 배제되어 가족안정성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관련 연구는 일부 가족분석 등에 편중되어서 가족부양 및 가족기능,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등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 최근 급증하는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결혼중개과정에서의 결혼정보업체의 폐단이 잔존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의 적응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생활의 적응 부담감, 자녀문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경제문제 등의 다양한 어려움은 결혼시기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언어소통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은 가족폭력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대응방식은 상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취업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고 비취업인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취업의향이 있음에도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문화가족의 건강생활도 질환자 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고액의 의료비로 인하여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부양, 자녀양육 등 다문화가족의 돌봄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는 일반가족이 66.03 점, 해체가족은 62.96점으로 해체가족이 일반가족보다 낮았다. 영역별로는 일반가족과 해체가족 모두 경제적기능, 경제적부양기능, 여가휴식기능 등이 낮았고 이외에 해체가족은 정서적기능이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0~50% 수준이었으며 결혼이민자의 가정내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둘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셋째, 다문화 아동의 임신·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다섯째,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하며, 여섯째, 인프라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열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방안은 단계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사회적응력 제고, 경제적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기능 강화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심리·정서 및 가족관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해체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다문화가족 대상의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이 단계별로 수행될 때 다문화가족을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고 가

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족문화과편,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2005
- 가족문화과편,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05.
- 강유진,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4권2호:61-80, 1999.
- 강희원,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지역 거버넌스』, 다문화가족센터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2007.
- 권미경,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권복순·차보현,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pp. 109-134, 2006.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2002.
- 교육인적자원부,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2006.
-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02.
- 김갑성,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서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6.
- 김나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만: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2005.

- 김도희·김성이·신효진,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9집 3호, 2007.
- 김민정 외,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3-28, 2006.
- 김범수, 『일본 야마가타현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다문화가족센터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2007.
- 김범수 외, 『다문화 사회복지론』, 파주: 양서원,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승권 외,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숙자·강유진, 『한·중 섭외혼인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 한국남성과 중국』, 2002
- 김세훈, 『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김연수,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07.
- 김영임, 『이주노동자가족의 자녀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2002.
- 김영주,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 2006.
- 김오남,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서울: 집문당, 2008.
- 김유경, 『가족원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103, 47-72, 2005.

- 김은미, 『다인종·다민족화의 공간적·계급적 분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적“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 김은실,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19: 29-46, 2002.
- 김이선·정해숙·김영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발전 방안 연구』, 농림부, 2008.
- _____, 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7.
- _____,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2007
- _____, 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
-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7.
- 김정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문제와 다문화 교육』,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5호 통권 제325호, 2006.
- 김희선,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민족연구』 31, pp. 50-85, 2007.
-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제2장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2007.
- 김현미,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과 ‘성별화된 계급’의 출현』, 『진보평론』 7(봄): 76-96, 2001.
- _____,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2006.
-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 노동부·외국인력정책대책반, 『단순기능외국노동력의 국내취업에 관한 정책 대안』, 노동부, 1994.

- 동아신문, 「이주여성 지원정책 문제없나」, 2008. 1. 16일자.
- 마르코 마르티넬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2002
- 박래영,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 연구」, 『노동경제논집』, 1-28, 1993.
- 박상철,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 2008.
- 박재규,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제17집 제2호, 75-105, 2007.
- 박종보·조용만,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박지영,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8.
- 박천웅, 『한국적 다문화 운동의 실천: 안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최종보고서, 2007.
- 법무부, 『2004년도 출입국 통계 연보』, 2005.
- _____, 『체류외국인 급증, 금년 내 100만 시대 열려』, 출입국 관리국 보도자료(4월17일), 2006.
- _____,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총괄 분석』, 2008년도 인수위 보고자료, 2008.
- _____,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8.
- _____, www.moj.go.kr.
- 박천웅,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마련을 위한 제안』, 2000.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2008.
- _____,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
- 서리나, 『한국여성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87-107, 2006.
- 서문화·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김현미·한건수·고현웅·샬리아,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 _____. 외,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_____.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_____.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_____. 이란주,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기관) 제도 개선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2006.
- _____. 『전지구화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정책기획위원회 제3차 정책토론회 “동북아시아시대, 한국의 진로” 연구자료, 2006a.
- _____.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5호 통권 제325호, 2006b.
- 성규탁·한동우·김재엽,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와 대책』, 집문당, 1997.
- 신경희·양성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2006.
- 신선인, 「저소득 외국인 가정을 위한 가족복지적 개입방안」, 『사회복지연구』 제 27집, 2005.

- 심인선 외, 『경남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6.
- 양순미·정현숙,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2006.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2003.
- 여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
- 여성신문, 2006년 8월 25일자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제1장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2007
- 왕한석·한건수·양명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실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05.
- 유길상·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유진이 외,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및 센터운영의 활성화 방안』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2007.
- 유진이 외,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2007.
- 유철인, 『여성사회학: 생애 이야기에 나타난 “국제결혼여성”의 삶』, 한국 사회학대회 논문집 291-298, 1994.
- 윤선오 외,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집』, 15(2), 2005.
-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2007.
- 이경호, 「일본사회의 국제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교육의 대응 :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00.
- 이규용, 『국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준과 발전방안』, 올바른

- 세계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집중 워크숍, 경희대학교 GK대학특성화사업단 1-17, 2006.
- 이금연,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2003.
- 이순형 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2006.
- 이은주,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 19집 1호, 2007.
- 이정석,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07. 5.
- 이정환·이성용,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제30권 제2호, 2007, pp. 147~168.
- 이현아, 『재미 한인여성의 성역할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일리노이대학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혜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논집』 제 31집 가을호, 1997.
- _____,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 이주여성포럼, 2005.
- _____,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2005.
- _____, 『결혼이주자 가족정책 및 서비스 분석 모형』, 다문화가족센터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2007.
- _____,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 다문화 가족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8.
- 이희숙, 『지역사회의 다문화와 사회통합정책』,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 장미혜,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다문화 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심포지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장인실, 『다문화교육이 한국 교사 교육과정 개혁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21(3), 한국교육과정학회, 2003.
- 장혜경·김혜경·오학수·이기영,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 외,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전진희, 『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전희옥, 『다문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사회과교육과정의 방향』,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 2008.
- 정기선 외,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정일선,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실태 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편), 2006.
- 제갈종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신라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권중·한영희,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7.
- 최현미·김정진·최명민·박지영,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8.
- 최현미·이수연(2008),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현황분석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연구』 제 2호: 1-22.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2003.
- 한건수·설동훈,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7. 12.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를 통한 국제결혼 이민여성 지원방안』, 정보사회 현안분석 6, 200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08.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08.
- 홍달아기·채옥희,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2007.
- 황정미 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2007.
- YTN 인터넷 뉴스, 2008년 1월 29일자
- Abraham, M, *Speaking the unspeakable: Marital violence among South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
- Banks, J.A. & Banks, C.A.M.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95.
- Banks, James A,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James A. Banks & Cherry A. McGee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Jossey-Bass. 3-29, 2004.
- Castles, Stephen, and Godula Kosack,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Guilford Press: New York, 1998.
- Clifford, James, "Travelling Cultures", in Grossberg, L, C. Nelson and P. Treichler eds.,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2.
- Cottrell, A. "Cross-National Marriages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Contemporary Family Studies*, 21. 151-169, 1990.
- Courville, Sasha, and Nicola Piper, "Harnessing Hope through NGO Activism", *Annals: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2(March): 39-61, 2004.
- Ehrenreich, Barbara and Arlie Russell Hochschild.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2.
- Eriksen, T. H, "Ethnicity and nationalism",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Pluto Press. Hammer, T.(1985). *European Immigration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Fagan, J. A and Broune, A, *Violence between spouses and intimates: Physical aggression between women and men in intimate relationship*, In A. J. Reiss, Jr. & J. A. Roths(Ed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Vol. 3,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15-292, 1994.
- Gay. G, "Curriculum Theor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James A. Banks & Cherry A. McGee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Jossey-Bass. 30-49, 2004.
- Gollnick, Donna M. & Philip C. Chinn,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6th ed.), Prentice Hall, 2002.
- Gray, Emily, and Paul Statham, "Becoming European? The Transformation of British Pro-migrant NGO Sector in Response to Europeaniza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3(4): 877-989, 2005.

- Gurowitz, Amy, *Looking Outward: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Foreigner Rights in Japan*, pp.153-170 in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Takeyuki Tsuda.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6.
- Hochschild, Russell, *The Second Shift*, New York: Penguin Books, 1989.
- _____,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rk: Owl Books, 1997.
- _____, *Love and Gold*, in Ehrenreich, B. and A.R. Hochschild.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2.
- _____,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Notes from Home and Wor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Hugo, G.,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Emerging Trends and Issues, in *International Migration* edited by D. S. Massy and J. E. Taylor, pp. 77-103,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Jones, Peter, and John Pratten, "Buying and Selling Sex: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Service Encounter", *Management Research News* 22(12): 38-42, 1999.
- Joppke, Christian,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2), 2004.
- Kawakami, Soniko, *Foreign Trainees and NGO in Support of Them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title of *The Role of Civil Society for Global and Democratic Governance*,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Room #701 Millennium Hal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March 3, 2006. pp. 1-14, 2006

- Kim, Andrew Eungi, Global Migration and South Korea: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and the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Ethnic and Racial Studies*, January 2009, pp. 70-92, 2009
- Lie, John, *Multiethnic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Lim, Timothy C, "The Changing Face of South Korea: The Emergence of Korea as a 'Land of Immigration'", *Korea Society Quarterly* 3(2/3): 16-21, 2002.
- _____, "Racing from the Bottom? The Nexus between Civil Society and Transnational 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3(3): 423-442, 2003a.
- _____,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The Search for Power in an Era of Globalization*, Global Turbulence: Social Activism and State Responses to Globalization, edited by Marjorie Griffin Cohen and Stephen McBride. Aldershot, UK: Ashgate, 2003b.
- _____, *NGOs, Transnational Migrants, and the Promotion of Rights in South Korea*, pp.235-269 in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Takeyuki Tsuda.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6a.
- _____, "Democracy, Political Activism and the Expansion of Right for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nd Japan: A Comparative Perspective", *IRI Review* 11(1): 156-204, 2006b.
- Martin, Philip, *International migration: Facing and the challenge*, 2002.
- Menjivar, C. and Salcido, O,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2002.

- Merali, N., *Theoretical Frameworks for Studying Female Marriage Migra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32, No. 3, 2008.
- Milly, Deborah J, *Policy Advocacy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pp. 123-151 in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Takeyuki Tsuda.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6.
- Orloff, L. E and Sarangapani, H., Governmental and Industry Role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Equaliz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Foreign Fiances and Spous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3, No. 5, 2007.
- Parrenas, Rhacel Salazar,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Piper, N., Wife of Woker? Worker of Wife? Marriage and Cross-border Migration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Vol. 9, No. 6, 2003.
- _____,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race' and 'gender'", *Gender, Place, and Culture*, 4(3), 321-338, 1997.
- _____, and Mina Roces,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Piper, N. and M. Roces. eds.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cation, 2003.
- _____,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The Politics of Migration in Southeast and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42(5): 71-97, 2004.
- _____, *Social Development,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Political Organising of Foreign Workers*,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them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s a Tool to

- Enhance Development. Singapore, December 17, 2005.
- Rifkin, Jeremy,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New York: G.P. Putnam, 1995.
- Roberts, Glenda S. *NGO Support for Migrant Labor in Japan*, pp.275-300 in *Japan and Global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edited by Mike Douglass and Glenda S. Roberts. New York: Routledge, 2000.
- Ruspini, Paolo, *Public and Community Services for Immigrant Integration: Italy and the European Union*, *Global Migration Perspectives* 45: 1-30, 2005.
- Sassen, Saskia,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1998.
- _____,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Ehrenreich, B. and A.R. Hochschild.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2.
- Shipper, Apichai W, *Pragmatism in Activism: Organizing Support for Illegal Foreign Worker in Japan*, Cambridge, MA: Program on U. S.-Japa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2001.
- Szuki, N, "Inside the home: Power and negotiation in Filipina-Japanese marriage", *Women's Studies* 33, 481-506, 2004.
- Tarumoto, Hideki, "Multiculturalism in Japan: Citizenship Policy for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5(1): 88-103, 2003.
- Tsai, Ying-Hsiu, and H. H. Michael Hsiao, "NGOs for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pouses in Taiwa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title of The Role of Civil Society for Global and

Democratic Governance,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Room #701 Millennium Hal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March 3, 2006. pp. 1-37, 2006.

UN, International Migration 2006, U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2007.

Wang, H and Chang S,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nam,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0, No. 6, 2002.

Williams, L and Yu, M., Domestic Violence in Cross-border Marriage: a case study from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gration*, Vol. 2, No. 3/4, 2006.

Wu, X. and Demaris, A,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depression: The effects of chronic strains", *Sex Roles*, 34, 299-319, 1996.

Zolberg, Aristide, *Bounded States in a Global Market: The Use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s*, pp.301-325 in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edited by Pierre Bourdieu and James S. Colema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부 록

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표(외국인배우자용)
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한국인배우자용)
3.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연구 전문가조사표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8년 12월)

응답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 문화 가 족 실태 조 사 (외 국 인 배 우 자 용)

지역번호	기관번호	조사대상자 일련번호	고유 번호	조사표 종류
			1	
				응답자 가구원 번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통계 절차에 따라 귀택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다문화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및 가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김 승 권

*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담당자 : 김유경 팀장, 02)380-8235, kyk@kihasa.re.kr 팩 스 : 02) 384-3084

조애저 부연구위원, 02)380-8220, ajcho@kihasa.re.kr

이주연 연구원, 02)380-8252, juyeon@kihasa.re.kr, 양혜인 연구원, 02)380-8112, rainbow2718@hanmail.net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지역 구분	① 도시 ② 농·어촌
방문지도사/통역사 성명	(인)	확인	☐ 조사원료 ☐ 미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가구원 사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가구원 수 _____명

번호	1. 가구원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	4. 연령(생년월일)	5.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6. 취업여부	7. 혼인상태	8. 장애유무	9. 조사대상 구분
	가구주부터 기록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먹고 지는 사람은 포함)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가구주의 부모 ⑤ 배우자의 부모 ⑥ 가구주의 형제자매 ⑦ 배우자의 형제자매 ⑧ 기타 친척 ⑨ 비혈연	① 남 ② 여	사실상의 연령 확인	⑩ 무학 ⑪ 초등학교 ⑫ 중학교 ⑬ 고등학교 ⑭ 전문대학 ⑮ 대학 이상 ⑯ 미취학	① 재학·휴학 ② 중학 ③ 졸업 ④ 졸업/재수중 ⑤ 비해당	(____학년) ① 취업중 ② 비취업 ③ 비해당 (만14세이하)	※ 사실상의 결혼상태를 답함 (취업으로 인한 별거는 동거로 간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비해당 (만14세 이하)	① 장애 있음 ② 장애 없음	※ 다음 해당 번호에 √표를 하시오 9-1. 가구원 수 • 총 가구원 수: _____명 • 남자가구원수: _____명 • 여자가구원수: _____명 9-2. 가구유형 ① 독신가구 ② 부부로만 구성 ③ 부부+자녀 ④ 한부모+자녀 ⑤ 3세대 가구 ⑥ 형제자매로만 구성 ⑦ 조부모+손자녀 ⑧ 비혈연 ⑨ 기타(_____) 9-3. 결혼 전 가장 주된 입국목적 ① 결혼 ② 취업 ③ 친척·친지방문 ④ 본국에서 다녔던 회사업무 ⑤ 개인사업 ⑥ 유학 ⑦ 기타(_____) ※ 결혼 전 가장 주된 입국목적이 ①, ③~⑦인 경우는 <결혼이민자가족> 대상에, ②인 경우는 <외국인노동자가족> 대상에 표시 9-4. 조사대상 구분 ① 결혼이민자가족 ② 외국인노동자가족
01		미(가구주)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02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03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04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05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06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07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08				만나아____세 ____년__월(양, 음)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적으시거나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각 질문번호 앞에 <★>가 있는 질문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며,
 그 외 모든 질문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II. 응답자 특성

A. 국적 및 입국사항

1. 귀하의 본국 국적은 어디입니까?

- ① 중국(漢族) ② 중국(한국동포)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일본
 ⑥ 태국 ⑦ 몽골 ⑧ 대만 ⑨ 인도네시아 ⑩ 카자흐스탄
 ⑪ 키르기스스탄 ⑫ 우즈베키스탄 ⑬ 러시아 ⑭ 기타()

2. 귀하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 ① 예(→**질문 3으로**) ② 아니오(→**질문 2-1로**)

2-1.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는 지금까지 한국을 모두 몇 번 방문하였습니까?

-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이상

4. 귀하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5.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 6, 6-1, 7, 7-1번 질문은 결혼 전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만 응답하시고, 8번은 모두 응답하십시오.

★6. 귀하의 현재 체류자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불법체류 자진신고 필증을 받은 자도 합법체류임)

- ① 합법체류(→**질문 6-1로**) ② 불법체류(→**질문 7로**) ③ 비해당(국적취득자)(→**질문 8로**)

6-1. 귀하의 여권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 ① 해외투자 관련 산업연수 ② 업종단체 추천 산업연수(D3-2~D3-6) ③ 연수취업(E-8) ④ 예술홍행(E-6) ⑤ 단기종업(C-3)
 ⑥ 단기상용(C-2) ⑦ 사증면제(B-1) ⑧ 관광통과(B-20) ⑨ 방문동거(F-1) ⑩ 기타()

★7. 귀하는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 ① 즉시 떠나고 싶다(→**질문 8로**) ② 6개월 ③ 1년 ④ 2년
 ⑤ 3년 ⑥ 5년 ⑦ 5년 이상 ⑧ 기타()

★7-1. (7번이 ②~⑧인 경우) 귀하가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② 모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모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④ 한국의 생활여건이 모국보다 더 좋아서
 ⑤ 한국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⑥ 기타()

8. 귀하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누구 또는 무엇을 통하여 얻었습니까?

- ① 아무도 없었음 ① 부모 ②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③ 친척·친지 ④ 친구 또는 선후배
 ⑤ 서로 알고 지냈던 본국사람 ⑥ 결혼중개업체 ⑦ 언론매체나 영화 등 ⑧ 기타()

B. 본국생활

1. 한국에 오기 전에 귀하가 본 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도시 ② 농·어촌

2. 본국에서 귀하 가족의 생계는 주로 누가 책임졌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하나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본인 ② 부모 ③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④ 친척 ⑤ 기타()

3. 본국에서 귀하 가족의 생활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하는 사항에 하나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아주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다 ②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잘 사는 편이었다 ⑤ 아주 잘 사는 편이었다

III.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A. 결혼과정

※ 여러 번 결혼한 응답자는 한국인과 한 결혼 중 가장 최근의 것을 말씀해 주세요.

1. 귀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 ① 부모·형제의 소개 ② 친척의 소개 ③ 친구·선후배의 소개
④ 행정기관의 주선으로 ⑤ 종교단체를 통하여 ⑥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⑦ 기타() ⑧ 타인의 소개 없이 직접만남(→질문 2로)

1-1. (1번에 ①~⑦번까지 응답한 경우) 귀하 또는 배우자는 상대방을 소개받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어느 누구도 지불하지 않았다 ② 나만 지불하였다 ③ 배우자만 지불하였다
④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하였다 ⑤ 모르겠다

1-2. (1번에 ①~⑦번까지 응답한 경우) 귀하가 결혼 전에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한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였습니까?

- ①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② 별로 일치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일치하였다 ⑤ 모두 일치하였다(→질문 2로)

1-2-1. (1-2번에 ①~④번까지 응답한 경우)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하여 들었던 이야기와 사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의 결혼경험 ② 배우자의 직업 ③ 배우자의 학력 ④ 배우자의 소득
⑤ 배우자의 재산주택 소유 여부 포함 ⑥ 배우자의 건강 또는 장애 ⑦ 배우자의 술담배 습관 ⑧ 배우자의 성격
⑨ 배우자의 자녀수 또는 동거여부 ⑩ 배우자의 부모동거 여부 ⑪ 기타()

2. 귀하는 현 배우자와 언제 결혼하였습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동거 시작일을 말함)

결혼년월: _____년 _____월(당시연령: 만 _____세)

3. 현 배우자와의 결혼은 본국에서의 결혼까지를 포함하여 귀하에게 몇 번째 결혼입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결혼에 해당됨)

-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 이상

3-1. 이번 결혼은 귀하의 배우자에게는 몇 번째 결혼입니까?

-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 이상

4. 귀하가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⑥ 특별한 이유 없음 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 살기 위하여 ②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③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④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⑤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로
⑥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⑦ 한국인으로 귀화하려고 ⑧ 종교적인 이유로
⑨ 기타()

B. 전 배우자 특성

※ 현재 이혼·별거·사별 상태에 있는 분만 응답하시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은 C. 결혼생활로 가시오.

1. 한국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사별(→질문 2로) ② 이혼(→질문 1-1로) ③ 별거(→질문 1-1로)

1-1. 한국인 전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폭력 때문에 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③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때문에
④ 결혼 전 약속과 다른 결혼생활 때문에 ⑤ 배우자 가족과의 성격차이 때문에 ⑥ 생활습관 및 언어차이 때문에
⑦ 기타()

2. 한국인 전 배우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3. 한국인 전 배우자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만 _____세)

4. 한국인 전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 이상

5. 한국인 전 배우자의 이혼·별거·사별 당시 취업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취업(→질문 5-1로) ② 비취업(→질문 6으로)

5-1. 한국인 전 배우자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의회위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⑨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기타() 88 비해당

5-2. 한국인 전 배우자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자영업자, 가족의 농사일을 도우면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함)

- ① 고용주 ② 상용근로자 ③ 임시근로자 ④ 일용근로자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⑧ 비해당(일하지 않음)

6. 한국인 전 배우자는 이혼·별거·사별 당시 장애가 있었습니까?

- ① 장애 있음(→IV. 취업 및 경제생활로) ② 장애 없음(→IV. 취업 및 경제생활로)

C. 결혼생활

※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만 응답하세요.

1. 귀하는 다음 부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하다	대체로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다
1-1. 부부간의 대화·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1-2. 부부사이의 애정·친밀감	①	②	③	④	⑤
1-3. 부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1-4. 부부간 성생활	①	②	③	④	⑤
1-5.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①	②	③	④	⑤
1-6. 배우자의 생활습관(귀가시간·음주·흡연)	①	②	③	④	⑤
1-7. 배우자의 소비생활	①	②	③	④	⑤
1-8.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관람, 운동, 산책, 외식) 정도	①	②	③	④	⑤
1-9.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귀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일을 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내가 혼자	내가 보다 많이	부부 함께 결정	배우자가 보다 많이	배우자 혼자
2-1.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2-2. 투자 및 재산관리	①	②	③	④	⑤
2-3. 주택매매 및 이사	①	②	③	④	⑤
2-4.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①	②	③	④	⑤
2-5. 부부의 취업 및 이직	①	②	③	④	⑤
2-6.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로 배우자와 어느 정도 갈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경제문제	①	②	③	④	⑤
3-2. 자녀문제(교육, 생활양식)	①	②	③	④	⑤
3-3. 가사 및 육아부담	①	②	③	④	⑤
3-4. 부부관계	①	②	③	④	⑤
3-5. 내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3-6.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이해하지 못 한다 ②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이다
 ③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 가능한 정도이다 ④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5. 귀하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주로 쓰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본국어 ④ 기타(_____)

6. 귀하의 배우자 또는 가족은 귀하가 본국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본국 사람을 만난 적 없음 ② 매우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하는 편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좋아하는 편이다 ⑥ 매우 좋아한다 ⑦ 관심 없는 편이다 ⑧ 모르겠다

7. 귀하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기대한 것과 실제 결혼한 후를 비교할 경우 가장 차이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에서의 경제적 상황 ② 배우자와의 관계 ③ 생활환경 ④ 본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⑤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⑥ 본국 가족과의 관계 ⑦ 기타(_____)

8. 귀하가 결혼 후 적응하는데 언제까지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 이상

9. 귀하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어려움 없음 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②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③ 자녀(양육, 교육)문제
 ④ 배우자와 본인가족간의 관계 ⑤ 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⑥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⑦ 본인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 문제 ⑧ 경제적 측면(용돈, 생활비 등) ⑨ 취업관련 어려움
 ⑩ 배우자와 갈등 ⑪ 가사 ⑫ 본인 건강문제 ⑬ 기타(_____)

10. 귀하는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③ 한 달에 한두 차례
 ④ 6개월에 한두 차례 ⑤ 1년에 한두 차례 ⑥ 거의 하지 않는다

11. 귀하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② 배우자와의 생활방식의 차이 ③ 생활비 문제, 경제(돈) 문제
 ④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⑤ 음주(또는 그로 인한 늦은 귀가) ⑥ 부모와의 불화
 ⑦ 나 또는 배우자의 외도 ⑧ 나의 취직문제 ⑨ 나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문제
 ⑩ 기타(_____)

12. 다음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지난 1년간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지난 1년간(경험)						
	전혀 없음	1회	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
12-1.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혔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2. 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3. 돌건을 던지거나 내리쳤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4. 세계 밀거나 벽으로 밀어붙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5.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6.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7.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뺏았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8. 생활비 또는 용돈을 주지 않았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9.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10.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11. 원하지 않는 때에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12. 원하지 않는 빈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 귀하는 배우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① 그런 경험이 없다 ① 배우자를 말로 설득하여 해결한다 ② 싸워서 고친다
 ③ 배우자로부터 일단 피하고 본다 ④ 힘들지만, 그냥 참고 산다 ⑤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⑥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⑦ 상담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찾는다 ⑧ 기타()

14. 귀하는 부부폭력을 상담하기 위해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하셨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부부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Ⅳ. 취업 및 경제생활로 ①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하였다(→질문 14-1-1로)
 ② 상담전화를 이용하였다(→질문 14-1-2로) ③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Ⅳ. 취업 및 경제생활로

14-1. 귀하가 부부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각에 대하여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1-1.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 방문 상담	①	②	③	④	⑤
14-1-2. 상담전화 이용	①	②	③	④	⑤

Ⅳ. 취업 및 경제생활

A. 취업

1. 귀하는 한국에 오기 전에 취업을 하였습니까?

- ① 취업하였다(→질문 1-1로) ② 취업하지 않았다(→질문 1-2로)

1-1. (취업 중이었던 경우) 본국에서의 귀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별첨 <세부직업분류표>를 참조하시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인 직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약 2개 이상의 직업이 있었다면, 가장 주된 직업을 말함)

본국에서의 최종 직업 : _____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① 전문가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88 비해당(일하지 않음)

1-2. (비취업 중이었던 경우)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었습니까?

-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군인 ④ 실업자 ⑤ 기타

2. 귀하는 현재 취업중입니까?(※ 가구원 사항 참조)

① 취업(→**질문 2-1**)

② 비취업(→**질문 20**)

2-1. 귀하의 현재 직종은 무엇입니까? 별첨 <세부직업분류표>를 참조하시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인 직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직업 : _____

⑥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① 전문가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88 비해당(일하지 않음)		

3. 현재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자영업자, 가족의 농사일을 도우면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함**)

① 고용주	② 상용근로자	③ 임시근로자	④ 일용근로자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⑧ 비해당(일하지 않음)

4. 귀하는 어떤 경로로 현재 일하는 직장에 취직하였습니까?

① 공개채용(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② 비공식 브로커의 알선	③ 한국내 사설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④ 친구·친지 등 연고자의 소개로	⑤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소개	⑥ 구인광고
⑦ 기타()	⑧ 비해당(농업, 일하지 않는 경우)	

5.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현 직장 근무시작 년월: _____년 _____월)

※ 6~10번 질문, 16~18번 질문은 결혼 전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만 응답하시고, 나머지 질문은 모두 다 응답하십시오.

★6.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은 한국에서 몇 번째 직장입니까?

① 첫 번째(→**질문 8**)

② 두 번째(→**질문 6-1**)

③ 세 번째 이상(→**질문 6-1**)

★6-1. (귀하가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다면) 직장을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을 옮긴 경우가 여러 번일 경우 가장 최근에 옮긴 이유를 말함)

① 하는 일이 위험해서	② 하는 일이 힘들어서(어려워서)	③ 임금이 낮아서
④ 임금을 주지 않아서(임금체불)	⑤ 직장동료 또는 상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⑥ 해고당해서(→ 질문 7)
⑦ 직장동료 또는 상사의 폭력으로	⑧ 회사의 도산(또는 폐업)으로	⑨ 기타()

★7. (질문 6-1에서 직장을 옮긴 이유가 ⑥ 해고인 경우) 해고당한 이후 얼마 만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습니까?

해고이후 재취업된 기간: _____년 _____개월

★7-1. 귀하가 해고로 인해 비취업 상태이었을 경우 귀댁의 생계비는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① 배우자	② 나의 부모	③ 나의 형제·자매	④ 자녀
⑤ 배우자의 부모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⑦ 기타()	

★7-2. 귀하가 해고로 인해 비취업 상태이었을 경우 귀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⑥ 어려움 없었음	① 자차양육 및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비 포함)
② 식료품비(주식·부식비 등),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③ 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세금)
④ 의료비	⑤ 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융자금 상환)
⑥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등	⑦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⑧ 기타()	

★8.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임금이 높아서	② 작업환경이 좋아서	③ 여가시간이 많아서
④ 동료 및 직장상사가 마음에 들어서	⑤ 친구나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⑥ 배우는 것이 많아서	⑦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⑧ 기타()

★9. 귀하는 일주일 중 초과 근무일수와 야간 근무하는 횟수, 그리고 공공기념일이나 휴일에 일하는 경우는 월 몇 회 정도 됩니까?

초과근무: 주 _____ 일/ 야간 근무: 주 _____ 회/ 공공기념일 또는 휴일 근무: 월 _____ 회

★10. 귀하는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고 있습니까?

- ① 지불받지 않고 있다 ② 지불받고 있다

11. 귀하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주당 평균 근무시간: _____ 시간

12. 귀하의 월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임금으로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을 말함).

월 평균 임금: _____ 만원

12-1. 귀하의 월 평균 임금은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비슷한 모국 출신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입니까?					
① 매우 낮은 편	② 약간 낮은 편	③ 보통	④ 약간 높은 편	⑤ 매우 높은 편	
12-2. 귀하는 월 평균 임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3. 귀하가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③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14. 귀하가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족의 생계유지 ② 자녀교육비 충당 ③ 노후대책
④ 생활비 보충 ⑤ 자기발전 ⑥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⑦ 여가시간 활용 ⑧ 기타(_____)

15. 귀하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려움 없음 ② 자녀양육 부담 ③ 가사 부담
③ 부부간의 공유시간 부족 ④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⑤ 노부모 부양
⑥ 건강상의 이유 ⑦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⑧ 의사소통의 어려움
⑨ 일이 고되고 힘들 ⑩ 배우자 및 다른 식구의 반대 ⑪ 기타(_____)

★16. 귀하는 한국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질문 17로) ② 있음(→질문 16-1로)

★16-1. 임금체불기간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체불기간: _____ 개월/체불금액: _____ 만원	
★16-2. 귀하가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회사가 부도났다 ②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다 ③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였다 ④ 불법채류자라며 위협하였다 ⑤ 기타(_____)	
★16-3. 귀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① 임금주기를 기다렸다 ②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③ 집단적으로 항의하였다 ④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⑤ 당국(노동부, 경찰)에 알렸다 ⑥ 기타(_____)	
★16-4. 임금체불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① 해결되었다 ② 해결되지 않았다	

★17. 귀하는 한국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몇 번이나 당하였습니까?

- ① 전혀 없음(→질문 18로) ② 1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⑥ 6번 이상

★17-1. 귀하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았습니까?(※ 가장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결과를 말함)
 ① 받지 못했다(→질문 17-1-1로) ② 받았다(→질문 17-2로)

★17-1-1. 귀하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모르고 있었다 ② 회사에서 거부했다 ③ 회사와 협상하여 보상금을 받고 포기했다

★17-1-2. 귀하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① 모두 회사에서 부담 ② 일부 회사부담, 일부 본인부담 ③ 회사부담이나 임금에서 공제함 ④ 모두 본인 부담

★17-2. 치료가 끝난 후 어디에 취업하였습니까?
 ① 사고가 난 직장에 다시 취업했다 ②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 ③ 당분간 취업하지 못했다

★18. 다음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 귀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 별로 2가지만 말써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심각한 문제없다	① 장시간 노동	② 열악한 작업 환경	③ 직업병	④ 산업재해
⑤ 임금체불	⑥ 낮은 임금수준	⑦ 한국인 동료와의 갈등	⑧ 한국인 직장상사와의 갈등	
⑨ 사업장에서의 욕설	⑩ 회사에서의 몸 수색	⑪ 여권압류	⑫ 폭행	⑬ 성희롱
⑭ 성폭행	⑮ 차별대우	⑯ 기타(_____)		

19.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 ① 예(→질문 21로) ② 아니오(→B. 경제생활로)

20. (현재 비취업이라면) 귀하는 앞으로 취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질문 20-1로) ② 아니오(→B. 경제생활로)

20-1.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어떤 직종을 갖고 싶으십니까? 별첨 <세부직업분류표>를 참조하시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인 직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희망 직종: _____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① 전문가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_____)	88 비해당(일하지 않음)		

20-2.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① 도움 필요 없다 ① 일자리 알선 ② 자녀양육이나 교육 지원
 ③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④ 한국어 교육 ⑤ 직업교육, 취업지도
 ⑥ 기타(_____)

20-3.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B. 경제생활로)
 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② 자녀양육 때문에 ③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④ 배우자 및 기타 식구의 반대로 ⑤ 한국말이 서툴러서 ⑥ 몸이 아파서
 ⑦ 기타(_____)

21. 귀하에게 한국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사업체(직장, 일터)로 옮기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옮길 의향이 전혀 없다(→B. 경제생활로) ① 대체로 옮기고 싶은 편이다(→질문 21-1로)
 ② 반드시 옮길 것이다(→질문 21-1로) ③ 기타(_____)(→B. 경제생활로)

21-1. 직장을 옮길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② 이전 직장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③ 이전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④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계약상의 기종보다 적게 주었기 때문에
 ⑤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였기 때문에 ⑥ 기타(_____)

21-2. 직장을 옮길 의향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희망하십니까? 별첨 <세부직업분류표>를 참조하시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인 직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희망 직업: _____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④ 전문가	⑦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⑩ 사무종사자
②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⑧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③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⑥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88 비해당(일할 의향 없음)		

B. 경제생활

1.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⑥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⑦ 오피스텔 ⑧ 기타()

2.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귀댁의 소유입니까?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기타()

3.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금액) → 월평균 _____만원

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비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_____만원

5. 귀댁의 부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총 _____만원

5-1. 귀댁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생계비 ② 주거비/주택마련 ③ 교육비 ④ 사업자금
⑤ 의료비 ⑥ 관혼상제비 ⑦ 기타()

6. 현재 귀댁의 생활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어려움 없음 ② 자녀양육 및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비 포함)
③ 식료품비(주식·부식비 등),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④ 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세금) ⑤ 의료비
⑥ 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용자금 상환) ⑦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및 교통비(자동차유지비 등)
⑧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⑨ 기타()

V.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

1. 귀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귀하는 지금까지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 ① 질병이 있음(→질문 2-1로) ② 질병이 없음(→질문 3으로)

2-1.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가 지금까지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하게 아픈 질병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고혈압 ② 고지혈증 ③ 심근경색 ④ 협심증 ⑤ 중풍(뇌졸중) ⑥ 당뇨병
⑦ 갑상선 질환 ⑧ 류마티스 질환 ⑨ 천식 ⑩ 알레르기 ⑪ 위·십이지장 궤양 ⑫ 백혈병
⑬ 면역질환 ⑭ 빈혈 ⑮ 백내장 ⑯ 간질 ⑰ 정신분열증 ⑱ 우울증
⑲ 암 ⑳ 자궁근종 (21) 유방 양성종양 (22) 난소 낭종(물혹) (23) 기타()

2-2.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질병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가 됩니까?

- ① 상당히 방해가 됨 ② 약간 방해됨 ③ 전혀 방해되지 않음

2-3.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가 질병을 앓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2-4.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는 질병의 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질문 2-41로) ② 없다(→질문 3으로)
- 2-41.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의료비를 주로 어떻게 부담하셨습니까?
- ① 전액 건강보험 적용 ② 전액 본인 부담 ③ 건강보험+본인 부담
- ④ 다른 사람의 도움 ⑤ 무료 진료기관 이용 ⑥ 기타()

2-4-2.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치료 중임 ② 치료받지 않고 있음

3. 고객님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는 다음 중 어떤 형태입니까? 귀하: _____/배우자: _____

- ① 직장가입 건강보험 ② 지역가입 건강보험 ③ 의료급여 1종
④ 의료급여 2종 ⑤ 어떤 것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질문 3-1로)

3-1. (어떤 것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 ②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③ 건강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④ 기타()

4.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중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질문 41로) ② 치료를 포기한 적 없다(→질문 5로)

4-1.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를 다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치료비가 없어서 ②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③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서
④ 의뢰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⑤ 식구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해도 나를 것 같지 않아서
⑦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서 ⑧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⑩ 기타()

5. 귀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체납한 적이 있음(→질문 5-1로) ② 체납한 적 없음 ⑧ 비해당(미가입자)

5-1.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지불할 수 없었다 ② 국민건강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
- ③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몰랐다 ④ 기타()

6.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아플 때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병원·의원 ②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③ 보건소
④ 병원·의원 처방 없이 약국에 감 ⑤ 기타()

7.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힘든 점 없다 ① 교통편이 좋지 않아 문제가 있다 ②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하다
③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④ 언어소통을 하지 못하여 치료에 어려움 있다 ⑤ 절차가 복잡하다
⑥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 힘들다 ⑦ 기타()

8.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건강검진을 받았음(→Ⅵ. 가족부양 및 자녀출산·양육으로) ②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음(→질문 8-1로)

8-1.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과거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②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③ 시간이 없기 때문에 ④ 경제적 이유때문에
⑤ 진단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⑥ 진단결과가 두려워서 ⑦ 발견해도 적당한 치료방법이 없어서
⑧ 기타()

VI. 가족부양 및 자녀출산·양육

A. 가족부양

1. 귀하의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① 부모 모두 생존 ② 부 생존, 모 사망 ③ 부 사망, 모 생존 ④ 부모 모두 사망

2. 배우자의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십니까?

- ① 모두 생존 ② 아버지만 생존 ③ 어머니만 생존 ④ 모두 사망

2-1. 살아계신 배우자의 부모님과 현재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시부모(장인·장모) 모두 동거 ② 시아버지(장인)만 동거 ③ 시어머니(장모)만 동거
④ 시부모(장인·장모) 모두 비동거 ⑧ 비해당(배우자 부모 모두 사망)

3. 귀하 또는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귀하가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별 다른 어려움 없음 ② 노인 돌보기(식사, 세탁, 청소 등) ③ 노인의 일반적 건강
④ 간병 ④ 부양비(용돈, 생활비 등) ⑤ 의료비
⑥ 여가활동 ⑦ 언어가 통하지 않음 ⑧ 기타(_____)
⑨ 비해당(부모·배우자 부모 모두 사망 비동거)

4. 지난 1년 간 귀하 또는 배우자 가족 중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에게 도움을 준 사람과 귀하가 도움을 준 사람을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 주십시오 단,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부모	③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친척	⑤ 나의 부모	
⑥ 나의 형제·자매	⑦ 기타 친척	⑧ 자녀
		⑨ 기타 (_____)
구분	4-1. 도움을 받은 여부 및 도움 준 사람	4-2. 도움을 준 여부 및 도움을 받은 사람
① 신체적 지원 ¹⁾	① 없음 ② 있음 →(누구:_____)	① 없음 ② 있음 →(누구:_____)
② 정서적 지원 ²⁾	① 없음 ② 있음 →(누구:_____)	① 없음 ② 있음 →(누구:_____)
③ 경제적 지원 ³⁾	① 없음 ② 있음 →(누구:_____)	① 없음 ② 있음 →(누구:_____)

주: 1) 신체적 지원 간병·수발, 집안청소·세탁, 시장보기·식사준비, 손자녀돌보기 등임.

2) 정서적 지원 대화상대(말벗되기), 중대결정시의논상대,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조언 등임.

3) 경제적 지원 생계비 지원, 일시적으로 큰 지출에의 지원 용돈, 기타 물품 지원 등임

5. 귀하는 지난 1년간 본국에 있는 가족과 배우자 가족을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본국가족_____, 배우자 가족:_____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2~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이하 ⑨ 전혀 만나지 않았음 88 비해당(동거)

6. 귀하는 지난 1년간 본국에 있는 가족과 배우자 가족에게 연락(전화통화, 편지, e-mail, 인터넷 채팅)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본국가족:_____, 배우자 가족:_____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2~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하지 않았음 88 비해당(동거)

7. 귀하는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계십니까?

- ① 예(→질문 7-1로) ② 아니오(→B. 돌봄실태로)

7-1.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연간 송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송금액 _____ 만원
7-2. 본국에 있는 귀하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⑥ 송금하는 줄 모름

B. 돌봄실태

1. 귀하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질문 2로**) ② 아니오(→C. **자녀출산·양육으로**)
2.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한 명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본인의 아버지 ② 본인의 어머니 ③ 본인 ④ 본인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아버지
 ⑥ 배우자의 어머니 ⑦ 형제·자매 ⑧ 조부모 ⑨ 자녀 ⑩ 기타(_____)
3.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현재 몇 살입니까? _____ 세
4.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모든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③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
5.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6.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본인 아버지 ⑤ 본인 어머니
 ⑥ 형제·자매 ⑦ 조부모 ⑧ 배우자의 아버지 ⑨ 배우자의 어머니 ⑩ 기타 가족원
 ⑪ 파출부 또는 간병인 ⑫ 기타(_____)

6-1. (6번에 ①~⑫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을 1주일에 총 몇 시간 돌보십니까? _____ 시간/1주일
6-2. (6번에 ①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나 취업활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예(→ 질문 6-2-1로) ② 아니오(→ 질문 7로) ③ 비해당(일을 하지 않음)(→ 질문 7로)
6-2-1. 귀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근무시간 단축 ② 조퇴 또는 결근 ③ 전직 ④ 휴직 ⑤ 퇴직 ⑥ 재택근무로 바꾸었다 ⑦ 기타(_____)

7.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없음(→**질문 8로**) ② 주간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④ 병원 ⑤ 노인복지관
 ⑥ 장애인복지관 ⑦ 종합사회복지관 ⑧ 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⑨ 기타(_____)

7-1. 그 시설을 1주일에 며칠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__ 일/1주일
7-2. 그 시설을 1일에 몇 시간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__ 시간/1일

8.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한달에 평균 얼마쯤 됩니까?(※ 환자를 위하여 가족이 사용하는 총비용을 말함) _____ 원/1개월
9.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귀댁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① 매우 부담이 된다 ② 부담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C. 자녀출산·양육

1. 귀하와 현 한국인 배우자(동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2. 현 한국인 배우자(동거자)가 귀하와 결혼(동거)하기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모두 몇 명입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 0명으로 표시**)
 _____명

2-1. 그 자녀(들)는 현재 귀하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함께 살면 ①번에 답하십시오)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따로 살지만 한국에 있다 ③ 본국에 살고 있다 ④ 제3국에 살고 있다

3. 귀하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어려움이 없었음 ①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부족 ②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③ 출산비용 부담 ④ 건강문제
 ⑤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부족함 ⑥ 산후조리 ⑦ 기타(_____) ⑧ 비해당(임신·출산경험 없음)

4. 귀하 또는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임신·출산(할) 경우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음 ① 출산 후 본인의 건강 상담 ② 아이의 건강 상담 ③ 산후조리
 ④ 경제적 지원 ⑤ 출산 돌보미 지원 ⑥ 산후 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⑦ 본국 음식 ⑧ 본국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 ⑨ 기타(_____)

※ **현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5번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Ⅷ.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지**
지로 가시오.

5. 귀하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비해당
5-1. 자녀와의 친밀함	①	②	③	④	⑤	⑥
5-2. 자녀와의 대화·의사소통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5-3. 부모-자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5-4. 자녀들이 귀하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성적, 취업)	①	②	③	④	⑤	⑥
5-5.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운동, 산책, 외식)	①	②	③	④	⑤	⑥
5-6. 자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별 두 가지만 표시하여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 ① 자녀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②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함
 ③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 ④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⑤ 아이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함 ⑥ 아이의 건강문제 ⑦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
 ⑧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⑨ 자녀와의 갈등(반항, 작은 다툼) ⑩ 학업지도
 ⑪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공격성, 산만함, 거짓말, 도벽 등) ⑫ 기타(_____)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7번에서 '⑩ 돌보는 사람이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취학자녀가 있으면 질문 8번으로, 취학자녀가 없으면 질문 9번으로 가시오).**

7. 귀하 자녀는 낮에 주로 누가 돌보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경우는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말함**)

- ① 돌보는 사람이 없음 ①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질문 7-3으로**) ② 친구(→**질문 7-3으로**)
 ③ 위탁모·파출부·도우미(→**질문 7-3으로**) ④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질문 7-1로**) ⑤ 유치원(→**질문 7-1로**)
 ⑥ 사설 학원(→**질문 7-1로**) ⑦ 한글교실(→**질문 7-1로**) ⑧ 기타(_____) (→**질문 7-3으로**)

7-1. (7번에서 ②, ③, ④, ⑤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 자녀는 그 시설을 1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합니까?
 _____일/1주일

7-2. (7번에서 ②, ③, ④, ⑤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 자녀는 1일 평균 몇 시간을 이용합니까?

_____시간/1일

7-3. (7번에서 ①, ③~⑧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남보다는 가족 또는 친구가 더 잘 돌볼 것 같아서 ② 가까운 곳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③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④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⑥ 비용부담 때문에
 ⑦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으므로 ⑧ 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서 ⑨ 장애보육이 필요하나 시설이 없어서
 ⑩ 내가 돌보면 되므로 ⑪ 기타() 88 비해당(보육시설을 보내는 경우)

※ 취학 자녀(초등학교 1~6학년까지 대상)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8. 귀하 자녀는 방과 후에 주로 누가 돌보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돌보는 대상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랜 시간 돌보는 대상을 말함**)

- ① 아이 혼자 자냄 ① 본인 또는 배우자(→**질문 9로**) ② 기타 가족 ③ 사설 방과후 프로그램
 ④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⑤ 사설학원 ⑥ 파출부·도우미 ⑦ 본인의 모국인 친구 ⑧ 기타()

8-1. 귀하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방과 후에 돌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생업에 바빠서 ② 학습지도를 못해서 ③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④ 자녀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⑤ 기타()

※ 미취학자녀,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응답하십시오.

9. 귀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양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자녀 양육비에는 보육시설 이용비, 도우미 이용비, 학원비, 교육관련 비용, 간식비, 분유 및 기저귀 구입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 총 비용을 말함)

원

10. 귀하 자녀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질문 10-1로**) ② 별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질문 10-1로**)
 ③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질문 11로**) ④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질문 11로**)

10-1. (적응을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 ① 교사와의 관계 ② 또래친구와의 관계 ③ 교육방식 ④ 학업내용
 ⑤ 많은 준비물 ⑥ 교육기관의 규칙과 지시 ⑦ 의사소통 ⑧ 기타()

11. 귀하의 자녀는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질문 11-1로**) ② 아니오(→**VII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지지**)

11-1.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특별한 이유 없음 ①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②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③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④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어서 ⑤ 기타()

VII.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지지

A. 가족관계

1. 귀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중에서 누구와 가장 힘든 관계입니까?

- ① 힘든 사람 없음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아버지 ③ 배우자의 어머니
 ④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배우자의 기타 가족 ⑥ 나의 자녀 ⑦ 나의 부모
 ⑧ 나의 형제·자매 ⑨ 배우자의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⑩ 기타()

2. 귀하가 배우자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보기>에서 골라 각각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2-1. 배우자의 부모: _____

2-2. 배우자의 형제·자매: _____

① 별 다른 어려움 없음	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	②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름
③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이 다름	④ 종교가 다름	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음
⑥ 기타()	⑦ 배우자 부모님 모두 사망/배우자의 형제·자매 없음	

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하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또는 기타 가족원으로부터 다음 중 경험한 행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험한 행동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경험 없음 ① 폭언 및 모욕적인 말 ② 때리려고 위협함 ③ 물건을 집어 던짐
 ④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 ⑤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빼앗음 ⑥ 생활비 또는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음
 ⑦ 응답자의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함 ⑧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함 ⑨ 기타()

3-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질문 3>에서 응답한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경험한 행동이 1가지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이 경험한 행동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없었음 ① 거의 매일 ② 주 1~2회 ③ 월 1~2회
 ④ 6개월에 1~2회 ⑤ 년 1~2회 ⑥ 기타()

3-2. 지난 1년간 위의 행동(3번 행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① 배우자 아버지 ② 배우자 어머니 ③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조부모 ⑥ 배우자의 기타 친척 ⑦ 나의 부모 ⑧ 나의 형제·자매
 ⑨ 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⑩ 나의 조부모 ⑪ 나의 기타 친척 ⑫ 기타()

3-3. 위의 행동(3번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특별한 이유 없음 ① 성격 차이 ② 생활방식의 차이
 ③ 생활비 문제, 경제(돈) 문제 ④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⑤ 음주(또는 그로 인한 늦은 귀가)
 ⑥ 부모와의 불화 ⑦ 나 또는 가해자의 외도 ⑧ 나의 취적문제
 ⑨ 나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문제 ⑩ 기타()

4. 귀하는 배우자의 가족원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① 그런 경험이 없다 ① 말로 설득하여 해결한다 ② 싸워서 고친다
 ③ 일단 피하고 본다 ④ 힘들지만, 그냥 참고 산다 ⑤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⑥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⑦ 상담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찾는다 ⑧ 기타()

5. 귀하는 가족원의 폭력을 상담하기 위해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하셨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가족원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B. 사회심리적 상태로 ①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하였다(→질문 5-1-1로)
 ② 상담전화를 이용하였다(→질문 5-1-2로) ③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B. 사회심리적 상태로)

5-1. 귀하가 가족원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각에 대하여 bitte 집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5-1-1.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상담소 방문 상담	①	②	③	④	⑤
5-1-2. 상담전화 이용	①	②	③	④	⑤

B. 사회심리적 상태

1. 귀하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1.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때때로 장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전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험하셨습니다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적게 경험한 편이다	많이 경험한 편이다	매우 많이 경험한 편이다	비해당
2-1.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2-2. 자녀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3. 배우자 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4. 내 부모 또는 가족 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5. 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 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6. 본인이 가족에게 이해 받지 못한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7. 가족 내에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8. 직장에서의 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9. 직장 및 업무상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한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10. 직장과 가정 생활 병행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C. 사회적지지

1. 한국에서 귀하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이웃·동료·기타는 몇 명입니까?

- 1-1. 친구 ① 없음 ② 있음(총 _____명/본국 _____명/한국인 _____명/제3국 _____명)
 1-2. 이웃 ① 없음 ② 있음(_____명)
 1-3. 직장동료 ① 없음 ② 있음(_____명)
 1-4. 동호회·모임·교회 ① 없음 ② 있음(_____명)

2. 지난 1년간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동료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편지 등으로 상호연락)을 하거나 만나십니까?(※ 가장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말함)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2~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음 88 비해당(동거)

3.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다까?

모임의 종류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2달에 1회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3-1. 나의 가족·친척 모임	①	②	③	④	⑤	
3-2.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①	②	③	④	⑤	
3-3.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①	②	③	④	⑤	
3-4. 본국인 친구·단체 모임	①	②	③	④	⑤	
3-5. 배우자 친구·단체 모임	①	②	③	④	⑤	

4. 3번의 모임이나 단체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모임이나 단체는 어느 것인지 해당하는 번호를 쓰십시오
 _____번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두 사람만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십시오

보기	① 없음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 ⑤ 나의 부모 ⑥ 나의 형제자매·친척 ⑦ 자녀(며느리, 사위) ⑧ 한국인 친구 ⑨ 본국인 친구 ⑩ 제3국인 친구 ⑪ 이웃 ⑫ 직장동료 ⑬ 외국인/이민자 지원단체 ⑭ 종교기관 또는 성직자 ⑮ 학교 또는 교사 ⑯ 결혼중개업체 ⑰ 언론(신문, TV 등) ⑱ 인터넷 ⑲ 상담원(상담소·상담전화) ⑳ 기타(_____)

구분	첫째	둘째
5-1.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 일을 부탁할 경우		
5-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3. 부부간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5-4.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VIII. 가족기능

※ 귀하께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기능	1. 우리가족은 양질의 노동력을 사회에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가족은 소득에 맞추어 균형적인 소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가족은 의생활이 잘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부양기능	4. 우리가족은 식생활이 잘 해결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가족은 주거생활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가족은 가족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정서적부양기능	7. 우리가족은 가족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가족은 가족원개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원의 신체적 보호는 적절히 수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신체적부양기능	10. 건강이 나쁜 가족원에게 적절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체적으로 불편한 가족원을 다른 가족원이 잘 돌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미성년 자녀의 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어 왔다(제공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13.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성취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가정에서 교우관계, 애국심 등 사회화 교육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가족은 월1회이상 외식(식사, 음주)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휴식기능	16. 우리가족은 월1회이상 운동(스포츠 등산 나들이 등)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가족은 월1회이상 집안을 함께 가운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가족은 재충전할 충분한 시간 및 공간적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보장기능	19. 우리가족은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가족은 친·인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가족은 고통사이에 축의금, 조의금을 잘 부담한다	①	②	③	④	⑤

IX. 가치관 및 인식

A. 혼인 가치관 및 인식

1. 귀하께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③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2.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성격 ② 경제력 ③ 자라온 환경 ④ 외모·성적인 매력 ⑤ 기타 ()

3.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 ① 결혼이란 부부개인의 관계이다 ②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

4. 귀하께서는 이혼에 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는 편이십니까?

- ①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질문 4-1**)
 ②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하는 편이 낫다(→**질문 5**)
 ③ 잘 모르겠다(→**질문 5**)

4-1.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자녀가 있기 때문에 ②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③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상실이 두려워서 ④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려워서
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⑥ 기타()

5. 귀하께서는 재혼에 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는 편이십니까?

- ① 재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재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③ 재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잘 모르겠다

B. 가족 가치관

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부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편도 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녀를 돌볼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친정 보다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인은 한국 명절과 더불어 외국인 가족원의 모국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라면 당연히 한국요리를 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본국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외국인 가족원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가족간의 화합 ② 가족의 경제적 안정 ③ 가족들의 건강 ④ 가족들의 성공, 성취
⑤ 가정 내 질서와 권위 ⑥ 기타 ()

C. 자녀 가치관 및 인식

1.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2.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명

3. 만약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아이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자아이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자아이(→질문 3-1로) ② 여자아이(→질문 4로) ③ 상관없다(→질문 4로)

3-1. 왜 남자아이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문(대)을 잇기 위해 ② 노후생활을 위해 ③ 배우자가 원하므로 ④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돈돈해서) ⑤ 기타()

4.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자식은 부모와 다른 그들만의 삶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자식의 진로는 자식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자식의 결혼상태는 자식이 결정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는 부모로서 자녀양육(교육, 정서, 경제)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②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③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④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⑤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 ⑥ 기타()
⑦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D. 사회적 가치관 및 인식

- 귀하는 절친한 친구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② 반대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찬성할 것이다 ⑤ 매우 찬성할 것이다
- 귀하께서는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친절함)가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에게 약간 친절한 편이다
 ③ 외국인에게 상당히 친절한 편이다 ④ 외국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차별한다 ② 대체로 차별하는 편이다
 ③ 별로 차별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가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차별한다 ② 대체로 차별하는 편이다
 ③ 별로 차별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⑤ 학교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가 없다
-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우대를 받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 특별우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 ② 특별우대를 받은 경험이 종종 있다
 ③ 특별우대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④ 특별우대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
- 다음 질문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귀하께서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귀하 본국의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대한민국 국민 ② 나의 본국 국민 ③ 둘 다
 - 귀하께서는 자신이 한국인 배우자와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같은 민족 ② 다른 민족 ③ 둘 다
 -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귀하 본국의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만약, 귀하께 자녀가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 ② 나의 본국 국민 ③ 둘 다
 -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가 한국인 배우자와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만약, 귀하께 자녀가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같은 민족 ② 다른 민족 ③ 둘 다

X. 복지실태 및 욕구

A. 복지실태 및 만족도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쓰십시오.

구분	이용여부		도움정도						이용의향	
	이용 한적 없음	이용함	전혀 도움 안됨다	별로 도움 안됨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도움이 됨다	매우 도움이 됨다	비해당	이용 의향 없음	이용 의향 있음
1-1. 한국어교육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2. 한국요리 강습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3. 한국문화 관련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4.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5.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구분	이용여부		도움정도						이용의향	
	이용 한적 없음	이용함	전혀 도움 안된다	별로 도움 안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비해당	이용 의향 없음	이용 의향 있음
1-6.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7. 법률상담 및 지원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8. 의료상담 및 지원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9. 컴퓨터정보화 교육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10.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11. 생활정보 제공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1-12.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	①	①	②	③	④	⑤	⑧	○	①

2. 귀하는 현재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쓰십시오

구분	안다	모른다
2-1. 정부가 빈곤층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①	②
2-2. 정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빈곤층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①	②
2-3. 여성긴급전화(1366번)에서 가정폭력 등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한다	①	②
2-4. 경찰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다	①	②
2-5. 보건소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①	②
2-6. 기초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2-7.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	①	②

3.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신청 여부		혜택 여부		도움정도			
	신청	미신청	혜택 받음	혜택 받지 못함	전혀 도움 안된다	별로 도움 안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3-2. 의료보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4. 다음은 우리나라 4대 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가입 여부		도움정도					
	가입	미가입	전혀 도움 안된다	별로 도움 안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비해당
4-1. 건강보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4-2. 국민연금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4-3. 고용보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4-4. 산재보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⑧

B. 복지욕구

1. 귀하는 다음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한국어교육 ② 한국요리 강습 ③ 한국문화 관련 ④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⑤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⑥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⑦ 법률상담 및 지원 ⑧ 의료상담 및 지원
⑨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 ⑩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⑪ 일자리 알선 ⑫ 생활정보 제공
⑬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⑭ 공공부조서비스 제공 ⑮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⑯ 기타(_____)

2. 귀하가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언어훈련(한글교육, 통역) ② 건강·위생상식 ③ 유아상식 ④ 의료·간호기능 ⑤ 직업교육, 취업훈련 ⑥ 생활기능(요리, 미용)
⑦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 ⑧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관련법규 설명 ⑨ 채류·영주·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리법 교육
⑩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⑪ 기타(_____)

3. 귀하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②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③ 전염병, 질병예방 지식 제공 ④ 출산전·후 지도
 ⑤ 피임방법 소개 ⑥ 유아건강검사 제공 ⑦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⑧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⑨ 기타(_____)
4. 귀하가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② 교통편 ③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④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⑤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보육시설 ⑥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
 ⑦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⑧ 학습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방문식 교육 서비스 제공
 ⑨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⑩ 통역서비스 제공 ⑪ 비용 제공 ⑫ 기타(_____)
5. 이민자로서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이 필요함
 ②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 관련 자료가 필요함
 ③ 배우자가 나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대상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음
 ④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부모(특히 어머니) 모임이 있으면 좋겠음
 ⑤ 기타(_____)
6. 다음은 (장애)자녀 및 노인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필요 없음 ① 다양한 시설 제공 ② 비용 지원 확대 ③ 물품지원 ④ 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⑤ 남녀근로자 휴가제도 강화 ⑥ 인력과견서비스(가정교사, 전문간병인) ⑦ 돌봄수당지급 ⑧ 가족원을 위한 일시 휴식지원서비스
 ⑨ 정보제공 서비스 ⑩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⑪ 의료용품 대여서비스 ⑫ 돌봄제공자 상담서비스 제공
 ⑬ 기타(_____) ⑬ 비해당(돌봄가족원 없음)
7. 귀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캠페인 등 홍보·계몽사업 ② 외국인가족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 ③ 다문화 시민교육의 확산사업
 ④ 외국인 가족 차별 법·제도 개선 ⑤ 기타(_____)
8.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시후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보호시설 확충 ②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③ 상담서비스 제공 ④ 사회적 인식개선
 ⑤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⑥ 주거시설 마련 ⑦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⑧ 교육서비스 제공
 ⑨ 자조모임 지원 ⑩ 대안학교 제공 ⑪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
 ⑫ 기타(_____)
9.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입국대기 기간 단축 ②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③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 ④ 체류기간 연장
 ⑤ 작업환경 개선 ⑥ 외국인 고용업체의 감독 강화 ⑦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단속 ⑧ 산재보험 보장
 ⑨ 산업연수생을 합법 근로자로 전환 ⑩ 기타(_____) ⑪ 모르겠음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8년 12월)

응답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 문화 가 족 실태 조 사 (한 국 인 배 우 자 용)

지역번호	기관번호	조사대상자 일련번호	고유 번호	조사표 종류
			2	

응답자 가구원 번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통계 절차에 따라 귀책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다문화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및 가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김 승 권

*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담당자 : 김유경 팀장, 02)380-8235, kyk@kihasa.re.kr 팩 스 : 02) 384-3084

조 애 저 부 연구위원, 02)380-8220, ajcho@kihasa.re.kr

이주연 선임연구원, 02)380-8252, juyeon@kihasa.re.kr, 양혜인 연구원, 02)380-8112, rainbow2718@hanmail.net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방문지도사/통역사 성명		(인)	지역 구분 ① 도시 ② 농·어촌 ☐ 조사완료 ☐ 미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국인배우자 조사에서 I. 가구원 사항을 응답한 경우는 1~8번은 응답하지 마시고, 9. 조사대상 구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I. 가구원 사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총 가구원 수: _____명

번호	1. 가구원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	4. 연령(생년월일)	5.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6. 취업여부	7. 혼인상태	8. 장애유무	9. 조사대상 구분	
가구원 번호	가구주부터 기록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먹고 자는 사람은 포함)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가구주의 부모 ⑤ 배우자의 부모 ⑥ 가구주의 형제(제)대 ⑦ 배우자의 형제(제)대 ⑧ 기타 친척 ⑨ 비활연	① 남 ② 여	사실상의 연령 확인	④ 무학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 이상 ⑥ 미취학	① 재학·휴학 ② 중퇴 ③ 졸업 ④ 졸업/재수중 ⑤ 비해당	(____학년) ① 취업중 ② 비취업 ③ 비해당 (만14세 이하)	※ 사실상의 결혼상태를 답함 (취업으로 인한 별거는 동거로 간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비해당 (만14세 이하)	① 장애 있음 ② 장애 없음	※ 다음 해당 번호에 √ 표를 하시오. 9-1. 가구원 수 * 총 가구원 수: _____명 * 남자가구원수: _____명 * 여자가구원수: _____명 9-2. 가구유형 ① 독신가구 ② 부부로만 구성 ③ 부부+자녀 ④ 원부모+자녀 ⑤ 3세대 가구 ⑥ 형제(제)매로만 구성 ⑦ 조부모+손자녀 ⑧ 비활연 ⑨ 기타(_____) 9-3. 배우자의 결혼 전 가장 주된 입국목적 ① 결혼 ② 취업 ③ 친척, 친지방문 ④ 본국에서 대·거년 회사업무 ⑤ 개인사업 ⑥ 유학 ⑦ 기타(_____) ※ 배우자의 결혼 전 가장 주된 입국목적에 ①, ③~⑦인 경우는 <결혼이민자가족> 대상에, ②인 경우는 <외국인노동자가족> 대상에 표시 9-4. 조사대상 구분 ① 결혼이민자가족 ② 외국인노동자가족
01		01(가구주)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02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03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04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05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06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07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08				만나아 _____세 _____년 _____월(양, 음)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적으시거나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II. 응답자 특성

A. 국적 및 입국사항

1. 귀하 배우자의 본국 국적은 어디입니까?

- ① 중국 ② 중국(한민족) ③ 대만 ④ 인도네시아 ⑤ 일본
⑥ 베트남 ⑦ 필리핀 ⑧ 태국 ⑨ 카자흐스탄 ⑩ 키르기스스탄
⑪ 우즈베키스탄 ⑫ 러시아 ⑬ 몽골 ⑭ 기타 ()

2. 귀하 배우자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 ① 예(→III.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② 아니오(→질문 2-1로)

2-1. 귀하 배우자는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3번 질문은 결혼 전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만 응답하십시오

3. 귀하 배우자의 현재 체류자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불법체류 자진신고 필증을 받은 자도 합법체류인)

- ① 합법체류 ② 불법체류 ③ 비해당(국적취득자)

III.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A. 결혼과정

※ 여러 번 결혼한 응답자는 외국인과 한 결혼 중 가장 최근의 것을 말씀해 주세요.

1. 귀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 ① 부모·형제의 소개 ② 친척의 소개 ③ 친구·선호배의 소개
④ 행정기관의 주선으로 ⑤ 종교단체를 통하여 ⑥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⑦ 기타() ⑧ 타인의 소개 없이 직접만남(→질문 2로)

1-1. (1번에 ①~⑦번까지 응답한 경우) 귀하 또는 귀하배우자는 상대방을 소개받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어느 누구도 지불하지 않았다 ② 다만 지불하였다 ③ 배우자만 지불하였다
④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하였다 ⑤ 모르겠다

1-2. (1번에 ①~⑦번까지 응답한 경우) 귀하가 결혼 전에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한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였습니까?

- ①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② 별로 일치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일치하였다 ⑤ 모두 일치하였다(→질문 2로)

1-2-1. (1-2번에 ①~④번까지 응답한 경우)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하여 들었던 이야기와 사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의 결혼경험 ② 배우자의 직업 ③ 배우자의 학력 ④ 배우자의 소득
⑤ 배우자의 재산주관 소유 여부 포함 ⑥ 배우자의 건강 또는 장애 ⑦ 배우자의 술담배 습관 ⑧ 배우자의 성격
⑨ 배우자의 자녀수 또는 동거여부 ⑩ 배우자의 부모동거 여부 ⑪ 기타()

2. 귀하는 현 배우자와 언제 결혼하였습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동거 시작일을 말함)

결혼년월: _____년 _____월(당시연령: 만 _____세)

3. 현 배우자와의 결혼은 귀하에게 몇 번째 결혼입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결혼에 해당됨)

-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 이상

3-1. 이번 결혼은 귀하의 배우자에게는 몇 번째 결혼입니까?

-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 이상

4. 귀하가 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특별한 이유 없음 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권유해서 ② 결혼중매업자의 권유로
③ 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과 결혼한 친구 또는 아는 사람들이 권유해서 ④ 순종적이고 내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⑤ 우리나라 사람과 외도 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⑥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대해서 친근감이 느껴져서
⑦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⑧ 종교적인 이유로 ⑨ 기타()

B. 결혼생활

※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1. 귀하는 다음 부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하다	대체로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다
1-1. 부부간의 대화·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1-2. 부부사이의 애정·친밀감	①	②	③	④	⑤
1-3. 부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1-4. 부부간 성생활	①	②	③	④	⑤
1-5.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①	②	③	④	⑤
1-6. 배우자의 생활습관(취가시간·음주·흡연)	①	②	③	④	⑤
1-7. 배우자의 소비생활	①	②	③	④	⑤
1-8.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관람, 운동, 산책, 외식) 정도	①	②	③	④	⑤
1-9.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귀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일을 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내가 혼자	내가 보다 많이	부부 함께 결정	배우자가 보다 많이	배우자 혼자
2-1.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2-2. 투자 및 재산관리	①	②	③	④	⑤
2-3. 주택매매 및 이사	①	②	③	④	⑤
2-4.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①	②	③	④	⑤
2-5. 부부의 취업 및 이직	①	②	③	④	⑤
2-6.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로 배우자와 어느 정도 갈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경제문제	①	②	③	④	⑤
3-2. 자녀문제(교육, 생활방식)	①	②	③	④	⑤
3-3. 가사 및 육아부담	①	②	③	④	⑤
3-4. 부부관계	①	②	③	④	⑤
3-5. 내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3-6.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외국인 배우자와 대화할 때 주로 쓰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배우자 국가의 언어 ④ 기타()

5. 귀하의 배우자 나라의 언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이해하지 못 한다 ②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이다
③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다 ④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6.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말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이해하지 못 한다 ②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이다
③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다 ④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7. 귀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본국 사람을 만난 적 없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약간 싫어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아하는 편이다 ⑤ 매우 좋아한다 ⑥ 관심 없는 편이다 ⑦ 모르겠다

8. 귀하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기대한 것과 실제 결혼한 후를 비교할 경우 가장 차이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에서의 경제적 상황 ② 배우자와의 관계 ③ 생활환경 ④ 한국과 배우자 국가의 문화 차이
⑤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⑥ 본국 가족과의 관계 ⑦ 기타(_____)

9. 귀하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적응하는데 언제까지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 이상

10. 귀하가 외국인인과 결혼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어려움 없음 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②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③ 자녀(양육, 교육)문제
④ 배우자와 본인가족간의 관계 ⑤ 본인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 ⑥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⑦ 본인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 문제 ⑧ 경제적 측면(용돈, 생활비 등) ⑨ 취업관련 어려움
⑩ 배우자와 갈등 ⑪ 가사 ⑫ 본인 건강문제 ⑬ 기타(_____)

11. 귀하는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③ 한 달에 한두 차례
④ 6개월에 한두 차례 ⑤ 1년에 한두 차례 ⑥ 거의 하지 않는다

12. 귀하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② 배우자와의 생활방식의 차이 ③ 생활비 문제, 경제(돈) 문제
④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⑤ 음주(또는 그로 인한 늦은 귀가) ⑥ 부모와의 불화
⑦ 나 또는 배우자의 외도 ⑧ 나의 취직문제 ⑨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송금문제
⑩ 기타(_____)

13. 다음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지난 1년간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지난 1년간(경험)						
	전혀 없음	1회	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
13-1. 모욕적인 말을 하여 괴롭혔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2. 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3. 물건들 던지거나 내리쳤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4. 세계 밀거나 벽으로 밀어붙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5.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6.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7. 생활비 또는 용돈을 주지 않았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8.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9. 원하지 않는 때에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10. 원하지 않는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4. 귀하는 배우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① 그런 경향이 없다 ① 배우자를 말로 설득하여 해결한다 ② 싸워서 고친다
③ 배우자로부터 일단 피하고 본다 ④ 힘들지만, 그냥 참고 산다 ⑤ 벌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⑥ 상담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찾는다 ⑦ 기타(_____)

15. 귀하는 부부간의 불화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을 한 분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나의 가족·친척 ② 배우자의 가족 친척 ③ 친구·친지 ④ 상담원
 ⑤ 종교단체 성직자 ⑥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⑦ 기타() ⑧ 도움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
16. 귀하는 부부폭력을 상담하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하셨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부부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IV. 취업 및 경제생활로) ① 상담소를 방문하였다(→질문 16-1-1로)
 ② 상담전화를 이용하였다(→질문 16-1-2로) ③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IV. 취업 및 경제생활로)
- 16-1. 귀하가 부부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각에 대하여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1-1. 상담소 방문 상담	①	②	③	④	⑤
16-1-2. 상담전화 이용	①	②	③	④	⑤

IV. 취업 및 경제생활

A. 취업

1. 귀하 가족의 생계는 주로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주된 사람 한 사람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응답자 본인 ② 외국인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⑤ 친척 ⑥ 기타()
2.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취업중입니까?(※ 외국인배우자조사: 가구원 사항 참조)
- ① 취업(→질문 2-1로) ② 비취업(→질문 3으로)
- 2-1. 귀하는 배우자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②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③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④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3. 귀하는 현재 취업중입니까?(※ 외국인배우자조사: 가구원 사항 참조)
- ① 취업(→질문 3-1로) ② 비취업(→질문 11로)
- 3-1. 귀하의 현재 직종은 무엇입니까? 별첨 <세부직업분류표>를 참조하시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인 직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직업 : _____

⑥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① 전문가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88 비해당(일하지 않음)
4. 현재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자영업자, 가족의 농사일을 도우면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됨)
- ① 고용주 ② 상용근로자 ③ 임시근로자 ④ 일용근로자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⑧ 비해당(일하지 않음)
5.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현 직장 근무시작 년월: _____년 _____월)
6. 귀하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주당 평균 근무시간: _____시간
7. 귀하의 월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임금으로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을 말함).
- 월 평균 임금: _____만원

7-1. 귀하의 월 평균 임금은 <u>일한 경험에 비스한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입니까?</u>				
① 매우 낮은 편	② 약간 낮은 편	③ 보통	④ 약간 높은 편	⑤ 매우 높은 편
7-2. 귀하는 월 평균 임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8. 귀하가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족의 생계유지 ② 자녀교육비 충당 ③ 노후대책
 ④ 생활비 보충 ⑤ 자기발전 ⑥ 부모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⑦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⑧ 여가시간 활용 ⑨ 기타(_____)
9. 귀하가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⑩ 어려움 없음 ① 자녀양육 부담 ② 가사 부담 ③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④ 일이 고되고 힘들다 ⑤ 임금수준이 너무 낮다 ⑥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⑦ 임금체불 ⑧ 작업환경의 열악 ⑨ 기타(_____)
10.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 ① 예(→B. 경제생활로) ② 아니오(→B. 경제생활로)

※ 현재 취업중인 분은 B. 경제생활로, 비취업중인 분은 11번으로 가시오.

11. (현재 비취업이라면) 귀하는 앞으로 취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결론 11-1로) ② 아니오(→B. 경제생활로)

11-1.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어떤 직종을 갖고 싶으십니까? 별첨 <세부직업분류표>를 참조하시어 <u>하나를 선택하</u>		
신고 구체적인 직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직업: _____		
③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④ 전문가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⑥ 서비스종사자	⑦ 판매종사자	⑧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⑪ 단순노무 종사자
⑫ 기타(_____)	88 비해당(일하지 않음)	
11-2.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① 도움이 필요 없다	② 일자리 알선	③ 자녀양육이나 교육 지원
④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⑤ 직업교육, 취업지도	⑥ 기타(_____)
11-3.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② 자녀양육 때문에	③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④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의 반대로	⑤ 한국말이 서툴러서	⑥ 몸이 아파서
⑦ 기타 (_____)	⑧ 비해당(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	

※ 외국인배우자 조사에서 IV. 취업 및 경제생활 중 B. 경제생활(P. 9)을 응답한 경우는 1~6번은 응답하지 마시고, V. 건강 및 보건의료이용으로 가시오.

B. 경제생활

1.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⑥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⑦ 오피스텔 ⑧ 기타(_____)
2.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귀댁의 소유입니까?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기타(_____)
3.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금액) → 월평균 _____만원

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비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_____만원

5. 귀댁의 부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총 _____만원

5-1. 귀댁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생계비 ② 주거비/주택마련 ③ 교육비 ④ 사업자금
⑤ 의료비 ⑥ 관혼상제비 ⑦ 기타()

6. 현재 귀댁의 생활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어려움 없음 ① 자녀양육 및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비 포함)
② 식료품비(주식, 부식비 등),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③ 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세금) ④ 의료비
⑤ 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용자금 상환) ⑥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및 교통비(자동차유지비 등)
⑦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⑧ 기타()

V.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

1. 귀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귀하는 지금까지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 ① 질병이 있음(→질문 2-1로) ② 질병이 없음(→질문 3으로)

2-1.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가 지금까지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하게 아픈 질병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고혈압 ② 고지혈증 ③ 심근경색 ④ 협심증 ⑤ 중풍(뇌졸중) ⑥ 당뇨병
⑦ 갑상선 질환 ⑧ 류마티스 질환 ⑨ 천식 ⑩ 알레르기 ⑪ 위·십이지장 궤양 ⑫ 백혈병
⑬ 면역질환 ⑭ 빈혈 ⑮ 백내장 ⑯ 간질 ⑰ 정신분열증 ⑱ 우울증
⑲ 암 ⑳ 자궁근종 (21) 유방 양성종양 (22) 난소 낭종(물혹) (23) 기타()

2.2.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질병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가 됩니까?

- ① 상당히 방해가 됨 ② 약간 방해됨 ③ 전혀 방해되지 않음

2-3.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가 질병을 앓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2-4.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는 질병의 치료 때문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질문 241로) ② 없다(→질문 3으로)

2-4-1.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의료비를 주로 어떻게 부담하십니까?

- ① 전액 건강보험 적용 ② 전액 본인 부담 ③ 건강보험+본인 부담
④ 다른 사람의 도움 ⑤ 무료 진료기관 이용 ⑥ 기타()

2-4-2.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치료 중임 ② 치료받지 않고 있음

3. 귀하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는 다음 중 어떤 형태입니까? 귀하: _____/배우자: _____

- ① 직장가입 건강보험 ② 지역가입 건강보험 ③ 의료급여 1종
④ 의료급여 2종 ⑤ 어떤 것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질문 3-1로)

3-1. (어떤 것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 ②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었다
③ 건강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④ 기타()

4.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중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질문 41로) ② 치료를 포기한 적 없다(→질문 5로)

4-1.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를 다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치료비가 없어서 ②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③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서
 ④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⑤ 식구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⑦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서 ⑧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⑩ 기타(_____)

5. 귀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체납한 적이 있음(→**질문 5-1로**) ② 체납한 적 없음 ⑧ 비 해당(미가입자)

5-1.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지불할 수 없었다 ② 국민건강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
 ③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몰랐다 ④ 기타(_____)

6.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아플 때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병원·의원 ②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③ 보건소
 ④ 병원·의원 처방 없이 약국에 감 ⑤ 기타(_____)

7.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힘든 점 없다 ① 교통편이 좋지 않아 문제가 있다 ②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하다
 ③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④ 언어소통을 하지 못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⑤ 절차가 복잡하다
 ⑥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 힘들다 ⑦ 기타(_____)

8.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건강검진을 받았음(→**Ⅵ. 가족부양 및 자녀출산·양육으로**) ②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음(→**질문 8-1로**)

8-1.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과거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②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③ 시간이 없기 때문에 ④ 경제적 이유때문에
 ⑤ 진단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⑥ 진단결과가 두려워서 ⑦ 발견해도 적당한 치료방법이 없어서
 ⑧ 기타(_____)

Ⅵ. 가족부양 및 자녀출산·양육

A. 가족부양

1. 귀하의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① 부모 모두 생존 ② 부 생존, 모 사망 ③ 부 사망, 모 생존 ④ 부모 모두 사망

2. 배우자의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십니까?

- ① 모두 생존 ② 아버지만 생존 ③ 어머니만 생존 ④ 모두 사망

2-1. 살아계신 배우자의 부모님과 현재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시부모(장인·장모) 모두 동거 ② 시아버지(장인)만 동거 ③ 시어머니(장모)만 동거
 ④ 시부모(장인·장모) 모두 비동거 ⑧ 비 해당(배우자 부모 모두 사망)

3. 귀하 또는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귀하가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별 다른 어려움 없음 ① 노인 돌보기(식사, 세탁, 청소 등) ② 노인의 일반적 건강
 ③ 간병 ④ 부양비(용돈, 생활비 등) ⑤ 의료비
 ⑥ 여가활동 ⑦ 언어가 통하지 않음 ⑧ 기타(_____)
 ⑨ 비 해당(부모·배우자 부모 모두 사망 비동거)

4. 지난 1년 간 귀하 또는 배우자 가족 중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에게 도움을 준 사람과 귀하가 도움을 준 사람을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 주십시오 단,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부모	③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친척	⑤ 나의 부모	
⑥ 나의 형제·자매	⑦ 기타 친척	⑧ 자녀
		⑨ 기타 ()
구분	4.1. 도움을 받은 여부 및 도움 준 사람	4.2. 도움을 준 여부 및 도움을 받은 사람
① 신체적 지원 ¹⁾	① 없음 ② 있음 →(누구:)	① 없음 ② 있음 →(누구:)
② 정서적 지원 ²⁾	① 없음 ② 있음 →(누구:)	① 없음 ② 있음 →(누구:)
③ 경제적 지원 ³⁾	① 없음 ② 있음 →(누구:)	① 없음 ② 있음 →(누구:)

주: 1) 신체적 지원 간병·수발, 집안청소·세탁, 시정보기·식사준비, 손자녀돌보기 등임.

2) 정서적 지원 대화상대(말벗되기), 중대결정시의논상대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조언 등임.

3) 경제적 지원 생계비 지원 일시적으로 큰 지출에의 지원 용돈, 기타 물품 지원 등임

5.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 가족과 배우자 가족을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본인가족: , 배우자 가족: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2~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이하 ⑨ 전혀 만나지 않았음 88 비해당(동거)

6.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 가족과 배우자 가족에게 연락(전화통화, 편지, e-mail, 인터넷 채팅)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본인가족: , 배우자 가족: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2~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하지 않았음 88 비해당(동거)

7. 귀하 또는 배우자는 본국에 있는 배우자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계십니까?

- ① 예(→질문 7-1로) ② 아니오(→B. 돌봄실태로)

7-1. (본국의 배우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연간 송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송금액 _____ 만원
7-2. 귀하는 본국에 있는 배우자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B. 돌봄실태

1. 귀하 가족 중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질문 2로) ② 아니오(→C. 자녀출산·양육으로)

2.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한 명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본인의 아버지 ② 본인의 어머니 ③ 본인 ④ 본인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아버지
⑥ 배우자의 어머니 ⑦ 형제·자매 ⑧ 조부모 ⑨ 자녀 ⑩ 기타()

3.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현재 몇 살입니까? _____ 세

4.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모든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③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

5.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6.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본인 아버지 ⑤ 본인 어머니
 ⑥ 형제·자매 ⑦ 조부모 ⑧ 배우자의 아버지 ⑨ 배우자의 어머니 ⑩ 기타 가족원
 ⑪ 파출부 또는 간병인 ⑫ 기타()

6-1. (6번에 ①~⑩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을 1주일에 총 몇 시간 돌보십니까? _____ 시간/1주일

6-2. (6번에 ①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나 취업활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예(→**질문 6-2-1**) ② 아니오(→**질문 7**) ③ 비해당(일을 하지 않음)(→**질문 7**)

6-2-1. 귀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근무시간 단축 ② 조퇴 또는 결근 ③ 전직 ④ 휴직 ⑤ 퇴직
 ⑥ 재택근무로 바꾸었다 ⑦ 기타()

7.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없음(→**질문 8**) ② 주간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④ 병원 ⑤ 노인복지관
 ⑥ 장애인복지관 ⑦ 종합사회복지관 ⑧ 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⑨ 기타()

7-1. 그 시설을 1주일에 며칠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__ 일/1주일

7-2. 그 시설을 1일에 몇 시간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__ 시간/1일

8.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한달에 평균 얼마쯤 됩니까?(※ **환자를 위하여 가족이 사용하는 총비용을** 말함) _____ 원/1개월

9.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귀대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 ① 매우 부담이 된다 ② 부담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C. 자녀출산·양육

1. 귀하와 현 외국인 배우자(동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2. 현 외국인 배우자(동거자)가 귀하와 결혼(동거)하기 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모두 몇 명입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 0명으로 표시**)
 _____ 명

2-1. 그 자녀(들)는 현재 귀하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함께 살면 ①번에** 답하십시오)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따로 살지만 한국에 있다 ③ 본국에 살고 있다 ④ 제3국에 살고 있다

3. 귀하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어려움이 없었음 ①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부족 ②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③ 출산비용 부담 ④ 건강문제
 ⑤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부족함 ⑥ 산후조리 ⑦ 기타() ⑧ 비해당(임신·출산경험 없음)

4. 귀하 또는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임신·출산한(할) 경우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음 ① 출산 후 본인의 건강 상담 ② 아이의 건강 상담 ③ 산후조리
 ④ 경제적 지원 ⑤ 출산 돌보미 지원 ⑥ 산후 조리 또는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
 ⑦ 본국 음식 ⑧ 본국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 ⑨ 기타()

※ 현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5번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Ⅷ.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로 가시오.

5. 귀하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비해당
5-1. 자녀와의 친밀함	①	②	③	④	⑤	⑧
5-2. 자녀와의 대화·외사소통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⑧
5-3. 부모·자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⑧
5-4. 자녀들이 귀하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성적, 취업)	①	②	③	④	⑤	⑧
5-5.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운동, 산책, 외식)	①	②	③	④	⑤	⑧
5-6. 자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⑧

6.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표시해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	① 자녀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②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	②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들
③ 아이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함	③ 아이의 건강문제
④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	④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⑤ 자녀와의 갈등(반항, 작은 다툼)	⑤ 학업지도
⑥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공격성, 산만함, 거짓말, 도벽 등)	⑥ 기타()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7번에서 '① 돌보는 사람이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취학자녀가 있으면 질문 8번으로, 취학자녀가 없으면 질문 9번으로 가시오).

7. 귀하 자녀는 낮에 주로 누가 돌볼니까? 히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경우는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말함)

- ① 돌보는 사람이 없음 ①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질문 73으로) ② 친구 (→질문 73으로)
③ 위탁모·피플루·도우미 (→질문 73으로) ④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질문 71로) ⑤ 유치원 (→질문 71로)
⑥ 사설 학원 (→질문 71로) ⑦ 한글교실 (→질문 71로) ⑧ 기타() (→질문 73으로)

7-1. (7번에서 ②, ③, ④, ⑤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 자녀는 그 시설을 1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이용합니까?
일/1주일

7-2. (7번에서 ②, ③, ④, ⑤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 자녀는 1일 평균 몇 시간을 이용합니까?
시간/1일

7-3. (7번에서 ①, ③~⑧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니만 선택
하여 주십시오.

- ① 남보다 는 가족 또는 친구가 더 잘 돌볼 것 같아서 ② 가까운 곳에 미평한 시설이 없어서 ③ 2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④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⑥ 비용부담 때문에
⑦ 학원에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으므로 ⑧ 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어서 ⑨ 장애보육이 필요하나 시설이 없어서
⑩ 내가 돌보면 되므로 ⑪ 기타() 88 미평한 보육시설을 보내는 경우

※ 취학 자녀가(초등학교 1~6학년까지 대상)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8. 귀하 자녀는 방과 후에 주로 누가 돌보니까? 히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돌보는 대상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랜 시간 돌보는 대상을 말함)

- ⑥ 아이 혼자 지냄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문** () ② 기타 가족 ③ 사설 방과후 프로그램
④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⑤ 사설학원 ⑥ 파출부·도우미 ⑦ 친구·친지 ⑧ 기타()

8-1. 귀하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방과 후에 돌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생업에 바빠서 ② 학습지도를 못해서 ③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④ 자녀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⑤ 기타()

※ 미취학자녀,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응답하십시오.

9. 귀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양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자녀 양육비에는 보육시설 이용비, 도우미 이용비, 학원비, 교육관련 비용, 간식비, 분유 및 기저귀 구입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 총 비용을 말함)
_____원

10. 귀하 자녀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질문 10-1**) ② 별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질문 10-1**)
③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질문 11**) ④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질문 11**)

10-1. (적응을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적응을 못합니까?

- ① 교사와의 관계 ② 또래친구와의 관계 ③ 교육방식 ④ 학업내용
⑤ 많은 준비물 ⑥ 교육기관의 규칙과 지시 ⑦ 의사소통 ⑧ 기타(_____)

11. 귀하의 자녀는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질문 11-1**) ② 아니오(→**VII.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

11-1.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특별한 이유 없음 ①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②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③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④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어서 ⑤ 기타(_____)

VII. 가족관계 및 사회심리적 상태

A. 가족관계

1. 귀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중에서 누구와 가장 힘든 관계입니까?

- ① 힘든 사람 없음 ① 배우자 ② 나의 아버지 ③ 나의 어머니
④ 나의 형제·자매 ⑤ 나의 기타 가족 ⑥ 나의 자녀 ⑦ 배우자의 부모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배우자의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⑩ 기타(_____)

2. 귀하가 배우자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보기>에서 골라 각각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2-1. 배우자의 부모:_____

2-2. 배우자의 형제·자매:_____

- ① 별 다른 어려움 없음 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 ②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름
③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이 다름 ④ 종교가 다름 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음
⑥ 기타(_____) ⑦ 배우자 부모님 모두 사망/배우자의 형제·자매 없음

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하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또는 기타 가족원으로부터 다음 중 경험한 행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험한 행동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경험 없음 ① 폭언 및 모욕적인 말 ② 때리려고 위협함
③ 물건을 집어 던짐 ④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게 함 ⑤ 생활비 또는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음
⑥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함 ⑦ 기타(_____)

3-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질문 3>에서 응답한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경험한 행동이 1가지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이 경험한 행동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없었음 ① 거의 매일 ② 주 1~2회 ③ 월 1~2회
④ 6개월에 1~2회 ⑤ 년 1~2회 ⑥ 기타()

3-2. 지난 1년간 위의 행동(3번 행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형제·자매의 배우자
⑤ 조부모 ⑥ 기타 친척 ⑦ 배우자의 부모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배우자의 기타 친척 ⑩ 기타()

3-3. 위의 행동(3번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특별한 이유 없음 ① 성격 차이 ② 생활방식의 차이
③ 생활비 문제, 경제(돈) 문제 ④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⑤ 음주(또는 그로 인한 늦은 귀가)
⑥ 부모와의 불화 ⑦ 나 또는 가해자의 외도 ⑧ 나의 취직문제
⑨ 배우자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문제 ⑩ 기타()

4. 귀하는 가족원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① 그런 경험이 없다 ① 말로 설득하여 해결한다 ② 싸워서 고친다
③ 일단 피하고 본다 ④ 힘들지만, 그냥 참고 산다 ⑤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하자고 한다
⑥ 상담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찾는다 ⑦ 기타()
5. 귀하는 가족원간의 불화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을 **한 분만** 골라주십시오.
- ① 도움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 ① 나의 가족·친척 ② 배우자의 가족 친척 ③ 친구·친지 ④ 상담원
⑤ 종교단체 성직자 ⑥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⑦ 기타()
6. 귀하는 가족원의 폭력을 상담하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하셨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가족원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B. 사회심리적 상태로 ① 상담소를 방문하였다(→**질문 6-1-1로**)
② 상담전화를 이용하였다(→**질문 6-1-2로**) ③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B. 사회심리적 상태로
- 6-1. 귀하가 가족원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각에 대하여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6-1-1. 상담소 방문 상담	①	②	③	④	⑤
6-1-2. 상담전화 이용	①	②	③	④	⑤

B. 사회심리적 상태

1. 귀하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1.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때때로 장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전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험하셨습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적게 경험한 편이다	많이 경험한 편이다	매우 많이 경험한 편이다	비해당
2-1.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2-2. 자녀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3. 배우자 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4. 내 부모 또는 가족 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5. 배우자 부모 또는 가족 일로 인한 고민	①	②	③	④	⑤
2-6. 본인이 가족에게 이해 받지 못한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7. 가족 내에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8. 직장에서의 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9. 직장 및 업무상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한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⑤
2-10. 직장과 가정 생활 병행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C. 사회적 지지

1. 귀하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이웃·동료·기타는 몇 명입니까?

- 1-1. 친구 ① 없음 ② 있음()명
 1-2. 이웃 ① 없음 ② 있음()명
 1-3. 직장동료 ① 없음 ② 있음()명
 1-4. 동호회·모임·교회 ① 없음 ② 있음()명

2. 지난 1년간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동료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 (전화, 편지 등으로 상호연락)을 하거나 만나십니까?(※ 가장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말함)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2~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음 88 비해당(동거)

3.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모임의 종류	참석한 적 없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2달에 1회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3-1. 나의 가족·친척 모임	①	②	③	④	⑤	
3-2.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	①	②	③	④	⑤	
3-3.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①	②	③	④	⑤	
3-4. 나의 친구·단체 모임	①	②	③	④	⑤	
3-5. 배우자 친구·단체 모임	①	②	③	④	⑤	

4. 3번의 모임이나 단체 가운데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모임이나 단체는 어느 것인지 해당되는 번호를 쓰십시오
 _____번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두 사람만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십시오

보기	① 없음 ② 배우자 ③ 나의 부모 ④ 나의 형제자매·친척 ⑤ 자녀 ⑥ 친구		
	⑦ 배우자의 부모 ⑧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 ⑨ 배우자 친구 ⑩ 이웃 ⑪ 직장동료		
	⑫ 외국인/이민자 지원 단체 ⑬ 종교기관 또는 성직자 ⑭ 학교 또는 교사 ⑮ 결혼중개업체 ⑯ 언론		
	⑰ 인터넷 ⑱ 상담원(상담소·상담전화) ⑲ 기타()		
구분		첫째	둘째
5-1. 아파서 병간호나 가사 일을 부탁할 경우			
5-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3. 부부간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5-4.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VIII. 가족기능

※ 귀하께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 기능	1. 우리가족은 양질의 노동력을 사회에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가족은 소득에 맞추어 균형적인 소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부양기능	3. 우리가족은 의생활이 잘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가족은 식생활이 잘 해결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가족은 주거생활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정서적부양기능	6. 우리가족은 가족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가족은 가족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가족은 가족원개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신체적부양기능	9. 우리 가족원의 신체적 보호는 적절히 수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이 나쁜 가족원에게 적절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체적으로 불편한 가족원을 다른 가족원이 잘 돌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미성년 자녀의 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어 왔다(제공될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재·양육 및 사회화기능	13.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성취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가정에서 교우관계, 애국심 등 사회화 교육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여가휴식기능	15. 우리가족은 월1회이상 외식(식사, 음주)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가족은 월1회이상 운동(스포츠, 등산, 나들이 등)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가족은 월1회이상 집안을 함께 가꾼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가족은 재충전할 충분한 시간 및 공간적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보장기능	19. 우리가족은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가족은 친·인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가족은 길흉사에 축의금, 조의금을 잘 부담한다	①	②	③	④	⑤

IX. 가치관 및 인식

A. 혼인 가치관 및 인식

1. 귀하께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③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2.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성격 ② 경제력 ③ 자라온 환경 ④ 외모·성적인 매력 ⑤ 기타 (_____)

3.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 ① 결혼이란 부부개인간의 관계이다 ②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

4. 귀하께서는 이혼에 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는 편이십니까?

- ①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결론 4-1로**)
 ②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하는 편이 낫다(→**결론 5로**)
 ③ 잘 모르겠다(→**결론 5로**)

4-1.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녀가 있기 때문에 ②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③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④ 기타(_____)

5. 귀하께서는 재혼에 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는 편이십니까?

- ① 재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재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③ 재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잘 모르겠다

B. 가족 가치관

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부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편도 가사노동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녀를 돌볼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친정보다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인은 한국 명절과 더불어 외국인 가족원의 모국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라면 당연히 한국요리를 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본국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외국인 가족원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가족간의 화합 ② 가족의 경제적 안정 ③ 가족들의 건강 ④ 가족들의 성공, 성취
⑤ 가정 내 질서와 권위 ⑥ 기타 (_____)

C. 자녀 가치관 및 인식

1.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2.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명

3. 만약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아이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자아이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자아이(→**질문 3-1로**) ② 여자아이(→**질문 4로**) ③ 상관없다(→**질문 4로**)

3-1. 왜 남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문(대)을 잇기 위해 ② 노후생활을 위해 ③ 배우자가 원하므로
④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해서) ⑤ 기타(_____)

4.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자식은 부모에게 속하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자식은 부모와 다른 그들만의 삶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자식의 진로는 자식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자식의 결혼상대는 자식이 결정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는 부모로서 자녀양육(교육, 정서, 경제)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 ②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
| ③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 ④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
| ⑤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 | ⑥ 기타 () |
| ⑦ 생각해보지 않았다/ 모르겠다 | |

D. 사회적 가치관 및 인식

1. 귀하는 절친한 친구가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② 반대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찬성할 것이다 ⑤ 매우 찬성할 것이다
2. 귀하께서는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친절함)가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에게 약간 친절한 편이다
 ③ 외국인에게 상당히 친절한 편이다 ④ 외국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3. 귀하께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차별한다 ② 대체로 차별하는 편이다
 ③ 별로 차별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4.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가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차별한다 ② 대체로 차별하는 편이다
 ③ 별로 차별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⑤ 학교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가 없다
5. 귀하께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특별히 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특별우대를 하지 않는다 ② 별로 특별우대를 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특별우대를 한다 ④ 매우 특별우대를 한다
6. 다음 질문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6-1. 귀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배우자 본국의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대한민국 국민 ② 배우자 본국 국민 ③ 둘 다
- 6-2. 귀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귀하와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같은 민족 ② 다른 민족 ③ 둘 다
- 6-3.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배우자 본국의 국민이라고 느끼십니까? 만약, 귀하께 자녀가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 ② 배우자 본국 국민 ③ 둘 다
- 6-4.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를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고 느끼십니까? 만약, 귀하께 자녀가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같은 민족 ② 다른 민족 ③ 둘 다

E. 인권 의식

1. 귀하께서는 한국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2. 귀하께서는 한국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권상황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나아졌다 ② 조금 나아졌다 ③ 1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④ 앞으로 나아질 것 같다 ⑤ 잘 모르겠다

3. 다음은 한국가정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무조건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집안풍습, 종교, 의견 등)에게 순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결정권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구타 또는 폭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외국인 배우자를 자유롭게 외출(집밖 출입)하게 하거나 본국 친구를 만나게 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3-5. 외국인 배우자에게 집안의 수입지출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번 돈이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관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언제라도 배우자가 성관계를 원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받아들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집안행동이 어렵고 배우자가 직업이 없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3-8. 외국인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경우 국적취득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X. 복지실태 및 욕구

A. 복지실태 및 만족도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쓰십시오

구분	이용여부		도움정도						이용의향	
	이용한적 없음	이용함	전혀 도움 안된다	별로 도움 안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비해당	이용 의향 없음	이용 의향 있음
1-4.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7. 법률상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의료상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 컴퓨터/정보화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0.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1. 생활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신청 여부		혜택 여부		도움정도					
	신청	미신청	혜택 받음	혜택 받지 못함	전혀 도움 안된다	별로 도움 안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비해당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의료보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다음은 4대 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가입 여부		도움정도					
	가입	미가입	전혀 도움 안된다	별로 도움 안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비해당
3-1. 건강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2. 국민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3. 고용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4. 산재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B. 복지욕구

- 귀하는 다음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외국어 교육
 - ② 외국요리 강습
 - ③ 외국문화 관련
 - ④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 ⑤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 ⑥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 ⑦ 법률상담 및 지원
 - ⑧ 의료상담 및 지원
 - ⑨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
 - ⑩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 ⑪ 일자리 알선
 - ⑫ 생활정보 제공
 - ⑬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 제공
 - ⑭ 공공부조서비스 제공
 - ⑮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 ⑯ 기타(_____)
- 귀하가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언어훈련(외국어교육, 통역)
 - ② 건강·위생상식
 - ③ 유아상식
 - ④ 의료·간호기능
 - ⑤ 직업교육, 취업훈련
 - ⑥ 생활기능(요리, 마용)
 - ⑦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
 - ⑧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관련법규 설명
 - ⑨ 체류·영주·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리법 교육
 - ⑩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 ⑪ 기타(_____)
- 귀하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 ② 전염병·결핵예방 지식 제공
 - ③ 출산전·후 지도
 - ④ 폐임방법 소개
 - ⑤ 유아건강검사 제공
 - ⑥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 ⑦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 ⑧ 기타(_____)
- 귀하가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 지원
 - ② 교통편
 - ③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 ④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⑤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보육시설
 - ⑥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
 - ⑦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 ⑧ 학습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방문식 교육 서비스 제공
 - ⑨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 ⑩ 통역서비스 제공
 - ⑪ 비용 제공
 - ⑫ 기타(_____)
-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교육이 필요함
 - ②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도움 수 있도록 배우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함
 - ③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부모(특히 어머니) 모임이 있으면 좋겠음
 - ④ 기타(_____)
- 다음은 (장애)자녀 및 노인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필요 없음
 - ① 다양한 시설 제공
 - ② 비용 지원 확대
 - ③ 물품지원
 - ④ 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⑤ 남녀근로자 휴가제도 강화
 - ⑥ 인력파견서비스(가정교사, 전문간병인)
 - ⑦ 돌봄수당지급
 - ⑧ 가족원을 위한 일시 휴직지원서비스
 - ⑨ 정보제공 서비스
 - ⑩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 ⑪ 의료용품 대여서비스
 - ⑫ 돌봄제공자 상담서비스 제공
 - ⑬ 기타(_____)
 - ⑬ 88 비해당(돌봄가족원 없음)
- 귀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캠페인 등 홍보·계몽사업
 - ② 외국인가족 차별의 사회문화 개선
 - ③ 다문화 시민교육의 확산사업
 - ④ 외국인 가족 차별 법·제도 개선
 - ⑤ 기타(_____)
-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보호시설 확충
 - ②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 ③ 상담서비스 제공
 - ④ 사회적 인식개선
 - ⑤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 ⑥ 주거시설 마련
 - ⑦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 ⑧ 교육서비스 제공
 - ⑨ 자조모임 지원
 - ⑩ 대안학교 제공
 - ⑪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
 - ⑫ 기타(_____)
-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일국대기 기간 단축
 - ②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③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
 - ④ 체류기간 연장
 - ⑤ 작업환경 개선
 - ⑥ 외국인 고용업체의 감독 강화
 - ⑦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단속
 - ⑧ 산재보험 보장
 - ⑨ 산업연수생을 합법 근로자로 전환
 - ⑩ 기타(_____)
 - ⑪ 모트됐음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연구 전문가조사 (2008년 12월)

응답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 문화 시 대 를 대 비 한 복 지 정 책 방 안 연 구

전 문 가 조 사

전문가 그룹	응답자 일련번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연구 전문가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연구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의 다문화관련 전문가(학자, 민간기관의 업무담당자, 중앙·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담당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통계절차에 따라 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다문화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신42-14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담당자 : 김유경 팀장, 02)380-8235, kyk@kihasa.re.kr

팩 스 : 02) 384-3084

조애저 부연구위원, 02)380-8220, ajcho@kihasa.re.kr

이주연 선임연구위원, 02)380-8252, juyeon@kihasa.re.kr

소속		직위	
성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응답자 특성

1. 현재 거주지역	① 도시 ② 농·어촌
2. 성	① 남성 ② 여성
3. 연령	만 _____ 세
4. 전문가 유형	① 학자 ② 민간기관 업무담당자 ③ 중앙정부 공무원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⑤ 기타()
5. 다문화가족관련 업무연구 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II. 다문화가족의 범위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6. 2008년 9월부터 실시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2조)로 이루어진 가족과 "귀화허가를 받은 자(국적법 제4조)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2조)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와 같이 규정된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찬성하십니까?

① 예(→질문 7로) ② 아니오(→질문 6-1로)

6-1.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

①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③ 불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④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⑤ 합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⑥ 불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부부와 그 가족
 ⑦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성장 후 혼인하여 이루는 가족
 ⑧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⑨ 기타 ()

7.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정책적 대상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부터 우선순위로 3위까지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결혼이민자 본인 ②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 ③ 불법적 체류신분의 외국인
 ④ 한국인 배우자 ⑤ 다문화가족 자녀 ⑥ 한국인 시부모, 남편의 형제·자매
 ⑦ 대상별로 차이가 없음 ⑧ 기타()

III.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8.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1)

- ① 국제 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혼이민자의 인권관련 문제 ②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문제
 ③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문화적 소외문제 ④ 결혼이민자의 건강문제
 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⑥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등 양육문제
 ⑦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문제 ⑧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갈등 및 폭력문제
 ⑨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⑩ 기타()

9.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된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효과적임 편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9-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①	②	③	④	⑤
9-2.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①	②	③	④	⑤
9-3.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①	②	③	④	⑤
9-4.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지원	①	②	③	④	⑤
9-5.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9-6.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①	②	③	④	⑤
9-7.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①	②	③	④	⑤
9-8.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①	②	③	④	⑤
9-9.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방문교육사업)	①	②	③	④	⑤
9-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	②	③	④	⑤
9-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보호	①	②	③	④	⑤
9-12.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택1)

- ① 현재의 정책으로 충분하므로 개선될 필요가 없다
- ② 체류자격·시민권관련,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시키고 그 밖의 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편적복지서비스로 대체한다.
- ③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④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 ⑤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⑥ 서비스 전달인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⑦ 기타(_____)

11. 선생님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기조가 다음 중 어떠한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다
- ③ 다문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기타(_____)

IV. 기타

12. 선생님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1)

- 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보호 및 법적지원
- ②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 실시
- ③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정부지원
- ④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
- ⑤ 기타(_____)

13.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복지정책수립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예: 민관협력, 대국민 인식개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등)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운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6,000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II)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욕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상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